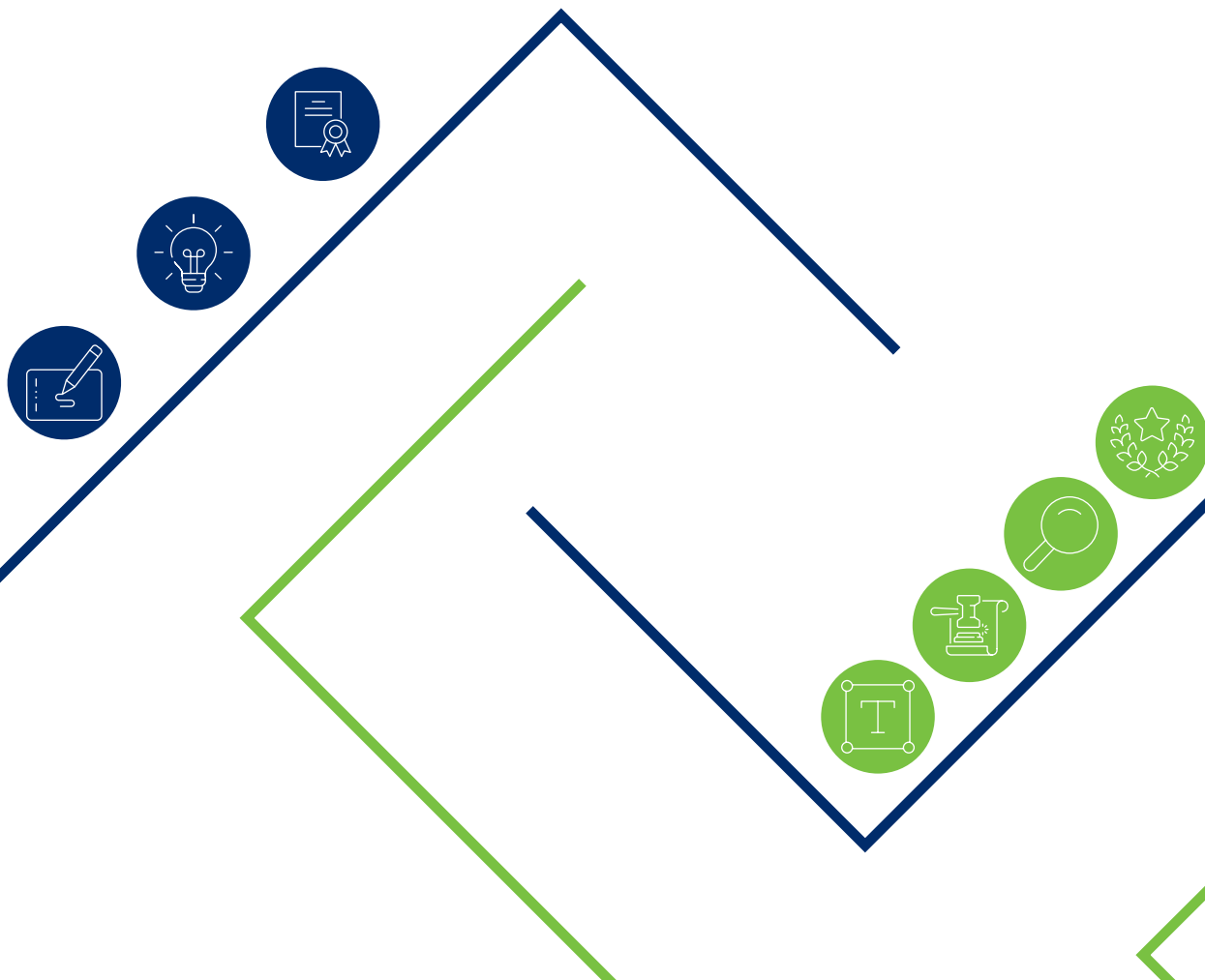


디자인법조약(DLT) 반영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검토

2025. 12.



제 출 문

지식재산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자인법조약(DLT) 반영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검토”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9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구기간 : 2025년 4월 10일 ~ 2025년 12월 9일

○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여연구원: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문병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권지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연구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24년 성안된 디자인법조약(Design Law Treaty, DLT)을 기준으로, 조약의 주요 절차 규범과 현행 「디자인보호법」 및 관련 하위 규정 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DLT 가입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보다는, 국제적 절차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디자인 제도의 구조적 정합성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DLT의 전체 조문을 대상으로 핵심 절차 규범을 분석하고, 해당 규범이 지향하는 절차적 유연성과 권리 보호의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DLT가 실제적 권리 범위보다는 출원·등록·관리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조약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조약 분석을 토대로 국내 법제와의 쟁점을 도출하고, 각 쟁점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하위 규칙 또는 제도 운영의 개선으로 대응 가능한 사항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한의 구체 및 권리회복 요건, 신규성 상실 예외의 기산점, 실시권 등록 절차 등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항과 행정규칙 정비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조약의 취지를 반영하되 국내 제도의 안정성과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 개정 원칙 하에서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조약에서 직접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DLT를 당장 가입 여부의 판단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국제적 절차 규범의 기준점으로 활용하여 국내 디자인 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DLT와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 특허법조약(PLT) 등 향후 국제 절차조약 논의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디자인 분야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 규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목 차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필요성	5
II. 연구 방향	8
 제2장 디자인법조약의 주요 내용과 「디자인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	11
I. 디자인법조약의 구조	13
II. 디자인법조약의 주요 내용	15
1. 정의	15
2. 일반원칙	15
3. 이 조약이 적용되는 출원 및 산업디자인	16
4. 출원	16
5. 대리인 및 송달 또는 교신주소	17
6. 출원일	18
7. 공지에외기간	19
8. 창작자 명의 출원	20
9. 두 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	20
10. 산업디자인의 공고	21
11. 전자적 산업디자인 시스템	22
12. 서류제출	22

13. 갱신	23
14. 기한의 구제	24
15.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의 권리회복	25
16.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	26
17.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 신청	27
18.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	28
19. 실시권 미등록의 효과	29
20. 실시권의 표시	30
21. 명의변경 등록 신청	31
2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32
23. 오류의 정정	32
24.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33
25. 시행규칙	34
26. 총회	34
27. 국제사무국	35
28. 개정	36
29.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절차	37
30. 발효 및 비준, 가입의 효력 발생일	38
31. 유보	39
32. 조약의 탈퇴	40
33. 조약의 언어 및 서명	41
34. 기탁처	41
III. 디자인법조약과 「디자인보호법」 간의 정합성과 가입을 위한 고려사항	43

제3장 디자인법조약 반영을 위한 쟁점 연구	51
I. 기한의 구제와 권리회복	57
1. 조약의 분석	61
2. 국내법 분석	78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83
4. 그 밖의 검토사항 : 권리회복의 요건 관련	100
5. 법 개정방향(안)	102
II.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 및 회복	110
1. 조약의 분석	111
2. 국내법 분석	115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118
4. 법개정방향(안)	132
III. 출원일	136
1. 조약의 분석	136
2. 국내법 분석	142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146
4. 평가	154
IV. 실시권의 등록	157
1. 조약의 분석	160
2. 국내법 분석	161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165
4. 법개정방향(안)	168
V. 실시권 미등록의 영향	170
1. 조약의 분석	170

2. 국내법 분석	172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176
4. 법개정방향(안)	181
VI. 오류의 정정	182
1. 조약의 분석	183
2. 국내법 분석	186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189
4. 법개정방향(안)	198
VII. 강제대리	200
1. 조약의 분석	201
2. 국내법 분석	203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204
4. 그 밖의 검토사항 : 특허법 개정 논의	211
5. 법 개정방향(안)	213
VIII. 공지예외기간	216
1. 조약의 분석	216
2. 국내법 분석	217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219
4. 법개정방향(안)	226
IX. 산업디자인의 공개	229
1. 조약의 분석	229
2. 국내법 분석	231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232
4. 법개정방향(안)	238

제4장 「디자인보호법」 개정방안	241
I. 개정방향	243
II.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244
1. 기한의 연장 및 권리의 구제 관련	244
2.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회복	255
3. 디자인관리인 등	270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274
5. 산업디자인의 공개	278
III. 디자인법조약을 반영을 위한 기타 하위규칙 등 개정방향(안)	280
1. 실시권의 등록	280
2. 오류의 정정	283
3. 출원일	285
4. 그 밖의 사항	286
 제5장 결론	 287
 [참고문헌]	 291
[붙임 1] 디자인법 조약 및 시행규칙 대조표	292
[붙임 2] 「디자인보호법」상 기간에 관한 사항	332
[붙임 3] 「디자인보호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37

〈표 차례〉

표 1 디자인법조약 주요내용 정리	4
표 2 DLT 서명 국가	5
표 3 디자인법 조약 및 시행규칙 대조표	13
표 4 조약 제14조와 조약 제15조의 개념 비교분석	26
표 5 실시권, 담보권 등록 및 변경, 말소 절차 요약	29
표 6 DLT 유보조항의 구분(제31조 제1항의 유보와 제2항의 유보)	40
표 7 조약과 법간의 정합성 검토 지표	45
표 8 DLT 중 절차요건에 관한 사항과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문	46
표 9 PLT 가입국가 (국가/시행일자)	53
표 10 비교법적 검토를 위한 기준법령 및 하위규칙 목록	56
표 11 조약 제14조(기한의 구제), 규칙 제10조 (기한의 구제에 관한 세부사항)	57
표 12 조약 제15조(권리회복), 규칙 제10조 (권리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59
표 13 PLT와 STLT에서의 구제조치 비교	62
표 14 DLT와 PLT 비교 (DLT 제14조 제1항)	62
표 15 (참고) 권리행사에 정해진 시간에 관한 용어 비교	63
표 16 DLT와 PLT 비교 (DLT 제14조 제2항)	65
표 17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조	66
표 18 기한의 연장과 관련한 DLT와 PLT의 비교	67
표 19 DLT와 PLT 비교 (DLT 제14조 제3항)	68
표 20 기한의 구제의 예외	69
표 21 수수료에 대한 세부 명칭의 비교	70

표 22 DLT와 PLT 비교 (DLT 제15조 제1항)	70
표 23 제14조의 국내법으로의 반영방법 검토/정리	74
표 24 규정반영 시 가능한 선택지 (제14조)	74
표 25 DLT 제14조와 제15조의 의미와 관계	75
표 26 기한의 연장, 절차의 계속 및 권리회복의 개념 비교 (개념중심)	75
표 27 PLT와 DLT의 기한연장 및 권리회복의 관계 비교 (조문중심)	76
표 28 DLT 제14조와 제15조를 연계하여 충족하는 법조문의 구성(안)	76
표 29 권리회복(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보호법」 규정	80
표 30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37 CFR)상 기간의 연장 관련 규정	83
표 31 MPEP 710.02(e) 규정 발췌	86
표 32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37CFR) 상 권리회복 규정	87
표 33 미국 특허법 상 기한구제 및 권리회복	90
표 34 일본 특허법 및 시행령상 기간에 관한 규정	91
표 35 일본 특허법상 기간 관련 주요 개정 사항	92
표 36 기간도과 후의 권리회복의 대상이 되는 절차	94
표 37 일본에서 권리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의 예시	95
표 38 일본 특허법/의장법 상 기한구제 및 권리회복	96
표 39 EU CDR에서의 권리회복 관련 규정	97
표 40 CDR 제67조와 제67a조의 비교	99
표 41 EU CDR 상 기한구제 및 권리회복	100
표 42 주요국의 기한 연장 및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	102
표 43 기한의 구제 및 권리회복 관련 법개정을 위한 방법론	102

표 44	정당한 사유(제81조의3제1항)로 특허권 회복 신청 현황('22.4.~'24.12.)	104
표 4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5628)	104
표 46	DLT 제15조에 따른 권리회복/제외 대상	106
표 4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011)과 디자인보호법의 기간의 연장 비교	107
표 4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중 기한 외 연장 관련	108
표 49	조약 제16조(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 규칙 제12조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110
표 50	DLT와 PLT의 비교(DLT 제16조 제1항 기준)	113
표 51	DLT와 PLT의 우선권 주장 및 보정에 대한 비교	114
표 52	우선권 관련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규칙	115
표 53	「디자인보호법」상 우선권 주장과 DLT 비교	117
표 54	미국 특허법(35USC) 상 우선권 관련 규정	118
표 55	일본 특허법상 우선권 관련 조문	121
표 56	(일본)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중 타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의 해석	125
표 57	출원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회복	126
표 58	일본 의장법상 우선권 주장 관련 규정	128
표 59	일본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 시 우선권의 주장, 보정 및 회복	129
표 60	CDR 상 우선권 관련 규정	130
표 61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 회복 관련 법 개정 방향	133
표 62	우선권 주장의 추가 및 보정 가능기간 관련 「특허법」 개정안(2011년)	134
표 63	우선권 회복의 사유 관련 「특허법」 개정안(2011년)	134
표 64	조약 제6조(출원일)	136

표 65 출원일 관련 「디자인보호법」 규정	142
표 66 디자인보호법과 DLT상 출원일 관련 비교 (1)	144
표 67 미국 특허법 제111조 (출원)	146
표 68 미국 CFR 제1.53조	147
표 69 일본 의장법 제6조(의장등록출원)	149
표 70 일본 의장법 제9조의2(출원서의 기재 또는 도면 등의 보정과 요지변경)	150
표 71 CDR 제36조 (출원이 준수하여야 할 요건)	152
표 72 조약 제17조(실시권 또는 담보권 기록 신청)	157
표 73 실시권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 관련 규정 비교	161
표 74 「특허권 등의 등록령」상 실시권 등록 신청 관련 규정	162
표 75 일본 「특허등록령」 실시권의 기록 관련 규정	166
표 76 EU CDR상 실시권 관련 규정	168
표 77 조약 제19조(실시권 미등록의 영향)	170
표 78 조약 제19조 제2항의 해석(사례중심)	172
표 79 심판 및 소송 관련 「디자인보호법」 규정	173
표 80 참가 관련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규칙	175
표 81 일본 특허법 상 참가 관련 규정	178
표 82 조약 제23조(오류의 정정) 및 시행규칙 제16조(오류의 정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182
표 83 오류 정정 가능 여부의 비교 예시	184
표 84 오류의 정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 및 하위법령, 관계법령	186
표 85 미국 특허법 제254조(USPTO의 오류에 대한 정정증명서)	189
표 86 미국 특허법 제255조(출원인의 오류에 대한 정정증명서)	190

표 87 미국 특허법 제256조(발명자 기재의 정정)	190
표 88 일본 특허법 제17조의2	192
표 89 일본 특허등록령 제41조(정정)	193
표 90 EUIPO 디자인가이드라인 상 정정에 관한 규정	194
표 91 EUIPO 디자인가이드라인 상 정정에 관한 규정	195
표 92 EUIPO 디자인가이드라인 상 정정에 관한 규정	197
표 93 DLT 제23조 반영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구상	199
표 94 조약 제5조 제2항(강제대리)	200
표 95 강제대리 관련 산업재산권 절차조약 비교	200
표 96 강제대리 관련 절차조약 간 비교	203
표 97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상 강제대리 관련 규정	204
표 98 일본 특허법 및 시행령의 대리권 관련 규정	206
표 99 EU CDR의 대리권 관련 규정	208
표 100 PLT의 강제대리의 예외를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 제안사항	212
표 101 DLT 제5조 반영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구상	215
표 102 조약 제7조 (공지예외기간)	216
표 103 「디자인보호법」 제37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217
표 104 미국 특허법 제102조 (신규성)	219
표 105 공지예외의 기준일자 비교 (미국 vs 대한민국)	220
표 106 일본 의장법 제4조 (의장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221
표 107 공지예외의 기준일자 비교 (일본 vs 대한민국)	223
표 108 CDR 제7조 (공개)	224

표 109 공지예외 관련 국가별 비교	226
표 110 조약 제10조 (산업디자인의 공개)	229
표 111 미국 특허법 제122조 (출원의 비밀 유지 상태 및 특허출원의 공개)	232
표 112 일본 의장법 제14조 (비밀의장)	234
표 113 EU CDR 제50조 (공개의 유예)	236
표 114 「디자인보호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개정방안	245
표 115 「디자인보호법」 제18조 등, 권리회복 관련 개정방안	248
표 116 [참고] PLT 가입 대응을 위한 기한구제 및 권리회복 관련 개정 논의 ·	250
표 117 「디자인보호법」 상 기한의 연장 관련 개정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안)	251
표 118 기한 만료 후 연장신청 관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254
표 119 우선권 주장, 추가, 회복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259
표 120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51조제6항 관련 - 외국관청의 발급지연에 따른 구제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263
표 121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51조의2 관련 -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절차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266
표 12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267
표 123 우선권 주장의 추가·정정 관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269
표 124 (참고) 특허료 관련 특허법 개정안	271
표 125 재외자의 수수료 납부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273
표 126 신규성 상실의 예외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276
표 127 비밀디자인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방안	279
표 128 실시권의 등록 관련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방안	282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 국가마다 상이함에 따라, 출원인과 권리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및 관련 형식요건에 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디자인법조약」(Riyadh Agreement on Design Law Treaty, 이하 ‘DLT’ 또는 ‘조약’))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2024 리야드 외교회의(Riyadh Diplomatic Conference on Design Law)’에서는 이러한 국제 협력의 결실로서 해당 조약의 최종 문안이 확정·성안되었다.

디자인법조약은 조약에 가입한 국가 및 기타 정부간 기구들이 디자인 보호와 관련하여 특정 형식요건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디자인 권리의 국제적 출원 및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출원인이 복수국에 출원을 진행할 때 겪는 형식 절차의 이질성과 복잡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국제 디자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만으로도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대리인 선임 요건을 완화하면서 절차적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초과 후에도 2개월의 추가 구제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셋째, 복수디자인 출원이나 부분디자인, 비밀디자인 제도 등 다양한 디자인 유형에 대한 제도적 수용을 통해, 실무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권리 보호의 폭을 확대하였다. 넷째, 전통지식(TK)이나 전통문화표현물(TCEs) 보호의 관점에서도 조약은 출원 시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지역 고유 자산에 대한 존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표 1 디자인법조약 주요내용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세부설명
조약목적	디자인 보호 절차의 국제적 조화 및 간소화	국가마다 상이한 등록·출원 절차로 인한 복잡성 해소 및 접근성 제고
적용대상	제품의 장식적 측면(디자인)	등록제 또는 디자인특허로 보호되는 산업디자인 포함
출원절차의 간소화	출원요건의 명확화	필수 요소를 조약상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 확보
	디자인 표현 방식의 선택 허용	도면, 사진, 기타 시각적 매체(영상 포함)로 표현 가능
	복수디자인의 단일출원 허용	일정 요건 하에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디자인 포함 가능
	출원일 확보 요건 완화	필수적인 최소 구성요소 제출만으로도 출원일 인정 가능
사후절차 명확화	등록 후 절차 요건 명시	갱신, 양도, 라이선스 등 사후 기록절차의 요건 명확화
권리 보호의 강화	공지예외 도입	최초 공지 후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인정 유지
	비공개 유지 선택권 부여	출원 후 최소 6개월간 비공개 가능, 출원인의 전략적 선택 보장
	구제제도 도입	기간 도과 시 권리 회복 가능하도록 절차적 구제 조항 마련
조약구조	이원적 구조(Treaty + Rules)	본문은 조약(Articles), 절차세부는 시행규칙(Rules)로 구성
	시행규칙의 유연한 개정 가능	체약당사자 총회를 통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의 동태성 확보

● 표 출처 : Executive Summary : Basic Proposal for a Design Law Treaty (WIPO)¹⁾ 재정리

대한민국 역시 국제 디자인 제도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 리야드 외교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최종 조약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조약 본문에 대한 정식 서명 또는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국내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도 수용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diplomatic-conferences/en/docs/dlt-dip-conf-executive-summary.pdf>> 참조

표 2 DLT 서명 국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감비아, 가나, 레바논, 모로코, 파라과이, 필리핀, 몰도바 공화국, 상투메 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18개국)

● DLT/DC/27 (2024.11.22.)

2. 연구의 필요성

산업디자인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절차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DLT는 앞서 요약과 같이 출원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다국가 출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조약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출원인 중심의 실체적·절차적 편의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 보호 체계의 글로벌 조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볼때 조약의 원론적 취지에는 국제 산업재산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출원인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목표가 분명히 담겨 있다.

그러나 DLT는 단지 기술적·절차적 합리성을 넘어서, 국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 조약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DLT의 추진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약의 구조와 주요 조항들 역시 미국식 디자인 시스템의 영향 아래 구성된 측면이 강하다. 특히 강제대리의 예외, 디지털 제출 형식의 확대, 절차간소화를 통한 권리자 보호 등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디자인 확보 및 다국적 기업의 제도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설계한 조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²⁾

DLT의 채택이 완료되었으므로, 디자인 선진 5개국(이하 ‘ID5’)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조약 가입에 대한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EUIPO’)은 DLT가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며, 디자인 집약 산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EU에 환영할만한 발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DLT가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개별 디자이너와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논평하였으며,³⁾ 디지털

2) USPTO는 2024년 디자인법 조약협상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면서 “디자인법조약은 디자이너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자신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하며, 조약은 절차와 요건을 전 세계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산업디자인 보호를 받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 USPTO, Public comments sought on upcoming treaty negotiations on proposed Design Law Treaty, 2024. 3. 26. <<https://www.uspto.gov/subscription-center/2024/public-comments-sought-upcoming-treaty-negotiations-proposed-design-law>> 참조

3) European Commission, WIPO Design Law Treaty adopted, 2025. 11. 25.

전환과 글로벌 시장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도 실시한 바 있다.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ID5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신뢰 제고를 위해 조약 가입 논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제도와와의 정합성 검토나 행정적 수용 역량과 다소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조약 가입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FTA 협상이나 양자 IP 협력 논의에서 DLT 가입 여부가 간접적으로 거론될 수 있으며, WIPO 및 주요 협력 상대국으로부터 제도 조화의 일환으로 조약 수용을 요청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수요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국제 규범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DLT에 대한 국제적 수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는, 이미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산권 절차조약인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이하 ‘PLT’)의 국제적 확산 경험을 들 수 있다. PLT는 출원 절차의 조화와 단순화를 목적으로 2000년에 체결된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가들이 비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 이는 절차조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수용성을 방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⁵⁾ 대한민국은 앞서 상표에 관한 절차조약인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이하 ‘STLT’)에 이미 가입한 바 있다. 이 같은 선례를 고려할 때, DLT에 대해서도 “글로벌 절차조화 흐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적 요청 또는 압박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⁶⁾

따라서 대한민국은 조약 가입을 단순히 ‘국내 필요성에 따른 선택’으로 접근하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news/wipo-design-law-treaty-adopted-2024-11-25_en> 참조

4) 새로운 유럽 디자인 규정(REGULATION (EU) 2024/282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규정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OJ:L_202402822> 참조, 유럽 디자인 규정에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은 <<https://www.mewburn.com/news-insights/eu-design-changes>> 참조

5) PLT의 경우 미국, 일본 및 EPO와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가입하였으며, IP5 중 우리나라와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6) 참고로, 현재 DLT는 미국, 유럽(개별국가), 일본 등 주요국이 아직 가입(비준)하지는 않았으나, 이들 국가의 조약 가입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DLT의 주요 조항 상당 부분이 기존의 특허법조약(PLT) 및 상표법조약(STLT)에서 원용된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며, 해당 국가들은 이미 PLT 및 STLT에 가입하여 관련 절차체계를 수용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디자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특허법 하에서 규율하고 있어, DLT와의 법체계적 충돌이나 제도 간 비일관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이다. 일본 또한, 자국의 의장법이 특허법의 절차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어, DLT 수용을 위한 주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과 제도적 연계성으로 인해, 이들 주요국은 DLT 발효 이후 국내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고 조약 가입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기보다는, 국제정치적·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실무적, 현실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나, 한편으로 국제 무대에서의 제도 수용 가능성과 리스크 평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시기에 가입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입법정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다층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II. 연구 방향

본 연구는 2024년 11월 최종 성안된 DLT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조약의 국내 수용 가능성과 법제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LT는 산업디자인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절차적 조화를 핵심으로 하며, 조약 가입 시 국내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내 디자인법제와의 정합성 문제, 제도적 수용 여건 등 다면적인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DLT는 특징적으로 유보조항(reservation clauses)을 포함하고 있어, 체결국이 특정 조항의 수용을 보류한 채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약 전면 수용, 일부 조항 유보 수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DLT 가입 경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2장부터 제4장까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DLT의 전체 조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조약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 제도적 틀, 권리자 보호 방식 등 핵심 조항을 분류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현행 「디자인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의 조문별 정합성을 점검하고, 주요 불일치 사항을 도출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단순 비교에 그치지 않고, 국내법상 개정이 시급한 조항과 제도적 충돌이 발생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정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보조항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검토함으로써, 유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즉, 최소 범위 개정 후 가입)과 전면 수용 전략(즉, 완비된 정합성 확보 후 가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가입 경로를 구조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식별된 불일치 조항을 중심으로 법제 분석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 법령의 상세 검토를 통해 DLT와의 충돌 또는 미비 요소를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여 개정 가능한 방향성을 제안한다. 아울러, ID5의 디자인 관련 법령도 아울러 검토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탐색한다. 이 장에서는 특히, 조약 조항 수용 시 국내 행정절차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수용 가능성, 법령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며, 실무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실질적 개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한민국이 DLT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개정이 필요한 조항의 입법적·행정적 성격에 따라 개정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기·중기·장기적 조정 로드맵을 구성함

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유보조항을 활용한 점진적 가입 전략과 전면 수용 가입 전략에 따른 법제 정비 차이점, 관련 이해관계자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체약국으로 기능하면서도 자국의 제도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가입 시나리오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구조를 통해 본 보고서는 DLT에 대한 단순한 법령 비교를 넘어,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디자인법조약의
주요 내용과
「디자인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제2장 디자인법조약의 주요 내용과 「디자인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I. 디자인법조약의 구조

디자인법조약은 조약 본문과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조약의 국문번역은 본 연구보고서의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디자인법 조약 및 시행규칙 대조표

조약	시행규칙
제1조 정의	제1조 약칭의 정의
제2조 일반원칙	
제3조 이 조약이 적용되는 출원 및 산업디자인	
제4조 출원	제2조 출원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산업디자인의 도면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대리인 및 송달 또는 교신 주소	제4조 대리인, 송달지 또는 교신주소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출원일	제5조 출원일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공지에외기간	
제8조 창작자 명의 출원	
제9조 두 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	
제10조 산업디자인의 공고	제6조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 전자적 산업디자인 시스템	
제12조 서류제출	제7조 서류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제13조 갱신	제9조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조 기한의 구제	제10조 기한의 구제에 관한 세부사항
제15조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의 권리회복	제11조 조약 제15조에 따른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이후의 권리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제16조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	제12조 조약 제1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의 등록 신청	제13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의 등록 신청, 또는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에 관한 요건의 세부사항

조약	시행규칙
제18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의 변경 말소 신청	
제19조 실시권 미등록의 효과	
제20조 실시권의 표시	
제21조 명의변경 등록 신청	제14조 명의변경 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 출원번호 없이 출원을 특정하는 방법 ⁷⁾
제22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제15조 성명 또는 주소 변경 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제23조 오류의 정정	제16조 오류의 정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제24조 [결의사항]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제25조 시행규칙	제18조 조약 제25조 제3항 가목에 따른 만장일치 요건
제26조 총회	제17조 국제표준양식
제27조 국제사무국	
제28조 개정	
제29조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절차	
제30조 발효 및 비준 가입의 효력 발생일	
제31조 유보	
제32조 조약의 탈퇴	
제33조 조약의 언어 및 서명	
제34조 기탁처	

7) 시행규칙 제8조의 경우 조약 제21조 및 제22조와 매칭되는 조문으로서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하였다.

II. 디자인법조약의 주요 내용

DLT의 경우 절차조약의 특성상 앞서 체결된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조약인 특허법조약(PLT)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STLT)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거나, 구문을 상당 부분 활용한 경우가 많다.

디자인법 조약의 각 구문에 대한 배경이나 설명에 대하여는 ‘WIPO 상표, 산업디자인 및 지리적표시 상임위원회(SCT)’의 제3차 특별회기 당시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⁸⁾⁹⁾ 이하에서는 조약 본문을 기준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1. 정의

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으로써, 조항을 해석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조약 제1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 약어, 해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정의 조항은 조약 전체에서 용어의 명확성과 체계적인 적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로 작용한다.

2. 일반원칙

조약 제2조는 DLT의 전반적 적용 원칙을 선언하는 조항으로, 조약이 다루는 범위와 제한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실체법의 자유, 타 조약과의 병존 가능성, 출원인에게 유리한 국내 규정의 허용 등을 통해 DLT는 절차적 통일을 추구하면서도 자율성과 국제조화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조약 제2조는 총 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의 국내법상 자율성과 타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인정하면서, 출원인에게 유리한 법적 조치의 허용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이 조약이 산업디자인의 실체법(예: 신규성, 창작성 요건 등)을 규율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즉, 각 계약당사자는 디자인 보호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조약은 그러한 법령의 내용에 간섭하지 않는

8) 상표법, 산업디자인법 및 지리적표시법 상임위원회 제3차 특별세션, 2023. 10. 2. ~ 2023. 10. 6. (스위스 제네바), <https://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76268> 참조

9) 조약 본문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는 <SCT/S3/4>에서,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는 <SCT/S3/4>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

동조 제2항은 DLT가 다른 국제조약, 특히 TRIPS, 파리협정, 지역조약(EU 디자인 지침 등)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국제법상 계약당사자의 기존 의무 이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동조 제3항은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입장에서 DLT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국내법에 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컨대, 서류 제출기한 연장, 절차 간소화, 전자출원의 확대 허용 등은 국내적으로 자유롭게 인정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단, 예외적으로 제6조(송달 방식 등)는 강행규정에 가까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 이 조약이 적용되는 출원 및 산업디자인

조약 제3조는 디자인법조약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어떤 출원과 어떤 산업디자인에 대해 이 조약이 적용되는지를 구체화하며, 조약의 실질적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조항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조문을 통해 DLT가 모든 디자인 관련 절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출원 형태와 디자인의 법적 보호 가능성 여부에 따라 조약 적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한다.

동조 제1항은 DLT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원의 범위를 규정한다.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에 직접 제출되는 국내출원이나, 지역출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공통기관에 제출되는 출원도 포함된다. 예컨대 EU 공동체디자인 출원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출원(헤이그 제도 등)은 이 조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조 제2항은 DLT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규정한다. 즉, 각국의 실정법에 따라 산업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거나, 산업디자인에 대해 특허가 부여될 수 있는 경우¹⁰⁾도 이 조약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실제 등록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청 대상 디자인’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출원 준비 단계부터 적용되는 조약임을 나타낸다.

4. 출원

조약 제4조는 디자인 출원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형식적 기재사

10) 미국, 중국 등에서는 디자인 특허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항과 절차적 요건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계약당사국 간 출원절차의 과도한 차이를 줄이고, 국제적 조화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재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복수디자인(동조 제4항), 진실성 입증(동조 제5항)은 출원의 유효성과 관련된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동조 제1항은 출원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및 선택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출원인의 인적사항, 대리인, 도면, 물품명, 우선권 주장 등 디자인 등록절차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특히 도면의 요건은 시행규칙 제3조 연결된다. 시행규칙 제3조는 조약 제4조 제1항 마목에 해당하는 “도면 또는 시각적 표현”에 대한 구체적 요건 명시하면서 사진, 그래픽, 기타 시각적 수단 등 다양한 형식을 허용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출원서에 등록적격성과 관련된 추가 정보, 특히 전통지식 또는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조 제3항은 계약당사자가 출원 시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조약상 명시된 항목에 한정하도록 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요건 부과를 금지한다. 즉, 출원인의 절차적 부담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다.

동조 제4항은 복수디자인출원(multiple design applications)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계약당사자가 관련법상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은 행정청이 출원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

시행규칙 제2조(출원에 관한 세부사항)에서는 조약 제4조의 기재사항 외에도, 각국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로카르노 분류류, 신규성 진술, 설명서, 창작자 정보, 비공개 요청 등 총 15개 이상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선택사항이며 계약당사자의 국내법 허용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5. 대리인 및 송달 또는 교신주소

조약 제5조는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에서 출원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과, 송달지·교신주소 설정 요건, 요건 미준수 시의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글로벌 환경에서 출원되는 디자인의 특성상, 외국 출원인의 절차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각 계약당사자의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는 조화적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동조 제1항은 대리인에 대한 일반 요건을 규정한다. 계약당사자는 대리인이 자국 법상 디자인 출원절차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국 내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선임된 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대리인 선임은 위임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위임장의 범위, 유효범위, 권한의 제한, 특히 등록 포기 등 중대한 행위는 위임장에 명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동조 제2항은 외국 출원인의 경우에 대리인 선임을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다만, 출원일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출원서 제출, 수수료 납부)는 예외로 하여, 실질적인 대리 없이도 가능하다. 이는 실질적 권리 확보 시점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동조 제3항은 외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라도 송달 또는 교신을 위한 주소는 자국 내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행정청의 통지 효율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위한 규정이다.

동조 제4항은 대리인 선임 방식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즉, 서면 위임장 형식 등에 대해 국제적 표준을 따르도록 유도한다. 동조 제5항은 이 조문의 각 항에서 명시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됨을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남용을 방지하고 외국 출원인의 불이익을 차단하고자 한다. 동조 제6항은 출원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이를 고지하고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명시하며 이때 고지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규칙에 따른 시정기한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해외 거주자는 2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동조 제7항에서는 그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국내법에 따라 제재 조치가 가능함을 규정한다. 즉, 절차 보정 기회 이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자국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허용한다.

6. 출원일

조약 제6조는 출원일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출원인의 권리확보 시점인 출원일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계약당사국이 출원일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최소요건(minimum requirements)을 제한하고, 그 외 요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제적 절차조화와 신속한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여, 요건 미충족 시에도 보정기회와 출원일 유지를 허용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침해 방지를 지향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출원일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재사항 4가지를 규정한다. ① 출원임을 나타내는 명시적·묵시적 표시, ② 출원인의 신원정보, ③ 디자인

의 명확한 시각적 표현, ④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가 행정청에 해당 언어로 접수된 날을 출원일로 봄을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다소 불완전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출원일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즉, 디자인 시각적 표현과 출원인 정보 또는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부 요소가 빠지거나 외국어로 작성되었더라도 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은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기본요건(동조 제1항) 또는 선언한 추가요건(동조 제2항제2호) 외의 추가적 요구를 금지하며, 동조 제4항은 요건 미비 시 행정청은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규정한다. 이때의 보정기한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산점은 행정청이 요건 미충족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한 날이다(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이를 통하여 출원인에게 충분한 정비 시간을 보장하고, 절차상의 권리박탈을 방지하고자 한다. 동조 제5항에 따라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 보완을 완료한 경우, 출원일은 최초 제출일로 소급 인정된다. 다만 기한 내 보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출원은 미제출로 간주된다.

7. 공지예외기간

조약 제7조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판단 기준일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대해 예외를 두는 조항으로, 일명 공지예외(grace period)에 관한 규정이다. 창작자 본인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한 공개, 또는 이들로부터 유래한 공개¹¹⁾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12개월 이내) 동안 출원이 이루어진다면 신규성·창작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디자인 창작자의 실수나 전시, 공개 발표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되는 절차 조화 규범이다.

본 조항은 산업디자인이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보다 최대 12개월 전에 공개되었더라도, 다음 두 경우에 해당하면 그 공개는 등록 요건(신규성·창작성 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시한다.

첫째, 해당 공개가 창작자 또는 승계인(예: 고용자, 양수인)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는 본인의 전시, 출판, 온라인 공개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공개가 창작자 또는 승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자에 의해 이루어진

11)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로, 비의도적 유출이나 도난, 부정행위에 의한 공개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창작자의 통제를 벗어난 공개행위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 조항은 실체법과 연결되는 사안으로서 조약 제2조 제1항(실체요건 자유 원칙)과 병행하여 적용되며, 각국이 이 조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남을 수 있다.

8. 창작자 명의 출원

조약 제8조는 디자인 출원 시 창작자의 명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충족 방식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다. 계약당사국은 출원 시 반드시 창작자 명의로 출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창작자 명의를 형식적으로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실질적인 권리 귀속 판단이 아닌 출원 명의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가 디자인 출원을 창작자 명의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단, 이는 각국의 정책 또는 입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동조 제2항은 창작자 명의 출원요건의 충족 기준을 두 가지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출원인의 성명과 창작자의 성명이 일치하는 경우로, 출원인이 곧 창작자인 경우 자동으로 요건이 충족된다. 둘째,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라도, 창작자의 서명이 포함된 양도증서를 출원서에 포함하거나 출원 시 함께 제출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는 출원인이 권리를 정당하게 이전받은 경우를 반영하는 절차적 보완장치이다. 이 조항은 특히 고용에 따른 디자인 창작, 외부 디자이너의 용역 결과물 등에 대해 권리이전의 정당성을 문서로 확보하는 기능을 하며, 출원의 무효나 보정 없이 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한다.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시행규칙은 없으나,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창작자에 관한 정보, 창작자 본인이라는 진술, 창작자가 아닌 경우 권리이전의 증거와 연결되어, 조약 제8조의 명의 요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9. 두 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

조약 제9조는 하나의 출원서에 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약 제4조제4항과 연동되어, 복수디자인출원(multiple design application)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식(보정 또는 분할)과 분할출원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다. 이 조항은 특히 출원 요건 미비 시 권리소멸 방지를 위한 구조로 기능하며, 출원인에게 보정 또는 분할이라는 절차적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연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조 제1항은 복수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이 국가가 정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에게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출원인은 ‘보정’을 통하여 하나의 출원서 안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도록 내용을 수정(예: 동일류 디자인으로 조정)하거나 ‘분할’을 통하여 복수디자인을 각각 분할출원하여 독립된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이러한 분할출원이 이루어졌을 경우, 각 분할출원은 최초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며,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우선권일도 유지된다는 중요한 실체적 효력을 보장함을 규정한다. 동조 제3항에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경우,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분할출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행정청의 요구에 따른 분할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다. 동조 제4항은 분할출원 시 각 계약당사국은 별도의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행정적 부담 증가에 대한 정당한 비용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다.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분할출원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데 분할출원서에는 분할출원임을 나타내는 문구과 최초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청이 출원서의 연속성을 파악하고 출원일 인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파악할 수 있다.

10. 산업디자인의 공고

조약 제10조는 산업디자인의 비공개 유지 제도(deferred publication)에 관한 조항으로, 출원인이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도 권리 확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디자인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까지 전략적으로 비공개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창작자·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며, 상업화 일정과 지식재산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약은 계약당사자에게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고 요구하진 않고 있으나,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시행규칙상 6개월)을 준수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가 자국 법령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을 규정한다. 단,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기간(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후는 각 계약국의 재량으로 둔다.

동조 제2항은 비공개 유지를 원하는 출원인이 행정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수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즉, 비공개 유지 제도는 신청주의로 운영될 수 있고, 별도 행정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비공개 유지가 신청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시장 전략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조항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조기공개 요구에 대응 가능하게 한다.

시행규칙 제6조는 조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비공개 유지기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은 반드시 비공개 가능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보다 긴 기간을 자국법에서 정할 수 있다.

11. 전자적 산업디자인 시스템

조약 제11조는 계약당사국들이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전자적 행정절차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할 것을 장려하는 조항으로, 특히 전자출원 시스템과 우선권 증명서의 전자교환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는 DLT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절차의 국제적 조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접근성 향상을 반영한 것으로, 강제적 의무는 아니지만 모든 계약당사자에게 디지털 전환을 요구 또는 권고하는 국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조약 제11조는 산업디자인의 출원과 절차에 대해 전자적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약당사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적 시스템은 단순한 온라인 제출이 아닌, 전자서명, 접수 확인, 서류 전송 및 통지 시스템 등을 포괄한다. 또한, 산업디자인 출원 시 우선권 주장에 필요한 증명서(파리협약 제4조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을 디지털 방식으로 타 국가와 교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우선권 주장 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은 아니며, 계약당사자의 법제와 인프라 수준을 고려한 노력규정 및 권고규정에 해당한다.¹²⁾

12. 서류제출

조약 제12조는 산업디자인 출원 및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의 방식, 요건, 제한사항을 정하는 핵심적인 절차규정이다. 전자적 또는 서면 방식 모두를 포함하여 서류

12)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WIPO의 디지털화 정책(WIPO DAS (Digital Access Service, WIPO IPAS (Industri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에 부응하여 관련 시스템을 이미 적극 도입하고 있다.

제출의 형식과 언어, 서명 요건, 통신 주소 기재 요건 등을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 조문은 계약당사국의 법률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출원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요건을 강요하지 않도록 요건 제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가 서류 제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서면, 전자문서 또는 기타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서류제출의 언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모든 서류는 해당 행정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증·선서 등 인증을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진실성 확인 진술서는 요구 가능하다.

동조 제3항은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교신주소, 송달주소, 기타 연락처 기재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때의 교신주소 및 송달주소에는 국내 주소요건을 둘 수 있으며 연락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조제3항).

동조 제4항은 서면 제출 시 서명 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계약당사자는 다양한 방식의 서명을 허용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서명이란 자필, 인쇄서명, 도장, 바코드 등이 포함된다(시행규칙 제7조제4항).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증, 인증 등의 증명요구는 금지된다. 단, 행정청이 서명의 진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증명자료 요구가 가능하다.¹³⁾ 동조 제5항은 계약당사자가 전자문서 방식의 서류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시행규칙에서는 전자문서 제출 시 서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한다. 전자 제출 후 1개월 이상의 기한을 두어 원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자인증 시스템을 통한 인증 요구도 가능하다.

동조 제6항은 본 조 각 항에서 규정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출원인의 부담을 제한하며 동조 제7항은 계약당사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서류 제출 시 기재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동조 제8항은 본 조가 출원인과 대리인 간의 사적 서류제출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사적 통신 방식은 조약의 규제 대상이 아님을 선언한다.

13. 갱신

조약 제13조는 계약당사국이 디자인 보호에 대해 갱신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그 갱

13) 철회나 포기과 같은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공증 등의 인증 요구가 가능하다.

신 신청 절차 및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규율한다. 이 조항은 갱신 요건의 최소 기준과 제출방식, 기한 및 수수료 납부의 유연성을 규정함으로써, 등록권자의 갱신권 행사에 있어 국가 간 절차 조화 및 과도한 제한 방지를 도모한다.

동조 제1항은 갱신 신청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계약당사국은 등록권자가 디자인 보호를 연장하고자 할 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내용에는 갱신 의사 표시, 등록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주소, 등록번호, 보호기간과 일부 디자인만 갱신할 경우 해당 번호, 제3자에 의한 신청이 허용될 경우 그자의 정보를 의미한다. 이 내용은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갱신 수수료를 행정청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은 갱신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시한을 정할 수 있되, 시행규칙이 정한 최소 기간을 하한선으로 하여야 한다. 즉, 지나치게 짧은 갱신기간을 설정하여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갱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방지한다. 이때의 갱신 가능 기간은 갱신 기한일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하며, 기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후까지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한일 이후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추가 요금을 납부하면 수리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실무상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시행규칙 제9조). 동조 제3항은 갱신 관련 요건은 본 조 및 조약 제12조 명시된 서류제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요건 부과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출원인·권리자 보호와 절차의 간결화를 위한 최소요건 원칙의 구현이다.

14. 기한의 구제

조약 제14조는 디자인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절차에서 행정청이 설정한 기한(지정 기한)을 출원인이 지키지 못했을 때 부여할 수 있는 기한 구제 수단을 규정한 조항이다. 기한 연장과 절차의 계속(복원)은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보호장치이며, 행정절차의 엄격성을 유연하게 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동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가 설정한 기한에 대해 출원인 등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 또는 기한이 만료된 후,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중 택일하여 기한 연장을 인정해야 함을 규정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기한이 이미 지나고, 연장이 불허된 경우에도, 절차의 계속(reinstatement) 또는 권리회복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구제를 위한 신청서 기한 내에 신청 및 제출하고 해당 절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동조 제3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또는

절차의 계속을 필수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한다. 동조 제4항은 기한 연장 또는 절차 계속 신청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허용한다.

동조 제5항은 기한 구제와 관련해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 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요건 원칙이다. 제6항은 기한 연장 또는 절차 계속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는 행정절차상 '적법절차 원칙'을 반영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는 기한 연장 및 절차의 계속을 위한 신청요건, 시기, 예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동규칙 제1항에서는 연장 신청 시 서명, 기재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최소 1개월이며, 기한 만료 후 연장 신청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절차 계속 신청도 명확한 형식 요건과 기한 요건을 필요로 하며, 통지 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동규칙 제3~4항).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갱신 수수료 납부 기한에 관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당사자 간 절차에 관한 경우, 조약 제15조 및 조약 제16조와 관련한 기한에 대하여는 구제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동규칙 제5항).

15.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의 권리회복

조약 제15조는 계약당사국이 조약 제14조의 기한 연장 또는 절차 계속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가 기한을 놓쳐 권리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거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최종적인 구제 수단을 규정한 조항이다. 즉, 본 조는 국제적인 절차보호 원칙에 따라, 최후의 권리구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동조 제1항은 계약당사국이 조약 제14조에 따른 구제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① 시행규칙에 따른 형식 요건을 갖춘 신청 제출하고, ②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하고, 절차상 요건 모두 이행되었으며, ③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신청서에 명시하고, ④주어진 사정 하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지연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에 행정청은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권리를 회복해야 함을 규정한다. 권리회복 신청 및 요건의 이행은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또는 기한 만료일로부터 12개월(갱신 수수료 미납인 경우는 파리협약상 유예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중 빠른 날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에 대해서는 권리회복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명시한다. 권리회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로는 ① 조약 제14조나 조약 제15조 자체에 따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② 행정심판 또는 당사자간 절차에서의 기한을 원일 변경을 위한 선언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 ③ 조약 제16조 관련 기한을 미준수한 경우이다(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동조 제3항은 권리회복 신청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동조 제4항은 신청인이 진술한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술서 또는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동조 제5항은 권리회복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하려는 경우, 반드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먼저 부여해야 함을 명시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다.

참고로 조약 제14조와 조약 제15조 모두 절차기한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상실을 구제하기 위한 조건이나 그 적용조건과 성격, 관계구조는 상이하다. 두 조항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적용 우선순위와 구제 요건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조약 제14조는 국가마다 상이했던 기한 연장 제도를 통일적으로 정리해주는 장치라면, 조약 제15조는 조약 전체에서의 최소보장 장치로서 출원인의 최소한의 권리회복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 4 조약 제14조와 조약 제15조의 개념 비교분석

항목	제14조	제15조
도입여부	계약당사자의 선택	제14조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의무적 도입
적용요건	신청서, 기한 내 제출, 요건 충족	신청서 및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에 관한 증거자료
권리회복 가능성	계약당사자가 제도를 운용하면 요건 충족 시 자동 허용	행정청이 합리적 판단을 통해 회복 여부 결정
절차적 요소	기한 전후연장/ 절차의 계속	실질적 구제, 고의여부 또는 과실 유무 까지 심사
의견 제출 기회	거절 전 의견제출 기회 보장	동일하게 의견 제출 기회 보장

16.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

조약 제16조는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에 실수가 있거나, 우선권 주장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정·추가 또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규정으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우선권을 상실한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절차보장과 실질보호 간의 균형을 반영하고자 한다.

동조 제1항에서는 출원인이 이미 제출한 출원서의 우선권 주장 내용을 정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 형식을 갖추고, ②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였으며, ③ 후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 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이를 허용해야 함을 규정한다. 이는 통상적인 실무상 실수(예: 우선번호 오 기재, 일부 누락 등)에 대한 절차적 수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때 우선일 또는 정정·추가로 변경되는 기한은 우선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단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가능하다. 실체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정정·추가 허용의 의무가 없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2항에서는 출원인이 우선권 기한을 넘겨 출원(후출원)을 한 경우에도, ① 요건을 갖춘 회복 신청서를 제출하고, ② 정해진 회복 기한 내에 제출하며, ③ 지연 사유를 기재하였으며, ④ 이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 또는 지연에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다면 우선권 회복이 가능하도록 행정청이 제도를 두어야 함을 규정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상실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약 제15조와 유사한 요건 체계를 따르고 있다. 우선권 회복의 신청기한은 우선권 만료일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허용되어야 한다(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제3항에서 수수료는 양 신청 모두에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제4항은 지연 사유에 대하여 진술서 또는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함을 규정한다. 거절 예성 시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는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5항).

17.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 신청

조약 제17조는 디자인권에 설정된 실시권 또는 담보권을 행정청에 등록하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다. 계약당사국의 실정법상 실시권(전용·통상·독점) 또는 담보권의 등록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과 절차적 제한을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형식, 수수료, 단일신청 허용 여부, 기재사항의 제한, 그리고 등록 관련 신청의 진실성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

동조 제1항은 실시권 등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 대해, 등록 신청 시 계약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형식 요건과 증명서류의 제출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실시권 등록 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함을 규

정한다.

동조 제3항은 둘 이상의 디자인 등록에 걸친 동일한 실시권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신청서로 등록이 가능함을 허용하는데 이때 요건은 등록권자·실시권자 동일하며 등록에 관한 실시권의 버위를 신청서에 명시하는 것이다.

동조 제4항은 과도한 요건 부과를 금지하며, 특히 ① 등록증 사본의 제출이나, ② 실시계약의 경제적 조건의 기재의 추가 요구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이는 등록 목적에 한하며, 정보공개 목적에 따른 법적 의무는 허용된다. 동조 제5항은 행정청이 신청서 기재사항에 합리적 의심을 가진 경우,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동조 제6항은 출원에 대한 실시권 등록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동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동조 제7항은 담보권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실시권 등록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되, 등록증 제출 금지 조항은 제외됨을 규정한다.¹⁴⁾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 신청에 관한 실무적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등록권자·실시권자·대리인·송달지 정보, 디자인 등록번호 및 실시권 부여 대상, 실시권 종류(전용/통상/독점) 및 범위(지역, 존속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동규칙 제1항), 이때의 증빙서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이다. 공동 등록권자의 경우 명시적 동의서가 필요하며, 법령·판결에 따른 실시권의 경우 해당 결정문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항).

18.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

조약 제18조는 조약 제17조에서 규율한 실시권 또는 담보권의 등록이 완료된 이후, 그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등록을 말소(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사항이다. 이 조항은 기존의 권리 등록 상태를 사후적으로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절차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며, 출원인·등록권자 및 제3자의 권리 명확성과 공시 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동조 제1항은 계약당사국이 실시권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실시권의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시행규칙이 정한 형식 및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때 ‘변경’은 실시권의 범위, 존속기간, 권리자 변경 등을 포함하며, ‘말소’는 실시권의 소멸이나 종료 등으로 인해 등록을 제거하는 것

14) 즉 담보권 등록은 등록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을 의미한다. 동조 제2항은 담보권 등록의 말소 신청에도 동일한 절차 요건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동조 제3항에서는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의 변경·말소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는 조약 제17조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함을 규정한다. 이로써, 신규 등록과 동일한 수준의 간결한 절차 원칙이 변경·말소에도 적용되며, 불필요한 추가 요건의 부과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약 제17조와 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권 또는 담보권의 등록 및 변경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실시권, 담보권 등록 및 변경, 말소 절차 요약

절차의 흐름	신청요건 및 내용	관련 서류	기타 유의사항
1. 실시권 등록	신청서 제출 등록권자/실시권자 정보 실시권 유형, 범위, 존속기간 등 기재 수수료	계약서 사본/발췌본 공동등록권자의 동의서 (필요시) 법령/판결에 따른 경우 결정문 사본	실시권이 여러 등록에 걸쳐 있을 시 단일신청 가능 등록증, 경제조건 기재 요구 금지
2. 실시권 변경	신청서 제출 변경내용 기재 수수료	변경을 입증하는 문서 또는 쌍방 서명된 진술서 공동등록권자 동의서	신규등록과 동일절차 기준 적용 기재항목, 증빙양식의 간결성 보장
3. 실시권 말소	신청서 제출 말소 취지 명시 수수료	말소를 입증하는 문서 또는 쌍방 서명된 진술서	
4. 출원에 대한 실시권 등록	동일절차 및 요건 적용 수수료	위와 동일	아직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출원에도 실시권 등록 가능
5. 담보권 등록	실시권 등록과 동일	등록증 사본 제출 요구 가능	실시권 등록과 동일하되 등록증 제출 허용됨
6. 담보권 말소	실시권 말소와 동일	입증문서 또는 쌍방 진술서	

19. 실시권 미등록의 효과

조약 제19조는 실시권이 행정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등록 유무가 디자인권의 유효성이나 실시권자의 법적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

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다. 즉, 이 조항은 등록이 권리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미등록 실시권도 실질적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동조 제1항은 실시권이 행정청 또는 기타 기관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시권이 부여된 디자인의 등록 자체의 유효성이나 등록에 따른 보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명시한다. 이는 출원인(등록권자) 입장에서 볼 때, 실시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디자인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조 제2항은 계약당사국이 ①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등록권자가 제기한 절차에 참여할 권리 또는 ②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하거나 받을 권리와 같은 실시권자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등록을 전제 요건으로 삼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 즉, 실시권자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없어야 하며, 절차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조항은 사법절차상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행정절차상의 형식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결국 조약 제19조는 등록주의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 권리 보호 원칙을 명확히 선언한 조항으로서 실시권자의 법적 권리는 등록과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며, 행정절차의 형식을 이유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해서는 안됨을 천명한다.

20. 실시권의 표시

조약 제20조는 계약당사국이 산업디자인이 실시권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표시(marking)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충족한 경우라도,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이나 보호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즉, 이는 실시권자가 등록디자인을 사용하는 데 있어 표시의무 누락이 권리 자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는 ‘실체보호 우선’ 원칙을 담고 있다.

조약 제20조는 어떤 계약당사국의 국내법이 산업디자인의 실시권자에게 ‘이 디자인은 실시권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이라는 표시를 요구하더라도, 실시권자 또는 사용자 측에서 그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표시한 경우, 등록 디자인의 유효성이나 법적 보호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다. 예컨대 일부 국가에서 특허 또는 등록디자인 사용 시 실시권자 표시 또는 등록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항을 통하여 DLT 체제하에서 이러한 표시의무가 권리 존속이나 보호범위 자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적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1. 명의변경 등록 신청

조약 제21조는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출원에 관한 명의가 변경된 경우,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가 행정청에 명의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그에 따른 신청서 요건, 증빙서류, 수수료, 단일 신청 허용 여부, 기타 제한 요건 등을 규정한다. 특히, 출원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출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절차(시행규칙 제8조)를 명시하여, 출원 초기 단계에서도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무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동조 제1항은 디자인의 등록권자 변경이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명의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때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는 기재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목으로 제한한다.

동조 제2항은 명의변경의 원인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계약에 따른 경우에는 신청서의 선택에 따라 계약서 사본, 부분 발췌본이나 양도 증명서 등을, ② 합병에 따른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공증인이 인증한 합병증명 서류, ③ 공동권리자 일부 변경 시에는 공동등록권자가 서명한 문서를 통해 등록권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④ 그 밖의 법원 판결 등의 기타 사유에 있어서는 해당 결정문 사본 (공증 또는 발행기관 인증 포함)을 요구한다. 동조 제3항은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동조 제4항은 동일 권리자 간 명의변경이 둘 이상의 등록에 걸쳐 있는 경우, 단일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조 제5항은 출원 단계에서도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출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출원을 특정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출원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시출원번호나 출원서 사본, 시각적표현과 제출일, 식별번호 등을 조합하여 출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조 제6항은 명의변경 등록에 관해 과도한 요건 부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제7항은 행정청이 신청서 기재에 대해 진위 여부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약 제21조는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명의변경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출원인과 양수인 모두의 절차적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조약 제22조는 디자인권자·출원인·대리인 또는 송달지 주소의 명의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다. 이 조항은 출원 또는 등록 과정에서의 신분·연락 정보의 갱신을 행정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권 이전과 구별되는 단순 정보변경 절차에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조 제1항은 디자인 등록권자의 소유는 동일하지만, 성명이나 주소만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번호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청에 변경등록 신청이 가능함을 보장한다. 신청서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목을 일부 또는 전부 포함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동일인 소유의 복수 등록에 대해서는 단일 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동조 제2항에서는 출원인의 성명·주소 변경도 동일 절차를 준용하며, 출원번호가 아직 없는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8조의 방식에 따라 출원을 특정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함을 규정한다. 동조 제3항은 대리인의 정보(성명·주소) 또는 송달지 주소의 변경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동조 제4항은 이 조항 외의 추가 요건은 금지되며, 특히 변경사실에 관한 증명서 제출은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다만 행정청이 신청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허용한다(동조 제5항).

23. 오류의 정정

조약 제23조는 디자인 출원·등록 또는 관련 신청 절차에서 발생한 행정적·형식적 오류에 대해 정정 신청을 허용하는 절차 규정이며 이때 정정 가능한 오류는 실체심사나 디자인 보호요건(신규성, 창작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적 범위 내 오류로 한정된다. 이 조문은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가 정정권을 갖는 경우와, 행정청 자체의 오류로 인한 경우, 그리고 다수 건에 대한 단일 신청 허용 여부, 증거 요건, 기타 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행정청이 오류 정정 신청을 수리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한다. 오류는 실체심사와 무관해야 하며, 해당 계약당사국의 법령상 정정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신청은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서명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동조 제1항제1호). 신청서에 정정된 내용 또는 대체 표현을 첨부할 수 있으며, 복수 건의 정정일 경우 각각에 대해 첨부할 수 있도록 계약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동조 제1항제2호).

제출서류에서 오류가 선의(good faith)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동조 제1항제3호), 오류를 발견한 후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였음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1항제4호).

동조 제2항은 수수료 규정으로, 일반적인 오류 정정 신청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단 행정청에 의해 발생한 오류에 대하여는 수수료 없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정정해야 함을 규정한다.

동조 제3항은 복수의 신청 건에 대한 처리를 규정한다. 둘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신청에 대하여, 각 등록별 권리자가 동일하고, 모든 등록번호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단일 신청으로 충분하다. 해당 규정은 제21조의 명의변경 등록신청의 단일신청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동조 제4항에서 오류 여부의 진실성이나 첨부된 서류의 진실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만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형식요건 부과를 제한한다. 이어 동조 제5항에서는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신청에 관한 요건 이외에 그 밖의 형식요건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동조 제6항에서는 오류 정정의 예외사유로서 재등록 절차를 통해서만 정정 가능한 오류는 본 조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4.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조약 제24조는 개발도상국 및 수혜국의 조약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제도 개선 지원의 원칙과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WIPO 등 국제기구가 체약당사국의 제도 정비, 행정능력 제고, 정보시스템 접근성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동조 제1항은 기술지원이 개발지향적이고 수요 중심적이며 투명하고 목표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수혜국이 조약 이행을 통해 출원인과 사용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동조 제2항은 기술지원의 구체 범위로서, 법제도 정비, 행정관행 개선, 인력 훈련, 정보기술 기반 지원,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WIPO가 예산 지원 또는 국제 재정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담하

도록 규정한다.

동조 제3항에서는 디지털 디자인 라이브러리(Digital Library) 등 기존 국제 플랫폼에 대한 계약당사국의 참여 장려 및 정보공개 권장을 포함하고, 출원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도 도입 가능함을 명시한다. 이러한 조항은 헤이그 협정, PCT, 마드리드 시스템 등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하며, 기구 중심의 국제 행정 지원 구조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한다.

25. 시행규칙

조약 제25조는 DLT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의 법적 지위, 내용 구성, 개정 절차, 조약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다른 조약과 마찬가지로, 조약 본문을 구체화하고 실무화하는 규범 장치로 기능한다.

동조 제1항은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서, 조약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이행을 위한 실무적 세부사항, 행정요건 및 절차를 포함하며, 국제표준양식의 공표 절차도 시행규칙에서 다루도록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시행규칙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 동의 요건을 명시하며, 동조 제3항은 특정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핵심적 조항의 안정성 확보와 계약당사국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이다. 만장일치는 해당 시행규칙 조항에 “이 조항은 만장일치로만 개정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발생하며,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때도 만장일치를 요한다. 시행규칙 제18조는 실제로 만장일치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동조 제4항은 조약 본문과 시행규칙이 충돌할 경우, 조약 본문이 우선 적용됨을 분명히 하여, 조약의 위계질서를 명확히 한다. 이 구조는 국제조약 일반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식이며, DLT의 유연한 운용과 체계적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6. 총회

조약 제26조는 조약 운영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Assembly)의 구성, 역할, 절차, 의사결정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 이행과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틀을 제공하는 조항으로, DLT의 실질적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직 조

항이라 할 수 있다.

총회는 모든 계약당사국으로 구성되며, 각 당사국은 1인의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고, 보좌 인력을 동반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각국의 책임이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도국, 시장경제로의 전환국에 대해서는 WIPO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포용적 운영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총회의 기능은 다양하다. 조약 자체의 발전 방향 설정, 국제표준양식의 제정, 시행 규칙 개정, 기술지원 및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조약 규정 이행을 위한 기타 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술지원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촉진 기능은 제24조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출석 요건과 유예 투표제도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인 계약당사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되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3 이상이 출석하면 가결 가능성을 열어두며, 미출석국의 사후 투표 참여를 통해 결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국제회의에서 종종 채택되는 소극적 의사표시 기반 의결 메커니즘이다.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consensus)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능할 경우 표결에 의한 결정으로 전환된다. 이때 국가인 계약당사국은 1표씩의 투표권을 가지며, 정부간기구 중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 복수참여 제한을 받는다. 의결은 대체로 3분의 2 찬성을 요하며,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된 일부 항목은 별도로 제25조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4분의 3 또는 만장일치)을 따른다.

총회는 WIPO 총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기·장소에서 개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 규칙은 총회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DLT 체제 내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가 가지는 위상을 명확히 하고, 개별 조약의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17조는 제26조의 위임사항에 따라, 총회가 정한 국제표준양식을 국제사무국이 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보장하고 있다.

27. 국제사무국

조약 제27조는 국제사무국(WIPO Secretariat)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의 운영과 집행에서 중심적인 실무 기관으로, 총회와 그 산하 조직의 지원은 물론, 조약과 관련된 전체 행정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국제사무국은 조약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여기에는 조약의 운영을 위한 문서

화, 기록 관리, 계약당사자들과의 공식적인 소통, 회의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총회와 그 산하의 전문가위원회, 실무반의 회의 준비 및 사무국 업무는 국제사무국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각종 회의체의 의제 수립, 문서 배포, 회의 진행 보조, 사무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총회 회기 외의 활동에서도 국제사무국의 역할은 계속되며,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설치한 위원회나 실무반의 회의를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WIPO 사무국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은 총회 및 관련 회의에서 투표권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당연직 서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사결정의 기술적·사무적 지원을 제공한다. 즉, 조약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행정적 실행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제사무국은 조약 개정과 관련된 회의의 준비를 총회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며, 이를 위해 WIPO 회원국, 정부간기구(IGOs), 국제 및 국내 비정부기구(NGOs)와의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조약 개정이 국제사회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문은 국제사무국이 이 조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부여된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조약의 발전 및 운영과 관련된 유연한 기능 확장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제27조는 총회의 사무지원, 회의체 운영, 개정 회의 준비 및 국제 협력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무국이 디자인법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임을 선언하는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28. 개정

조약 제28조는 조약 개정의 절차와 권한 주체를 명확히 제한하는 조항으로, 조약 자체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를 통해야 하며, 그 소집 여부는 총회가 결정함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국제적 합의를 중시하는 중요한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조약의 개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루어진다 ① 당사국 회의에서의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조약은 당사국 회의에서 일정 의결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이 가능하다. ② 외교회의를 통한 개정으로 개정의 중대성이나 조약 체계상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 새로운 국제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조약문을 재확정한다. ③ 이중 절차를 두는 경우로서, 일부 조약은 단순사항은 당사국 회의에서,

핵심사항은 외교회의를 통해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조약은 이 중 가장 엄격한 형식인 ‘외교회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조약의 본질적 규범 변경은 신중하고 전원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국제조약법의 원칙과 궤를 같이한다. 조약 제28조는 오직 ‘외교회의’만을 개정의 수단으로 인정함으로써, 단순한 총회나 실행기구의 다수결에 의해 조약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조약의 조문 하나하나가 다자적 신중한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외교회의의 소집은 자동이 아니라 총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즉, 총회가 실질적으로 개정 절차 개시 여부를 통제하는 구조로, 이 조항은 조약 제26조(총회)와 긴밀히 연결된다 할 것이다.

이처럼 조약 개정에 대한 고도의 절차적 제약을 둠으로써, 조약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빈번한 개정이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남용을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조약 제28조는 단 한 문장으로 조약 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합의는 조약 전체 체계의 고정성과 권위에 대한 국제적 보증을 부여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29.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절차

조약 제29조는 조약의 체약당사국이 되기 위한 자격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실질적으로는 조약 가입의 대상을 분류하고, 비준 또는 가입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조항은 국제조약의 발효 및 참여 요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체계를 따르면서도, 산업디자인 제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조약의 적용 주체를 국가 단위뿐 아니라 정부간기구, 공동 행정청 체제까지 포괄한다.

① 자국 행정청을 통해 산업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WIPO 회원국, ② 산업디자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간기구¹⁵⁾, ③ 자국에서의 디자인 등록이 특정 외국 행정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 ¹⁶⁾ ④ 정부간기구가 유지하는 행정청을 통한 등록만 가능한 국가 및 ⑤ 디자인 등록이 회원국 집단의 공동 행정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의 해당 국가는 DLT에 서명하거나 체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동조 제1항). 이와 같이 국가 단일 행정청 외에도 다양한 등록 체계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디자인 등록제도의 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포괄하고자 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명한 국가는 비준서, 서명하지 않은 국가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

15) 단, 구성원국은 모두 WIPO 회원국이어야 한다.

16) 예컨대 종속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행정기관 위임한 경우가 존재한다.

무국에 기탁함으로써 계약당사국이 될 수 있다. 이는 국제조약상 일반적인 절차이며, 해당 문서의 기탁으로 조약 참여 의사가 공식화된다(동조 제2항).

조약의 효력 발생은 단순히 기탁일이 아니라, 국가 유형별로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일반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는 기탁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등록권한이 다른 국가나 기구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나 기구의 문서도 함께 기탁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공동 등록 시스템의 경우에는 모든 관련 국가의 문서 기탁이 있어야 효력 발생이 발생한다. 이러한 요건은 조약의 실질적 발효에 있어 제도 간 일관성 확보와 행정적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항은 조약의 범용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구조로서, 산업디자인 제도의 제도 간 조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다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간기구의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지역통합 특허/디자인청을 운영하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대해 조약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0. 발효 및 비준, 가입의 효력 발생일

조약 제30조는 DLT의 발효 요건과 이후 계약당사국의 지위 취득 시점을 규정한 조항으로, 국제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한 최소 요건과 그 이후 비준 또는 가입의 법적 효력 발생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발효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문서는 조약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가 제출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 중, 실제로 조약 제29조제3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문서만을 포함한다. 예컨대, 단순한 문서 제출만으로는 발효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조약 제29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1항).

조약은 정부간기구 또는 국가 중 15개 주체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발효된다. 이는 비교적 높은 기준으로,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국제적 참여자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3개월 유예 기간은 각국 행정 시스템이 실제 적용을 준비할 수 있는 완충 장치로 기능한다(동조 제2항). 조약 발효 이후에 새롭게 참여하는 국가의 경우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조약의 구속을 받는다. 이는 국제법상 일반적인 시차 규정으로, 조약상의 권리·의무가 발효일 이전에 소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조약 참여국에 대해 행정적 준비기간을 허용하는 역할도 한다(동조 제3항).

결론적으로 조약 제30조는 디자인법조약의 국제적 발효 기준과 개별 국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여, 전체 조약 체계의 안정성과 참여국 간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는 조약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집행 기반을 마련하며, 국제조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델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31. 유보

‘유보(Reservation)’란 국제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가입하는 국가가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구속력을 자국에 대해 배제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이는 조약 전체를 거부하지 않고도, 자국의 입법 상황이나 정책 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만 적용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국제법상의 기제이다.

유보는 조약 참여의 문턱을 낮추어 다양한 국가가 조약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조약 체계 내에서 특정 국가의 규범적 예외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¹⁷⁾

조약 제31조제1항은 조약 제5조제2항제2호에 대한 유보를 규정한다. 외국 출원인의 직접 출원 허용 의무로서, 조약상 원칙은 외국 출원인도 자국 내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나, 이 유보 조항은 ‘출원일 확보’를 위한 직접 출원을 자국법상 허용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는 가입 당시 자국법이 해당 출원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선언이 가능하다.

동조 제2항은 조약 제7조, 조약 제10조제1항, 조약 제16조제2항, 조약 제19조제2항에 대한 유보를 규정하는데, 이들은 행정절차와 제도 운영에 관한 조항들이다. 공지 예외기간, 등록디자인의 비공개 유지기간, 우선권 회복에 대한 절차 및 실시권자가 등록 없이도 침해 소송 참여가 가능한 조항에 대하여는 자국법이 해당 제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체약국은 조약에서 정한 내용에 자신이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이는 실체적 권리보장 범위나 행정 구현 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동조 제1항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적용 자체를 유보할 수 있다.

17)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약의 핵심조항 또는 목적·취지와 양립 불가능한 유보는 금지되며, 국제법에서도 유보는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조약의 목적·목표와 양립 가능해야만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표 6 DLT 유보조항의 구분(제31조 제1항의 유보와 제2항의 유보)

구분	제1항 유보	제2항 유보
대상조항	제5조 제2항 제2호 (외국인의 직접 출원)	제7조, 제10조(비공개), 제16조(우선권 회복), 제19조(실시권 침해소송 참여)
성격	출원 접수의 방식 자체를 제한	등록·공개·우선권 회복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요건의 배제
법적 영향	외국인이 직접 출원 불가 (출원 자체 제한)	일부 제도 적용에서 예외 허용 (기능적 제한)
조약의 통제성	국가별 실무 여건을 반영한 예외적 관문 허용	내용적 다양성에 대한 유보 가능성 확보

유보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첨부되는 방식으로만 인정되며 별도 통지나 사후 선언은 인정되지 않는다(동조 제3항). 동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의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며, 이는 조약 이행 역량 향상 이후 유보를 철회하고 완전한 조약 당사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동조 제4항).

조약 제31조 제1항 또는 제2항 외의 다른 유보는 절대 불가한데, 즉 조약의 나머지 조항은 모두 구속력 있는 의무로 수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동조 제5항).

조약의 유보조항은 국제적 제도조화와 실질적 수용 가능성의 균형을 꾀한 구조로서, 특히 행정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나 대외개방에 민감한 국가가 단계적 이행을 전제로 조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제이다. 다만, 유보의 범위는 엄격히 한정되어 있고,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도록 하여 조약의 완전한 이행으로의 유도가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32. 조약의 탈퇴

조약 제32조는 조약 당사국의 탈퇴 절차와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한다. 이 조항은 국제조약의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조약 질서에서 탈퇴를 허용함으로써 주권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존 등록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체약당사국은 WIPO 사무총장에게 탈퇴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방적 의사표시로 충분하다(동조 제1항). 탈퇴 통보는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1년 유예기간은 당사자들이 관련 절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

고, 급작스러운 법적 공백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동조 제2항).

탈퇴일 전까지 이미 제출되었거나 등록된 산업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약의 효력이 유지되며 다만, 탈퇴국은 등록의 갱신 시점 이후부터는 그 등록에 대해 조약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동조 제3항). 예를 들어, 조약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이 5년의 보호기간을 받고 있고, 갱신이 필요한 시점이 탈퇴 효력 발생일 이후인 경우, 탈퇴국은 해당 갱신을 조약상 절차가 아닌 자국법에 따른 방식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국가의 조약 체제 탈퇴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이미 권리를 확보한 출원인·등록권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DLT는 타 조약과 유사하게 기탁기관에 대한 통보 중심, 1년 유예기간, 경과 규정 마련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조약 운영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33. 조약의 언어 및 서명

조약 제33조는 조약의 공식 언어와 서명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국제조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적·행정적 조항이다. 이 조문은 조약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다국어 환경에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조약의 공식 원문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6개 언어로 작성되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동조 제1항). 또한 원문 언어 이외에도 각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된 공식본(official text)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경우 공식본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이해당사국과 협의한 후, WIPO 사무총장이 작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조약에 가입할 경우 한국어 공식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한국어본은 사무총장이 작성한 후 공인본으로 간주된다. 단, 한국어 공식본은 동등한 정본은 아니며, 원문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 등 정본 언어가 우선된다(동조 제2항).

34. 기탁처

기탁처에 관한 규정은, 국제조약의 형식적·행정적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of WIPO)이 이 조약의 기탁처(depositary)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탁처는 국제조약의 체결, 비준, 가입, 유보, 철회 등의 관련 문서를 접수·보관하

고, 관련국들에게 공식 통보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는 조약을 관리하는 국제 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맡게된다. 기탁처는 조약 문서의 원본 보관. 비준서·가입서·유보문서 등의 수령, 조약의 발효일 계산, 당사국들에게 절차상의 공식 통지 제공 및 유보, 철회, 탈퇴 등 국가의 조치에 대한 공표의 역할을 한다.

DLT는 WIPO가 주도한 조약으로, WIPO 사무총장이 기탁처로 지정된 것은 자연스러운 구조이다. 따라서, 이 조약과 관련된 모든 비준, 가입, 유보, 철회 문서는 WIPO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WIPO 사무총장 명의로 각 체약당사국에 공식 통지된다.

Ⅲ. 디자인법조약과 「디자인보호법」 간의 정합성과 가입을 위한 고려사항

DLT는 산업디자인의 등록 절차에 관한 국가 간 조화를 도모하고,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서 본 조약은 절차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히 복수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려는 이용자에게 예측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DLT에 가입할 것을 염두하는 경우, 국내 「디자인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과의 체계적인 비교·검토를 통해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로 부각된다.

조약 가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조문 단위의 번역이나 해석을 넘어, 각 조항이 국내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혹은 기존 제도와 충돌되는 지점을 포함하여 법적·제도적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조약과 국내법의 비교를 수행할 경우, 조약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오도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입법 부담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추정할 위험이 존재한다. 예컨대, 국내법에 유사한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조약이 요구하는 절차적 보장과 실질적 효과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조약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합성 분석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약 각 조항의 법적 성격과 강제력을 고려하여 정합성 판단을 위한 세분화된 분류지표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제 운용과 국제적 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진단하고, 조약 가입의 경로와 정책적 선택지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으로서 조약과 우리법간의 정합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첫째, ‘일치’ 하는 경우이다. 이는 조약상 규정과 국내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거나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제도적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조약 이행이 가능하다.

둘째, ‘규정 마련 필요’의 경우이다. 조약이 특정 사항을 반드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국내법에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정이 없으나 추가입법을 요구하지 않음’의 경우이다. 이는 조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의무가 아니며, 계약당사국의 입법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갖는 경우이다. 즉, 조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내법에 해당 규정이 부존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넷째, ‘불일치(미흡)’의 경우이다. 국내법에 조약이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만, 조약의 요구와 비교했을 때 절차나 실체적인 요건 면에서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조약 이행을 위한 최소 기준에는 미달하여 일정 수준의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섯째, ‘불일치(과잉)’의 경우이다. 이는 국내법이 조약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절차를 두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출원인 등 권리 주체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거나 조약상 합의된 최소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약의 최소요건을 넘어서는 규정을 완화·정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불일치(유보)’의 경우이다. 특정 조항에서 유보를 허용하는 경우, 국내법과 조약 규정 간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계약당사국은 유보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약의 완전한 가입을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다른 측면으로 유보를 통해 조약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개정 없이도 조약 이행이 가능하다.

표 7 조약과 법간의 정합성 검토 지표

기준	사유
일치 ❶	조약상 규정과 국내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 또는 효과를 갖고 있어, 제도적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조약 이행이 가능한 경우
규정마련 필요 ❷	조약상 해당 조항은 필수 규정으로 간주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조약 이행에 실질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국내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제 정비가 필요한 경우
규정없음 (규정마련 불요)❸	조약상 의무 규정이 아니며, 계약당사자의 입법 재량에 따라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국내법상 규정이 없어도 이는 조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 (미흡) ❹	국내법에 해당 주제를 다루는 규정은 존재하나, 조약상 요구되는 요건이나 절차와 비교했을 때 내용적 차이 또는 제한적 범위 등으로 인해 실질적 불일치가 있어, 조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법적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불일치 (과잉) ❺	국내법이 조약에서 요구하는 범위 이상으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고 있어, 출원인의 권리 행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약 준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규제 간소화가 검토한 사안의 경우
불일치 (유보) ❻	조약에서 유보를 허용한 조항에 대해 국내법이 불일치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조약 가입 시 유보를 통해 예외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 분류상 ❷ 또는 ❹,❺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궁극적으로는 개정이 필요할 것이나 빠른 가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 없이도 조약 이행이 가능한 경우

본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DLT 중 절차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국내 「디자인보호법」 조문과 비교·검토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하여 조약상 각 절차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국내 현행 법령 및 규칙 조문과의 대응관계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그 정합성 여부 및 잠재적 불일치 사항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표 8 DLT 중 절차요건에 관한 사항과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문

조문	주요내용	유보 가능 여부	우리법 대응조문	정합성 검토	사유
제4조 출원	출원서 요건, 시각적 표현, 출원인 정보 등 필수 제출 항목 규정		법 제37조, 제41조, 제85조 규칙 제5조	①	
제5조 대리인/주소	대리인 및 주소 요건 규정	제5조 제2항제2호	법제 6조, 제7조, 제8조	④ ⑥	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수행 가 능
제6조 출원일	출원일 인정 요건과 직접출원 요건에 대한 예외적 유보 허용		법 제38조	④ ⑥	
제7조 공지에외	공지에외(Grace Period) 규정, 공개 후 일정 기간 내 출원 허용	제7조	법 제36조	④ ⑥	객체적 요건 불일치, 시기적 요 건 불일치
제8조 창작자 명의 출원	출원인을 창작자로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 는 조건 규정		해당없음	③	
제9조 복수디자인의 보정, 분할	복수디자인 출원 불수리 시 보정 또는 분할 규정		법 제50조 징칙 제4조	①	
제10조 공고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산업디자인을 일정 기 간 비공개 가능	제10조 제1항	법 제43조, 제46조, 제56조 영 제10조, 규칙 제39조	④	
제11조 전자시스템	전자출원 시스템 구축 노력 및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권고		법 제30조	①	
제12조 서류제출	서류 제출 방식, 언어, 서명, 연락처 등의 실 무 요건		법 제28조, 제30조 규칙 제3조, 제6조, 제13조	④	
제13조 갱신	등록 연장의 절차 및 요건		법 제82조, 83조, 84조	①	
제14조 기한의 구제	출원 기한 미준수 시 구제 수단 제공, 기한 연장 또는 절차 계속 허용		법 제18조, 제19조, 제63조	④	기한 만료 후 연장신청이나 절차 계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제15조 권리회복	기한 준수 실패에 따른 권리 회복 요건 및 증빙요건 규정		법 제18조, 제84조 징칙 4조	④	권리회복의 요건이 조약과 상이 함

조문	주요내용	유보 가능 여부	우리법 대응조문	정합성 검토	사유
제16조 우선권 정정/회복	우선권 정정·추가 및 우선권 기한 도과 시 회복 조건	제16조 제2항	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④ ⑥	대상 요건 불일치, 출원 시 우 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정 정/회복 곤란(유보가능)
제17조 실시권 등록	실시권 등록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단일 신청 요건		법제98조 등록령 제37조, 제38조	⑤	기타요건 금지 위배(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 기재 관련)
제18조 실시권 변경/말소	실시권·담보권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 절차		법 제98조 등록령 제37조, 제38조, 제40조	①	
제19조 실시권 미등록의 효과	실시권 등록이 없더라도 권리 유효성이나 보 호에 영향 없음	제19조 제2항	법 제98조, 제104조 2 항	①	등록하지 않은 통상실시권자가 디자 인권 침해소송에서 독립 원고로 참 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확인 필요 (해석을 통합 정합성 확인)
제20조 실시권의 표시	실시권 표시 의무 불이행 시에도 권리 유효 성에는 영향 없음		제214조	①	
제21조 명의변경 등록	양도 등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 신청 절차 및 서류 요건		등록령 제22조	①	
제22조 성명/주소 변경	출원인·등록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등 록 절차		등록령 제34조	①	
제23조 오류의 정정	비심사 오류 정정 절차와 요건, 선의의 진술 및 증거 가능		법 제89조	④	주체적, 시기적 요건 상이 정정발급 시 등록디자인 공보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진행한 조약과 국내 「디자인보호법」 간의 정합성 분석을 바탕으로, DLT 가입을 위한 법령 정비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법개정이 필요한 불일치 사안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들은 현재 명백하게 조약과 상충되거나,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조약상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조약가입을 위한 선결적 요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1단계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조약 제10조(공고), 제14조(기한의 규제), 조약 제15조(권리회복), 조약 제16조(우선권 보정·추가·회복) 관련이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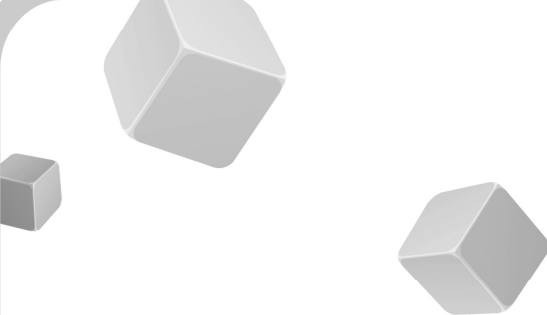
둘째로 조약과 국내법이 완전히 상충되지는 않으나 조약의 규범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법령상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무적 운용으로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항은 실무 운용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조약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국제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명문화하거나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 조항은 조약 가입 전후로 개정을 모색하되,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사법·행정운용에서의 유연한 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해당한다. 2단계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로는 및 조약 제12조(서류제출), 제17조(실시권 등록), 조약 제19조(실시권 미등록의 효과) 및 조약 제23조(오류의 정정) 관련이다.

세번째는 DLT 제31조에서 유보를 허용하고 있으며, 당장의 법개정보다는 유보를 선택하는 것이 국내환경에 적절할 수 있는 안들이다. 유보는 계약당사국이 조약 가입 시점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이다. 해당 사항들은 조약에 즉시 부합하지 않는 국내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유보를 통해 가입 자체는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조항에 대해서는 단기적 개정보다는 장기적 제도 정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보를 선언한 이후, 국내 제도 및 실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다. 3단계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로는 조약 제5조(강제대리 관련), 제6조(출원일) 및 조약 제7조(공지예외) 관련이다.

이와 같은 분류는 조약 가입을 위한 법제 정비에 있어 전면 개정보다는 유연하고

18) 다만, 디자인법조약 제16조(우선권 보정·추가·회복)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유예조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조약 가입을 위해 즉각적인 법개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며, 조약 가입 시 유예조항을 활용하는 방식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절차 전반의 정합성 확보 및 출원인 편의 증진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다른 절차 규정과 연동하여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 개정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전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정책입안자 및 법제 담당자에게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협약 수용 시 요구되는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법체계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제3장 디자인법조약 반영을 위한 쟁점 연구



제3장 디자인법조약 반영을 위한 쟁점 연구

DLT는 PLT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이 아닌 출원, 절차, 갱신 등 형식적·절차적 사항의 국제적 통일을 추구하는 조약이다. 두 조약은 여러 조문에서 절차의 유연성, 출원인의 권리회복, 전자적 문서 제출 등의 측면에서 상호 유사한 구조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다음의 분석을 통해, DLT의 국내 이행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DLT와 PLT는 절차규정 측면에서 상당한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 DLT는 PLT의 규범구조를 준용하거나 유사한 취지를 수용한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PLT에 이미 가입한 국가라면, DLT 이행을 위한 법제도 역시 일정 부분 정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PLT 가입국의 입법례는 DLT 대응 수준의 법적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5년 12월 기준, WIPO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PLT를 비준/시행(in force) 중인 국가는 총 43개국이다.

표 9 PLT 가입국가 (국가/시행일자)

(1) 알바니아(2010.5.7.), (2) 안티카바부다(2019.6.25.), (3) 아르메니아(2013.9.17.). (4) 호주(2009.3.16.), (5) 바레인(2005.12.15.), (6) 벨라루스(2016.10.21.), (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012.5.9.), (8) 캐나다(2019.10.30.), (9) 크로아티아(2005.4.28.),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18.8.22.), (11) 덴마크(2005.4.28.), (12) 에스토니아(2005.4.28.), (13) 핀란드(2006.3.6.), (14) 프랑스(2010.1.5.), (15) 헝가리(2008.3.12.), (16) 아일랜드(2012.5.27.), **(17) 일본(2016.6.11.)**, (18) 카자흐스탄(2011.10.19.), (19) 키르기스스탄(2005.4.28.), (20) 라트비아(2010.6.12.), (21) 라이베리아(2017.1.4.). (22) 리히텐슈타인(2009.12.18.), (23) 리투아니아(2012.2.3.), (24) 몬테네그로(2012.3.9.), (25) 네덜란드(2010.12.27.), (26) 나이지리아(2005.4.28.), (27) 북마케도니아(2010.4.22.), (28) 오만(2007.10.16.), (29) 몰도바공화국(2005.4.28.), (30) 루마니아(2005.4.28.), (31) 러시아연방(2009.8.12.), (32) 사우디아라비아(2013.8.3.), (33) 세르비아(2010.8.20.), (34) 슬로바키아(2005.4.28.), (35) 슬로베니아(2005. 4.28.), (36) 스페인(2013.11.6.), (37) 스웨덴(2007.12.27.), (38) 스위스(2008.7.1.), (39) 투르크메니스탄(2021.7.19.), (40) 우크라이나(2005.4.28.), (41) 영국(2006.3.22.), **(42) 미국(2013.12.18.)**, (43) 우즈베키스탄(2006.7.19.)

PLT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참고가 될 수 있는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PLT 가입국이며, 특허와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미국은 2013년 PLT를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특허 제도 전반에 걸쳐 절차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이미 완료한 바 있다. 또한 미국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를 일반 특허법(U.S. Code Title 35, 이하 ‘35 USC’ 또는 ‘미국 특허법’이라 한다)에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디자인과 특허의 대부분의 절차가 동일한 규정 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DLT의 의무 수준을 사실상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두번째로, 일본 역시 PLT 가입국이며, 의장법(意匠法)¹⁹⁾과 특허법과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DLT 조약의 선제적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일본은 2016년 PLT를 비준하였고, 일본의 의장법 내 많은 조항들이 특허법 조항을 준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절차연장, 기한도과 후 구제, 전자출원 관련 규정 등은 특허법의 구조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DLT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적 유연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다고 파악해볼 수 있다.

유럽권의 경우 유럽연합(EU) 또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차원이 아닌 개별 국가들만 PLT를 비준하고 있으며, IP5 중 하나인 중국은 PLT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EU의 경우, 비교적 최근 디자인 관련 규정(Regulation)을 개정한 바 있으며,²⁰⁾ 이에 따라 유럽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²¹⁾ 차원에서도 디자인에 관한 개선된 심사지침 등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DLT를 반영하는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을 도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검토를 통해 법 개정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DLT의 쟁점 조문을 분석하여 국내법과 불합치 또는 해석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DLT의 해당 조문이 요구하는 법적 효과 및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파악한 뒤, 현재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의 상호 정합성 여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표현 비교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출원인의 절

19)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원문 그대로 의장법으로 표기한다.

20) Regulation (EU) 2024/282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n Community designs and repealing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46/2002 (Text with EEA relevance)(2024.11.18.)

21) EUIPO는 EU조약 및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EU 공식 기관으로서, EU 전체에서 단일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EU 상표(EU Trademark, EUTM) 및 등록공동체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2025. 기준 EU 디자인)의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차 보장과 권리 향유에 있어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조약의 요구사항 중 「디자인보호법」에서 미비·과도하거나 해석상 모호함이 있는 경우 조약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도록 한다.

둘째,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대응방향을 도출한다. 「디자인보호법」내에서 문제가 되는 영역에 대응하여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법적 틀을 통해 개정 아이디어 및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① DLT와 유사한 형식의 절차조약인 PLT 및 STLT와의 규범 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조약에서의 대응 방식과 시사점을 추출한다. ② 주요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디자인과 관련한 실제 절차규정 및 구제 수단을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미국의 특허법(35USC)와 특허심사규칙(37CFR) 및 일본 특허법, 의장법을 통해 DLT 제도와 유사한 구제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최근 법개정이 이루어진 EU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한다. ③ 한국은 STLT에 가입하면서 상표법의 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PLT에는 가입 전이나 PLT에 상응하는 입법적 개선을 지속해오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내에서 절차적 유연성 및 출원인의 편의가 증대되어왔다. 따라서 특허법, 상표법을 아울러 검토하면서 산업재산권 법제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디자인보호법」을 정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모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다음과 같은 복수의 입법 가능성을 설정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① DLT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법률상 신규 조항 신설 또는 기존 조항 개정을 통해 조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법률 개정안). ②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수준에서 조문 신설·보완을 통해 조약상 요구되는 절차를 수용하는 방안이 있다(하위법령 개정안). ③ 법 개정 없이, 심사기준, 실무운영지침, 내부처리지침 등을 통해 사실상 조약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심사지침 개정안).

이 장에서는 각 방법론의 특징과 검토 요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최종 개정안은 제도 전반의 연계성과 체계를 고려하여 별도의 장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표 10 비교법적 검토를 위한 기준법령 및 하위규칙 목록

국가	기준법령
대한민국	•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1065 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 11. 28.)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74호, 시행 2025. 11. 28.)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061호, 시행 2025. 11. 28.) • 디자인 심사기준(2025. 11. 28.) • 특허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2025. 11. 11.) • 상표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2025. 11. 11.)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54호, 2025. 10. 1., 시행 2025. 10. 1)
미국	• 미국 특허법(35 U.S.C) • 미국연방규정집 제37편(37 CFR) • 미국 특허심사절차편람(MPEP)
일본	• 의장법(意匠法) (2025. 6. 1. 시행) • 특허법(特許法) (2025. 6. 1. 시행)
EU	• Regulation (EC) No 6/2002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22) (2025.5.1.)

I. 기한의 구제와 권리회복

표 11 조약 제14조(기한의 구제), 규칙 제10조 (기한의 구제에 관한 세부사항)

조약 본문	시행규칙
① (기한연장) 체약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한 절차에서의 행위를 위하여 행정청이 정한 기한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중 체약당사자가 선택한 시기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연장 신청이 제출된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만큼의 기한 연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 나. 해당 기한이 만료된 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	① (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요건) 1. 체약당사자는 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 나. 기한 연장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해당 기한의 명시 2. 기한 만료 후에 기한 연장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체약당사자는 해당 기한이 적용되는 절차상의 모든 요건이 신청서와 함께 충족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약 제14조제1항의 연장 기간 및 기한) 1. 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원래 기한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약 제14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기한은, 연장되지 않은 기한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전에 만료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절차의 계속)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행정청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체약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하여 절차의 계속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권리를 회복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신청이 행정청에 제출될 것	③ (조약 제14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요건) 체약당사자는 조약 제14조 제2항 가목에 따른 기한의 구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조약 본문	시행규칙
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신청이 제출되고, 기한이 적용되었던 절차상 행위에 관한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것	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 나. 기한 미준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해당 기한의 명시
③ (예외)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이나 제2항에 따른 절차의 계속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④ (조약 제14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신청서 제출 기한) 조약 제14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신청 기한은, 행정청이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가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전에 만료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약 제14조 제3항에 따른 예외)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약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를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가. 조약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구제를 받은 기한에 대한 2차 또는 추가 구제 나. 조약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 신청 자체, 또는 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 자체에 대한 구제 다. 갱신 수수료 납부 기한에 대한 구제 라. 행정청 내의 심판원 또는 다른 재심기관에서의 절차에 대한 기한 구제 마. 당사자간 절차에 대한 기한 구제 바. 조약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에 대한 구제
⑤ (기타 요건 금지) 이 조약 또는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명시된 것 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⑥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계약당사자	

조약 본문	시행규칙
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거절 예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표 12 조약 제15조(권리회복), 규칙 제10조 (권리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조약 본문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청이 상당한 주의 또는 비교의를 인정한 경우의 권리회복	제11조 조약 제15조에 따른 '상당한 주의' 또는 '비교의성' 인정 이후의 권리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① (권리회복) 계약당사자가 제14조 제1항 나목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행정청이 정한 절차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행정청은 해당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하여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권리회복 신청을 제출할 것 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신청이 제출되고, 문제된 절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조약 제15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5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약 제15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기한) 조약 제15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 및 그 요건의 이행 기한은, 다음 각 목 중 더 빠른 날 이전에 도달해야 한다. 가. 해당 절차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날 나. 해당 절차의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2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 또는 갱신 수수료 미납과 관련된 경우에는 파리협약 제5조의2에 따른 유예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날

조약 본문	시행규칙
다.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를 해당 신청에 기재할 것 라. 주어진 사정하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체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지연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행정청이 인정할 것	
② (예외) 제1항에 따른 권리회복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③ (조약 제15조 제2항에 따른 예외) 조약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회복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약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 신청 기한, 또는 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나. 행정청 내의 심판원 또는 기타 재심 기관에 대한 절차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다. 당사자간 절차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라.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계류 중인 출원에 새로운 출원일을 부여하기 위한 선언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마. 조약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③ (수수료) 체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증거) 체약당사자는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서 또는 기타 증거를, 행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그 거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	

조약 본문	시행규칙
하지 않고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조약의 분석

디자인권에 관한 기한의 구제와 관련한 초기의 논의를 살펴보면, 구제조치와 관련하여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가 행정청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기한연장, 절차의 계속, 권리회복 중 적어도 하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는 행정청은 기한이 만료된 경우 기한연장 또는 절차의 계속을 제공하고, 추가로 권리회복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았다.²²⁾

산업재산권법에 관한 절차조약인 PLT와 STLT 모두 동일한 취지의 구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DLT의 경우 특히 PLT의 접근방식을 따라 조문 구성 또한 PLT와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상표는 출원이나 권리유지 과정에서 기한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출원할 수 있으나, 한번 권리를 상실한 특허나 산업디자인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²³⁾ PLT는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 만료되기 전 계약당사자가 해당 기한의 연장을 규정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기한연장 또는 절차의 계속의 형태로 구제조치를 규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²⁴⁾ 또한 계약당사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권리상실을 수반하는 기한 미준수가 있는 경우, 이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미준수하였거나, 지연이 의도하지 않은 것(비고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회복하도록 규정할 의무가 있다.²⁵⁾

PLT에서 제시된 조항과 같이 산업디자인의 상실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PLT의 구제조치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특정한 상황에서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권리상실을 수반하는 기한 미준수에 대하여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정당화한다.²⁶⁾

22) SCT/21/4 (2009. 5. 15.) p.19.

23)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12.02]

24)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12.04]

25)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12.05]

26)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12.06]

표 13 PLT와 STLT에서의 구제조치 비교

PLT	STLT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 만료되기 전, 계약당사자는 해당 기한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음.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계약당사자는 기한 연장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 만료되기 전, 계약당사자는 기한 연장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음.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기한 연장, 절차의 계속 또는 권리회복 중 하나 이상의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가. 기한연장(제14조 제1항)

표 14 DLT와 PLT 비교 (DLT 제14조 제1항)

DLT	PLT
Article 14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Article 11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1) [Extension of Time Limits] A Contracting Party <u>shall</u> provide for the extension, for the period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of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u>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a patent</u> , if a request to that effect is <u>filed with the</u>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the request is filed,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1) [Extension of Time Limits] A Contracting Party <u>may</u> provide for the extension, for the period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of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u>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a patent</u> , if a request to that effect is <u>made to the</u>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nd the request is filed, at the op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ii) <생략>	(i)~(ii) <생략>
DLT Regulation	PLT Regulation
Rule 10 Details Concerning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Rule 12 Details Concerning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Under Article 11
(1) <생략>	(1) <생략>
(2) [Period and Time Limit Under Article 14(1)] (a) The period of extension of a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14(1) shall be not less than <u>one months</u> from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un-extended time limit.	(2) [Period and Time Limit Under Article 11(1)] (a) The period of extension of a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11(1) shall be not less than <u>two months</u> from the date of the expiration of the unextended time limit.
(b) <생략>	(b) <생략>

조약 제14조는 디자인 출원이나 권리유지 과정에서 기한을 놓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기한 연장 또는 절차의 회복 기회를 보장한다. 이는 기한 미준수로 인한 결과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허여하기 위한 것인데, 절차상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상실을 초래하는 것은 과도하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약 제14조 제1항은 디자인과 관련한 절차에서 기한(Time limit)의 구제와 관련하여 ‘기한 연장을 제공하여야 한다(shall provide)’ 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① 행정청이 정한 기한에 대하여, ② 계약당사자가 선택한 시기에, ③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연장신청이 제출된 경우에 한해 기한의 연장을 허용한다.

표 15 (참고) 권리행사에 정해진 시간에 관한 용어 비교

	의미	권장 번역
Time Limit	- 특정한 절차를 위해 정해진 시간의 범위,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행정절차 상의 기한 (ex. 0개월 이내 제출, 출원 후 0개월) - 기간의 개념을 내포하기도 함(제출일로부터 0개월 이내)	기한
Due Date	- 어떤 서류나 의무의 제출 마감일, 데드라인 - 보통 하나의 특정한 날짜	마감기한
Period	어떤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 (ex. 연장, 유예 등 특정 상태가 계속되는 구간)	기간

조약 제14조 제1항의 내용이나 절차는 PLT와 일부 표현의 차이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무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DLT는 ‘shall provide’로서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의무 조항이며, 이는 조약 가입 시 국내법이 반드시 일치해야함을 의미한다. 반면 PLT의 경우는 ‘may provide’로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선택적, 임의조항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²⁷⁾

① 행정청이 정한 기한

기한에 대한 구제는 ‘행정청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 ‘행정청이 규정한 조치에 대한 기한’으로 한정된다. 이때의 기한의 전제는 ‘행정청이 정한 기한’이므로 ‘지정기한’의 구제를 의미한다.²⁸⁾ 달리 말하면, 행정청이 정하지 않은 기한, 예컨

27) 조약에서 임의조항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정책적 유연성이 허용되는 범위로 이해된다.

대 국내법 또는 지역 내 조약에 따라 설정된 기한에는 DLT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청의 절차가 아닌 사법절차에 관한 기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²⁹⁾³⁰⁾

② 계약당사자가 선택한 시기

기한의 연장을 위한 시기는 (i)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허용하는 방식, (ii) 기한이 만료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는 각 계약당사자가 자국의 제도와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③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

시행규칙에 정한 요건에만 충족한다면, 출원인이나 등록권자는 기한에 관한 구제신청 시 그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주의나 비교의 등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시행규칙에서는 연장신청의 형식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약당사국은 연장신청서에 (i) 신청인(출원인/등록권자)의 서명과 (ii) 기한을 연장한다는 의사표시, (iii) 그 대상이 되는 기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기한 만료 후의 구제’를 규정하는 경우라면, 신청 시점에 모든 절차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연장의 범위

기한 연장의 기간은 최소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³¹⁾ 이는 최소 보장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1개월 이상이라면 계약당사국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한 만료 후의 구제를 규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즉, 기한 만료 후의 구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기한에 대한 연장 기간을 산정하는 시점을 ‘기간 만료일(date of the expiration)’로 정하고 있다.

28) 법정기간(Statutory Period)은 법에서 정한 기간으로서 불변기간이며, 지정기간(Designated Period)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정하는 기간으로 가변기간이다.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다.

29)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12.07]

30) 관련하여, PLT의 동일 조문에 대한 연구에서도, 본 조항은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대한 절차에는 적용되나, 법원에 대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차호 외, 「선진 특허법제 구축을 위한 특허법 체계 전면 개편 방안 연구」, 특허청, 2009, 179면 각주 403 참고.

31) PLT의 경우 2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PLT 규칙 제12조 제2항 (a)).

나. 절차의 계속(제14조 제2항)

표 16 DLT와 PLT 비교 (DLT 제14조 제2항)

DLT	PLT
Article 14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2) [Continued Processing] Where an applicant or hold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d that Contracting Party does not provide for the extension of a time limit under paragraph (1), the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continued processing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r registration and, if necessary, reinstatement of the rights of the applicant or holder with respect to that application or registration, if:	Article 11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2) [Continued Processing] Where an applicant or own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fixed by the Office of a Contracting Party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in respect of an application or a patent, and that Contracting Party does not provide for extension of a time limit under paragraph (1)(ii), the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continued processing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r patent and, if necessary, reinstatement of the rights of the applicant or owner with respect to that application or patent, if: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 a request to that effect is made to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the request is filed, and all of the requirements for the said action, in respect of which the time limit applied, are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ii) the request is filed, and all of the requirements in respect of which the time limit for the action concerned applied are complied with, within the time limit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DLT Regulation	PLT Regulation
생략	생략

조약 제14조 제2항은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가 행정청이 정한 절차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1항에 따른 제도(기한 연장)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절차의 계속(continued processing)’를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회복(reinstatement)’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한다. 즉, 이미 종료된 절차를 다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PLT의 방식과 같으며, 이러한 절차 계속의 효과는 행정청에서 해당 기한이 준수된 것처럼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

이다. 또한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 해당 출원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³²⁾

조약 제14조 제2항은 전제로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한다. 즉, 조약 제1항이 ‘정해진 기한 내’ 또는 ‘기한 후 일정 기간 내’로 사전적 구제라면, 제2항은 기한을 완전히 경과한 후에 사후적으로 구제를 받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규정 역시 의무조항으로서, 만약 제1항의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계속처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절차적 실수를 이유로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각국이 기한 연장제도를 운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계속처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청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과 행위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는 절차의 계속(출원인에 대응)과 권리의 회복(등록권자에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if necessary, reinstatement’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택적으로 요구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행규칙에서는 절차의 계속에 필요한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규칙 제10조 제3항). 계약당사국은 연장신청서에 (i) 신청인(출원인/등록권자)의 서명과 (ii) 기한의 불준수에 따른 구제를 요청하는 표시와 (iii) 그 대상이 되는 기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행정청이 기한 미준의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최소 2개월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기산점을 ‘통지 이후’로 명확히 하고 있다.

정리하면 제14조 제2항은 기한연장 제도가 없는 경우, 반드시 마련해야 할 사후적 구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약 제14조는 두 가지 방식(기한연장, 절차의 계속)의 권리구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이 둘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제1항의 기한연장 제도만을 도입하고 제2항의 절차의 계속은 두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제2항의 절차의 계속만 인정하고, 제1항의 기한의 연장은 생략할 수도 있다.

조약 제14조 제1항(기한 연장)을 의무조항(shall)으로 구성하면서도, 조약 제14조 제2항(절차 계속)에서 제14조 제1항이 없다면 절차의 계속을 규정해야 한다가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는 점에서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PLT의 경우는 기한연장을 임의제도(may)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절차계속을 반드시 규정(shall)하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 DLT와 차이가 있다.

32)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12.08]

표 17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조

조약상의 규정	의무 여부
① 기한 연장 - ㉠ 기한만료 전 또는 ㉡ 기한 만료 후 2개월의 기간 내 신청 - ㉠ 또는 ㉡ 둘 중 하나만 규정해도 충족	의무(shall provide)
② 절차 계속/권리회복	선택적 의무(shall provide) - ① 이 없을 경우 의무, - ① 이 있다면 규정하지 않아도 됨

DLT의 경우 기한 연장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절차의 계속을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다소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된 까닭은 PLT와 DLT의 제정과 논의 과정 속에서 그 차이를 추론해볼 수 있다. PLT의 채택 시기에는 ‘절차적 유연성(Procedural Flexibility)’을 핵심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한 연장은 각국의 재량에 맡기되, 사후적 구제만을 최소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반면 DLT의 경우 PLT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특정한 핵심절차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시한(strict deadlines)’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가들이 여전히 제도적 차이나 운영의 부담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연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의 계속이라는 보완 장치를 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사실상 양자택일적 의무를 설정한 것으로, 연장은 강제하되, 예외적으로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제도적으로 곤란한 국가의 경우 절차의 계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타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DLT는 PLT와 달리 의도적으로 PLT 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DLT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연계된 구조적 해석에 따라 조약 전체의 문맥에서 실질적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8 기한의 연장과 관련한 DLT와 PLT의 비교

DLT	PLT
• 기한연장 또는 절차의 계속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제공 • 현실적 유연성을 병행	• 기한 연장은 선택사항 • 사후적 구제를 최소의무로 규정 • 절차적 유연성의 원칙

다. 예외(조약 제14조 제3항)

표 19 DLT와 PLT 비교 (DLT 제14조 제3항)

DLT	PLT
Article 14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Article 11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3) [Exceptions] There shall be no requirement to provide for the extension of time limits under paragraph (1) or continued processing under paragraph (2)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3) [Exceptions] No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provide for the relief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2) with respect to the excep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DLT Regulation	PLT Regulation
Rule 10 Details Concerning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Rule 12 Details Concerning Relief in Respect of Time Limits Under Article 11
(5) [Exceptions Under Article 14(3)] No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under Article 14(1) or (2) to grant:	(5) [Exceptions Under Article 11(3)] (a) No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under Article 11(1) or (2) to grant
(i) a second, or any subsequent,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which relief has already been granted under Article 14(1) or (2);	(i) a second, or any subsequent,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which relief has already been granted under Article 11(1) or (2);
(ii) relief for filing a request for a relief measure under Article 14(1) or (2) or a request for reinstatement under Article 15(1);	(ii) relief for filing a request for relief under Article 11(1) or (2) or a request for reinstatement under Article 12(1);
(iii)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the payment of a renewal fee;	(iii)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the payment of maintenance fees;
(iv)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an action before a board of appeal, or other review body, constituted in the framework of the Office;	(iv)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13(1), (2) or (3);
(v)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an action in inter partes proceedings;	(v)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an action before a board of appeal or other review body constituted in the framework of the Office;
(vi)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referred to in Article 16(1) or (2).	(vi)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an action in inter partes proceedings.
	(b) No Contracting Party which provides a maximum time limit for compliance with all of the requirements of a procedure before

DLT	PLT
	the Office shall be required under Article 11(1) or (2) to grant relief in respect of a time limit for an action in that procedure in respect of any of those requirements beyond that maximum time limit.

기한의 연장 또는 절차의 계속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도입해야 하는 의무이
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상황에 대하여는 그러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
된다. 이러한 예외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구제조치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ex. 절
차에 대한 이중구제의 획득)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³³⁾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각호에서 해당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사유는 폐쇄적
열거(closed list) 규정으로서, 계약당사자는 규정한 6가지 상황 외에 임의로 다른 예
외를 추가하거나 확대해석 해서는 안된다.

표 20 기한의 구제의 예외

구분	예외항목	의미
규칙 제10조제5항가목	동일한 기한에 대해 2회 이상 구제를 요구하는 경우	1회의 기한연장 또는 절차계속을 받은 경우 추가구제 불가
규칙 제10조제5항나목	구제신청(연장, 계속처리, 권리회복) 그 자체에 대한 기한 미준수	구제신청을 위한 연장신청서조차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한 구제는 불가
규칙 제10조제5항다목	갱신 수수료 납부기한 관련 구제	등록유지를 위한 갱신료 납부지연은 구제 불가(단 권리회복은 제15조의 적용을 받아 가능)
규칙 제10조제5항라목	심판, 항고기관 등의 절차에 관한 기간	심판청구서, 항소서 제출 등은 구제 대상이 아님
규칙 제10조제5항마목	당사자 간 절차의 기한	이해관계인 간의 대립 절차에서는 공정성의 문제로 기한의 구제를 요구할 수 없음
규칙 제10조제5항바목	제16조(우선권) 관련 기한	우선권 주장의 정정, 추가, 복원절차에 대한 사항을 별도 규율

33)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12.10]

PLT와 비교할 때, 기한의 구제에 대한 예외사유의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은 유사하나 일부 항목의 차이가 존재한다. “갱신 수수료 납부 기한”과 관련하여 DLT의 경우 “renewal fee”로, PLT의 경우는 “maintenance fees”로 표현한다.

표 21 수수료에 대한 세부 명칭의 비교

Renewal Fee (갱신료)	Maintenance Fee (유지료)
• 권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를 의미 • EPO, EUIPO의 대륙법계에서 일반적으로 renewal fee 또는 annual fee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권리의 존속을 갱신(renew)한다는 개념의 강함	• 미국(USPTO)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권리(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시점마다 납부하는 수수료, 특허를 살아있게(maintain)한다는 개념이 강함 • 미국의 경우 디자인 특허와 식물 특허에 대하여는 유지료가 없음³⁴⁾

또한 PLT는 절차 내 최대기한(total compliance deadline)을 설정한 경우 그 기한을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제의무가 없음을 명시한다. DLT의 경우 이와 같은 절차 단위의 최대 기한 설정은 규정하지 않는다.³⁵⁾

라. 권리회복(제15조 제1항)

표 22 DLT와 PLT 비교 (DLT 제15조 제1항)

DLT	PLT
Article 15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Article 12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by the Office
(1) [Reinstatement of Rights] If a Contracting Party does not provide for a relief measure under <u>Article 14(1)(ii) or 14(2)</u> , the Office shall reinstate the rights of the applicant or holder with respect to that application or registration, where an applicant or hold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for an action in a	(1) [Request]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that, where an applicant or owne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time limit for an action in a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d that failure has the direct consequence of causing a loss of rights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patent, the Office shall reinstate the rights of the

34) MPEP § 2501

35) PLT 규칙 제12조 제5항 (b)에 의하면 어떠한 절차에 대하여 체약국의 준거법에 최대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체약국은 기한의 연장을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최대 기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이 준거법에 4개월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고, 심사관이 3개월을 지정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체약국이 PLT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을 규정하고, 출원인이 2개월의 기간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체약국의 관청은 추가로 1개월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 정차호 외, 앞의 보고서, 180면.

DLT	PLT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d that failure has the direct consequence of causing a loss of rights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 , if:	applicant or owner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r patent concerned, if:
(i)~(iv) <생략>	(i)~(iv) <생략>
DLT Regulation	PLT Regulation
Rule 11 Details Concerning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by the Office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Under Article 15	Rule 13 Details Concerning Reinstatement of Rights After a Finding of Due Care or Unintentionality by the Office Under Article 12
(1) <생략>	(1) <생략>
(2) [Time Limit Under Article 15(1)(ii)] The time limit for making a request, and for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15(1)(ii), shall be the earlier to expire of the following:	(2) [Time Limit Under Article 12(1)(ii)] The time limit for making a request, and for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under Article 12(1)(ii), shall be the earlier to expire of the following:
(i) not less tha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moval of the cause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time limit for the action in question;	(i) not less tha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moval of the cause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time limit for the action in question;
(ii) not less than 12 months from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for the action in question, or, where a request relates to non-payment of a renewal fee, not less than 12 months from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period of grace provided under Article 5bis of the Paris Convention.	(ii) not less than 12 months from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for the action in question, or, where a request relates to non-payment of a maintenance fee, not less than 12 months from the date of expiration of the period of grace provided under Article 5bis of the Paris Convention.

DLT 제15조는 행정청이 출원인 등의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를 이유로 권리회복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DLT의 경우 그 전제로서, 출원인 또는 등록에 대한 권리가 행정청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출원이나 등록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권리회복(reinstatement of rights)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절차의 연장 또는 계속(further processing)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제15조는 권리상실이라는 실질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회복을 허용하며, 그 조건으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한다. 첫째, 출원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

한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연이 고의가 아님을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의 권한은 계약당사자의 행정청(특허청)에 부여되며, 회복 허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조약 제13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서 명시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조약 제15조가 제14조와 다른 점은,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준수를 실패하였거나,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제14조와 달리 ‘지정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규칙에 따른 특정 예외가 적용된다.³⁶⁾ 본 조항에서 핵심적인 문구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때(that failure has the direct consequence of causing a loss of rights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or a registration)”이다. 이 문구는, 기한의 불이행이 단순한 절차상의 흠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의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 출원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출원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행한다. 이에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출원이 취하됨으로써 권리 상실이 직접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도 계약당사자는 DLT 제15조에 따라 권리회복 제도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³⁷⁾

DLT 제15조는 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을 행정청이 인정한 이후의 권리회복에 관한 것으로서 PLT 제12조를 모델로 하고 있다. 다만 권리회복과 관련하여 특허 분야에서 발전된 법리와 관행이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본 조항을 해석하는 데에 반드시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³⁸⁾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DLT 제15조와 PLT 제12조 간에는 실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PLT의 경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절차상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직접적으로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규정한다. 반면 DLT 제15조는 제14조에서 정한 다른 구제수단(기한 만료 후의 연장 또는 절차계속)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권리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DLT의 경우는 PLT보다 권리회복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즉 양 조약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나 DLT 제15조는 PLT 제12조보다 후순위, 보충적 지위를 갖는 조항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한편 구제를 인정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PLT 제12조 제1항에서는 계약당사국의 수속기간을 경과한 경우의 구제를 인정하는 요건으로 “상당한 주의(Due Care)”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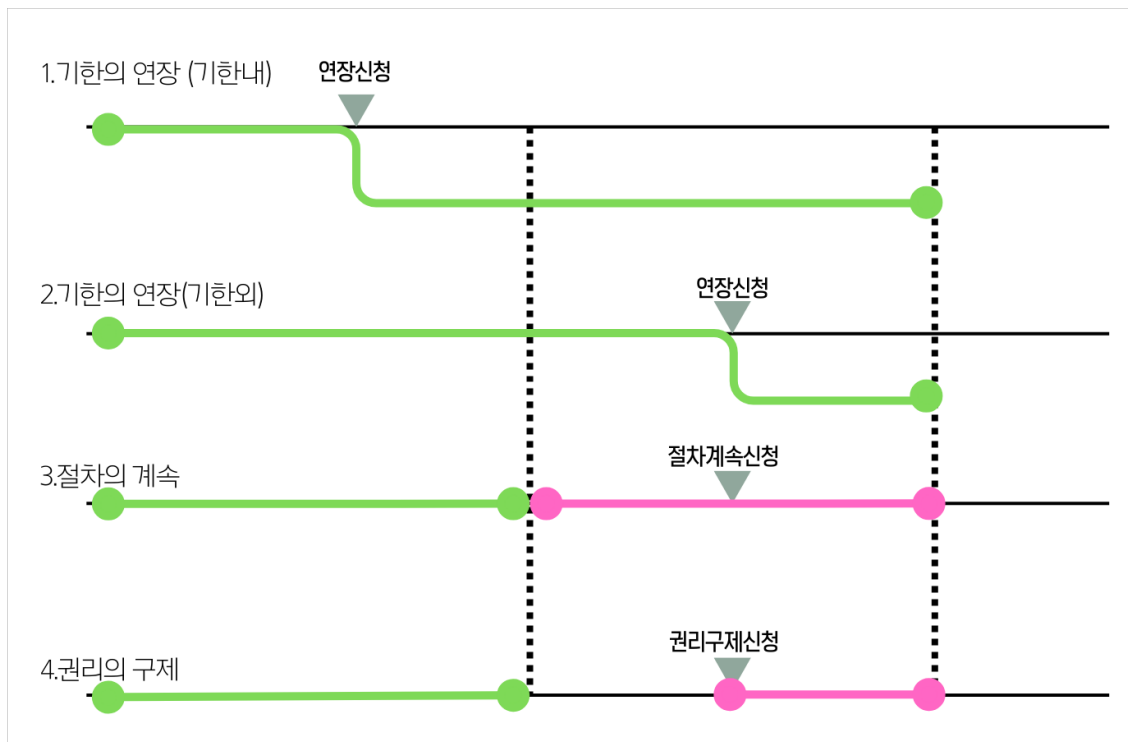
36)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13.01]

37)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13.03]

38)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13.04]

건과 “비고의(Unintentional)”의 요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림 9 기한의 연장, 절차의 계속 및 권리의 구제의 개념 비교



마. 기한의 구제 및 권리회복 규정의 수용 방안

먼저 조약 제14조만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만약 범상 기한의 구제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한연장(기한 전 연장 또는 기한 후 연장)이나 절차계속의 방법으로 기한의 구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14조 제1항의 도입 여부에 따라 제2항의 조건부 의무의 이행 방식도 달라진다. 제1항이 도입된 경우에는 제2항을 채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1항이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즉, 제1항과 제2항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며, 제1항이 빠질 경우 제2항을 통해 최소한의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에 대해서는 기한 구제가 불요할 수 있으나,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국내법상 이미 존재하는 기한에 관한 사항들이 시행규칙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23 제14조의 국내법으로의 반영방법 검토/정리

구분	선택여부	「디자인보호법」상 반영방법
제14조의 존재 여부	불가능	기한연장(기한전 연장/기한 후 연장) 또는 절차계속의 방법으로 기한의 구제 필요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 조건부 의무	가능	조약 제14조 제1항(기한연장)이 도입된 경우 제2항(절차계속)은 채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조약 제14조 제1항이 도입되지 않은 경우 제2항은 필수 이행(실질적으로 조약 제1항과 제2항 선택 가능)
예외사유	제한적 가능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에 대하여는 기한 구제 불요

표 24 규정반영 시 가능한 선택지 (제14조)

	기한연장		절차계속 (조약 제14조 제2항)
	기한만료 전 연장 (조약 제14조 제1항 제1호)	기한만료 후 연장 (조약 제14조 제1항 제1호)	
옵션 1	○	×	×
옵션 2	×	○	×
옵션 3	×	×	○
옵션 4	○	○	×
옵션 5	○	○	○
옵션 6	×	○	○
옵션 7	×	×	○
옵션 8	○	○	○

PLT와 달리 DLT 제14조와 제15조는 서로 대체 가능하거나 보충관계에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조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합으로든 구제수단을 제공하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PLT는 권리회복을 기본적 권리보호 수단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제공할 것을 요구하나, DLT는 기간 연장 또는 절차계속 중 하나만 제공하면 충분하며, 권리회복은 최후적 보완 수단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DLT가 정책 설계에 있어 더욱 유연성 있는 구조를 가지며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각 조항과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 25 DLT 제14조와 제15조의 의미와 관계

- 제14조 제1항 : 기한만료 이전 또는 이후에 기한연장(Extension) 을 허용하는 제도
- 제14조 제2항 : 기한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절차의 계속(Continued Processing)을 제공
- 제15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나호 또는제14조 제2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구제조치(Reinstatement of Rights) (due care 또는 unintentional 요건 필요)

표 26 기한의 연장, 절차의 계속 및 권리회복의 개념 비교 (개념중심)

	기한 연장(기한내/외)	절차의 계속	권리회복
시점	기한의 전/후	기한 후(절차의 단절X)	기한 후 (절차의 단절 ○)
효과	기한 자체를 늘림	기한을 넘겨도 절차를 계속함	권리상실 후 회복
성격	예방적	보완적(연속성 유지)	예외적
PLT	may (선택)	기한연장 없을 경우, Shall (조건부 의무)	Shall
DLT	Shall	기한연장 없을 경우, Shall	기한 후 연장 또는 절차계속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Shall (조건부 의무)
	사실상 기한전 연장, 기한후 연장, 절차계속의 3개 중 1개는 반드시 있어야 함		

표 27 PLT와 DLT의 기한연장 및 권리회복의 관계 비교 (조문중심)

항목	PLT		DLT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기한 연장	선택사항(may)	-	제1항 의무 사항	-
절차의 계속	조건부 의무(제11조 제1항 나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조건부 의무 (제14조 제1항 나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권리회복	-	의무사항		조건부 의무 (제14조 제1항 나호나 제14조 제2항 제공 X)
요건	연장 및 절차요건 (시행규칙)	due care, uninternational	연장 및 절차요건 (시행규칙)	due care, uninternational

기한의 연장과 권리회복에 관한 절차를 설계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는 제도의 정합성과 실효성 모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DLT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법조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11개의 조합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각 옵션은 ‘최소요건’ 부터 ‘최대요건’ 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며, 이는 제14조와 제15조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완비된 조합은 제14조와 제15조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겠으나, 조약은 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4조 제2항 중 하나라도 제공한다면, 제15조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달리 얘기하면 제14조 제1항 제2호와 제14조 제2항을 모두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15조가 의무적으로 작동한다.

표 28 DLT 제14조와 제15조를 연계하여 충족하는 법조문의 구성(안)

조합	기한만료 전 연장	기한만료 후 연장	절차의 계속	권리회복	설명
①	○	○	○	○	전체의 구제제도를 제공 (권리자 보호 최상/최대요건)
②	○	○	○	×	제14조만 이행
③	×	○	○	○	기한 후 연장 + 절차계속 + 제15조

조 합	기한만료 전 연장	기한만료 후 연장	절차의 계속	권리회복	설명
④	○	×	○	○	기한 전 연장 + 절차계속 + 제15조
⑤	○	○	×	○	기한 전 연장 + 기한 후 연장 + 권리구제
⑥	○	○	×	×	제14조 제1항만 이행(최소요건)
⑦	○	×	○	×	기한 전 연장 + 절차계속(최소요건)
⑧	○	×	×	○	기한 전 연장 + 제15조 (최소요건, 국내법 개정 가장 용이)
⑨	×	○	○	×	기한 후 연장 + 절차계속(최소요건)
⑩	×	○	×	○	기한 후 연장 + 제15조(최소요건)
⑪	×	×	○	○	절차계속 + 권리회복(최소요건)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구제 수단(①~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한만료 전후의 연장과 절차계속이 모두 허용되는 ‘최대요건’ 방식은 실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므로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국제출원이나 대리인 활용 비율이 높은 경우, 다양한 구제 경로는 제도의 수용성 향상에 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권리남용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요건’ (⑥~⑪)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최소요건 조합은 필수적인 기한연장 방식만을 인정하여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각 옵션의 선택은 권리보호와 행정의 효율성 간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기반해야 하며, 관련 제도 도입 시에는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뿐 아니라 국제적 입법 동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국내법 분석

가. 기한의 구제

「디자인보호법」에는 ‘기한’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간’에 대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법령용어상 ‘기한’은 계속하는 시간적 간격을 나타낼 때 지시하는 시기(始期) 또는 종기(終期), 즉 어떤 법률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가, 언제까지 효력을 지속하는가와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에 달리게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기한에는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가, 즉 채무의 이행과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이 시기이며, 언제까지 효력을 지속하는가, 즉 효력의 소멸에 관한 것이 종기이다. 기한에는 도래하는 일시가 확실한 ‘확정기한’과 그 일시가 불확실한 ‘불확정기한’이 있다.³⁹⁾ ‘기간’은 일정한 일시(시기)에서 다른 일시(종기)까지 계속된 시간적 간격이다. 기간과 기한의 차이점은 기간에는 시기와 종기의 양쪽이 모두 있는데 반하여 기한에는 어느 한편이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⁴⁰⁾

참고로 「디자인보호법」상 사용되는 용어는 ‘기간’만이 존재하나 있으나, 실무에서는 기간과 기한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디자인보호법」의 공식 영문번역 상에도 기간이 기한으로 번역된 사례가 존재한다.⁴¹⁾⁴²⁾

「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제24조 제4항의 수계기간, 제38조 제2항의 절차보완서 제출기간, 제46조 제5항의 협의결과 신고기간, 제47의 명령에 의한 절차의 보정기간, 제177조 제2항의 국제출원서 보완서류 제출기간, 제178조 제3항의 송달료 보정기간 등이 있다.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제47조의 명령에 의한 절차의 보정기간이 있고, 심판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제128조 제1항의 심판청구방식 등에 대한 보정기간, 제134조 제1항의 심판청구에 등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제144조 제2항의 참가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간 등이 있으며, 심사관이 지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제63조 제1항의 의견서 제출기간이 있다. 이러한 기간은 법 제38조제2항(출원 보완), 제47조(절차 보

39) 확정기한은 ‘0월 0일까지’라고 확정적으로 그 일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불확정기한은 ‘~가 죽을때까지’ 등과 같이 그 일시의 도래가 명백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40) 법제처 자료 참조,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5453>

41) 「디자인보호법」 제82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에서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이나 영문 번역상에서는 ~after the due date specified 라고 기재하고 있다.

42) 참고로 국내 타법의 경우에는 ‘기간’은 ‘period’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한’의 경우에는 ‘due date’, ‘Deadline’ 등의 용어가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다.

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은 2개월 이내로 한다(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이 항에 다른 지정기간의 연장청구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위 서식에 대리권을 첨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 등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지정기간 연장청구는 법정기간 연장 청구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처장 등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성질을 갖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지식재산처장 등은 당사자의 연장청구가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지정기간 등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및 실체심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위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매회 1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4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⁴³⁾ 위 기간연장은 2회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⁴⁴⁾ 이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 신청된 기간이 매회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대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⁴⁵⁾ 출원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신청된 1회의 연장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개월로 본다.⁴⁶⁾ 연장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하며,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이 마지막 날에 만료한다.⁴⁷⁾

다만 이러한 지정기간의 연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서 연장신청이 가능한 것으로서 기한만료 이후의 연장신청이나 절차계속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구제는 정당한 사유 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기한 미준수에만 적용하고 있다.

43)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제2항

44)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제3항

45)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제4항

46)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제5항

47)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제6항

나. 권리회복

표 29 권리회복(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보호법」 규정

법	시행규칙
제18조 (절차의 무효)	제30조 (기간 경과 구제 신청)
제19조 (절차의 추후보완)	제30조 (기간 경과 구제 신청)
제84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디자인보호법」 제18조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명령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절차상 하자에 대한 시정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권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절차 무효가 권리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완적 구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복청구를 해야 한다. 단, 보정기한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9조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나 확정된 심결에 대한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회복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이는 심판이나 소송의 제소기간이 일반적으로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귀책사유 없이 기한을 도과한 자에게 소권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절차적 구제제도이다.

「디자인보호법」 제19조가 절차의 계속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입법 취지와 구조는 DLT 제14조와는 명확히 구별된다.⁴⁸⁾ 법 제19조는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절차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출원인의 책임 유무에 따른 구제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결과는 있지만 그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존재가 입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DLT 제14조가 단지 ‘기한 경과’ 자체를 문제 삼는 절차 보장적 제도인 것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따라서 법 제19조는 외형상 절차의 계속을 규율하는 조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DLT 제15조의 “권리회복” 조항에 보다 가까운 규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19조에 따른 추후보완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에는 출원인 본인은 물론 그 대리인 및 보조인까지 포함되며,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심판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⁹⁾ 다만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그 2개월의 보완기한조차 다시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제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산업재산권의 절차 조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당한 주의(Due Care) 또는 비고의(Unintentionality)로서 우리 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는 차이가 있다. 2022. 4. 20. 시행된 「특허법」을 통해 특허법 제16조, 제67조의3, 제81조의3의 특허출원, 특허권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가이드라인」에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⁵⁰⁾⁵¹⁾ 「디자인보호법」도 동일하게 제18조

48)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49) 이는 과거에는 14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 국민의 권리회복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2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특히 보정명령 위반에 따른 무효처분 취소청구나 등록료 추가납부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도 개정 배경이 되었다.

(절차의 무효),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⁵²⁾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에서⁵³⁾ ‘정당한 사유’ 라고 용어를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⁵⁴⁾⁵⁵⁾ 우리 법제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민사소송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⁵⁶⁾ 「특허법」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았다.⁵⁷⁾ 관련하여 대리인이 특허청으로부터 권리소멸예고 안내장을 받지 못한 경우,⁵⁸⁾ 연차료 납부를 대리인 등에게 위임했으나 대리인의 착오로 인한 미납으로 특허가 소멸된 경우,⁵⁹⁾ 특허료 납부사무를 위임받은 자의 과실로 이 사건 특허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지 못한 경우⁶⁰⁾ 모두 권리회복의 구제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⁶¹⁾

2022년 특허법 개정 당시에도 용어의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때 제기된 완화 수준은 대부분의 IP5 회원국이 채택한 상당한 주의(due care)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비의도적(unintentional) 요건까지 완화하면 구

50)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인정기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51) 최승재, 「특허법상 특허출원, 특허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사유’ 요건 검토」, 특허청 정책연구 보고서, 2023, 3면.

52) 2021. 10. 19. 개정

53) 2023. 6. 20. 신설

54) 「디자인보호법」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55)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5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57)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2839 판결

58)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9구합51543 판결 등 ; 특허청,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2022, 19면.

59) 특허청,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2022, 19면.

60) 특허법원 2012. 6. 29. 선고 2012허432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3구합79845 판결 등

61)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소멸되는 특허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제폭이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고, 제3자의 감시 부담 또한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논거였고, 적합한 용어로는 산업재산권법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정당한 이유” 라는 용어가 합당하다고 보았다.⁶²⁾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가. 미국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허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37CFR에서 기간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⁶³⁾

표 30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37 CFR)상 기간의 연장 관련 규정

37 CFR § 1.136 - 기간의 연장(Extensions of time)

(a)

(1) 출원인이 법정기간이 아닌 기간(nonstatutory time period) 또는 단축된 법정기간(shortened statutory time period) 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출원인은 기간 연장 신청(petition for an extension of time)과 § 1.17(a) 또는 (u)에 규정된 수수료를 제출함으로써, 답변기간을 다음 각 목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출원인이 USPTO의 OA에서 달리 통지를 받은 경우

(ii) 해당 답변이 본 편 제41.41에 따라 제출되는 답변서(Reply Brief)인 경우

(iii) 해당 답변이 본 편 제41.47(a)에 따라 제출되는 구두심리 요청(Request for an oral hearing)인 경우

(iv) 해당 답변이 본 장 제41.50 또는 제41.52, 또는 본 장 제90.3에 따른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에 대한 답변인 경우, 또는

(v) 해당 출원이 쟁송사건(contested case)(본 편 제41.101(a)) 또는 유도절차(derivation proceeding)(본 편 제42.4(b))에 관련된 경우

(2) 기간 연장의 목적상, 연장 신청서와 수수료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 기간 및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 금액을 산정한다. 기간의 만료일은 납부된 수수료의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출원은 출원 포기(abandonment)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답변이 제출되어야 한다(§ 1.135 참조).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출원인은 법률에 의해 설정된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답변을 제출할 수 없으며, 본 조 (a)항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b)항에 따른 기간 연

62) 지선구·이윤직·이진형, “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2021, 110면.

63) CFR § 1.136 (Extensions of time), 관련한 심사지침은 MPEP 710.02(e) Extension of Time [R-01.2024]

장을 부여받을 수 없다.

(3) 출원인은, 본 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한 동시 또는 장래의 답변을 적시에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답변이 적절한 기간의 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승인서(authorization)를, 출원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 1.17에 따른 모든 요구 수수료, § 1.17에 따른 수수료, 또는 모든 요구되는 기간 연장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승인하는 내용은, 본 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한 동시 또는 장래의 답변에 대하여, 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 1.17(a)에 규정된 수수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본 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한 동시 답변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 답변 제출기간 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없고, 본 조 (a)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답변 기간은 정당한 사유(sufficient cause)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으로만 연장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기간 연장 신청은, 답변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날 이전 또는 당일에 제출되어야 하며,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항에 따른 기간 연장은 법률에 의해 설정된 최대 기간을 초과하여 답변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른 모든 기간 연장 신청에는 § 1.17(g)에 규정된 신청 수수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c) 출원인이 “허여 가능 통지서(Notice of Allowability)”에서 해당 출원이 허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동 통지서 또는 그 발송일 이후의 오피스 액션에서 설정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 (1) 발명자의 선언서 또는 선언서(oath or declaration) 제출기간;
- (2) § 1.85(c)에 따라 설정된 정식 도면(formal drawings) 제출기간
- (3) § 1.809(c)에 따라 설정된 기탁(deposit) 이행기간

(d) 다음 각 규정은 각 절차별 기간 연장에 관하여 적용된다. 일방적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절차에서의 기간 연장: § 1.550(c) ; 쌍방적 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 절차에서의 기간 연장: § 1.956 ; 특허심판원에서의 쟁송사건(contested case)에 관한 기간 연장: 본 장 §§ 41.4(a) 및 41.121(a)(3) ;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trial) 절차에서의 기간 연장: § 42.5(c)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대한 항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 연장: § 90.3

‘기간의 연장’을 규율하는 37CFR 제1.136조은 ① 일반적인 시간의 연장, ②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 ③ 허용통지 후 연장 불가기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절차별 연장 규정을 정하고 있다.

지정기간(nonstatutory) 또는 단축된 법정기간(shortened statutory time)⁶⁴⁾ 내에 응

답이 요구되는 경우, 출원인은 규정한 요건(연장신청 및 수수료 제출)을 충족할 경우 (i) 최초 지정된 기간으로부터 5개월 또는 (ii) 법률상 정해진 최장기간의 만료일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응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기간연장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한 일자가 연장기간의 계산 및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연장된 기한 만료 전까지 반드시 응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원은 포기(abandonment)된 것으로 간주한다.⁶⁵⁾ 사전에 포괄적 연장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향후 응답에서도 자동적으로 연장신청으로 간주된다.⁶⁶⁾ 37CFR 제1.136조 (a)항에 따른 일반적인 연장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b)항에 의한 연장(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⁶⁷⁾

- (요건) 기간연장신청서와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i) 특허청의 통지에 따라 불가한 경우, (ii) § 41.41에 따른 항소이유서인 경우, (iii) § 41.47 (a)에 따른 구술심리 요청인 경우, (iv) PTAB의 결정에 대한 응답인 경우 (§ 41.50, § 41.52 또는 § 90.3), (v) 경합사건(contested case) (§ 41.101(a)) 또는 기원절차(derivation proceeding) (§ 42.4(b))에 해당하는 경우

64) 미국 특허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응답에는 지정기간, 법정기간 및 단축된 지정기간이 존재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응답기간과 별개로 USPTO에서 심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 최대 기한보다 더 짧은 기간을 설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짧게 설정된 응답기간이 단축된 지정기간(shortened statutory time)이다. 단축된 지정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3개월 정도이며, 출원인은 추가적으로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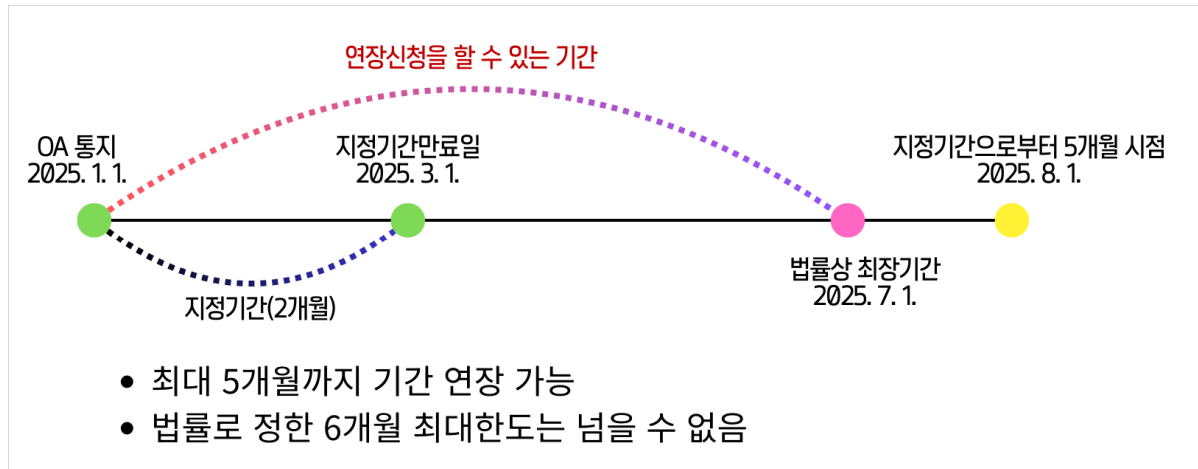
Statutory period	법령상 정해진 최대 기간
Shortened statutory period	특허청이 실제로 부여한 더 짧은 기간
Nonstatutory period	규칙 또는 행정적 사유로 정한 기간

65) 37CFR § 1.135.

66) 예컨대 필요한 수수료를 자동으로 청구하도록 승인한 경우 등은 묵시적 신청으로 처리된다.

67) 37CFR § 1.135. (a)

그림 10 미국 내 출원절차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시기



규정에 따르면 기간연장의 신청은 지정기간의 만료 후라도 무방하다. 기간만료 후의 연장신청을 전제한 문구가 MPEP 710.02.(e)에 언급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기한 후의 제출과 연장신청 및 수수료의 보완으로 소급이 유효화 된다는 미국 특허제도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표 31 MPEP 710.02(e) 규정 발췌

Where a reply is filed after the set period for reply has expired and no petition or fee accompanies it, the reply will not be accepted as timely until the petition (which may be a constructive petition under 37 CFR 1.136(a)(3)) and the appropriate fee are submitted. For example, if an Office action sets a 3-month period for reply and applicant replies in the 4th month and includes only the petition for a 1-month extension of time, the reply is not acceptable until the fee is filed. If the fee is not filed until the 5th month, an additional fee for the 2nd month extension would also be required in order to render the reply timely.

응답 기한이 만료된 후에 답변이 제출되었으나, 연장신청서나 수수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그 답변은 연장신청서(37 CFR 1.136(a)(3)에 따른 간주된 연장신청을 포함)와 해당 수수료가 제출될 때까지는 적법한 시기 내 제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절이유통지서(Office Action)에서 3개월의 답변기간이 설정되었는데, 출원인이 제4개월에 1개월 연장신청서만 제출하고 수수료는 내지 않은 경우, 그 답변은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는 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수수료가 제5개월에 납부된다면, 그 답변을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2개월 연장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일반적인 시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으나, 기한 내에 응답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반드시 응답기한 당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최대기한을 초과하는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 수수료의 납부를 필요로 한다.⁶⁸⁾ 37CFR 제1.136조 (b)항은 기한 내에 사유를 소명해서 특별히 허용받는 것으로 제한적 연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허용통지(Notice of Allowability)를 받은 후 남은 절차적 요건들에 대하여, 기간연장이 불가능한 항목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들의 경우 37CFR 제1.136조 (a)항 및 (b)항에 의하여 연장되지 않는다. 연장이 불가능한 항목으로는 발명자 서약서 및 선언서 제출기한, CFR § 1.85(c)에 따른 도면 제출기한 및 CFR § 1.809(c)에 따른 미생물기탁의 제출기한이다.⁶⁹⁾

기간에 대한 공통사항 이외의 별도의 조항에서 기간의 연장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⁷⁰⁾, ▲당사자계 심판(inter partes reexamination)⁷¹⁾, PTAB 경합사건⁷²⁾, PTAB 심판⁷³⁾ 및 CAFC 항소 또는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⁷⁴⁾에 대하여는 각 해당조항에서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⁷⁵⁾

표 32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37CFR) 상 권리회복 규정

37 CFR § 1.137 - 포기된 출원 또는 종료되었거나 제한된 재심사 절차의 회복

(a) 비의도적(unintentional) 지연을 근거로 한 회복.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회신 지연이 비의도적이었던 경우, 본 조에 따라 § 1.550(d) 또는 § 1.957(b)에 따라 종료되었거나 § 1.957(c)에 따라 제한된 재심사 절차 또는 포기된 출원을 회복하기 위한 청원이 제출될 수 있다.

(b) 청원 요건

본 조에 따른 허가 가능한 청원은 다음이 동반되어야 한다:

- (1) 미해결된 사무국(Office) 조치 또는 통지에 대한 요구되는 회신(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
- (2) § 1.17(m)에 규정된 수수료;
- (3) 본 조 제(d)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말기포기서(terminal disclaimer) 및 § 1.20(d)에 규정된 수수료; 그리고
- (4) 회신 기한일로부터 본 조에 따른 허가 가능한 청원이 제출되기까지의 전체 지연이 비의도적이

68) 37CFR § 1.135. (b)

69) 37CFR § 1.135. (c)

70) 37CFR § 1.550. (c)

71) 37CFR § 1.956.

72) 37CFR § 41.4, (a) ; 37CFR § 41.121. (a)(3)

73) 37CFR § 42.5. (c)

74) 37CFR § 90.3.

75) 37CFR § 1.135. (d)

었음을 진술한 문서.

특허청장은 해당 지연이 비의도적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c) 회신

§ 1.57(a)에 따라 포기된 출원의 경우, 회신에는 이전에 제출된 출원의 명세서 및 모든 도면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고료(issue fee) 또는 그 일부의 미납으로 인해 출원 또는 특허가 포기된 경우, 요구되는 회신에는 공고료 또는 미납 잔액의 납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개료(publication fee) 미납으로 인해 출원이 포기된 경우, 요구되는 회신에는 공개료의 납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불비송달로 인해 포기된 비잠정 출원의 경우, 요구되는 회신은 계속출원 제출로 충족될 수 있다. 1995년 6월 8일 이후에 제출되어 § 1.114(b)에서 정의된 절차종결 이후 포기된 비잠정 유틸리티 또는 식물 출원은, § 1.114에 따라 적절한 계속심사요청(RCE) 제출로도 요구되는 회신을 충족할 수 있다.

(d) 말기포기서(Terminal disclaimer).

(1) 디자인 출원에서 본 조에 따른 회복 청원은, § 1.321에 규정된 수수료와 함께, 해당 출원의 포기 기간에 상응하는 특허 존속기간의 일부를 공중에 헌납하는 말기포기서를 동반해야 한다. 1995년 6월 8일 이전에 제출된 유틸리티 또는 식물 출원에서 본 조에 따른 회복 청원을 하는 경우에도 § 1.321에 규정된 수수료와 함께 다음 중 더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특허 존속기간의 일부를 공중에 헌납하는 말기포기서를 동반해야 한다:

(i) 출원의 포기 기간; 또는

(ii) 미국에서 특허 출원이 제출된 날짜로부터 20년을 초과하는 기간(또는 해당 출원이 35 U.S.C. 120, 121, 365(c), 386(c)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선행 출원에 대한 특정 참조를 포함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제출된 해당 출원의 제출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2) 본 조 제(d)(1)항에 따른 모든 말기포기서는, 1995년 6월 8일 이전에 제출된 계속 유틸리티 또는 식물 출원, 또는 계속 디자인 출원 중에서, 35 U.S.C. 120, 121, 365(c), 또는 386(c)에 따른 특정 참조를 포함하는 출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본 조 제(d)(1)항의 규정은, 회복이 1995년 6월 8일 이후 제출된 유틸리티 또는 식물 출원과 동시계속(copendency)만을 목적으로 요청되는 경우, 재발행 출원, 또는 재심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 재고요청(Request for reconsideration).

본 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에 근거한 포기 출원 또는 종료되었거나 제한된 재심사 절차의 회복 거부 결정에 대한 재고요청 또는 심사 요청은, 적시로 간주되기 위해, 회복 거부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규정에 따라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1) 포기 출원의 경우 § 1.136의 규정;

(2) § 1.510에 따라 제출된 단독심사(ex parte) 재심사 절차의 종료에 대해서는 § 1.550(c)의 규정;

(3) § 1.913에 따라 제출된 쌍방심사(inter partes) 재심사 절차의 종료 또는 추가 절차가 제한된 경우에는 § 1.956의 규정.

(f) 해외 출원 통지 불이행으로 인한 포기.

35 U.S.C. 122(b)(2)(B)(iii)에 따라, 외국 또는 출원 후 18개월 공개를 요구하는 다자조약에 따라 출원이 제출되었음을 적시에 사무국에 통지하지 못해 포기된 비잠정 출원은, 본 조에 따라 회복될 수 있다. 본 조 제(c)항의 회신 요건은 해당 외국 또는 다자조약에 따른 출원 사실의 통지로 충족된다. 다만 본 조에 따른 청원의 제출은 해당 출원에 진행 중인 어떠한 회신 기한도 정지(stay)시키지 않는다.

(g) 잠정출원(Provisional applications).

사무국 요구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아 포기된 잠정출원은 본 조에 따라 회복될 수 있다. 35 U.S.C. 119(e)(3) 및 § 1.7(b)의 규정에 따라, 잠정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후에는 계류(pending) 중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7CFR 제1.137조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제출기한을 놓쳐 출원이 포기되었거나, 심사절차가 종료 또는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연에 고의가 없는 경우(unintentional)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컨대 등록료 또는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미대응으로 소멸된 권리 및 재심사의 종료로 인해 소멸된 권리에 대하여도 37CFR 제1.137조가 적용된다.

37CFR 제1.137조 각 항은 (a) 고의가 없는 경우에 대한 권리구제, (b) 권리구제의 요건, (c) 상황별 제출서류, (d) 포기서약서, (e) 재심청구, (f) 외국출원 미통지로 인한 포기 및 (g) 임시출원의 복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권리구제가 가능한 절차의 유형으로는 포기된 출원(abandoned application), 종료된 재심사⁷⁶⁾, 및 제한된 재심사(CFR § 1.957(c))이다.⁷⁷⁾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시된 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미제출된 신청서 또는 이미 제출된 신청서 및 신청 수수료의 납부, 필요한 경우 소멸된 기간에 대한 권리향유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포기서약서(Terminal Disclaimer) 및 기간 미준수가 비의도적이었음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⁷⁸⁾

76) 37CFR § 1.550. (d) ; 37CFR § 1.957. (b)

77) 37CFR § 1.137. (a)

78) 37CFR § 1.137. (b)

(c)항은 상황별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응답사항을 규정한다. CFR § 1.57(a)에 따라 포기된 출원의 경우, 이전에 제출된 출원의 명세서 사본 및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료 또는 그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포기된 출원 또는 권리의 경우, 필요한 답변에는 등록 수수료 또는 미납 잔액의 납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아 포기된 출원의 경우, 연차료의 납부가 포함되어야 한다.⁷⁹⁾ 심사불응에 따라 포기된 출원의 경우 계속 출원을 제출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1995년 6월 8일 이후에 제출되고 CFR § 1.114(b)에 출원의 경우, CFR § 1.114에 따라 계속 심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⁸⁰⁾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는 반드시 포기서약의 제출이 필요하다. USPTO의 포기서약서는 소멸된 기간에 대해서 권리를 향유하지 않겠다라는 취지, 즉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단축함에 동의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⁸¹⁾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포기된 출원 등에 대해 CFR § 1.137에 따라 권리회복을 청구하였으나, USPTO가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절통지를 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결정문에서 별도의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 기간을 따른다.⁸²⁾ 외국출원의 사실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아 포기된 출원의 경우에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해당 청구는 기존의 다른 기한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⁸³⁾ 임시출원이 포기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후에는 구제가 불가능하다.⁸⁴⁾

표 33 미국 특허법 상 기한구제 및 권리회복

구분	기한전연장	기한후연장	절차계속	권리구제
USPTO	○	○	×	○

한편 권리회복의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비고의(Unintention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출원, 심사, 설정등록, 특허료 납부 등의 절차에 있어 다양한 권리회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법상 권리회복의 허용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출원인 등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해태한 것이 ‘비의도적’ 이었는

79) 다만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에는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디자인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0) 37CFR § 1.137. (c)

81) 37CFR § 1.137. (d)

82) 37CFR § 1.137. (e)

83) 37CFR § 1.137. (f)

84) 37CFR § 1.137. (g)

지 여부이다. 따라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의도적인 지연이 있는 경우 권리회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회복 기간과 관련해 대부분의 국가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기간 해태 후 12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비의도성이 입증되면 회복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공중의 감시 부담이나 법적 안정정보다는 출원인 등의 절차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⁵⁾

나. 일본

일본은 PLT에 가입하면서 특허법을 조약에 맞추어 개정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일본 의장법의 상당 부분에서 특허법을 준용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연관되는 특허법의 내용을 함께 살펴도록 한다. 먼저 기한의 구제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특허법 제5조를 준용한다.⁸⁶⁾ 일본은 PLT의 이행을 위하여 2015년 특허법 개정을 실시하면서, 기간에 관한 법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였다.

일본 특허법은 기간의 연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특허법 제5조 제1항), 규정하는 기간 경과 후의 제출기한 등의 연장청구에 관하여 특허법 제5조 제3항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기간연장청구 등의 양식)에 따라 특허청장 및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에 대하여 2개월에 한하여 연장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 특허권존속 연장등록출원, 특허이의신청, 심판, 재심 혹은 판정청구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간에는 기간연장청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 34 일본 특허법 및 시행령상 기간에 관한 규정

일본 특허법 제5조 ① 특허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할 기간을 지정한 경우,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지정한 경우,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연장(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일본 특허법 시행령 제4조의2 (기간연장청구 등의 양식 등) ⑤ 특허법 제5조 제3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것으로 한다).

85) 지선구 · 이윤직 · 이진형, “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2021.9) 125면.

86) 의장법 제68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기간 및 기일)의 규정은 이 법에 규정하는 기간 및 기일에 준용한다. (이하 생략)

1.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간(특허권존속연장등록출원, 특허이의신청, 심판, 재심 혹은 판정청구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 특허청장이 지정한 기간은 제외한다)에 관한 연장
 2.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특허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있어서 동법 제48조의7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또는 동법 제67조의4(동법 제67조의 8에 있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163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동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은 제외한다)에 관한 연장
- ⑥ 특허법 제5조 제3항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간은 특허청장관 또는 심사관이 절차로 정해야 하는 지정기간의 말미(해당 기간의 말미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때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간의 말미)의 다음 날로부터 2개월로 한다.

PLT의 반영을 기준으로 권리의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2011년과 2014년, 201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특허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권리의 구제와 관련된 특허법 조문 및 의장법의 준용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 일본 특허법상 기간 관련 주요 개정 사항

내용	특허법 해당 조문	의장법 대응조문or준용여부
번역문 제출에 대한 권리구제	특 제36조의2 제4항, 제5항	-
PCT 출원 번역문 제출에 대한 권리구제	특 제184조의4 제4항, 제5항	-
구제절차에 의한 국내 공표의 시기	특 제184의9	-
구제절차에 의해 번역문이 제출된 경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구제절차	특 제184조의11 제4항	-
특허로 추납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절차	특 제112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분할출원 기간 경과 후의 구제절차	특 제44조 제7항	-
특허로 납부기간 경과 후의 구제절차	특 제108조 제4항	제43조 제4항
특허로 반환청구기간 경과 후 구제절차	특 제111조 제3항	-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경과 후 구제절차	특 제195조 제13항	제67조 제9항
기간 경과 후의 PCT 출원의 구제절차(특허관리인의 선임 관련)	특 제184조의11 제3항, 제4항	-

일본에서 기간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의 이력을 살펴보면, 절차기간의 도과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 등에 대한 회복요건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완화하였고, 권리를 회복하는 경우, 회복 수수료를 징수하는 개정이 있었다. 일본의 종래 권리회복 제도 하에서는 수속 회복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실제 '상당한 주의' 기준을 채용하는 나라에서 60%~95%의 인용률을 보이는 것에 반해 일본은 10~20% 정도로 눈에 떨어 정도로 낮아 각국 주요국의 산업재산제도에 비해 수속 회복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⁸⁷⁾

둘째, 이 과정에서 일본은 PLT에 가입을 준비하면서 법 개정을 실시하게 된다. PLT는 권리 등 회복제도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의 하자나 절차기간의 불준수에 의한 권리 등의 상실을 피하기 위해 '절차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된 권리의 상실을 야기했을 때'⁸⁸⁾에 일정 요건 하에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것을 계약국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특허법조약의 계약국이 되었고, 이 조약의 체결은 특허권 등의 권리회복 제도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PLT 및 STLT 가입(2016년 6월)에 앞서 권리 등의 회복제도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1년, 산업재산권 법제의 일련의 개정에서 '상당한 주의' 기준을 채용하여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에 비해 완만한 요건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어 2014년 특허법 등의 개정에서 출원심사의 청구나 우선권에 대해 권리 등의 회복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구제 대상을 확충해 왔다.⁸⁹⁾

2016년 PLT 및 STLT 가입 시에도 일본은 '상당한 주의 기준'을 채용하고 2011년 특허법 등의 개정에서 정한 요건인 '정당한 이유'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령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비고의' 기준을 선택했을 경우는 제도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특허청의 처분 이후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정당한 이유'에 대해 신중하게 해석하여 운용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최근 국내외의 출원인 등으로부터 일본 권리 등의 회복을 위한 판단기준 및 입증부담은 유럽 등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⁹⁰⁾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인용률 향상, 신청자의 부담 경감 및 회복신

87) 최승재, 「특허법상 특허출원, 특허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사유' 요건 검토」, 특허청 정책연구 보고서, 2023, 16면.

88) PLT 제12조 관련

89) 최승재, 위의 보고서, 17면 참조.

90) 실태적으로 PLT에 가입하는 여러 나라의 권리 회복 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고의가 아닌 기준을 채용하는 나라에서는 90% 이상이며, 또 상당한 주의 기준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도 60% 이상이지만 일본의 인용률은 눈에 떨어 정도로 낮다(10~20% 정도). 또한 절차면에서도 증거서류 제출을 필수로 하고

청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개정법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는 법제에서 '기간도과가 고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법제로 완화하였다. 즉 일본은 PLT에서 제시된 2가지 기준 중에서 고의가 아닌 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다. PLT에서의 권리 등의 회복을 위한 요건을 '상당하는 주의기준'에서 '고의가 아닌 기준'으로 전환하고 특허법 등에서 절차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구제를 인정하는 요건에 대해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여부'의 정당한 이유 기준에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라는 기준(고의 기준)으로 개정하였다.⁹¹⁾

이어 2023년 4월 1일자 특허법의 개정을 통하여,⁹²⁾ 일본에서의 기간 도과 후의 구제에 관한 회복요건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완화되었다. 소정의 지정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후 절차를 밟을 수 있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및 절차기간의 경과 후 1년 이내(상표의 경우 6월 이내)에 소정의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없었던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회복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해야하는 기간의 경과 후 2월 내에 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특허법 또는 의장법 내에서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제18조에 상응하는 권리회복 일반을 규정하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상 기간이 도과한 후의 구제에 대하여 가이드라인(期間徒過後の救済規定に係るガイドライン)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표 36 기간도과 후의 권리회복의 대상이 되는 절차

- 디자인권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의 제출(의장법 제4조 제4항)
-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의 변경(특허법 46조 제5항)
- 등록료의 납부(의장법 제43조 제4항)
- 이미 납부한 등록료의 반환 청구(특허법 제111조 제3항)
- 가산 등록료의 면제(의장법 제44조 제2항)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의장법 제46조 제2항)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운용되고 있었다.

91) 최승재, 위의 보고서, 19-20면 참조.

92) 일본의 경우 소멸특허권의 회복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주요국의 산업재산제도에 비해 소멸특허권의 회복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점을 개정의 논거로 제시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고의로 소멸시킨 경우가 아니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최승재, 위의 보고서, 51면.

- 재심의 청구(특허법 제173조 제2항)
- 출원심사 청구 수수료 또는 과오납 수수료의 반환 청구(의장법 제67조 제9항)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의 청구(의장법 제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6조 제2항)
- 의장법 제6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 출원으로 간주된 국제출원에 관한 개별 지정 수수료의 반환청구(의장법 제60조의22 제3항)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 제출(의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회복수수료의 면제(수수료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간을 도과한 이유가 ‘고의’로 판단되어, 구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⁹³⁾⁹⁴⁾

표 37 일본에서 권리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의 예시

- **(기간 도과 후의 회사의 방침의 전환)**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심사청구기한까지 출원심사의 여부에 대하여 회사에서 검토한 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출원심사청구기간이 지난 이후 사내의 방침전환에 의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기로 하고 회복이유서를 제출하였다.
- **(현지 대리인의 지불 지연)** 현지 대리인은 출원인에게 국내이행 절차를 안내하면서, 출원인이 평소부터 수수료 납부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이행 절차를 지정국의 대리인에게 의뢰하는 조건으로, 의뢰 기한까지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할 것을 명시하여 이메일로 의뢰하였다. 현지 대리인은 출원인으로부터 “국내이행 절차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의뢰 기한까지 수수료의 사전 납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수령하였다. 의뢰 기한까지 수수료 납부가 없었으므로, 현지 대리인은 번역문 제출을 포함한 국내이행 절차를 지정국 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았다. 그 후, 출원인이 국내이행 기한을 도과한 뒤 국내이행 절차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회복 신청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고,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복이유서를 제출하였다.
- **(권리포기 결정 후 타사로부터의 조회)** 사내에서 특허권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특허료 납부 및 추가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납부 기한이 도과한 후, 다른 회사가 소멸한 특허권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권리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전환하고 회복이유서를 제출하였다.
- **(금전적 사정에 따른 경영판단)** 경영 상황이 어려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융자를 받을 수 없었다. 직원의 고용을 우선하기 위해 특허권을 유지하지 않기로 판단하여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추가납부 기한이 도과한 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상황이 개선되었으므로,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전환하고 회복이유서를 제출하였다.
- **(폐업 후 후계자의 등장에 따른 사업 재개)** 신청인(서비스업)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93) 다만 제시한 사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사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제가 인정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94)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kyusai_method2.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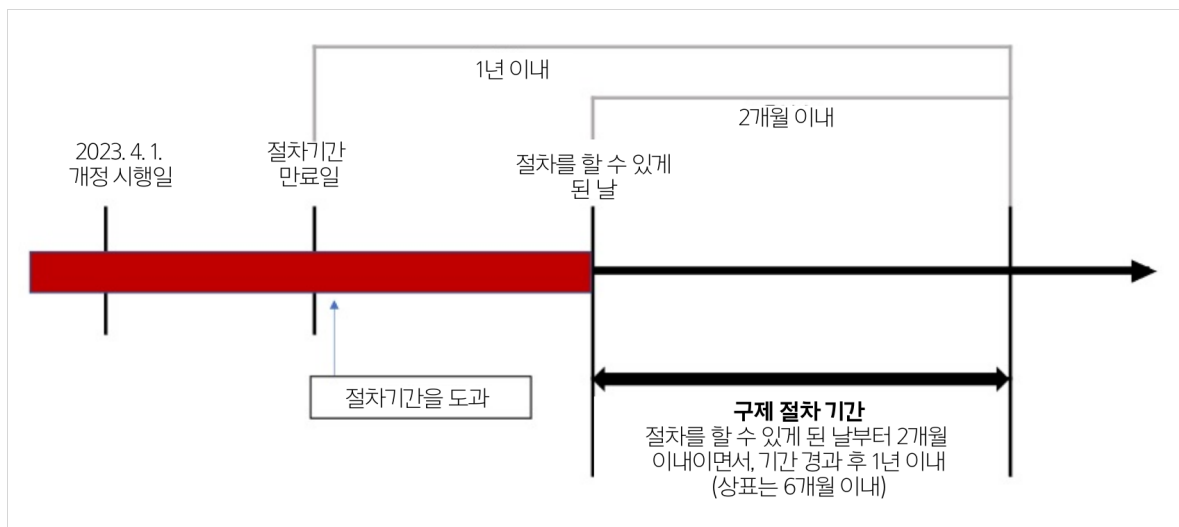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하기로 하였다. 폐업하기 때문에 상표권의 갱신등록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갱신등록 신청 절차 기한을 도과한 후, 후계자가 나타나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회복이유서를 제출하였다.

- **(공유자가 간의 조정부족으로 인한 절차 도과)** 권리자 A와 B가 공유하는 특허권에 대하여, 양자 간 권리 유지 여부에 관한 조정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특허권 유지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추가납부 기한을 도과한 후, A와 B가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전환하고, 납부 절차 등 세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회복이유서를 제출하였다.
- **(납부서의 불비에 관한 보정지시에 대응하지 않아 절차가 각하된 경우)** 특허로 연차 납부서의 내용에 불비가 있어 보정지시를 받았으나, 권리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정 절차를 하지 않았고, 납부서가 절차 각하되었다. 그러나 추가납부 기한을 도과한 후, 권리를 유지하고자 방침을 바꾸어 회복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표 38 일본 특허법/의장법 상 기한구제 및 권리회복

구분	기한전연장	기한후연장	절차계속	권리구제
JPO	○	○	×	○

그림 11 일본에서의 권리회복에 관한 규정



다. EU

EU 디자인 규정(EU Design Regulation (Regulation (EC) No 6/2002,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4/2822))⁹⁵⁾ 에 의해 개정된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Community Design Regulation, 이하 ‘CDR’)⁹⁶⁾ 는 제67조에서 권리구제를, 제67a조에서 절차계속을 규정한다.

표 39 EU CDR에서의 권리회복 관련 규정

제67조 권리회복(Restitutio in integrum)

1. 등록된 EU 디자인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 또는 사무국 앞의 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당사자가, 당해 상황에서 요구되는 모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 대한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한 미준수가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수단의 상실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출원에 따라 그의 권리가 회복된다.
2. 출원인은 기한 미준수의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누락된 행위는 해당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출원은 준수되지 않은 기한의 만료 직후 1년의 기간 내에서만 허용된다. 등록갱신 신청의 미제출 또는 갱신료의 미납의 경우, 제50d조 제3항에 규정된 등록 만료 후 6개월의 추가 기간은 1년 기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3. 출원서는 그 근거가 되는 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의존하는 사실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회복을 위한 수수료가 납부되기 전에는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권리회복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환급된다.
4. 누락된 행위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 부서는 그 출원에 대해 결정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항 및 제41조 제1항에 언급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등록된 EU 디자인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권리가 회복된 경우, 해당 출원 또는 등록된 EU 디자인의 권리 상실 시점과 그 권리의 회복이 언급된 공보의 공지 사이의 기간 동안, 선의로 등록된 EU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디자인이 구현되었거나 적용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7. 제6항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제3자는, 해당 권리의 회복이 언급된 공보의 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된 EU 디자인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권리 회복 결정에 대해 제3자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8.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본 규정에 규정된 기한 중 특정 회원국의 당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하여 해당 회원국이 권리회복을 인정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67a조 절차의 계속(Continuation of proceedings)

95) Regulation (EU) 2024/2822은 2024년 12월 8일 정식 발효되었으며, 주요 조항들의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추가적인 조항들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96) Regulation (EU) 2024/2822에 따라 EU의 디자인 보호 제도는 더 이상 ‘Community desig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EU design’을 중심으로 재정비되고 있다. 다만 법령의 연혁상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라는 명칭은 개정 규정의 형식상 유지되고 있는 바, 이하 보고서에서 해당 법령을 명칭할 때에는 CDR로 표기한다.

1. 등록된 EU 디자인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 또는 사무국 앞의 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당사자가 사무국에 대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누락된 행위가 이미 수행된 상태라면, 요청에 따라 절차의 계속을 받을 수 있다. 절차 계속에 대한 요청은 준수되지 않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절차 계속 요청에 대한 수수료가 납부되기 전에는 해당 요청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절차의 계속은 다음의 기한 미준수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a) Article 38, Article 41(1), Article 44(1), Article 45(3), Article 50d(3) 및 Article 67(2)에 규정된 기한;
 - (b) 본 규정의 Article 55(2)와 결합하여 적용되는 Regulation (EU) 2017/1001의 Article 68 및 Article 72(5)에 규정된 기한;
 - (c)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3. 누락된 행위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 부서는 절차 계속 요청에 대해 결정한다.
4. 사무국이 절차 계속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기한 미준수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한 만료와 절차 계속 요청 제출 사이에 결정이 내려진 경우, 누락된 행위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 부서는 해당 결정을 재검토하여, 누락된 행위의 완료 자체가 충분한 경우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검토 후, 사무국이 원결정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해당 결정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5. 사무국이 절차 계속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수료는 환급된다.

CDR 제67조는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주의(due care)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EUIPO에 대한 기한 준수를 하지 못한 경우, 그 불이행이 권리의 상실이나 구제 수단 상실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 권리회복(restitutio in integrum)이 가능함을 규정한다. 이 때 준수하지 못한 원인이 제거된 후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누락된 행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단 이 경우라도 기한 도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⁹⁷⁾ 형식적으로 신청서에 사유 및 사실 기재가 필요하며, 회복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⁹⁸⁾ 누락된 행위에 대하여 관할 부서가 회복여부를 결정하나 일부 특정 기한(ex. 갱신 청구 관련)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권리회복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권리가 상실된 기간 중 선의로 제품을 시장에 낸 제3자에 대해서는 회복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는 권리회복 결정에 대하여 2개월 내 불복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97) 다만 갱신료 미납 관련해서는 별도의 6개월 추가기간은 1년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98) 모든 주의를 다했음이 입증되면 회복 수수료는 환급된다.

CDR 제67a조는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절차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준수하지 못한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는 절차의 계속이 허용된다. 이때 절차의 계속을 위한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의 계속이 허용되지 않는다.⁹⁹⁾

CDR 제67조와 제67a조는 모두 기한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구제하는 절차이나 적용요건이나 절차, 효과가 상이하다. 제67조는 권리가 이미 소멸한 경우에 대응하여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반면 제67a조는 기한을 놓쳤으나 아직 확정적인 권리상실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구제로서, 이 경우에는 단지 기한 미준수의 효과를 취소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즉 제67조는 예외적·엄격한 특수회복 제도이며, 제67a조는 실무적 구제제도로 볼 수 있다. 제67조와 제67a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0 CDR 제67조와 제67a조의 비교

구분	제67조 (권리회복)	제67a조 (절차의 계속)
취지	이미 권리상실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권리를 회복	기한을 놓쳤지만 권리 상실이 아직 확정되기 전, 미준수의 효과를 없던 일로 함
요건 수준	모든 상당한 주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상실이 발생하였을 것	누락된 행위를 완료하기만 하면 됨
요청시점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최대 1년 이내 제한	기한 만료 후 2개월 이내
누락된 행위의 제출	출원과 함께 동시에 제출할 필요 없으며, 2개월 이내에 보완	요청 시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함(사전 완료 필수)
수수료	권리회복 수수료 : 회복 인정시 환불	절차계속 수수료 : 거절 시 환불
적용제한	일부 기한에 대하여는 적용불가	법이 지정한 특정 기한에 대하여는 적용불가
효과	상실된 권리가 부활	기한 미준수의 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제3자 보호조항	있음(선의의 제3자 판매자에 대한 권리 주장 제한)	없음

99) (EU) 2024/2822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3항, 제50d조 제3항 및 제67조 제2항, (EU) 2017/1001 제68조 및 제72조 제5항과 본 규정 제55조 제2항 및 절차의 계속에 관한 기한 그 자체의 연장

한편 EUIPO의 「Design Guideline」에서도 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⁰⁾ EUIPO 절차에서 기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법령(EUTMR, EUTMDR, EUTMIR, EUDR, EUDIR)에 의해 정해진 기한으로 이는 강행 기한이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¹⁰¹⁾ 둘째, 비강행적(non-mandatory) 기한은 EUIPO가 지정한 기한으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규정은 엄격한 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일정한 구제수단을 두어 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제 수단은 기한이 아직 진행 중인지, 또는 만료되었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기한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EUDIR¹⁰²⁾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기한의 연장(extension of time limit)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UDR¹⁰³⁾ 제67조에 따라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모든 합리적인 주의, all due care)을 충족하면 복원 신청이 가능하다.¹⁰⁴⁾

표 41 EU CDR 상 기한구제 및 권리회복

구분	기한전연장	기한후연장	절차계속	권리구제
EUIPO	○	×	○	○

4. 그 밖의 검토사항 : 권리회복의 요건 관련¹⁰⁵⁾

지식재산처의 행정력 투입 정도, 절차가 회복됨으로 인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Unintentional, 비고의)과 일본(故意によるものでないこと, 고의가 아

100)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EU) 2024/2822가 아닌 EUDIR을 기준으로 기술하고 있다. EU Design Guideline 2025. 1. 5. 발효버전 참조, Trade mark and Design guidelines-Part A General rules-Section 1 Means of communication, time limits-4 Time Limits Specified by the Office, <<https://guidelines.euipo.europa.eu/2231430/2233442/designs-guidelines/4-time-limits-specified-by-the-office>>

101) 참고로 기한의 연장과 관련한 EU의 상표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EUTMDR 제68조(기한의 연장) 규정 (EU) 2017/1001, 시행규칙 (EU) 2018/626 또는 본 규정에서 정한 특정 기한 또는 최대 기한을 전제로 하여, 사무국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된 신청이 있는 경우 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은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절차 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 사무국은 기한 연장을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102) European Union design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2245/2002, (last update : 2007. 7. 24.)

103) European Union design regulation, (EC) No 6/2002 (last update : 2006. 12. 18.)

104) 현재 EU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EU) 2024/2822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상표에 관한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에 관하여는 기한연장+절차계속+ 및 권리구제가 모두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105) 최승재, 위의 보고서, 46면 이하를 참고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닌 것)과 같은 기준으로 법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에서는 출원인 등과 특허청 간 각종 절차의 원활한 처리나 제3자의 감시부담 등을 배려하여 출원인 등이 일정한 기한까지 특정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 등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잃거나 앞선 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한이 경과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정에 의해 실체적으로는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발명 등이 경미한 절차의 실수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권리로서 활용되지 않게 되는 등 출원인 등에게 가혹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절차기간을 과도한 것에 의해 일단 상실된 권리나 우선권을 회복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각국의 입법 정책의 문제이긴 하나, 권리의 회복 규정에 대하여 PLT 조약의 체결국들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의도적인 소멸의 경우의 권리회복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PLT 조약의 체결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2가지 기준 중에서 비의도성(고의) 기준과 달리 상당한 주의 기준은 논란이 있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¹⁰⁶⁾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의 2021년 법개정 이유에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 등의 권리화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같은 절차의 하자에 기인하는 기간 도과에 의해 상실된 권리 등이 타국에서는 회복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의 권리가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권리회복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제3자 보호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입법방향도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과 대비하여 상

106) 비의도적 요건은 출원인 등이 기간을 해태할 의도가 없음을 피력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비의도성을 주장하면 대부분 인정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상당한 주의” 요건은 특허법조약 초안 마련 당시 주요국 간에 이견이 많았다. 미국이나 영국·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상당한 주의” 요건에 부과된 “주의(care)”의 수준과 관련하여 너무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하면 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 기준의 쟁점은 출원인의 통제(control)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적용할지 또는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인원에 의존하는 경우에도 적용할지의 차이라고 보고, 특허법조약에 따른 권리 구제가 모든 체결국에서 사실상 의미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합의된 성명서(agreed statement)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일본이나 아르헨티나·그리스 등 중진국들은 “상당한 주의”나 “비의도성”에 대한 해석은 체결국 관청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권리회복에 따른 제3자의 불이익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관청은 권리회복과 그에 따른 영향 간의 균형을 판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적으로 권리회복기준이 엄격하여 덜 보호받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타당하다고 본다.

표 42 주요국의 기한 연장 및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

구분	기한전연장	기한후연장	절차계속	권리구제
USPTO	○	○	×	○ (비고의)
JPO	○	○	×	○ (고의가 아닌 것)
EUIPO	○	×	○	○ (합리적인 주의)
MOIP	○	×	×	○ (정당한 사유)

5. 법 개정방향(안)

이하에서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해당 목차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법개정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4장에서 제시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방안과 상이할 수 있다.

기한의 구제와 권리회복을 연동하여 생각해볼 때 세 가지의 방법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기한 내의 구제만을 규정하되 권리회복의 사유를 완화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1안). 둘째, 기한내 구제 이외에도 기한 외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권리회복의 사유를 완화하는 방식으로의 개정을 생각해볼 수 있다(2안). 셋째, 기한 내의 구제와 함께, 절차의 계속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권리회복의 사유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수 있다(3안).

표 43 기한의 구제 및 권리회복 관련 법개정을 위한 방법론

- (1안) 기한 내 구제 + 권리회복의 조합으로 법 개정
- (2안) 기한 내/기한 외 구제 + 권리회복의 조합으로 법 개정
- (3안) 기한내/절차계속 + 권리회복 조합으로 법개정

가. (1안) 기한 내 연장과 권리회복의 요건 완화

우리 법에서 이미 기한 전 연장 및 권리구제에 관한 조문을 이미 법에서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토대로 보완하는 1안이 가장 쉬운 개정일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기간의 연장)을 기준으로, 지정 기간 중 기한 내 연장 또는 권리구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별 조문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개정방안을 구성할 수 있다. 우리법은 법 제38조제2항(출원 보완), 제47조(절차 보정), 제63조(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에 대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기간(1~2개월)도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기한 만료 전의 연장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지정기간이 있는 그 밖의 조문이 존재여부를 검토하고 기한 내의 연장을 규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의 일부개정은 입법목적 및 절차 규정의 성격상 개정시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부담이 낮아 때문에 빠른 개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된다.

한편 1안의 경우는 권리회복과 관련하여 반드시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권리회복의 경우 우리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의 경우 DLT에서 요구하는 요건(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산업재산권 전반의 논의로 확장하여 살펴보면, 특허권의 회복 요건인 ‘정당한 사유’¹⁰⁷⁾를 인정받는 비율이 약 15.6%에 불과하여 회복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특허권 회복신청자 중 국내 개인·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4.6%에 달하고 있다는 점 등, 동 제도의 수혜대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허권 소멸 사례 중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¹⁰⁸⁾도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권리회복 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07) 개정 당시 특허청은 권리회복요건이 ‘정당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 출원인의 지병,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오안내, 특허료(등록료) 납부 오류 등을 ‘정당한 사유’의 사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108) 카이스트가 미납한 특허료를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스트는 2019년 4월 29일 특허청에 특허 2건을 등록하면서 최초 3년 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4년차 특허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서 특허권이 소멸되었다. 카이스트 측은 특허등록을 대리한 변리사를 통해 특허료 납부를 전문업체 A사에 맡기려하였으나, 변리사가 특허료 납부업무를 A사에 넘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에는 업무를 A사에 맡겼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카이스트 측은 특허 두 건에 대한 4년차 특허료를 ‘추가납부기한’에도 내지 못하면서 권리를 잃게되었으며, 이후 특허권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회복등록신청기한’도 넘기면서 최종적으로 권리가 상실되었다. 카이스트 측은 “특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특허료 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임하기로 하는 등 일반적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업무 이관 중 발생한 문제로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선목, [법조 인사이드] 카이스트 “미납한 특허료 내게 해달라”며 2심 소송까지 하는 사연은..., 조선비즈 2025. 6. 3. 기사 참조,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6/03/P7EJX4362VALRMIYBZHQVLBJ34/>

표 44 정당한 사유(제81조의3제1항)로 특허권 회복 신청 현황('22.4.~'24.12.)

출원인 유형	회복 신청건(비율)		인정(비율)		불인정(비율)	
대기업	3	(0.7%)	0	(0.0%)	3	(100.0%)
중견기업	22	(4.8%)	1	(4.5%)	21	(95.5%)
중소기업	236	(51.1%)	33	(14.0%)	203	(86.0%)
공공연구기관	4	(0.9%)	1	(25.0%)	3	(75.0%)
대학교	21	(4.5%)	0	(0.0%)	21	(100.0%)
외국법인·개인	15	(3.2%)	6	(40.0%)	9	(60.0%)
내국개인	155	(33.5%)	30	(19.4%)	125	(80.6%)
기타(내국법인)	4	(0.9%)	1	(25.0%)	3	(75.0%)
비영리기업	2	(0.4%)	0	(0.0%)	2	(100.0%)
전체	462	(100.0%)	72	(15.6%)	390	(84.4%)

이러한 상황에서 살펴보면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의 경우에도,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83조에서는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등록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등록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어,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언급한 문제 등에 대응하여 2024년 11월, 국회에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기도 하다.¹⁰⁹⁾

10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5628)

표 4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5628)

현행	개정안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u>정당한 사유</u> 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 ----- - <u>고의</u> -----

지정요건에 대한 권리회복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제적인 동향을 참고하여, DLT에서 요구하는 권리회복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권리회복 수단을 ‘고의가 아닌 것’으로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¹¹⁰⁾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⑥ (생략) <u><신설></u>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u>였을 때</u> 5. (생략) ③ (생략)	----- --<u>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등록료의 3배를 낼</u>---. <u><단서 삭제></u> ② -----<u>낸</u>-----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낸</u>----- -----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냈을</u>-----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다만, DLT 규정상 절차 미이행이 직접적으로 권리상실을 초래할 있는 경우에는 권리회복이 필요하며,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예외로 인정한 절차에 대해서는 권리회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시 회복 대상과 회복불가 대상을 구분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표 46 DLT 제15조에 따른 권리회복/제외 대상

권리회복 허용대상	회복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
- 출원 수수료 납부 기한(DLT 제15조제1항) - 보정서 제출 기한 - 우선권 증명서 제출 기한 - 갱신 수수료 납부 기한 - 명세서, 도면 등 보정 기한 - 등록료 납부 기한	- 절차구제 신청기한 자체 - 권리회복 신청기한 자체 - 심판, 재심 등 불복절차의 기한(행정청 외부의 준사법적 절차는 권리회복 대상 아님) - 당사자계 절차의 기한 - 신규출원일 부여를 위한 선언제출 기한 - 법정기간(ex 통지기간)

나. (2안) 기한 도과 후의 연장 (신설)

DLT의 경우 PLT와는 달리 조약 제15조 제1항에서 ‘기한 외의 연장’과 ‘절차의 계속’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국 기한 내의 구제 뿐 아니라 ‘기한 외 구제’와 ‘절차의 계속’이 DLT에서 요구하는 기한 구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 구제에 더하여 기한 외 구제나 절차의 계속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기한 외의 구제, 즉 지정 기간을 도과한 후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관련하여 일본의 특허법¹¹¹⁾ 및 특허법의 입법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10)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등장한 반대의견이 참고할만하다. ; 미국 등 많은 나라의 입법례는 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소멸에 앞서 국가가 미리 권리자에게 그에 관하여 통지를 하고 있으며, 또한 권리자에게 비자발적(unintentional)이거나 피치 못할(unavoidable)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후에 다시 소멸된 권리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이중 삼중의 방어장치를 구비하였을 경우 권리자에게 “권리소멸”이라는 법적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2. 4. 25.자 2001헌마200 전원합의체 결정 중 반대의견

111) 일본 특허법 제5조 (기간 연장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한 것에 한한다)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표 4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011)과 디자인보호법의 기간의 연장 비교

디자인보호법	현행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②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②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u><후단 삭제></u>
		③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심판에 관한 절차는 제외한다)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년에 제안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한만료 후의 지정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절차 계속 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절차 계속제도는 기한만료 후 통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행정청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키고, 기간 경과 후 이미 행해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제3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¹¹²⁾ 이에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조약에 규정된 사항 외의 추가적인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한 연장의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제안하였다. 이는 일본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과도 동일하다.

112)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설명자료(2011.8.) 참고

표 4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중 기한 외 연장 관련

구분	PLT	기존	개정안
대상 기간	모든 지정기간	하나의 법정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모든 지정기간 * 하나의 법정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신청 기한	만료 전은 물론 만료일부터 최소 2개월	만료 전	만료 전은 물론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요건	서명+취지+기한 +요건준수(△)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된 별지 제10호 서식
적용 제외 대상	2차적 구제 기한 기한연장신청 기한 특허유지료 납부 기한 우선권주장 기한 심판원 절차 기한 복수당사자간 절차 기한	-	2차적 구제 기한 심판원 절차 기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한편 기한 외의 연장을 위하여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실제 실무에서는 기한 경과 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법문에 근거한 명시적 제한이라기보다는 관행과 해석에 기반한 행정 운영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감안할 때, DLT 제14조제1항나호에서 요구하는 ‘기한 만료 후의 구제’를 반드시 법률 수준에서 새롭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실무 운영지침 또는 신청서 작성요령 등 행정 내부 기준의 정비를 통해 수용할 여지는 없는 지를 검토해볼 수 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 행정청이 설정한 절차기한에 대해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 조문 상으로는 그 연장이 반드시 기한 만료 이전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달리 말하면 기한 경과 후에도 허용 가능한지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는다. 한편 특허청의 기간연장 신청서 작성요령¹¹³⁾에서는 지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그 소멸일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디자인보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고려한 방식이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심사기준 등을 개정하여 지정기간 경과 시에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이

11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기간연장신청서, 기간단축신청서, 기간경과 구제신청서, 절차 계속신청서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국제조약 이행 최소조건을 빠르게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다. (3안) 절차의 계속 (신설)

또 다른 방식으로 상표법에서의 사례와 같이 절차계속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상표법은 ‘거절이유통지’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당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¹¹⁴⁾

해당 내용은 2013년 상표법 개정 시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개정이유에서 절차의 계속을 신청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에 수반한 시행규칙의 개정에서, 출원인의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의견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등록거절결정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이 있으면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으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절차계속 신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¹¹⁵⁾ 그리고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STLT의 가입을 위함이라고 설명한다.¹¹⁶⁾ STLT의 경우도 DLT 및 PLT와 동일하게 기한 내의 구제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한 외 구제 및 절차 계속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상표법에서는 절차의 계속을 선택하여 개정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절차의 계속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조문에서 절차의 계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의 개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2안과 3안의 방식으로 ‘기한 외의 구제’나 ‘절차계속’을 규정할 경우에는 DLT 제15조의 권리회복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114) 「상표법」 제55조(거절이유통지)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83호 참조.

116) 상표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2013.5.14.) 참조

II.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 및 회복

표 49 조약 제16조(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 규칙 제12조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조약 본문	시행규칙
제16조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	제12조 조약 제1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①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계약당사자는 후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그러한 취지의 신청이 제출될 것 나. 해당 신청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될 것 다. 후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한 우선권 기간 만료일을 넘지 않을 것	① (조약 제16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6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신청서에 출원인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약 제16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기한) 조약 제16조 제1항 나목에 따른 신청 기한은 우선일 또는 우선권 주장 정정 또는 추가로 변경된 우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기 전까지이며, 다만, 출원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예외) 출원의 실체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약 제16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인정할 의무는 없다.
② (후출원의 지연) 계약당사자는,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출원(이하 “후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이 우선권 기간 만료일 이후이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행정청이 우선권을 회복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④ (조약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한) 조약 제16조 제2항 전단 및 제16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신청은, 우선권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종료되는 기한까지 허용되어야 한다.

조약 본문	시행규칙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그러한 취지의 신청이 제출될 것 나. 해당 신청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될 것 다. 해당 신청서에 우선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 라. 행정청이,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연에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것	⑤ (조약 제16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6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신청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출원인의 서명이 있을 것 나. 출원서에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주장을 첨부할 것
③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증거) 계약당사자는 제2항 다목에서 정한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서 또는 기타 증거를, 행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조약의 분석

우선권이란 후출원에 기재된 디자인이 선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을 그 후출원 디자인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우선권의 회복에 관한 사항은 PLT 제13조를 모델로 하고 있다.

PLT에서 따르면 우선권의 주장은 출원일 인정요건에서 명세서 등과 같은 필수불가

결한 요건이 아니라 출원인의 선택사항으로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원 당시에 우선권을 주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PLT 제5조에서는 출원일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에 ‘우선권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원 당시에만 우선권을 주장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출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에 있으며, 이에 우선권을 자유로이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다.¹¹⁷⁾ 이에 PLT에서는 우선권 주장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는 우선권 주장의 내용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고, 우선권 주장 기간이 만료된 후라고 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는 후출원을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후출원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계약국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비의도적이었다는 것을 관청이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DLT 제16조는 PLT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이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본 조항은 제출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와 이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출원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다. 또한 우선권 주장 기간이 만료된 후 후출원이 제출되었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된 경우의 우선권 회복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출원서를 우선권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연에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 또는 회복에 대하여는 PLT와 DLT가 성안되던 당시의 분위기 차이가 존재한다. PLT가 채택되던 당시는 절차적 유연성을 원칙으로 각국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였으나, DLT의 경우 국제적 조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을 더욱 강화하여 의무 수준을 높여 보정, 추가, 회복을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우선권과 관련하여 출원인에게 더 많은 유연함을 부여하는 절차를 각국의 법에 반영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가.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제16조 제1항)

계약당사국은 출원인이 후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행정청에 적법하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이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지며, 후출원의 출원일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기산한 우선권 기간을 넘지 않는 조건

117) 정차호 외, 선진 특허법제 구축을 위한 특허법 체계 전면 개편 방안 연구, 특허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0, 193면.

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출원인에게 우선권 주장의 실수를 보완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와 관련하여 PLT와 DLT는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나 PTL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라는 단서를 규정함으로써, 각국이 규칙에 의하여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의 예외를 둘 수 있는 유연성을 인정한다.¹¹⁸⁾ 하지만 DLT에서는 별도의 예외규정 없이 계약당사국은 조약에서 정한 요건을 지킬 경우 반드시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를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50 DLT와 PLT의 비교(DLT 제16조 제1항 기준)

DLT	PLT
①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the correction or addition of a priority claim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the subsequent application”), if:	① [Correction or Addition of Priority Claim] Except where otherwise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a Contracting Party shall provide for the correction or addition of a priority claim with respect to an application (“the subsequent application”), if:
①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계약당사자는 후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에 대한 보정 또는 추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①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 우선권의 회복) 규칙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계약당사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출원(“후출원”)에 관한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

해석을 위하여 용어의 의미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보정(Correction)은 이미 우선권을 주장하였는데 잘못된 사항을 고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추가(Addition)은 일부만 주장한 상태에서 누락된 우선권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는 ‘보정 또는 추가’ 라는 용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이미 했던 출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조약 규정이 우선권을 아예 주장하지 않은 출원에 대하여 보정이나 추가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출원일로

118) 출원인이 조기 공개 또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우선권의 정정 또는 추가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조기공개 또는 우선심사의 신청이 그 출원의 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계약당사자는 PLT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조개공개 및 우선심사라는 특허 제도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DLT 제16조와 PLT 제13조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파악할 수 있다.

부터 2개월 전까지는 신청 가능” 이라고 규정한 점을 보면, 이는 애초에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을 기재하지 않았던 출원인에게도 새로운 추가를 허용하는 여지를 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추가’의 개념을 활용한다면 우선권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출원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51 DLT와 PLT의 우선권 주장 및 보정에 대한 비교

구분	DLT	PLT
대상조문	조약 제16조, 규칙 제12조	조약 13조
기본방향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를 허용해야하는 의무(shall provide)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를 허용해야하는 의무, 규칙에 따라 예외허용 가능
요건	시행규칙에 따라/우선권 기한 내/후출원일이 기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시행규칙에 따라/우선권 기한 내/일정 형식 준수
정정·추가범위	사후보정 또는 추가 허용	사후 보정 또는 추가 허용
원칙	실질적 조화 (체약국에 동일수준 정정/추가 요구)	최소 조화 (예외를 두어 일정한 융통성)

나. 우선권의 회복(제1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은 우선권의 회복에 관한 규정이며, 우선권의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조문에 한하여는 유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후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 기간 만료일을 지난 경우라도, 규칙에서 정한 추가 기한 내에 출원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출원인은 규칙상 요건에 맞는 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우선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행정청은 해당 출원이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하거나, 당사국의 선택에 따라 ‘고의에 의한 지연이 아님’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권 회복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출원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를 고려해 권리를 보호하려는 장치라 할 수 있다.

다.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 회복에 관한 기타 절차(제16조 제3항~제5항)

제16조 제3항은 수수료 규정이다. 체약당사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정, 추가,

회복 신청과 관련해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차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다.

제16조 제4항은 증거 제출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당사국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출원인에게 진술서나 기타 증거 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 제출은 신청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우선권 회복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제16조 제5항은 거절 시 의견 제출 기회 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하려는 경우, 신청인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하고, 출원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2. 국내법 분석

「디자인보호법」 제51조에서 제51조의3에서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52 우선권 관련 「디자인보호법」및 하위규칙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등)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디자인권은 법률상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는 개별국에 각각 디자인을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시간, 절차 및 비용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선출원인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조약당사국 국민이 제1국에 정규의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국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1국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나라 대비 미흡한 규정이었다는 평가와, 디자인 권리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2023년 상당 부분 개정이 이루어져 현행법에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인과 우리나라의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이어야 하며, 우선권 주장의 대상이 되는 출원은 최초의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한 것이어야 한다.

나. 우선권 주장의 기간 및 절차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하여야 한다. 단,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게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우선권 주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및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¹¹⁹⁾

정당한 사유란 절차를 밟는 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사건의 발생 및 소멸 일자, ② 사건과 관계된 자, ③ 사건의 내용, ④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취한 조치를 관련 담당자와 조치내용, 조치시기에 비추어 상세하게 소명 필요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등록출원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은 원출원일이 아닌 분할출원시를 시점으로 기산한다. 특허청장은 디자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증명

119) 심사실무에서는 우선권 주장 3개월 이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미제출일 수 있으므로 만료일로부터 2개월 경과시점까지 기다린 후 심사를 진행한다. ; 「디자인심사기준」 2025. 6. 16. 263면.

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서류 중 도면의 기재내용이 디자인등록출원서상의 도면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어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는 출원 당시 우선권 주장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는 출원 당시 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우선권 주장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에 관한 출원서의 기재사항(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을 보정 및 추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그 밖에 우선권 주장에 관한 우리나라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일반적인 보정기간에 따른다.

표 53 「디자인보호법」상 우선권 주장과 DLT 비교

구분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법조약
주장의 자격	최초출원의 출원인과 동일	별도 언급 없으나, 동일 또는 승계인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의 전제	출원 당시 우선권 주장을 한 자	별도 언급 없음 우선일 또는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변경된 우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기 전까지 제출, 출원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음
기간	출원일로부터 3개월 (조약보다 출원인에게 유리)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용	출원국명, 출원종류,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규정 없음(실체사항)
요건		후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한 우선권 기간 만료일을 넘지 않을 것
예외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보정, 추가는 법정기간(3개월) 외에도 가능	실체심사 완료된 후 우선권 주장의 보정, 보정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신청을 인정할 필요 없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이 있었어야 보정 및 추가가 가능하며, DLT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의 회복, 즉 “사후 우선권 주장”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DLT 수준의 절차적 유연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가. 미국

표 54 미국 특허법(35USC) 상 우선권 관련 규정

특허법 제119조 (선출원일의 이익; 우선권)

(a) 미국 내에서 발명이 포함된 특허출원을 하는 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양수인)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미국과 동일하거나, 미국 출원 또는 미국 국민에 대하여 유사한 우선권 혜택을 부여하는 외국 또는 WTO 회원국에 이미 적법하게 특허출원을 한 경우, 그 미국 출원은 해당 외국 출원의 최초 출원일에 미국에 출원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미국 출원은 가장 먼저 이루어진 외국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연방특허청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연이 비고의적(unintentional)이었음을 조건으로 출원료¹²⁰⁾의 납부를 포함하여, 위 12개월 기간을 추가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

(b) (1) 특허출원이 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우선권 주장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외국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국 또는 출원 관할기관, 그리고 출원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제출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그리고 출원이 계속 중일 때 제출되어야 한다.

(2) 출원인이 적시에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장관은 이를 우선권 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비고의적 지연의 경우, 수수료 납부(§41(a)(7))를 조건으로 지연된 우선권 주장(delayed claim)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3) 특허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국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의 인증 사본과(영문이 아닐 경우) 번역문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인증은 해당 외국 출원 관할기관이 발행하여, 해당 출원일 및 명세서·기타 제출서류의 제출일을 증명해야 한다.

(c) 본 조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은, 최초 외국 출원 대신 후속하여 적법하게 제출된 외국 출원을 기초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의 외국 출원은 공개되지 않고 권리가 잔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포기·종결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이전 출원이 우선권 기초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d) 외국에서 출원인이 자유롭게 특허출원 또는 발명자증서(inventor's certificates)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제출된 발명자증서 출원은, 본 조항의 우선권에 관한 목적상, 미국에서는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단, 그러한 출원인은 해당 출원 시점에 파리조약 스톡홀름 개정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어야 한다.

특허법 제172조 (우선권)

제119 조(a)항부터 (d)항까지에 규정된 우선권은 디자인의 경우 6개월이다. 제119조(e)항에 규정된 우선권은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386조 (우선권)**(a) 국내출원(National Application)**

섹션 119의 (a)부터 (d)까지 및 섹션 172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국내출원은, 미국 이외의 적어도 1개국을 지정한 선행 국제디자인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b) 선행 외국출원(Prior Foreign Application).

섹션 119의 (a)부터 (d)까지 및 섹션 172, 그리고 조약 및 규칙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미국을 지정한 국제디자인출원은, 선행 외국출원, 섹션 351(c)에서 정의된 미국 이외의 적어도 1개국을 지정한 선행 국제출원, 또는 미국 이외의 적어도 1개국을 지정한 선행 국제디자인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c) 선행 국내출원(Prior National Application)

섹션 120의 조건 및 요건에 따라, 미국을 지정한 국제디자인출원은, 선행 국내출원, 섹션 351(c)에서 정의된, 미국을 지정한 선행 국제출원, 또는 미국을 지정한 선행 국제디자인출원에 기초하여 출원일의 이익(benefit)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또한 국내출원은 미국을 지정한 선행 국제디자인출원에 기초하여 출원일의 이익을 가질 자격이 있다. 만약 조기 출원일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주장이, 미국을 지정하였으나 미국에서 최초로 출원되지 아니한 섹션 351(c)에서 정의된 선행 국제출원 또는 미국을 지정하였으나 미국에서 최초로 출원되지 아니한 선행 국제디자인출원에 기초하는 경우, 장관(Director)은 그러한 출원에 대한 인증 사본을,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 그 영문 번역문과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제119조에서 우선권에 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한다.¹²¹⁾ 외국에 선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하여 적법하게 출원한 자는, 해당 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출원하면 해당 외국 출원일을 소급받을 수 있다. 이때, 특허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대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을 놓친 사유가 비의도적이어야 한다.¹²²⁾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USPTO에 우선권 주장의 제출이 필요하며, 이 때에는 외국의 출원번호, 출원국 및 출원일의 기재가 필요하다. 우선권 주장을 시기에 맞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 포기로 간주할 수 있으나, 다만 비교의적인 지연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 후 제출을 인정한다.¹²³⁾

디자인특허 출원에 관련해서는 파리조약에 기초한 외국 출원 우선권 제도가 운영

120) (35 U.S.C. § 41(a)(7)에서 규정된 수수료)

121) 35 U.S. Code § 119(Benefit of earlier filing date; right of priority)

122) 35 U.S.C. 제119조 제1항

123) 35 U.S.C. 제119조 제2항

되고 있다. 디자인 우선권은 일반 특허에 적용되는 미국 특허법 제119조 (a)항 내지 (d)항과 제386조 (a)항과 (b)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면서, 디자인 특유의 별도 규정인 동법 제172조가 이를 보완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기간은 6개월로 한정되며, 이는 일반 특허의 12개월 우선권 기간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디자인 출원은 잠정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미국에서 외국 출원을 기초로 디자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미국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출원 시점에 우선권 주장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외국출원 번호, 출원국가 및 출원일 등 필수 정보를 USPTO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 시 외국출원 서류의 인증본 및 번역본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출원 시 우선권 선언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미국법은 지연된 우선권 주장 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연된 우선권 선언이 수리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PLT 및 헤이그 협정의 우선권 회복 원칙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본 우선권 기간(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출원인이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그 지연이 비고의적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다.¹²⁴⁾ 이러한 규정은 국제 디자인 보호체계에서 우선권 회복 제도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실무상 상당한 절차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아울러 미국 디자인 제도에서는 우선권 기초 출원과 미국 디자인 출원 사이에 중간 출원(실용특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중간 출원이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어야만 최종 디자인 출원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중간 출원 체계 하에서도 우선권 기간 요건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경우, 디자인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라도,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는 지연된 우선권 주장 제도를 통하여 우선권 주장을 보정·추가할 수 있다. 또한, 우선권 주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우선권 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지연된 주장 또는 회복은 모두 신청인의 지연이 비고의적이었음을 전제로 하며, 고의로 우선권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24) 37 CFR 1.55(c)

나. 일본

1)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일본은 2014년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PLT 제13조의 규정, 즉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기간 경과 등에 대한 구체절차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55 일본 특허법상 우선권 관련 조문

특허법 제17조 (절차의 보정) ① 절차를 밟는 자는, 사건이 특허청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도면 또는 요약서, 제41조 제4항 또는 제43조 제1항(제43조의2 제2항(제43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3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면 또는 제120조의5 제2항 또는 제134조의2 제1항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의 청구서에 첨부한 정정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특허법 제17조의4 (우선권 주장 서면의 보정) 법 제41조 제1항 또는 제43조 제1항, 제43조의2 제1항(제43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제41조 제4항 또는 제43조 제1항(제43조의2 제2항(제43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3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특허법 제38조 (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유와 관련될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공동이 아니면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특허법 제43조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절차) ① 파리조약 제4조 D(1)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을 하였거나 또는 같은 조 C(4)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출원으로 간주된 출원을 하였거나 또는 같은 조 A(2)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출원한 것으로 인정된 파리조약 동맹국의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u>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최초로 출원을 하였거나, 또는 파리조약 제4조 C(4)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출원으로 간주된 출원을 하였거나, 또는 같은 조 A(2)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출원으로 인정된 파리조약 동맹국의 인증이 있는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그 출원시의 서류로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도면에 상당하는 것의 등본 또는 이들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공보 또는 증명서로서 그 동맹국 정부가 발행한 것(전기적 방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을 말한다. 제5항 및 제44조 제4항에서 같다)에 의해 제공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사본(이하 이 조에서 “우선권 증명서류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u>1년 4월 이내에</u>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최초 출원 또는 파리조약 제4조 C(4)의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으로 간주된 출원 또는 같은 조 A(2)의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으로 인정된 출원의 날

2. 그 특허출원이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우선권 주장 기초가 된 출원의 날

3. 그 특허출원이 전항, 다음 조 제1항(제43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우선권 주장 기초가 된 출원의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 출원 또는 파리조약 제4조 C(4)의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으로 간주된 출원 또는 같은 조 A(2)의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으로 인정된 출원의 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우선권증명서류 등과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증명서류등을 제출하기 전에 그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갈음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그 번호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번호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우선권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우선권 주장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우선권증명서류 등에 기재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파리조약 동맹국의 정부 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관과 교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출원의 번호 기타 당해 사항을 교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우선권증명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서면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⑧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7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었을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43조의2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① 파리조약 제4조 D(1)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C(1)에 규정하는 우선기간(이 항에서 “우선기간”이라 한다) 내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을 할 수 없었던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우선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같은 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우선기간 내에 그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특허법 제43조의3 (기타의 우선권 주장) ① 다음 표의 상단에 기재된 자가 같은 표의 하단에 기재된 국가에서 한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은, 파리조약 제4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특허출원에 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일본 국민 또는 파리조약 동맹국의 국민(파리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맹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국민(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1C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회원국의 국민을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파리조약 동맹국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② 파리조약 동맹국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서(일본 국민에 대하여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국”이라 한다)의 국민이 그 특정국에서 한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및 일본 국민 또는 파리조약 동맹국의 국민 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국민이 특정국에서 한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은, 파리조약 제4조의 규정의 예에 따라, 특허출원에 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전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한편 일본 의장법은 우선권의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다.¹²⁵⁾ 일본 특허법 제38조(공동출원) 및 동법 제43조(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절차)에서 제43조의3(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절차 및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에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43조 제1항 중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라고 있는 것은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1년 4월” 이라고 있는 것은 “의장등록출원의 날부터 3월”로 읽어 바꾸는 것으로 한다.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이란, 파리조약의 어느 동맹국(제1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다른 파리조약 동맹국(제2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의 판단에 관하여, 제2국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국에서의 최초 출원일(우선일) 출원된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WTO 회원국의 국민 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125) 일본 의장법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8조 (공동출원) 및 제43조부터 제43조의3까지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 및 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에 준용한다.

대하여도, 파리조약의 예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파리조약 동맹국의 국민으로서, 파리조약 동맹국에 적법하게 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¹²⁶⁾

②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일본에 출원할 때의 출원 가능 기간은 일본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국에서의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출원을 우선권의 기초로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6개월이다.¹²⁷⁾ 우선기간 내(제1국에 대한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우선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우선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우선기간 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출원은 제1국에서 한 최초·적법한 출원이어야 하며, 디자인 또는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출원이어야 한다.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에 대한 출원은, 어느 동맹국에서의 적법하게 한 출원이어야 한다.¹²⁸⁾¹²⁹⁾ 그리고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은, 파리조약 동맹국에서의 최초의 출원에만 해당한다.¹³⁰⁾ 이는, 최초의 출원에 기재된 디자인에 대하여, 이후의 출원을 기초로 하여 다시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우선기간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할 수 있는 것은, 제1국에서 한 디자인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다. 아울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은 파리조약상 규정되어 있으나,¹³¹⁾ 특허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기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파리조약상 규정이 없다. 파리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선권 주장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의 해당 법 영역 상호 간의 출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126) 파리조약 제2조 내지 제4조 A(1)

127) 파리조약 제4조 C(1) 및 제4조 E(1)

128)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한다.

129) 파리조약 제4조 A(1) 및 제4조(3), 제4조 C(4), 제4조 D 및 제네바 개정협정 제6조(2)

130) 파리조약 제4조 C(2) 및 같은 조 제4조 D(1)

131) 파리조약 제4조 E

표 56 (일본)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중 타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의 해석

출원의 유형	해석
실용신안등록출원	파리조약 제4조 E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디자인등록출원 가능
특허출원	특허법과 의장법 간 상호 간 출원 변경이 가능. 따라서, 특허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증명서류 등」 중에 일본국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효과가 인정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에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의 출원 변경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이 입체상표인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음

④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한 절차로 일본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우선권의 주장(신청)을 하고,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¹³²⁾¹³³⁾ 아울러, WIPO의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를 이용한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대신하여, 출원서에 액세스 코드 등을 기재하거나, 절차 보정서에 의해 액세스 코드 등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¹³⁴⁾

우선권증명서류 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증명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지가 송부된다. 출원인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우선권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출원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出願人の責めに帰すことのできない理由)로 인하여 우선권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권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¹³⁵⁾

132) 특허법 제43조 제1항-제3항

133)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서의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및 절차 등에 따른다.

134) 특허법 제43조 제5항

135) 특허법 제43조 제6항-제9항

표 57 출원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회복

사유	제출기한
우선권 증명서류 등을 발행하여야 할 정부에 의한 서류 발행업무 지연이 원인인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의 입수일로부터 1개월(재외자의 경우 2개월)
위 사유 이외의 사유인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재외자의 경우에는 2개월) 또는 “우선권 증명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의 2개월 후부터 6개월(즉, 통지를 받은 날부터 8개월) 중 더 빠른 시점이 경과할 때 까지

⑤ 파리조약에 따라 우선권 주장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본에 출원된 디자인이 우선권을 기초로 하는 출원의 디자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일본은 파리조약 동맹국의 국민에 더하여, 특허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WTO 회원국의 국민 또는 파리조약 동맹국 및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일본 국민에 대하여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¹³⁶⁾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국민에 대해서도, 파리조약의 예에 따라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며, 그 효과는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일본 출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효과 역시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효과에 관하여는, 파리조약 제4조 B에서, 동맹국의 한 국가에서의 최초 출원일로부터 다른 동맹국에서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의 출원일까지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다른 출원 또는 공지된 사실 등에 의해, 후의 출원이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관은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유사, 선출원 및 관련디자인에 관한 실체심사에 관한 규정 적용에 있어, 우선일을 그 판단의 기준일로 하여 취급한다.

참고로 우선권 주장 효과 인정여부에 있어서 디자인의 동일에 관한 기본적인 사

136) 특허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파리조약과 같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일본 국민 또는 파리조약 동맹국의 국민(파리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맹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한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② WTO 회원국의 국민이, 파리조약 동맹국 또는 WTO 회원국에서 한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③ 파리조약 동맹국 및 WTO 회원국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서,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본 국민에게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특허청장이 지정한 국가(이하 이 장에서 「특정국」이라 한다)의 국민이 그 특정국에서 한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④ 일본 국민 또는 파리조약 동맹국의 국민 또는 WTO 회원국의 국민이 특정국에서 한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이다.

항은, 첫째, 디자인의 표현 형식에 관계없이, 제1국 출원의 디자인과 일본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이면 족하다. 둘째, 제1국 출원의 디자인과 일본에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인지 여부는,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통상적 지식에 기초하여, 제1국 출원의 출원서 기재 내용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의한다. 셋째, 제1국 출원의 디자인의 인정(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 등, 물품 등의 형상, 모양, 색채,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디자인 전체에 대한 위치·크기·범위 등)은, 제1국의 법령 등을 고려한다.

제1국 출원의 디자인과 일본의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 디자인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 등이 동일해야 한다. 다만, 출원서의 기재 항목 및 기재 방법은 각국에 따라 상이하므로, 심사관은, 예를 들어 제1국 출원 디자인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 등의 명칭과 일본 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란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기재만으로 양 디자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1국 출원의 출원서의 기재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과 일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 디자인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 등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는 각국의 법령 등의 차이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하나의 출원에 포함될 수 있는 디자인의 수나 표현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이 다양하지만, 심사관은 일본의 디자인 제도에 기초하여 제1국 출원의 출원서의 기재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디자인별로 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에 포함되는 디자인의 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 디자인은 우선권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제1국 출원의 디자인이, 일본 의장법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단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만, 양 디자인은 우선권의 인정 여부에 있어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일본에 출원된 디자인이 제1국 출원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디자인의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 등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다르다면 별개의 디자인이며, 원칙적으로, 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서로 다르더라도, 제1국 출원의 출원서의 기타 기재 등에 의하여, 일본 디자인등록출원의 디

자인에 없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제1국 출원의 도면에서는 색채가 부여되어 있으나, 설명에서 색채에 대해서는 권리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디자인의 제도 방법 등의 표현 방법이 다르더라도, 제1국 출원의 출원서의 기재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보호를 받으려는 것임이 당연히 도출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디자인은 우선권 인정 여부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

표 58 일본 의장법상 우선권 주장 관련 규정

의장법 제60조의6 (국제출원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① 일본국을 제네바 개정협정 제1조(xix)에 규정하는 지정 체약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으로서, 그 국제출원에 관한 제네바 개정협정 제1조(vi)에 규정하는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네바 개정협정 제10조 제3항 (a)의 규정에 따른 공표(이하 “국제공표”라 한다)가 이루어진 것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네바 개정협정 제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국제등록일에 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이하 생략>

의장법 제60조의10 (파리조약 등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절차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항에서 읽어 바꾸어 준용하는 특허법 제43조(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조의2 제2항(제1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3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조의2 제1항(제1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조의3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3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 제43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네바 개정협정 제6조 제1항 (a)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4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로 읽어 바꾸어 적용한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에 대하여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 협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 경유의 절차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파리조약에 따라 일본 특허청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의 절차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우선권증명서류 등의 제출 절차에 대하여는, 헤이그 협정상 국제출원에 수반시키는 절차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권증명서류 등의 제출 절차에 관한 특허법의 규

정은 헤이그 협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도 준용되고 있다.

의장법 제60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법 제1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3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특정국의 국민에 관한 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파리조약 제4조 D(1)의 규정에 따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헤이그협정 제6조 제1항 (a)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에 우선권 주장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의장법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 등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기간 내에 WIPO의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DAS)를 이용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함으로써, 우선권증명서류 등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표 59 일본에서의 디자인등록출원 시 우선권의 주장, 보정 및 회복

내용	해석
우선권 주장 기간 도과 시의 회복	우선권 기간(6개월)을 도과한 경우라도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우선권 기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회복 가능
우선권 주장의 보정(정정)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 → 출원서에 우선권 기재의 오류가 있거나, 서류 제출의 오류가 있을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 가능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 시의 구제	- 특허청의 미제출 통지 후 통지받은날부터 2개월 - 미제출 사유가 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별도 기간 적용
최초 출원시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출원시점에 제출하지 않아도 우선권을 상실하지 않음. 다만 법정기간 내에 보정 제출이 필요

3) DLT와의 비교

일본 의장법은 파리조약 및 PLT에 근거하여 우선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선권 주장 절차와 관련하여 일정 범위의 보정 및 회복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DLT가 지향하는 절차적 유연성·권리보호 강화 측면과 비교할 때, 일부 영역에서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첫째, 일본은 우선권 주장기간(6개월)을 도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원인의 지연이 고의가 아님을 전제로 2개월 이내 회복을 인정한다. 이는 의장법 제15조를 통해 특허법 제43조의2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율되며, 우선권 기간 경과 시 회복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DLT 제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회복 요건을 충족한다.

둘째,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와 관련하여 법 문언상 보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출원 후 우선권 주장을 자유롭게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회복절차를 통해 구제하는 구조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DLT 제16조 제1항은 우선권 주장에서의 보정 및 추가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으나, 일본 제도는 이를 명시적으로 권리로 보장하기보다는 회복 규정을 중심으로 운용하여, 그 유연성 측면에서 DLT의 취지에 비해 제한적이다.

셋째,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 시에도 특허청의 통지 후 2개월의 보정기간이 부여되는 등 절차적 구제장치는 존재한다. 이는 서류 제출과 관련된 보정 기회 부여 측면에서 DLT의 절차 간소화 및 출원인 구제 원칙과 부합한다.

넷째, 출원 시 우선권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우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일본제도는 출원 단계에서 우선권 기재를 전제로 하는 체계로, 법정기간 내 보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출원 시점의 우선권 주장이 요구된다. 이는 DLT가 허용하는 “출원 후 우선권 주장 추가”에 대한 취지를 부분적으로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일본 의장법은 우선권 회복 제도 측면에서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으나, 우선권 보정·추가에 대해서는 조약이 지향하는 유연성과 비교하여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즉, 일본 제도는 회복 중심의 구조로 운용되는 반면, DLT는 보정과 회복을 모두 보장하는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 EU

표 60 CDR 상 우선권 관련 규정

제41조 (우선권) ① 파리협약(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또는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협정의 당사국인 국가에서, 또는 그 국가를 위하여, 디자인권 또는 실용신안에 관한 출원을 적법하게 한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은, 동일한 디자인 또는 실용신안에 관하여 등록된 EU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하기 위하여,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간의 우선권을 향유한다.

② 출원이 이루어진 국가의 국내법 또는 양자·다자 간 협정에 따라 정규 국내 출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든 출원은, 우선권을 발생시키는 출원으로 인정된다.

③ 정규 국내 출원(regular national filing)이란, 출원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출원이 이루어진 날을 확정하기에 충분한 모든 출원을 말한다.

④ 디자인에 관한 후속 출원이, 동일한 국가에서 또는 동일한 국가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이전에 이루어진 최초 출원의 대상이었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우선권 판단을 위하여 후속 출원의 출원일 현재, 이전 출원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철회, 포기 또는 거절되었을 것, 이전 출원이 어떠한 권리도 존속시키지 않았을 것, 이전 출원이 우선권 주장에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 후속 출원을 최초 출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이전 출원은 이후에는 우선권 주장에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최초 출원이 파리협약 또는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그 국가가 공표된 판단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규정에 따른 출원을 기초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2조 (우선권의 주장) 등록된 EU 디자인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우선권을 향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선언서와 선출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출원의 언어가 특허청의 언어 중 하나가 아닌 경우에는, 특허청은 해당 선출원을 그 언어 중 하나로 번역한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의a (우선권 주장에 관한 집행권한의 부여) 집행위원회는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를 특정하는 집행행위를 채택한다. 해당 집행행위는 제109조 제2항에 규정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제43조 (우선권의 효력) 우선권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22조, 제25조 제1항 (d), (e) 및 (f)호, 그리고 제5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우선일을 등록된 EU 디자인 출원의 출원일로 간주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44조 (전시우선권) ① 등록된 EU 디자인의 출원인이, 1928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서명되고 1972년 11월 30일 최종 개정된 국제박람회협약에 관한 협약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서, 해당 디자인이 체화되었거나 적용된 제품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품의 최초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는 때에, 제43조의 의미에서 그 날짜를 기초로 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집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전시회에서 디자인이 체화되었거나 적용된 제품을 공개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국 또는 제3국에서 부여된 전시우선권은 제41조에 규정된 우선권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EU CDR은 우선권을 단일 조문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실체적 권리, 주장 방식, 전시우선권 및 집행행위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기능별로 분산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DLT가 예정하는 절차적 유연성과 집행규칙의 위임 모델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CDR은 “우선권 주장 보정” 또는 “우선권 주장 추가”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보정·추가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절차 규율을 법률이 아닌 하위 규범으로 위임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CDR 제42조는 우선권 주장

을 위해 우선권 선언과 선출원 사본 제출을 요구할 뿐, 언제까지,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정·추가가 가능한지를 조문에서 직접 한정하지 않는다.

한편 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42조a는 우선권 주장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를 집행행위로 특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우선권 선언서의 누락·불완전 기재가 있는 경우, 선출원 사본의 추가 제출 또는 보완 제출이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법률 개정 없이 집행규칙 차원에서 보정·추가를 허용하는 절차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DLT가 요구하는 “우선권 주장에 있어 형식적 흠결로 인한 권리 박탈을 방지할 것”이라는 원칙을 간접적·구조적으로 수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즉, CDR은 보정·추가를 명문 허용하기보다는 집행규칙을 통한 유연한 허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모델이다.

종합하면, EU CDR은 DLT의 우선권 관련 조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첫째, 우선권 주장 보정·추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기보다는, 집행행위 위임을 통해 절차적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였다. 둘째, 우선권 회복에 대해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제도를 법률 조문으로 신설함으로써, DLT의 핵심 권리구제 메커니즘을 명확히 수용하였다.¹³⁷⁾ 셋째, 전체적으로 CDR은 법률의 원칙과 권리의 존재를 선언하고 세부절차는 하위 규범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DLT에 친화적인 입법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법개정방향(안)

DLT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보조항에 따라, 해당 조약에 가입하는 날에 특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적용 배제를 선언할 수 있으며 조약 제16조 제2항의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우선권 주장의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조약 규정과 실질적으로 불일치 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우선권 관련 법 개정을 실시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조약의 취지 및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건데, 우선권 주장 시 보정 및 추가에 관하여 출원인에게 유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우선권 주장 기한이 도과한 경

137) 물론 EU CDR 제42조의a가 우선권 회복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보정, 추가, 회복 등의 절차적 쟁점을 집행행위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 위임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라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도록 회복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이에 우선권 주장과 관련하여 DLT 제16조의 전체를 만족할 수 있는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61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 회복 관련 법 개정 방향

DLT 제16조를 반영하기 위해, 보정, 추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국내법 규정을 개정하고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DLT 및 PLT는 출원 당시의 우선권의 주장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보고 있다. PLT 제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에 ‘우선권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원 당시에만 우선권을 주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출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적어도 출원공개의 어느 시점까지는 우선권을 자유로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¹³⁸⁾ 또한 우선권 주장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주어진 기간 내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후출원을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한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회복 사유를 완화하는 것이 DLT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2011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당시 PLT의 반영을 위하여 관련 조항들의 대대적인 정비를 예고한 바 있으나 실제 제안된 내용 전부가 개정되지 못하였고, 이후 관련 내용들이 특허법에 순차적으로 반영되어 오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권 주장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일까지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자도 우선권 주장의 추가를 가능하도록 한다. 단 조기공개 또는 우선심사 신청 후 접수된 때에는 그 출원의 특허공보 발행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조기공개 또는 우선심사 신청이 취하되는 경우에만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인정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¹³⁹⁾

138) 정차호 외, 「선진 특허법제 구축을 위한 특허법체계 전면 개편 방안 연구」, 특허청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2010, 193면.

139)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설명자료

표 62 우선권 주장의 추가 및 보정 가능기간 관련 「특허법」 개정안(2011년)

舊 특허법	2011년 당시 특허법 개정안
◆ 제54조제7항, 제55조제7항 -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기재한 자만이 최선일로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의 추가 가능	◆ 제54조제4항, 제55조제3항 - 특허출원일까지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자도 PCT 규칙 26의 2.1에 규정된 우선권주장의 추가 및 보정 가능기간에 우선권주장의 추가 가능
⇒	조기공개 또는 우선심사 신청에 따른 제한 규정 없음 - 조기공개 또는 우선심사 신청 후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공보의 발행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하되는 경우에만 인정

우선권의 회복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주장 가능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서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한 때에는 우선권주장 가능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권의 회복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의 회복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¹⁴⁰⁾

표 63 우선권 회복의 사유 관련 「특허법」 개정안(2011년)

舊 특허법	2011년 당시 특허법 개정안
<관련규정 없음, 신설>	제54조의2(조약에 의한 우선권의 회복)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u>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u>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서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우선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2.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 회복의 신청에 관한
⇒	

舊 특허법	2011년 당시 특허법 개정안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련규정 없음, 신설>	<이하조문 생략>
	제55조의2(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의 회복) ① 제55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u>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u>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서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그 우선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2. 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권 회복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11년 당시에는 해당안이 실제 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PLT와 DLT가 추구하는 우선권 주장의 절차 완화의 취지가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개정안을 참고해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140)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회복과 관련한 PLT의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Ⅲ. 출원일

1. 조약의 분석

표 64 조약 제6조(출원일)

조약 본문	시행규칙
제6조 출원일	제5조 출원일에 관한 세부사항
① (허용가능한 조건) 1.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및 요소를 행정청이 허용하는 언어로 수령한 날을 출원의 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해당 요소들이 출원으로 제출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 나.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다. 산업디자인을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낸 시각적 표현 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연락할 수 있는 표시 2. 계약당사자는, 산업디자인을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낸 시각적 표현과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출원인이나 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연락할 수 있는 표시가 함께 제출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타 표시 또는 요소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 제출되었거나, 그러한 표시 또는 요소가 행정청이 인정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령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허용되는 추가 요건) 1. 계약당사자의 조약 가입 당시 해당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출원일을 부여받기 위해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요건을 출원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약당사자는 선언을 통하여 그 요건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조약 본문	시행규칙
2. 제1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그 사용과 관련된 물품의 명칭 나.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또는 그 특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다. 청구항 라.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 마. 산업디자인의 창작자에 관한 표시	조약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은, 해당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통지한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③ (기타요건의 금지) 출원일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떠한 다른 표시 또는 요소도 요구할 수 없다.	
④ (통지 및 기한) 행정청이 출원서를 접수한 당시, 해당 출원서가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추후 요건 보완 시 출원일)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원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원일은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요구한 모든 기재사항 및 요건이 행정청에 접수된 날로 본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약 제6조는 ‘출원일’에 대하여 규정한다. 조약 제6조는 디자인 출원의 출원일 인정요건을 국제적 수준에서 명확히 하여, 절차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최소요건 중심의 구조를 취하되, 기존 제도를 존중하는 예외적 선언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각국의 제도적 다양성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정기회 부여와 보정 완료 시점의 명확화 등 절차적 규

을을 통해 출원인의 권리취득 과정이 과도한 형식요건에 의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조약 제6조 제1항은 디자인 출원에 대해 출원일을 인정하기 위한 국제적 최소요건(minimal filing date requirements)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약 전체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동항은 원칙적으로 출원 의사 표시(명시적·묵시적), 출원인의 동일성 확인이 가능한 정보, 산업디자인의 ‘충분히 명확한’ 표현(도면 또는 시각적 표현), 출원인 또는 대리인과의 연락이 가능한 정보 등 네 가지 요소가 사무국에 제출된 경우 그 제출일을 출원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 상표·특허 분야에서 정립된 ‘출원일 확보 우선주의’ 원칙을 디자인 분야에도 반영한 것으로, 출원인의 권리변동을 좌우하는 출원일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조약 제6조 제1항 나호는 가호의 요건 중 일부 요소만 제출된 경우에도 당사국이 출원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 다만, 산업디자인의 표현과 출원인 확인 가능성·연락 가능성은 최소 요건으로 보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핵심적 식별 요소는 유지하되 주변적 요소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언어 요건 역시 출원일 인정의 절대적 요건이 아님을 명시하여, 번역 제출 부담으로 인해 출원일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조약 제6조 제2항은 조약 체결 이전에 이미 특정한 추가 요건을 출원일 요건으로 운영해온 국가의 제도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최소기준만으로 출원일을 인정하도록 하되, 기존 국내법이 출원일 인정에 추가요건(예: 제품명, 간단한 설명, 청구항, 수수료 납부, 창작자 표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언을 통해 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¹⁴¹⁾ 다만 이와 같은 추가 요건은 조약 가입 시점의 국내법에 존재하던 사항에 한정되며, 가입 이후 새로운 추가 요건을 도입할 수는 없다. 또한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므로, 각국은 제도 정비의 성숙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국제적 최소기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 따라서 제2항은 조약의 조화와 국가별 제도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조약 제6조 제3항은 출원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열거한 범위로 제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다. 이는 디자인 출원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즉, 어떤 국가도 열거된 사

141) 이는 일종의 국가별 기존 제도를 존중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조약 이행과정에서 국내 제도의 급격한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항 이외의 새로운 요건을 출원일 판단 요소로 추가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출원일 인정요건이 기술적·형식적 요건에 의해 과도하게 강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약 가입국 간의 절차적 조화를 확보하고, 출원인의 권리 취득 기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또는 제도가 미성숙한 국가에서 불필요한 형식요건이 출원일 확보의 장애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조약 제6조 제4항은 출원일 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무국이 즉시 출원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반드시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보정을 위한 기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 간 유연성을 인정하되, 출원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공통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동조 제5항은 출원인이 보정기간 내에 출원일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경우, 출원일은 모든 요건이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가장 늦게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미비된 요건을 사후에 제출한 경우,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 완료 시점을 출원일로 간주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다. 이 조항은 출원일이 발명의 신규성, 선출원주의, 우선권 주장 등 여러 법적 효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정이 허용되더라도, 그 보정이 늦어질수록 출원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출원인에게는 신속한 요건 보완의 동기를 부여한다.

DLT 제6조는 PLT 제5조¹⁴²⁾와 동일하게 출원일 인정의 국제적 최소요건을 설정하

142) PLT 제5조(출원일) ① (출원요소) (a) 규칙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단락 ② 내지 단락 ③ 의 규정을 조건으로, 계약당사자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서면, 또는 출원일의 목적으로 관청에서 달리 허용하는 것에 의하여, 아래의 모든 요소를 관청관청이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i) 당해 요소들이 출원인 것을 의도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

(ii)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또는 관청이 출원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iii) 외관상 명세서로 보이는 부분

(b) 출원일의 목적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도면을 단락 (a)(iii)에서 언급된 요소로 인정할 수 있다.

(c) 출원일의 목적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단락 (a)(ii)의 요소로서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및 관청이 출원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양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 또는 관청이 출원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언어) (a) 계약당사자는 단락 ①(a)(i) 및 (ii)에서 언급된 표시가 관청에서 허용하는 언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출원일의 목적상, 단락 ②(a)(iii)에서 언급된 부분은 어떠한 언어로도 제출될 수 있다.

③ (통지) 출원이 단락 (1) 및 (2)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출원인이 규칙에서 규정된 기한 이내에 해당 요건을 준수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관청은 가능한 한 빨리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요건의 추후 준수) (a) 최초로 제출된 출원이 단락 ① 및 ②에 따라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아래 단락 (b) 및 단락 ⑥의 규정을 조건으로, 단락 ① 및 ②에 따라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준수하게 되는 날이 출원일로 된다.

(b) 규칙에서 규정된 기한 이내에 상기 단락 (a)에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는 조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구조적·개념적 유사성이 크다. 양 조약 모두 출원인의 권리변동에 핵심적인 “출원일”을 간단하고 예측가능하게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결함이 있을 경우 사후 보정·보완 기회를 제공하고, 보정 완료 시점에 출원일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따라서 DLT 제6조의 기본 틀은 PLT 제5조에서 유래한 조문 구조를 디자인 분야에 맞게 변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출원일을 어떤 요건으로 부여할 것인가’의 개념을 같으나 전제가 되는 제도 환경과 규범 목적이 다소 상이하다. PLT는 특허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명세서·청구항·도면이라는 문서 중심 구조와 우선권·분할·보정이 빈번한 절차 고도화된 출원 시스템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반면 DLT는 디자인제도를 대상으로 하며 권리 성립의 핵심이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시각적 표현에 있고, 중소기업·개인 창작자 비중이 높으며,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조약의 핵심 정책 목표이다. 이 차이로 인해, PLT는 출원일 규율을 ‘절차적 안전망’까지 포함해 매우 상세하게 설계한 반면, DLT는 출원일 인정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계약당사자는 출원이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원이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경우 관청은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표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명세서 또는 도면의 누락 부분에 대한 통지) 출원일을 인정함에 있어서, 관청이 명세서의 일부가 출원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거나 출원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도면을 당해 출원이 인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관청은 출원인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명세서 또는 도면의 누락부분이 제출된 경우의 출원일) (a) 명세서의 누락부분 또는 누락도면이 규칙에서 규정된 기한 이내에 관청으로 제출되는 경우, 당해 명세서의 부분 또는 도면은 당해 출원에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 단락 (b) 및 (c)를 조건으로 관청이 당해 명세서의 부분 또는 도면을 접수한 날 또는 단락 (1) 및 (2)에 따라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되는 모든 요건들이 준수되는 날 중 늦은 날이 출원일로 된다.
- (b) 단락 (1)(a)에서 언급된 요소의 하나 이상을 관청에서 최초로 접수한 일자에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으로부터의 누락을 수정하기 위하여 명세서의 누락부분 또는 누락도면이 상기 단락 (a)에 따라 제출된 경우, 규칙에서 규정된 기한 이내에 제출된 출원인의 신청으로, 또한 규칙에서 규정된 요건을 조건으로, 단락 (1) 및 (2)에 따라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되는 모든 요건이 준수되는 날이 출원일로 된다.
- (c) 상기 단락 (a)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의 누락부분 또는 누락도면이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 이내에 취하되는 경우, 단락 (1) 및 (2)에 따라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적용되는 요건이 준수되는 날이 출원일로 된다.
- ⑦ (이전 출원에 대한 인용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의 대체) (a) 규칙에서 규정된 요건을 조건으로, 이전 출원에 대한 인용이 관청에 의하여 허용된 언어로 출원의 제출시에 이루어진 경우 출원일의 목적상 명세서 및 도면을 대체한다.
- (b) 상기 단락 (a)에서 언급된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청은 그 이유를 표시하여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예외)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아래의 사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i) 파리협약 제4조G의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언급된 최초 출원의 일자 및 우선권의 이익을 당해 조항에서 언급된 분할출원의 일자로서 유지할 수 있는 파리협약 제4조G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원인의 권리;
 - (ii) 규칙에서 규정된 유형의 출원에 대하여 선출원의 출원일에 관한 이익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자유

특허와 디자인이라는 차이 때문에, PLT의 경우는 출원일 요건의 핵심을 ‘설명(description)’으로 본다. 규정상 “설명 처럼 보이는 것”이면 충분하며, 국가가 허용할 경우 “설명을 대신한 도면(drawing)”도 인정한다. 반면 디자인의 경우 출원일 요건의 핵심을 “산업디자인의 명확한 시각적 표현(sufficiently clear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으로 본다. 이는 특허의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디자인 보호의 본질적 요소인 형상·모양·이미지 그 자체를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DLT는 ‘산업디자인을 명확하게 나타낸 시각적 표현’을 제외하고는 청구항이나 설명서의 완결성, 수수료의 납부, 창작자의 표시 등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이들은 출원일 이후에 보정·추가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

PLT는 출원일 관련 규정 내에서 보정의 가능성, 보정 기한, 보정 실패 시의 효과와 출원일 변경여부를 함께 포괄하여, 출원일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법적인 상태로 취급한다. 반면 DLT는 출원일 인정 요건을 최소화한 뒤, 제4항과 제5항에서 통지 및 기회 부여라는 절차적 최소보장을 두고 있다. 특히 제6조 제4항에서 출원일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외의 어떠한 표시 또는 요소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출원일 단계에서 절차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DLT가 PLT와 같이 출원일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규율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다. 디자인의 경우 시각적 표현이 확보되면 보호대상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특정되며, 특허와 같이 명세서 누락이 출원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디자인권의 경우는 제도 성숙도가 상이한 국가가 다수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기업, 개인 출원인을 고려할 때 PLT 수준의 복잡한 출원일 규정은 조약의 수용 자체를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DLT가 디자인 제도의 특성과 국제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기술상의 선택을 취했음을 알 수 있으며, PLT를 모델로 하면서도 독자적인 규범 설계를 가진 조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국내법 분석

가.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표 65 출원일 관련 「디자인보호법」 규정

법	시행규칙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우리 법은 제38조¹⁴³⁾에서 출원일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법 제38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일을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보는 기본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날을 출원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한다. 특히 각 호는 출원일의 본질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출원일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보호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DLT 제6조 제4항의 “요건 불비 시 통지 및 보정 기회 부여” 구조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제도이다. 제3항은 보완 시 ‘절차보완서’ 제출

143) 「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5. 10. 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 10. 1.>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정서 제출 방식 및 절차적 명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동조 제4항은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절차보완서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보정제도를 통한 출원일 확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복수디자인출원에 대해서는 일부 디자인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디자인군의 출원일을 ‘가장 늦게 보정된 일부 디자인의 제출일’로 통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원일의 단일성(출원군 단위 인정)을 유지하는 법정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다수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관리하는 국내 특유의 제도를 반영한 규정으로, 국제조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다.

동조 제5항은 보완명령을 받은 출원인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복수디자인출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다수디자인 출원에서 일부 디자인만 결함이 있어도 출원 전체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규제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DLT·PLT에서 출원 일부의 결함과 전체 출원일 인정 여부를 구분하여 다루는 체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국내법은 출원 단위 관리의 일원성에 기초한 절차적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리하면 디자인보호법 제38조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출원일 요건을 국내적으로 엄격히 설정하고 있다. 출원인의 성명, 출원 의사, 도면 명확성뿐 아니라 언어 요건(한글 기재)까지 포함하여 출원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보완제도를 두고 있으며, 출원일의 부여는 사후 보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DLT·PLT와 동일한 방향이지만, 절차보완서 제출 등 국내 특유의 절차적 규율이 존재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일부 디자인만 보정이 필요해도 전체 출원일이 가장 늦은 보정일로 통일되는 방식은 국제조약에서는 규정하지 아니한 방식이다.

나. 조약과의 비교

1) 언어요건 관련

디자인보호법은 언어 요건(한글 기재)을 출원일 판단의 절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DLT 제6조는 출원일 인정요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언어를 핵심요소로 보지 않는다. DLT는 “사무국이 인정하는 언어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 제1항(b)에 따라 인정 언어가 아니어도 출원일을 인정하는 유연한 절차를 각국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법은 인정 언어 외 제출에 대해 출원일 부여 자체를 배제하므로, 조약이 지향하는 출원일 확보의 용이성과는 다소 상이한 입법 구조를 갖는다.

표 66 디자인보호법과 DLT상 출원일 관련 비교 (1)

디자인보호법	DLT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u>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4. <u>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u>	제6조 ① (허용가능한 조건) 1.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및 요소를 행정청이 허용하는 언어로 수령한 날을 출원의 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각 목 생략) 2. 계약당사자는, 산업디자인을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낸 시각적 표현과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출원인이나 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연락할 수 있는 표시가 함께 제출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타 표시 또는 요소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 제출되었거나, 그러한 표시 또는 요소가 <u>행정청이 인정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령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다.</u>

다만, 이러한 불일치가 조약 위반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DLT 제6조 제1항 (a)에서 규정한 “in a language admitted by the Office” 라는 문구는 각국이 인정 언어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출원 언어로 한글만을 인정하는 것은 조약상 허용된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DLT는 인정 언어 외 제출을 출원일 요건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무 규정을 두지 않으며, 제1항 (b)는 어디까지나 “허용 가능한 유연성”을 제시한 것이지 “의무적 유연성”을 부과한 것은 아니다.

2) 도면 요건 관련

디자인보호법은 도면과 관련하여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

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관련하여 조약의 경우는 제6조 제1항 (a)(iii)에서 “충분히 명확한 도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항을 비교할 때 DLT도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국내법은 “선명성”까지 구체적 요건으로 보고있어, DLT와 비교하여 출원일 인정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곧바로 조약과의 충돌 또는 법 개정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DLT가 요구하는 “충분히 명확한 표현”은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각 계약당사국의 재량에 맡기는 개념 규정으로, 도면의 인식 가능 여부를 출원일 판단 요소로 삼는 국내 제도 역시 이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즉, 국내법의 “선명성” 요건은 명확성 판단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조약상 금지되는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출원일 인정 방식에서 한국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문제의식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적 불일치라기보다는 운영상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차이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약 수용을 위해 별도의 법 개정까지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출원일 인정 관련

조약은 출원일 요건을 미비할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출원인에게 통지를 하고 보정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질 경우 요건 충족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며,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을 규정하고 있어, 절차보완을 통하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 점에서 국내 디자인보호법 제38조 역시 동일한 절차적 방향성을 취하고 있다. 동조는 출원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제2항), 보정이 이루어지면 그 보완서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방식(제4항)을 채택하고 있어, 조약이 규정하는 “통지 → 보정기회 부여 → 요건 충족 시 출원일 인정”이라는 기본 틀과 정합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원을 부적법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역시, 조약이 규정한 “기간 내 미보정 시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률 수준에서 볼 때, 조약과 국내법의 보정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절

차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 간 조문 충돌이나 정합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의무 규정 여부의 차이가 아니라, 보정 절차의 구체적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형식적 차이에 가깝다.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가. 미국

미국 특허법 제111조는 미국 특허출원에서 출원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표 67 미국 특허법 제111조 (출원)

미국 특허법 제111조(출원)

(a) 일반 규정

(1)~(3) 생략

(4) (출원일) 출원의 출원일은, 청구항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명세서가 USPTO에 접수된 날로 한다.

정규출원의 경우 발명자가 직접 또는 발명자의 허락에 의하여 서면으로 USPTO에 출원서를 제출한다. 출원에 필수적으로 명세서, 도면 및 선서 또는 선언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원 시에는 법정 수수료를 함께 동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수료와 선서 또는 선언문, 청구항은 출원일 후에도 지정된 기간 내 제출이 가능하다. 단 지정된 기간과 조건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일은 청구항의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명세서가 USPTO에 제출된 날짜로 한다.¹⁴⁴⁾ 정규출원의 경우 기존에 출원된 다른 출원(출원번호, 출원국가 및 기관을 명시)의 명세서와 도면을 활용하여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선출원 참조방식의 조건과 추가 수수료에 대해서는 USPTO에서 결정한다. 선출원 참조방식에 의한 출원의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출원과는 달리 기간을 도과하더라도 복구¹⁴⁵⁾ 및 부활이 가능하다.¹⁴⁶⁾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도 출원서의 제출 방식, 출원일의 인정, 명세서·도면의 제출, 보정 절차 등 신청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미국 특허법 제111조의 절차 규정을 따른다.

144) 35 USC § 111 (a)

145) 35 USC § 27에 따른 복구를 의미한다.

146) 35 USC § 111 (c)

미국 CFR 제1.53조

(b) 출원 제출 요건 (정규출원)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특허 출원(디자인 특허 출원 또는 본 조항 (c)항에 따른 임시 출원 제외)의 출원일은 청구항 유무에 관계없이 명세서가 특허청에 접수된 날이다.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디자인 특허 출원(본 조항 (d)항에 따른 계속 심사 출원 제외)의 출원일은 35 U.S.C. 112에 규정된 명세서(최소 하나의 청구항 포함) 및 필요한 도면이 특허청에 접수된 날로 한다. 출원일 이후에는 출원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계속 출원(계속 출원, 분할 출원 또는 일부 계속 출원일 수 있음)은 35 U.S.C. 120, 121, 365(c) 또는 386(c) 및 § 1.78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e) 출원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Failure to meet filing date requirements)

(1) 본 조 제(b)항, 제(c)항 또는 제(d)항에 따라 접수된 출원이 해당 각 항에서 정한 출원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원일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이 통신 주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사실이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출원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제(d)항에 따른 출원 요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그 요청이 제기된 출원이 디자인 출원이 아니기 때문이고, 해당 출원이 1995년 6월 8일 이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d)항에 따른 출원 요청은 제1.114조에 따른 계속심사청구(RCE)로 간주된다.

(2) 제(e)(1)항에 따른 통지에 대한 재심사 요청 또는 최초 출원서류에 명세서의 일부 또는 도면이 누락되었다는 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본 항에 따른 청원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제1.17(f)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적법하고 적시한 청원(제1.181(f)조)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e)(1)항에 따라 출원 오류가 통지된 출원의 출원일은 해당 출원 오류가 시정된 날로 본다.

(3) 출원인이 제(e)(1)항에 따른 출원 오류 통지를 받고도 부여된 기간 내에 해당 오류를 시정하지 않거나, 또는 본 항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적시에(제1.181(f)조)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에 관한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출원은 종결 처리될 수 있으며, 제1.21(n)조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출원 수수료는 환급된다.

한편, 출원일이 인정되는 요건은 37CFR 제1.53조 (b)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디자인 특허 출원에서 출원일은 미국 특허법 제112조가 요구하는 명세서와 최소 하나의 청구항, 그리고 법령상 필요한 도면이 USPTO에 제출된 날로 인정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도면의 제출 여부가 디자인 특허 출원일을 결정하는 핵심 실체적 요건으로 작동한다. 또한 동 조(e)항에서는 출원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세서의 일부 또는 법령상 요구되는 도면이 누락된 경우 출원일은 확정되지 않으며, 해당 결함이 보정된 날을 출원일로 본다.

DLT 제6조와 대비해보면, 조약과 미국 특허법은 출원일을 인정하는 데 있어 최소 요건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출원

일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규범적 성격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DLT는 디자인 제도의 특성에 맞추어 출원 의사의 표시, 출원인 식별 정보, 연락 수단, 그리고 “충분히 명확한 디자인 표현”을 출원일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특허제도는 출원일 판단을 발명의 개시 여부에 연동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특허의 경우에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담은 명세서를 중심으로 출원일이 판단된다. 다만 디자인의 경우에는 기술적 서술이 아닌 시각적 개시가 핵심이 되므로, 텍스트 명세서가 아니라 도면이 출원일 판단의 중심적 요소로 기능한다. 즉, 미국 디자인 특허 제도에서도 출원일 인정 여부는 충분히 명확한 디자인 표현이 제공되었는지에 실질적으로 의존하며, 이는 디자인의 식별 가능성을 출원일 요건으로 삼는 DLT 제6조의 구조와 기능적으로 상응한다. 이와 같이 미국은 출원일 판단을 개시 여부라는 단일 기준에 집중시키는 반면, DLT는 디자인의 식별 가능성과 함께 출원인의 기본적 동일성 및 절차적 안정성을 출원일 단계에서 함께 확보하려는 보다 규범화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출원일 보정 방식의 경우, DLT는 출원일 요건이 미비한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정이 이루어진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명세서가 제출된 때 이미 출원일이 확정되므로, 청구항 제출이나 선언서 제출 등은 출원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정 여부는 출원 유지 여부에만 영향을 준다. 이러한 구조는 출원일의 ‘고정성’ 측면에서 미국이 더 강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의미하며, DLT의 경우 출원일이 요건 충족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조건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언어 요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DLT는 “사무국이 인정하는 언어”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시에 인정 언어가 아니어도 출원일을 부여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출원일 판단 단계에서 언어 요건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번역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절차적 보완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미국 제도는 DLT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언어 운영 모델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해 보면, 미국 제도는 출원일 요건의 범위와 형식적 요건의 강도에서 DLT보다 훨씬 간단하고 완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일본

일본 의장법의 경우는 ‘출원일’과 관련한 독립조문이 존재하지 않으며, 출원서의 필수 기재요건(법 제6조 등)을 통해 출원일 성립요건이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즉, 일본은 한국이나 DLT처럼 “출원일은 ~ 요건 충족 시 인정한다”는 방식의 정의조문을 두지 않고, 출원서의 형식요건이 법률상 완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출원일이 발생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표 69 일본 의장법 제6조(의장등록출원)

제6조(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원서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장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2. 의장의 창작을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3. 의장에 관련된 물품 또는 의장에 관련된 건축물이나 이미지의 용도
- ②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장을 나타낸 사진,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진, 모형 또는 견본의 구분을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3호의 의장에 관련된 물품 또는 의장에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의 기재나,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사진 또는 모형에 의하여서는, 해당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의장에 관련된 물품 또는 건축물의 재질 또는 크기를 이해할 수 없어 그 의장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장에 관련된 물품 또는 건축물의 재질 또는 크기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건축물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미지가 그 물품, 건축물 또는 이미지가 가지는 기능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해당 물품의 형상 등, 건축물의 형상 등 또는 이미지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물품, 건축물 또는 이미지의 해당 기능에 대한 설명을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도면, 사진 또는 모형에 해당 의장의 색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중 어느 한 색에 대하여는 채색을 생략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색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도면에 의장을 기재하거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사진 또는 모형에 의장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의장에 관련된 물품, 건축물 또는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의장법 제6조 제1항은 의장등록출원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출원인의 성명·주소, ② 창작자의 성명·주소, ③ 의장의 대상물(물품·건축물·이미지)의 용도이며, 같은 항에서 이러한 사항이 기재된 출원서에 “의장을 기재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도면(또는 제2항의 사진·견본 등) 제출이 출원일 성립의 핵심 요건이며,

이는 디자인의 외관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자료로 기능한다.

법 제6조 제2항은 도면을 대체할 수 있는 사진·견본 등의 제출을 허용하되, 그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 제도에서 출원일 인정에 필요한 “의장의 표현”은 매우 구체적이며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조 제3항부터 제7항에 이르는 규정은 도면·사진 등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특정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장의 인식 가능성 및 특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출원일 그 자체를 좌우하는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출원서가 ‘의장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한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일본 실무의 기준을 반영한다.

일본 의장법 제6조는 의장의 도면·사진 등의 시각적 표현이 제출되고, 출원인 정보와 의장 대상·용도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그 제출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구조이다. 이는 조문에서 ‘출원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이 사실상 출원일 성립요건을 규정하는 실질적 조항임을 의미한다.

표 70 일본 의장법 제9조의2(출원서의 기재 또는 도면 등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9조의2 (출원서의 기재 또는 도면 등의 보정과 요지 변경) 출원서의 기재(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에서 동일하다) 또는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사진, 모형 또는 견본에 대하여 행한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것임이 의장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의장 등록출원은 그 보정에 관하여 절차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일본 의장법 제9조의2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또는 도면·사진·견본 등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보정이 의장권 설정등록 후에 인정되면 해당 보정을 제출한 시점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한다(みなし出願日)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의장법 제6조와 연계하여 해석하면, 일본은 출원일 성립 요건을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출원일이 변동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정이 의장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본질적 변경(要旨変更) 해당하면, 이는 사실상 새로운 의장 출원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보정 제출일을 새로운 출원일로 간주한다. 법 제9조의2는 권리범위가 달라질 정도의 실질적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약 부적법한 보정을 했음에도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오류를 사후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의장법 제9조의2는 DLT 제6조와 동일한 취지를 가진 규정은 아니지만, 출원

일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보면 출원 내용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출원일을 재설정하는 보정 제한 규정이다. DLT의 출원일 규정은 요건충족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절차 중심 규범이고, 일본 제9조의2는 요지를 변경한 경우 기존 출원일의 효력을 배제하고 새 출원일을 부여하는 실체 중심 규범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크게 다르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디자인의 동일성과 출원일의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가진다. 따라서 일본 제9조의2는 DLT와 모순되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DLT가 인정하는 표현의 명확성 요건을 실체적 측면에서 더욱 엄격히 운영하는 국가적 구현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PLT와 DLT가 동일한 취지의 출원일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의 국내법에서 이를 다루는 방식은 상이하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의장법에서는 출원일에 관한 별도 조문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 특허법에서는 출원일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⁴⁷⁾

일본 특허법 제38조의2는 특허출원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요건 미비 시의 보정절차를 하나의 독립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조문은 일본 특허실무에서 출

147) 일본 특허법 제38조의2 (특허출원의 날의 인정)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특허출원의 날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특허를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특허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특허출원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명세서(외국어서면출원에 있어서는,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제36조의2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다음 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이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출원에 관하여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하여, 그 보완을 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의 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규정에 따라 명세서에 관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서의 제출과 동시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세서에 관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서의 제출과 동시에 제36조 제2항의 필요한 도면(외국어서면출원에 있어서는, 필요한 도면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설명을 제36조의2 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로 기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때에 한 출원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날을 특허출원의 날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⑦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는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것으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도면은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⑧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을 각하할 수 있다.
- ⑨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통지를 받은 경우에 취하여야 할 절차를 취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절차는 그 통지를 받아 취한 절차로 본다.

원일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출원일 판단 기준이 되는 최소요건 뿐 아니라, 보정기회 부여, 보정서 제출 방식, 보정에 의한 출원일 변경까지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제1항은 출원일을 원칙적으로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 인정하되, ① 출원 의사의 불명확성, ② 출원인 식별 불가, ③ 명세서 미제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때 명세서의 제출 여부가 출원일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은 PLT와 동일한 구조이다.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은 요건 미비 시 특허청장이 반드시 보정 가능성을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특히 명세서 보정의 경우 도면 제출까지 허용한다. 이는 출원일을 구성하는 요소가 충족되도록 절차적 구조를 상세하게 마련한 것으로, 출원일 인정 관련 절차가 조약 규정보다 훨씬 구체적·세분화된 일본의 고유 입법방식을 보여준다. 동조 제6항은 출원인이 기간 내 요건을 보완한 경우, 보정서 제출일을 출원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즉, 요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된 시점이 출원일이 되며, 이는 PLT 제5조 및 DLT 제6조가 채택하는 “요건 충족일이 곧 출원일”이라는 구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전체적으로 일본 특허법 제38조의2는 출원일 성립과 보정에 관한 모든 가능성을 하나의 체계로 설계한 조문으로, 출원일을 정의하는 국제조약의 취지를 충족하면서도 일본 실무의 절차적 정밀성을 반영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 EU

표 71 CDR 제36조 (출원이 준수하여야 할 요건)

CDR 제36조 (출원이 준수하여야 할 요건) ① 등록된 EU 디자인에 대한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등록을 요청하는 취지의 신청 (b) 출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c) 보호가 구하여지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히 명확한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② 출원에는 또한, 해당 디자인이 체화될 예정이거나 적용될 예정인 제품에 대한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a) 시각적 표현을 설명하는 설명 (b) 제50조에 따른 등록공개의 유예를 요청하는 신청 (c) 출원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d) 출원일에 유효한 로카르노 분류에 따라, 해당 디자인이 체화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제품의 류 및 소류에 따른 분류 (e) 디자이너 또는 디자이너 팀의 성명, 또는 디자이너 또는 디자이너 팀이 인용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출원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진술 ④ 출원에는 출원 수수료의 납부가 요구된다. 제3항 (b)에 따른 공개 유예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개 유예에 대한 추가 수수료의 납부가 요구된다. ⑤ 출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 (a) 및 (d)에 언급된 요소에 포함된 정보는, 디자인 그 자체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DR 제36조a (출원에 관한 집행권한의 부여) 집행위원회는 등록된 EU 디자인에 대한 출원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특정하는 집행행위를 채택한다. 해당 집행행위는 제109조 제2항에 언급된 심사절차에 따라 채택된다.

CDR에서 출원일은 PLT 제5조나 DLT 제6조처럼 독립조문으로 출원일을 규정하는 대신 CDR 제36조의 출원요건과 제36조a에서 출원 세부사항에 대한 집행권한 위임을 결합하여, 출원일을 인정하는 전제 조건을 간접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CDR 제36조는 등록된 EU 디자인 출원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minimum elements)를 규정한다. 그 요소로, 등록 요청, 출원인 식별 정보, 보호대상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한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과 함께 디자인이 적용될 제품의 표시가 갖추어진 상태로 출원이 접수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이러한 요소가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곧 유효한 출원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EUIPO가 이를 접수한 시점이 실질적인 출원일로 기능한다. CDR에 따르면 출원일은 선언적으로 부여되기보다는, 출원요건 충족이라는 사실 상태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이다.

CDR 제36조를 통해 법률 차원에서 출원의 골격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CDR 제36조a를 통하여 출원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집행행위로 특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이를 통해 CDR은 출원요건을 경직적으로 고정하지 않고, 전자출원 방식의 변화, 시각적 표현의 기술적 형식 변화, 절차 간소화 정책 등에 따라 출원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CDR의 출원요건-출원일 연계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출원일 단계에서 요구되는 요소를 시각적 표현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CDR 제36조 제6항은 제품 표시나 설명, 분류 정보 등이 디자인 그 자체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들이 출원일이나 권리범위 판단에 과도하게 결부되는

것을 차단한다. 이는 출원일을 둘러싼 분쟁이나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출원일은 ‘언제 보호를 구했는가’를 확정하는 기준점으로만 기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출원요건은 출원일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관문으로 작동하고, 그 이후의 절차적 완결성은 집행규칙과 후속 절차에서 확보하는 방식이다.

4. 평가

먼저 DLT를 엄격한 의미에서 해석할 경우 국내법이 조약과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언어 요건과 관련해서는 조문의 충돌여부 관점 또는 국제조화 정책목표의 관점 중 어느 쪽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언어 요건은 여전히 인정 언어의 범위 내에서 각국의 선택사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경우,¹⁴⁸⁾ 제1항 제9호에서 ‘한글

148)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 2017. 9. 22., 2018. 10. 18., 2025. 10. 1.>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가. 법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 나. 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다.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5. 제3조를 위반하여 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9.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10.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11.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나 그 밖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2.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

로 적지 아니한 경우’를 부적법한 출원서류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출원서가 즉시 반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출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조약이 요구하는 절차적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38조는 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요건을 규율하는 조문으로서, 제1항 각 호는 출원일을 즉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제4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38조는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출원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제2항에서 지식재산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4항은 출원인이 해당 보완명령에 따라 보완서를 제출한 경우 그 보완서가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는 출원일을 즉시 부여하지 않는 사유일 뿐, 보완 자체를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한편 시행규칙 제24조는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에 관한 절차 규정으로, 제1항 제10호에서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를 적법한 출원서류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즉시 반려를 명하는 규정이 아니라, 행정청이 해당 서류를 정상 절차로 계속 처리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는 반려에 앞서 반려예고, 반려이유 통지 및 소명기

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6.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7.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2025. 10. 1.>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간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즉시 반려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1항 제7호 및 제19호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0호는 보완명령 또는 반려 절차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 사유일 뿐, 출원인에게 아무런 시정 기회 없이 출원을 배제하는 근거로 기능하지 않는다.

디자인보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은 출원인에게 명시적으로 기간을 부여하여 흠결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재량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절차적 권리 보장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DLT가 요구하는 바는, 출원인이 출원일과 관련된 형식적 흠결로 인해 즉시 권리 획득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국내법상 “한글 미기재”의 경우에도, 출원일은 보완서 제출 시점으로 조정될 수 있으나, 출원 자체가 배제되거나 반려되기 전에 보완의 기회가 선행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DLT가 요구하는 절차적 보호 수준과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결국 국내법은 “한글 미기재”를 출원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보완명령을 통해 지정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일을 인정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일 관련 형식적 흠결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DLT의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V. 실시권의 등록

표 72 조약 제17조(실시권 또는 담보권 기록 신청)

조약 본문	시행규칙
제17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 신청	제13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의 등록 신청, 또는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에 관한 요건의 세부사항
① (실시권 등록 신청에 대한 요건) 계약당사자의 법률에서 실시권의 등록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신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출할 것 나. 신청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① (신청 내용) 1.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7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실시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권리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권리자에게 송달 또는 연락 주소지가 있는 경우, 그 주소 라. 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 마. 실시권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바. 실시권자에게 송달지 또는 연락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 사. 실시권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법적 성격, 국가명 및 해당 법인이 설립된 국가 내의 행정구역명(해당하는 경우) 아.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권자가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 국적국의 명칭, 국가에 거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명칭, 실질적이고 유효한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명칭 자.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등록번호 차. 등록에 포함된 모든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실시권이 부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시권이 부여된 산업디자인의 번호

조약 본문	시행규칙
	카. 실시권이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독점실시권인지 여부 타. 해당되는 경우, 실시권이 등록이 효력을 갖는 지역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그 일부 지역을 명시한 기재 파. 실시권의 존속 기간
② (수수료) 실시권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실시권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동조 제1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명시된 기재사항 나. 등록할 변경의 내용 및 범위, 또는 등록할 말소의 표시
③ (단일 신청) 실시권이 둘 이상의 등록에 관련된 경우에도, 신청서에 모든 등록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모든 등록에 대하여 등록권자와 실시권자가 동일하며, 또한 모든 등록에 관한 실시권의 범위가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 신청으로 충분하다.	② (실시권 등록을 위한 증빙서류) 1. 실시권이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등록 신청 시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타 요건 금지)	가. 계약서 사본. 이 경우, 해당 사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공공기관, 또는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행정청에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 원본과 일치함을 인증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 당사자, 실시권의 권리 및 범위를 명시한 계약서의 해당 부분으로 구성된 발췌본. 이 경우, 해당 발췌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
1. 실시권 등록과 관련하여, 동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다음 사항은 요구될 수 없다.	

조약 본문	시행규칙
가.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등 특증의 제출 나. 실시권 계약의 재정적 조건에 관한 기 재 2.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실시권 등록 이외 의 목적을 위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국의 법률상 존재하는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는 공공기관, 또는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행정청에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에 의 해 진정한 발체본임을 인증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권리자(공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유자가 서명한 명시적인 동의서를 제출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증거) 신청서 또는 그에 첨부된 증명서 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진실성 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행정 청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실시권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 정에 따라 설정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실시 권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 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 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문서를 발행한 기관, 공증인, 권한 있는 공공기관 또는 관 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행정청에 대리권 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 원본과 일치함을 인 증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출원과 관련한 신청) 계약당사자의 법률 에 출원에 대한 실시권 등록을 규정하고 있 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그 출원에 대한 실시권 등록 신청에 준용한다.	
⑦ (담보권 등록 신청) 출원 또는 등록에 대 한 담보권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항 제1 호 나목을 제외하고 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약의 분석

조약 제17조는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STLTL의 실시권 등록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PLT는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의 등록을 국내법에 규정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약 제17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는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등록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각 계약당사자는 수수료의 금액과 기준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하나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실시권 등록 요청을 수락해야 하지만, 계약당사자는 기록 요청과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의 수에 따라 단일 요청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 즉 계약당사자는 하나 이상의 등록과 관련된 실시권 기록에 대한 단일 요청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을 출원 또는 등록의 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¹⁴⁹⁾

조약 제17조 제4항은 실시권의 등록을 위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으며 특히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등록 증명서의 제출이나 실시권 계약의 재무조건을 기재하는 것은 특히 요구할 수 없음을 규정한다. 그러나 실시권의 계약서의 사본이나 발췌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¹⁵⁰⁾

조약 제17조 제5항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다른 법률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규정하면서 계약당사자의 세무 또는 통화당국(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에 해당), 통계당국(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 해당), 반독점 또는 권위있는 경쟁기관(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등이 해당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권자에게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¹⁵¹⁾

조약 제1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요건은 출원과 관련된 실시권 기록에도 적용되지만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약 제17조 제7항에서 담보권 기록 신청에 관한 사항은 PLT 제17조 제9항과 유사하다. 이는 저당권이나 질권과 같은 의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담보하거나 손실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책할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취득한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와 관련되어 있다. 동조 제1항에

149) Note on Article 15.03.

150) Note on Article 15.04.

151) Note on Article 15.05.

다른 실시권의 기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가 담보권 기록을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기록의 신청을 허용하는 계약당사자는 어떠한 담보권을 등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¹⁵²⁾ 또한 동조의 도입부에서 “단 제4항 제1호 나목는 제외한다”는 문언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담보권 기록 신청을 위하여 담보권의 금융 조건에 관한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¹⁵³⁾

표 73 실시권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 관련 규정 비교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요구할 수 없는 사항
DLT	요건에 따른 신청, 증명서류 (제17조제1항) 수수료 (제17조제2항)	규정된 사항 외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등록증 제출 <u>계약의 재정적 조건 기재</u> (제17조제4항)
STLT	요건에 따른 신청, 근거서류 (제17조제1항) 수수료 (제17조제2항)	규정된 사항 외 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표장의 등록증명서 제출, 사용권 설정계약서 또는 그 번역본, <u>사용권 설정계약서의 금융조건의 표시</u> (제17조제4항)
PLT	실시권자에 의하여 서명된 제출서류 정확함에 대한 진술, 정부 권리에 관한 정보, 국가 법률에 따라 등록이 강제되는 경우 실시권 등록에 관한 정보, 실시권의 일자 및 기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실시권의 근거문서(계약서사본)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번역문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수수료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제17조제1항에서 제6항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다른 방식적 요건 요구 금지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2. 국내법 분석

「디자인보호법」 제98조는 디자인권의 이전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에 대해서 등록을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전용실시권은 디자인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전용실시권은 물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¹⁵⁴⁾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

152) Note on Article 15.07.

153) Note on Article 15.08.

154)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제3판), 세창출판사, 2009, 687면.

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은 설정,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한 이전, 변경, 소멸(혼동에 의한 경우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이다. 본조에 의하면 전용실시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지식재산처 등록원부에 설정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통상실시권과 차이가 있다.¹⁵⁵⁾

조약의 규정상, 실시권 등록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하여 과도한 요건을 첨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시권의 설정등록을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37조 및 제38조는 전용·통상실시권 설정등록 신청 시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조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약 제17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는 특히 요구될 수 없는 사항으로 ‘실시권 계약의 재정적 조건에 관한 기재’를 언급하고 있다.

표 74 「특허권 등의 등록령」상 실시권 등록 신청 관련 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하거나 이전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55)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371면.

②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해당하는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에서는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며 여기에는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기재요령에 따르면,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가의 금액과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을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설정등록을 위해서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예컨대 전용실시권의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실시권(사용)계약서인 경우에는 작성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 필요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STLT의 가입을 위하여, 등록령 제37조와 제38조의 경우 ‘상표’에 한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으로 정한 바 있다.

그림 12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 특허권 등의 등록청 시험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11. 28.>

특허포(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여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구분】 □전용실시권(사용권) □통상실시권(사용권)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원인】

(【특약】)

(【가등록신청】)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기간】

【지역】

【내용】

(【실시대상상표】)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

(【기타】)

위와 같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 원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2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가. 미국

특허에 관하여 USPTO는 이해관계에 관한 등록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에 대한 기록 및 기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¹⁵⁶⁾ 출원, 특허 및 등록의 양도, 특허출원 및 특허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기타 서류는 작성양식에 따라 특허청에 기록된다.¹⁵⁷⁾

미국 특허법 및 관련 규칙상 기록에 대한 사항은 소유권의 이전이나 변경을 전제하고 있으나,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변경을 구성하는 문서 외에도 다른 문서도 기록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러한 문서의 예로서 라이선스(실시권) 계약 및 담보권 양도 계약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제3자에게 공평한 이익 또는 특허, 출원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익을 위해 기록된다. 문서의 기록 여부가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문서가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양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 확립되어야 하는 시점에 USPTO에서 결정을 한다.¹⁵⁸⁾

미국에서는 양도와 관련한 서식에 기재될 내용으로 출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출원번호),¹⁵⁹⁾ 주소 및 제출양식을 규정한다. 제출양식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양도인의 이름, 양수인 이름 및 주소, 양도되는 권리에 대한 설명, 관련 이해관계의 식별, 우편을 발송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날짜 및 서명, 만약 정부와 관련된 이익을 기록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 국적, 공동연구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특허출원의 경우 PCT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¹⁶⁰⁾ 라이선스의 기록에 관한 서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도에 관한 서식에서도 재무기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6) 미국 특허법 제261조 (소유권, 양도)

157) 37CFR § 3.11. (기록될 문서)

158) MPEP § 313 (양도 이외의 라이선스, 담보권 및 문서의 기록)

159) 37CFR § 3.21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식별)

160) 37CFR § 3.31 (서식의 내용)

나.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특허등록령」(特許登録令)에서 실시권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재무정보의 기록에 관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표 75 일본 「특허등록령」실시권의 기록 관련 규정

제43조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 등록)

-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설정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전용실시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특허발명의 실시 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가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 신청)¹⁶¹⁾

- ① 가전용실시권의 설정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정할 가전용실시권의 범위
 2. 특허법 제34조의2 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 ② 가전용실시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이전할 가전용실시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을 실시하는 사업과 함께 가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신청서의 양식)에서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변경의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용실시권 설정(변경)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으로는 특허번호, 권리자의 표시, 전용실시권의 범위, 설정의 목적, 전용실시권자, 신청인 대리인, 특허권자, 특허권자의 대리인과 첨부서류(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사본 및 기타 관련 서류)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허등록령에서의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규정에 상응하는,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재는 없다.

161) 가전용실시권은 출원 공개 이후 등록 전까지의 기간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림 13 일본 전용실시권 설정(변경) 등록신청서

様式第十 (第10条関係)

収 入
印 紙
(円)

専用実施権設定(変更)登録申請書
(令和 年 月 日)

特許庁長官 殿

- 1 特許番号
- 2 権利の表示
- 3 専用実施権の範囲
- 4 登録の目的
- 5 申請人(登録権利者)
 - (識別番号)
 - 住所(居所)
 - 氏名(名称)
 - (国籍・地域)
- 6 申請人(登録権利者)代理人
 - (識別番号)
 - 住所(居所)
 - 氏名(名称)
- 7 申請人(登録義務者)
 - (識別番号)
 - 住所(居所)
 - 氏名(名称)
- 8 申請人(登録義務者)代理人
 - (識別番号)
 - 住所(居所)
 - 氏名(名称)
- 9 添付書面の目録

(1) 専用実施権設定契約証書	1 通
(2) ()	通

[備考]

- 1 申請書の表題は、専用実施権を設定しようとするときは「専用実施権設定登録申請書」と記載し、既に登録されている専用実施権の範囲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専用実施権変更登録申請書」と記載する。
- 2 専用実施権変更登録申請の場合にあつては、「権利の表示」の欄には、変更する専用実施権の順位番号及び範囲(地域、期間及び内容)を記載する。なお、専用実施権設定登録申請の場合にあつては、「権利の表示」の欄は設けるには及ばない。
- 3 専用実施権設定登録申請の場合にあつては、「専用実施権の範囲」の欄には、設定契約証書に記載された専用実施権の設定すべき範囲(地域、期間及び内容)を記載する。なお、専用実施権変更登録申請の場合にあつては、「専用実施権の範囲」の欄は設けるには及ばない。
- 4 「登録の目的」の欄には、「専用実施権の設定」又は「本専用実施権の範囲を「〇〇」と変更」のように記載する。
- 5 「専用実施権設定(変更)契約証書」には、登録義務者が記名し、印(本人確認できるものであること。以下この様式において同じ。)を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特許登録令第29条第1項第2号の「第三者の許可、認可、同意又は承諾を証明する書面」には、当該第三者が記名し、印を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
- 6 その他は、様式第七の備考1から4まで、9から14まで及び16から18までと同様とする。

다. EU

CDR 제32a조에서는 실시권 및 기타 권리의 등록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나 재무관련 사항은 요구하지 않는다.

표 76 EU CDR상 실시권 관련 규정

제32a조 (실시권 및 기타 권리의 등록 절차)

- ① 제28조제3항, 제28a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 제28조제5항은, 제29조에서 언급된 물권에 관한 권리의 등록 또는 그 양도, 제30조에서 언급된 강제집행, 제31조에서 언급된 파산절차 참여, 그리고 제32조에서 언급된 실시권의 등록 또는 실시권의 양도에 *mutatis mutandis* 적용된다. 다만, 제28조제3항에서 규정된 “양도를 적법하게 증명하는 서류 제출 요건”은 EU 디자인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서 언급된 권리의 등록 신청은 필요한 수수료가 납부되기 전까지는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③ 실시권 등록 신청에는 해당 실시권을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등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a) 전용실시권
 - (b) 재실시권(서브 라이선스) - 단, 해당 재실시권이 이미 등록된 실시권자로부터 허여된 경우
 - (c) 특정 상품 범위에 한정된 실시권
 - (d) 연합(EU)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실시권
 - (e) 한시적(temporary) 실시권
- ④ 제1항 단서 (c), (d), (e)에 따라 실시권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실시권이 허여된 특정 상품 범위, 연합 내 지역, 또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⑤ 이 규정에 따라 실시권 및 기타 권리의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사무국(Office)은 신청인에게 그 흠결을 통지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흠결이 보완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은 거절된다.

4. 법개정방향(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의하여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실무상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용실시권의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당장의 법 개정이 없더라도 실무상 출원인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조약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개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 등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이 필요하나, 개정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등록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사유를 현행 상표권에서 디자인권까지 확장하는 방식과, ② 제38조 전체 조문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외사유를 계속 확대하는 방식은 입법형식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¹⁶²⁾

물론 실시권 계약의 특성상 ‘대가 또는 그 지급방법·지급시기’ 등 재무적 요소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조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재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이 존치되어 온 데에는 일정한 입법취지와 실무상 활용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시권 등록 실무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제도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조문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산업재산권 전반의 공통 서식 및 등록 절차와 연동되는 사항이므로, 개정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162) PLT 역시 실시권 등록 시 재무 관련 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낮다.

V. 실시권 미등록의 영향

1. 조약의 분석

표 77 조약 제19조(실시권 미등록의 영향)

조약 본문	시행규칙
제19조 실시권 미등록의 영향	
① (등록의 효력과 보호) 실시권이 체약당사자의 행정청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등록의 효력이나 그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시권자의 특정 권리) 체약당사자는 실시권자가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가지는, 권리자가 제기한 권리침해 절차에 참여할 권리 또는 그 절차를 통하여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실시권의 등록을 그 전제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는 실시권 미등록의 영향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조항은 STLT 제19조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PLT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조약 제19조 제1항은 산업디자인 등록과 보호의 유효성과 실시권 등록 여부를 구분하는데 의의가 있다. 체약당사자의 법률이 실시권 등록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산업디자인의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보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¹⁶³⁾ 즉 DLT 제19조는 디자인권 관련 라이선스(실시권)의 등록 여부와 권리효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그 목적은 라이선스 계약의 사법상 효력과 등록제도의 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분리하고, 라이선스 불등록을 이유로 디자인권의 유효성이나 권리행사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조약 제19조 제1항의 핵심은 실시권의 미등록으로 산업디자인의 등록 자체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효과는 권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을 부정하거나, 권리보호를 제한·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권리의 존속이나 효력, 집행의 가능성이 실시

¹⁶³⁾ Note on Article 17.01.

권의 미등록 때문에 제한되어서는 안됨을 규정한다. 이 조항을 통하여 실시권의 등록 여부는 디자인권 자체의 존속·유효성·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디자인권은 라이선스 등록과 무관하게 온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라이선스 등록은 권리 자체가 아니라 대항요건, 즉 제3자 대항 또는 공시(public notice)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며, 등록의무를 설정해 실시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디자인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디자인권 보호는 라이선스의 존재 여부·등록 여부와 별개의 제도라는 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조약 제19조 제2항은 더욱 직접적으로 국가의 규제를 제한한다.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권리자가 개시한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절차(예컨대 민사소송 등)에 실시권자가 참여 가능함을 규정한다. 해당 규정은 산업디자인의 실시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실시권 기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시권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의 두 가지 옵션이 제안되었으나, STLT의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참가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실시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¹⁶⁴⁾ 동 조문의 기본원칙은 실시권자가 법에 따라 갖는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실시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며 효과는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조약은 실시권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문상 라이선시라는 표현에는 모든 실시권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실시권자가 가지는 권리는 참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권리자가 제기한 권리침해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며, 이는 실시권자가 권리자의 심판이나 소송에 보조참가나 공동소송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규정한다. “그 절차를 통하여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실시권자가 자신의 실시권에 대한 침해 손해를 회수할 권능을 의미한다.

다만 적용범위에 관하여 해당 계약당사자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범위는 계약당사자의 법에서 정한 한계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요건으로 실시권의 등록을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¹⁶⁵⁾ “계약당사자의 법

164) Note on Article 17.02.

165) 예컨대 “실시권자에게 아예 참가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입법 선택은 조약의 위반이 아니다. 다

물에 따라 가지는”이라는 전제를 둔 것은 국가마다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를 대하는 방식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DLT가 권리창설의 조약이 아니라 최소한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통상실시권자는 독자적인 소송제기의 권한은 없고, 권리자의 소송에 참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만 한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권리침해절차에 대한 참여 여부는 각국의 재량으로 하되, 참가가 보장이 된 경우라면 실시권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표 78 조약 제19조 제2항의 해석(사례중심)

[상황] A국가에서 디자인권자 R이 제3자인 X를 대상으로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때 통상실시권자인 L도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해당 침해소송에 참가하고자 한다.



A국의 국내법 규정	법원의 판단	DLT 제19조제2항 위반 여부
(case 1) “통상실시권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나 실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미등록을 이유로 참가를 각하/기각	조약 위반 권리를 인정하면서 등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 금지
(case 2)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소송에는 보조참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참가자격 자체가 부정	조약 위반 아님 권리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각국의 재량범위임

2. 국내법 분석

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실시권의 등록 또는 미등록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제98조에서 등록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한다. 법 제98조 제1항은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은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한다. 이는 실시권자의 권리효력을 규율하는 조항으로서 디자인권 자체의 유효성이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법 제98

만, 참가권을 인정하되 “참가하려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방식의 부가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조 제2항은 상속이나 일반 승계의 경우 등록을 요하지는 않으나 신고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이 역시 등록은 권리발생의 요건이지만, 상속 등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이지 권리 자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사항은 아니다.

DLT 제19조 제1항은 “실시권의 미등록을 이유로 디자인 등록 자체에 불이익을 주지말라”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전제로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의 대항요건이나 공시방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우리법 제98조는 이에 따라 실시권에 대하여 “등록 요건주의”를 채택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나. 권리에 관한 절차

표 79 심판 및 소송 관련 「디자인보호법」 규정

디자인보호법	청구주체	실시권자 참가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제117조 (디자인권자 등의 신용 회복)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제119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판 심판)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출원인)	불가
제120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해당 결정을 받은 자(출원인, 디자인권자)	불가
제121조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이해관계인, 심사관	
제122조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디자인권은 배타권으로의 성격으로 그 침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¹⁶⁶⁾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서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며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으로 작용한다. 법상 금지청구를 직접 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참가가 아닌 직접 행사를 위해서는 ‘등록’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가 금지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166) 김주형, 특허권등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재판자료 56집, 법원도서관(1992) ; 정상조 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768면 재인용.

있고,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대세적인 배타성을 갖지 않으며 그에 대한 침해는 채권침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¹⁶⁷⁾

법 제120조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의 경우 해당 심판의 청구인은 등록거절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로서,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승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과 달리 등록거절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있어서는 그 특성상 제3자의 심판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¹⁶⁸⁾

법 제121조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다. 이해관계인이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속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권리의 대항을 바다를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¹⁶⁹⁾ 이때 실시권자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실시권자는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이해관계가 없다는 견해와 실시권자는 실시료의 지급의무가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견해,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예외적으로 무효심판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부정된다는 견해,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실시권 설정 과정에서의 교섭내용 및 구체적인 실시허락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해관계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학설 외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와 없다는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다.¹⁷⁰⁾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르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인에게 심판 참가의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심결에 불복이 있으면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67) 정상조 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769-770면.

168) 정상조 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853면.

169) 이에는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이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디자인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후1358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판결

170) 정상조 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858면.

법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이해관계인이다. 적극적 심판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디자인을 무단 실시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고, 소극적 심판은 디자인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자인 이해관계인이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¹⁷¹⁾

다. 심판참가

표 80 참가 관련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규칙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3조(참가)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73조(답변서)
	제78저(심판참가 신청)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심판절차에서 참가라 함은 심판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심판당사자의 일방에 참여하여 그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및 디자인 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같이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결정계 심판에서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가가 허용되는 심판은 당사자계 심판에 한한다.¹⁷²⁾

디자인심판에서의 참가는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가 있다. 법 제143조 제1항의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는 원래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이해관계인 중 한 사람의 심판청구에 참가하여 공동심판 청구인과 같은 입장에서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참가이다. 법 제143조제3항의 보조참가는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가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참가인이나 보조참가인 모두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당사자참가인의 경우 피참가인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나, 보조참가의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심

171) 정상조 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879면.

172) 정상조 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992면.

판청구를 취하한 후에는 더 이상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보조참가는 청구인측이나 피청구인 측 어느 쪽이나 참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참가는 심판청구인 측에서 공동청구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뿐 피청구인 측에는 참가할 수 없다.¹⁷³⁾

법 제144조에서는 참가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서면)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에 있어 신청서의 제출 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라. 소송참가

「디자인보호법」은 심판참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나, 소송에 대한 참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때문에 실시권자의 소송 참가 가능 및 그 요건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상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 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3절에서는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¹⁷⁴⁾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규정한다.¹⁷⁵⁾ 그리고 이러한 참가에 있어 역시 참가의 취지 및 이유를 밝히는 것 이외의 요건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다.¹⁷⁶⁾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가. 미국

미국 특허법 체계는 실시권자의 소송참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법률로 두지 않으며, 그 판단은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19조와 연방대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축적된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즉, 미국에서는 실시권 등록 여부가 소송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이 부여한 권리의 실질적 범위에 따라 원고적격과 소송참가 필

173) 정상조 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994면.

174)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175)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76) 「민사소송법」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요성이 판단되는 판례법 중심 모델이 정착되어 있다.

실시권자의 소송참가 문제에 관하여 미국 법원이 적용하는 기본 틀은 FRCP Rule 19(필수적 당사자 규칙)에 기반한다.¹⁷⁷⁾ FRCP Rule 19는 특정 당사자가 소송의 완전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자가 이러한 ‘필수적 당사자’에 해당한다. 미국 판례는 배타적 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가 일정한 범위의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침해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소송은 반드시 특허권자를 공동당사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해 왔다. 이는 실시권자가 특허권의 일부 권능을 이전받은 존재일 뿐이며, 특허권자의 부재 하에서는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하거나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Rule 19의 구조적 요구와 부합한다.

반면 비독점 실시권자(non-exclusive licensee)는 침해로 인한 법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적격 자체가 부정되어 특허권자와 함께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미국은 독점성 여부와 계약 내용의 실질적 효과를 기준으로 실시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구분하며, 이는 법률의 명문 규정이 아닌 판례를 통해 정립된 체계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미국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실시권의 등록 여부가 소송참가 자격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특허제도에는 라이선스의 등록을 요구하거나 이를 소송참가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등록제도는 주로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침해소송에서 실시권자의 지위는 오직 계약상 권리 범위와 판례가 정립한 법리에 의해 판단되며, 이는 조약 제19조가 제시하는 “라이선스 등록을 소송참가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보다도 더 완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실시권 관련 법제는 조약 제19조의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등록제도와 소송상 지위를 명확히 분리하는 점에서 오히려 조약보다 더 자유로운 규제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77)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19. Required Joinder of Parties

나. 일본

일본 의장법은 심판 절차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허법의 심판 관련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하는 구조를 취한다. 의장법 제52조는 특허법 제131조부터 제170조까지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심판의 청구, 심판관의 구성, 심판절차의 진행 방식, 소송과의 관계, 비용 등에 관한 특허법상의 주요 규정이 디자인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준용 규정에 따라, 특허법 제148조와 제149조에서 정한 ‘심판참가’ 관련 규정 역시 의장 심판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

표 81 일본 특허법 상 참가 관련 규정

제148조(참가)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는, 청구인으로서 해당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해당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이후에도, 심판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심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는,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해당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은, 일체의 심판절차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9조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의 부분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자가 참가하고자 하는 심판의 심판관이 심판에 의하여 결정을 한다. ④ 전항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또한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결정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일본 특허법 제148조는 심판참가의 주체와 권능을 규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 종결 전까지 심판의 ‘참가인’으로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한 이러한 참가인은 본래의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절차를 단독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심판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역시 당사자 중 일방을 보조하기 위한 형태로 심판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일단 참가가 허가되면 본래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모든 심판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심판제도가 당사자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절차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 특징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의장법에 준용할 경우, 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가 심판참가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본 법제는 특허와 디자인 모두에서 실시권자를 권리와 관련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시권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독립적 법적 이익을 구성한다. 따라서 실시권자는 심판의 결과가 자신의 실시권의 존부·범위·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법 제148조 제3항의 “심판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가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일본 판례와 학설에서도 실시권자는 심판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되며, 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한 심판참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또한 심판참가를 신청하는 절차 역시 특허법 제149조의 준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시권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판장은 그 신청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참가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가가 허가되면 실시권자는 심판에서 당사자와 동일한 절차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증거조사나 의견 제출, 반박 등 모든 심판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특허법 제150조의 준용에 의해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실시권자가 적극적으로 심판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종합하면, 일본에서 실시권자는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심판참가가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송참가에 대하여는 특허법이나 의장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시권자의 소송참가 가능성은 민사소송법의 일반규정(특히 보조참가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용실시권자는 일본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자와 유사한 배타적 지위를 가지므로, 침해소송의 독립당사자(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권자를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한다. 따라서 소송참가 이전에 ‘원고적격’을 갖추고 있어, 민소법상 참가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아래 실시할 수 있을 뿐, 독자적 배타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본 판례는 통상실시권자는 침해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자가 보조참가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통상실시권은 재산적 이익을 갖지만, 침해 판결이 직접적으로 실질적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일본 판례는 통상실시권자의 소송참가(보조참가)를 부정하고 있다. 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의 귀속 주체는 특허권자이며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 활동)는 침해소송 판결로 직접적인 법률상 변동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통상실시권자는 원고로도, 참가인으로도 소송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여기에서 DLT 제19조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약 제19조는 실시권자의 절차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시권자의 절차참가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실시권의 등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약이 금지하는 것은 ‘실시권자가 절차에 참여하려는 경우, 등록을 필수요건으로 부과하는 행위’이며, ‘국가가 실시권자의 소송 또는 심판 참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각 계약국은 자국의 절차법 체계에 따라 실시권자의 참가 적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DLT는 그러한 자율적 판단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제도는 DLT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 일본에서는 통상실시권자의 참가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 또는 독립당사자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실무의 일관된 태도이다. 즉, 통상실시권자의 소송참여가 제한되는 이유는 실시권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침해소송의 결과가 통상실시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속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참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등록의 유무’가 아니라 ‘당해 절차에서 보호할 법률상 이해관계의 존재’에 있음이 명확하므로, 이는 DLT가 금지하는 형태의 제한과는 성질이 다르다.

또한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일본법은 독립된 원고로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극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 실시권 등록을 소송참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다. 일본에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권리 발생요건으로서 등록이 필요하지만, 이는 절차참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등록요건이 아니라 권리 자체의 구성요소이므로 DLT가 문제 삼는 영역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결국 일본 제도는 실시권자의 소송참가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절차적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요구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DLT 제19조가 제시하는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약이 요구하는 것은 절차참가 여부 판단의 기준을 ‘등록 여부’로 삼지 말라는 것이며, 일본은 참가 인정 여부 자체를 ‘법률상 이해관계’라는 독립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조약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법개정방향(안)

DLT 제19조 제2항은 계약당사국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보가 허용된 조항이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이미 조약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예외적 장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은 실시권자의 참가 여부를 실시권 등록의 유무에 따라 제한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약의 요구와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유보 선언을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적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만일 조약상 기준과 국내법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유보가 아니라 국내법의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 방식이다.

한편, 실시권의 미등록이 절차적 지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은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는 존재한다. 그러나 조약과의 직접적인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조약이 금지하는 “미등록을 이유로 한 절차 참가의 제한”도 법문상 확인되지 않는 바 당장의 법개정을 요하는 사안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실무에서는 실시권이 미등록 상태인 경우 심판·소송 등 절차에서 실시권자의 참여 가능 여부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실무적 애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또는 관련 규정에서 실시권자의 절차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VI. 오류의 정정

표 82 조약 제23조(오류의 정정) 및 시행규칙 제16조(오류의 정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조약 본문	시행규칙
제23조 오류의 정정	제16조 오류의 정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① (신청) 1. 출원, 등록 또는 이에 관하여 행정청에 제출된 기타 신청에 조사 또는 실체심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오류가 적용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서명하여 행정청에 제출한 서류에 의한 등록부 및 공보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체약당사자는 조약 제23조에 따른 오류의 정정 신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오류 정정 신청이라는 취지의 기재 나. 관련 출원 또는 등록번호 다. 정정되어야 할 오류의 내용 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 마.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체약당사자는 신청에 정정된 부분 또는 이를 반영한 대체 부분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각 출원 및 등록에 대하여 각각의 정정된 부분 또는 대체 부분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신청인이 오류가 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는 오류를 발견한 후 과도한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하였거나, 또는 체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고의적인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하였음을 선언하는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수료) 1.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귀책으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수수료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③ (단일신청) 오류와 정정 내용이 모든 출	

조약 본문	시행규칙
원 및 등록에 대하여 동일한 경우, 제21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증거) 주장된 오류가 실제로 오류인지 여부 또는 오류의 정정 신청에 포함된 내용이나 첨부된 서류의 진실성에 관하여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만, 계약당사자는 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타 요건 금지)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기타 형식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이 조약 또는 시행규칙에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예외) 계약당사자는 재등록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오류에 대하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조약의 분석

조약 제23조는 오류의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PLT 시행규칙 제18조를 모델로 삼고 있다. 조약 제23조는 오류의 정정 요청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계약당사국이 정정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계약당사국은 정정된 내용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명백히 드러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 요청의 대상이 아닌 출원서의 정정, 특히 산업디자인의 설명 또는 도면의 보정과 같이 조사보고서 접수 후 자발적으로 또는 실제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정은 규제하지 않는다.¹⁷⁸⁾

조약 제23조 제1항 제1호 관련, “행정청에 제출된 기타 신청에 조사 또는 실제 심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오류가 포함”이라는 표현은 조약 제1조 차목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의 기록”¹⁷⁹⁾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적용 법률에 따

¹⁷⁸⁾ Note on Article 21.02.

라 행정청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 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오류가 정정 가능한 지는 조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다.¹⁸⁰⁾ 하지만 그 오류가 조사(search) 또는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와 관련된 것은 아니어야 한다.

표 83 오류 정정 가능 여부의 비교 예시

구분	대상문서	정정 가능 문서 (조사나 실체심사와 무관)	정정이 불가능한 문서 (조사, 실체심사와 관련)
출원단계	출원서	- 성명,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 오류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자격번호 등 오기 - 도면의 단순한 표기 오류 - 수수료 납부 관련 기재 오류 - 서명, 날인의 누락 또는 오기 - 번역문의 단순 문법, 오타(법적 의미에 영향이 없는 경우)	- 디자인의 설명 - 도면의 실질적 표현 - 물품의 지정, 분류 기재 -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 심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
심사 /등록단계	번역문 디자인 공보	- 출원번호, 등록번호 오기 - 공보 게재 시 인적사항 오기 - 주소변경 등 행정사항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서 내용 -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보정사항 - 보호범위의 변경
등록 후 단계	등록증	- 등록권자의 명칭, 주소 변경 - 등록사항 공보의 기재 오기 - 권리이전 등록 시 인적사항 오류	- 권리범위를 변경하는 보정 - 존속기간, 우선권 주장 등 사항

조약 제23조 제1항 제2호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정정 또는 대체 부분에 대한 제출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신청이 하나 이상의 출원 및/또는 등록에 적용되는 경우 행정청은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각의 출원 및 등록에 대해 별도의 교체 또는 정정을 통합한 내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¹⁸¹⁾

조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오류가 선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오류 정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무엇이 선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¹⁸²⁾ 이는 정정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절차적 신뢰

179) 조약 제1조 차목 “행정청의 기록” 이란 정보가 저장된 매체의 형태를 불문하고,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되며 그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행정청이 수집·관리한 것을 말한다.

180) Note on Article 21.03.

181) Note on Article 21.04.

182) Note on Article 21.05.

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조약 제24조 제1항 제4호 관련, 본 조항은 오류가 발견된 경우 정정 요청이 과도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체된 경우 계약당사자가 해당 정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과도하거나 고의적인 지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계약당사자의 결정사항이다. 예를 들어 신청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과도한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⁸³⁾

조약 제24조 제2항은 정정 요청과 관련된 수수료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다. 계약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동조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에 대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부담된다. 그러나 행정청의 귀책으로 발생한 오류¹⁸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행정청의 오류와 출원인의 오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조약 제23조 제3항은 여러 건의 출원 또는 등록이 동일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때 단일한 정정 요청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이는 조약 제21조 제4항의 원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오류와 동일한 정정 내용을 가진 복수의 출원·등록에 대해 하나의 정정 요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단일 요청의 허용은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출원인에게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동조 제4항은 정정 요청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사무국은 정정 대상이 실제로 ‘오류’ 인지 여부에 합리적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정 요청과 관련된 문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만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계약당사자가 과도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정 절차를 신속하고 간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동조 제5항은 정정 요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명시된 요건 외에는 어떠한 형식적 요구도 추가로 부과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단, 조약 자체 또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은 각국 행정청이 정정 절차를 형식적·관료적으로 과도하게 확장하거나 복잡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제6항은 계약당사자가 특정 유형의 오류에 대해 조약 제23조를 적용

183) Note on Article 21.06.

184) 행정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오류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다. 어떤 오류가 자국법상 ‘재등록(reissue)’ 과 같이 보다 중대한 절차를 통해서만 정정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오류는 조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이한 정정 절차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조약이 허용하는 국가 재량의 범위를 보여주는 규정으로, 단순 행정오류가 아니라 권리범위 또는 등록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특수 오류에 대해서는 개별국가가 자체적인 절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국내법 분석

표 84 오류의 정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 및 하위법령, 관계법령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47조 (절차의 보정)		제26조 (서류 등의 보정)
		제92조 (국제출원의 보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66조 (직권보정)		
제88조 (디자인등록원부)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90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10조(디자인공보)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실체적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보정’으로, 절차적 또는 오류에 대한 수정은 ‘정정’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을 별도로 두어,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에서는 공보를 정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정정공보의 게재대상(규정 제12조) 및 정정공보의 발행절차(규정 제13조)를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66조는 직권보정을 규정하고 있다.¹⁸⁵⁾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

제도는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곧바로 보정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2013년 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13년 이전에는 출원서에 오타자 등과 같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 후에 보정서 제출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기재사항이 명백히 잘못 적힌 경우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⁶⁾ 직권보정이 가능한 “명백히 잘못된 경우” 란 디자인의 설명, 도면의 기재 등을 참작하여 출원인의 당초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단순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심사관 직권으로 보정하더라도 해당 디자인 등록 시 권리범위 해석이나 실시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단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직권보정은 법 제195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¹⁸⁷⁾ 직권보정을 하고자 하는 심사관은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결정등본과 함께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동조 제2항).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때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직권보정 통지에 대하여 직권보정 사항별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동조 제4항), 이러한 경우에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48조 제1항에¹⁸⁸⁾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도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동조 제6항).¹⁸⁹⁾

심사관의 직권보정은 출원단계에 적용되는 기록(서류)에 대한 정정을 규정한다. 문제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출원단계에 적용되는 기록의 단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 체계 하에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류에 단순한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스스로 신청하여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8조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보정을 염두한 것이지 단순한 오류의 정정을 염두한 것은 아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받거나 통지를 통해 대

185) 연계조문으로 「디자인보호법」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가 있다.

186)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257면.

187) 「디자인보호법」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88) 「디자인보호법」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189)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259면.

응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출원서의 단순한 착오나 오타자와 같이 실체심사와 무관한 오류에 대해서도 출원인이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정정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도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되어 있을 뿐,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오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DLT가 규정하고 있는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신청에 의한 오류 정정” 제도와 비교할 때 국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국제 조약 수용 및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원인 신청에 따른 단순 오류 정정 절차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디자인보호법」 제88조는 디자인등록원부를 제89조는 디자인등록증의 발급을 규정한다. 디자인원부는 디자인권의 상세내용이 기록된 ‘원(原)자료’이며, 디자인등록증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었다는 하나의 증표로써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 디자인권자에게 교부하는 공적증서이다.¹⁹⁰⁾ 법 제89조제2항에서는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등록증’에 대하여 정정 또는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등록증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를 갖는다. 디자인등록원부는 권리의 상세 내용과 변동사항이 기재되는 원자료이므로, 실제 권리관계의 판단은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등록원부에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공적 장부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89조와 달리 등록원부 자체의 오류를 출원인이나 권리자의 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등록원부와 등록증 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증에 대한 정정·재발급은 가능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자료인 등록원부의 오류를 신청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부재하다. 이는 DLT가 규정하는 “출원·등록 단계에서의 오류 정정” 취지와 비교할 때 우리 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공보 게재사항에 대하여 추가·삭제·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게재한다’라는 포괄적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실무상 심사정책과 또는 심사과에서 의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청 절차와 서식이 있

190) 디자인등록증 없이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디자인등록증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양도된 것은 아니다. 또한, 디자인등록증을 가진 자를 착오로 디자인권자로 믿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즉, 디자인등록증은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 창작자의 노고에 대한 인격권 혹은 명예권적 성격의 증서로서 교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326면.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 방식은 공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권리자 입장에서 오류 정정을 위해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는 등록원부의 오류에 대한 신청 정정 절차가 부재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도가 권리자의 자율적인 오류 정정 신청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결국 공보 정정 역시 행정청 내부 주도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DLT가 요구하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 신청에 의한 오류 정정 절차와는 괴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후 권리자가 명백한 오기를 발견한 경우, 단순히 수정 가능한 오류라면 권리자가 등록원부 외에 디자인공보에 대해서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보는 대외적으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오류가 장기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원부뿐 아니라 공보상의 오류 역시 권리자 신청에 의해 신속하게 정정될 수 있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가. 미국

미국의 경우 단순한 오류의 정정에 대하여는 특허법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행정청의 오류와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오류를 나누어 정정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표 85 미국 특허법 제254조(USPTO의 오류에 대한 정정증명서)

미국 특허법 제254조 (USPTO의 오류에 대한 정정증명서) USPTO의 과실로 인하여 특허에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오류의 사실과 성질이 USPTO의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그 오류의 사실과 성질을 기재한 정정증명서를 인장 하에 수수료 없이 발급하여 특허 기록에 등재할 수 있다. 해당 정정증명서의 인쇄본은 특허의 각 인쇄본에 첨부되어야 하며, 그 정정증명서는 원래의 특허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정증명서가 첨부된 각 특허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재판에 있어서, 마치 당초부터 정정된 형태로 발급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과 작용을 가진다. 특허청장은 정정증명서에 갈음하여, 그리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수수료 없이 정정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제254조는 USPTO의 오류를 정정하는 규정이다. 특허증서나 기록에서 USPTO가 범한 오류가 명백하고, 권리범위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USPTO는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수수료 없이 오류를 정정해야 하며 이때의 정정은 정정증명서(Certificate of Correction)의 방식¹⁹¹⁾으로 공보 및 특허기록에 반영된다. 이는 DLT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행정청의 오류는 무상으로 정정한다”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표 86 미국 특허법 제255조(출원인의 오류에 대한 정정증명서)

미국 특허법 제255조 (출원인의 오류에 대한 정정증명서) USPTO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특허에 사무적 또는 오타자의 성질을 가지는 오류, 또는 경미한 성질의 오류가 존재하고, 그러한 오류가 선의로 발생하였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그 정정이 신규사항을 구성하거나 재심사를 요구하는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한, 특허청장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받고 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정정증명서가 첨부된 해당 특허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재판에 있어서, 마치 당초부터 정정된 형태로 발급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과 작용을 가진다.

미국 특허법 제255조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오류 정정에 대하여 규정한다. 특허 명세서·청구범위·도면 등에서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범한 오류가 명백한 (clerical or typographical) 것이고 실질적 사항(material matter)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USPTO는 수수료 납부 후 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표 87 미국 특허법 제256조(발명자 기재의 정정)

미국 특허법 제256조 (발명자 기재의 정정)

(a) 정정 -

오류로 인하여 발급된 특허에 발명자가 아닌 자가 발명자로 기재되었거나,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명자가 발급된 특허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모든 당사자 및 양수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에 대한 증명과 그 밖에 부과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때에, 그러한 오류를 정정하는 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b) 오류가 정정된 경우 특허의 유효성 -

발명자를 누락하였거나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한 오류는, 본 조에 따라 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류가 발생한 특허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해당 사항이 문제된 법원은 모든 관계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심리를 거쳐 특허의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장은 정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91) 권리의 실체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공식 증명서의 형태로 오류를 정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특허법 제256조는 발명자 표시의 오류에 대하여 규정한다. 발명자 표시의 오류가 실수로 발생한 경우 심리·행정적으로 선의가 인정되면 증거 제출 후 정정이 가능하며, USPTO 또는 연방법원이 정정 명령을 할 수도 있다.

한편 출원단계에서의 단순오류의 정정도 가능한데 이러한 사항은 37CFR에서 규정한다. 출원인, 발명자, 주소, 대표자 정보 등 기록 오류에 대하여 정정할 수 있다. 명세서나 도면, 청구항의 단순 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이 가능하나 이때 실질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특허제도의 오류 정정 체계는 정정의 세부 유형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즉, 오류가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정정 절차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USPTO가 범한 오류는 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정정하고(미국 특허법 제254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오류는 신청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미국 특허법 제255조). 이와 같은 체계는 오류의 유형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허용 여부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정권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절차적 경로를 달리 설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증·등록원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비실질적·행정적 오류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러한 정정제도는 특허권의 실질적 범위나 권리 내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한, 오타·기재 오류·번호 오류 등 다양한 범주의 실수를 포괄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미국은 오류 정정 자체를 특허제도의 투명성과 행정적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며, 출원 단계에서의 ADS 정보, 발명자 표시, 서류 형태·양식 오류 등도 CFR 규칙에 따라 정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오류 정정 체계는 정정 대상의 세부 요건보다 ‘정정을 누가 요청할 수 있는가’라는 주체 중심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유연하고 광범위한 정정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조약이 지향하는 오류 정정의 간소화·합리화 원칙과도 높은 정합성을 보이며, 오류 때문에 권리 보호가 좌우되는 사태를 예방하는 실용적 접근으로 이해된다.

나. 일본

표 88 일본 특허법 제17조의2

일본 특허법 제17조의2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①~④ (생략) ⑤ 전2항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와 함께 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하는 보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1. 제36조 제5항에 규정된 청구항의 삭제 2.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그 보정 전의 해당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보정 후의 해당 청구항에 기재되는 발명의 산업상 이용 분야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한 것에 한한다) 3. 오기의 정정 4. 불명확한 기재의 해명(거절이유통지에 관한 거절의 이유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하는 것에 한한다)

일본 특허법 제17조의2는 표제상 “보정(補正)” 규정으로 보이지만,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보정(amendment)과 정정(correction)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적 틀 안에서 함께 다루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출원서류에 존재하는 오류를 “보정”이라는 광범위한 절차 속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인정하는 심사결과(査定) 송달 전까지 명세서·청구범위·도면에 대해 자유롭게 보정할 수 있으며, 거절이유 통지 후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정이 허용된다. 이는 본래의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기 정정, 설명의 명확화 등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에서 말하는 “오기에 의한 정정” 기능을 상당 부분 포괄하는 구조이다. 특히 제17조의2 제5항 제3호는 “誤記の訂正(오기 정정)”을 명시적으로 보정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제도에서 정정(correction)을 독립된 절차로 분류하지 않고 보정(amendment)에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한편, 의장법은 보정에 관한 규정을 특허법과 달리 매우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장법 제9조의2는 출원서 기재(단, 출원인·창작자·대체서류 관련 기재 제외) 또는 출원에 첨부된 도면·사진·견본에 대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보정이 등록 후에 발견되었을 때 특별한 효과가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정정 자체를 허용하는 조항은 아니며, 오히려 보정이 잘못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법적 효과를 규율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일본 의장법은 특허법과 달리 오기 정정, 행정기록의 정정, 등록 후의 단순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에 관

한 규정이 법률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발명자(의장의 경우 창작자)의 보정 등, 출원 후의 발명자 명의 오기 또는 실수에 관한 절차는 JPO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¹⁹²⁾ 해당 근거를 특허법 제17조 제1항으로 보고 있다. 발명자의 보정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의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는 절차가 특허청에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발명자의 표시의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수속 보정서’의 제출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발명자의 보정은 사건이 특허청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허원부에 등록된 후나 거절사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보정을 할 수 없다.

한편 등록 이후의 오류의 정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령」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⁹³⁾

표 89 일본 특허등록령 제41조(정정)

특허등록령 제41조 (정정) 특허청장은 등록을 완료한 후, 해당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의 과실에 기초한 것일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등록을 정정하고, 아울러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일본 의장등록령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등록령 제41조는, 등록이 완료된 후 등록부에 오류(錯誤) 또는 누락(脱落)이 발견된 경우, 그 오류가 특허청(JPO)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때에 한정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정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은 행정기록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관청 과실에 의한 오기 시 직권정정”을 허용하는 규정 구조를 취한다. 제41조 제2항은 제40조의 준용을 통하여, 정정 후의 효력, 통지방식 등 절차적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정정 절차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 EU

EU CDR에서는 명백한 오기나 비의도적인 오류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정정에 관한 사항은 EUIPO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⁹⁴⁾

192) 発明者（実用新案は考案者・意匠は創作者）の補正について, <<https://www.jpo.go.jp/system/process/hutugan/madoguchi/info/faq-after-filing/hatsumesha-hose/index.html>>

193) 특허등록령(特許登録令) 및 의장등록령(意匠登録令)

194) <<https://guidelines.euipo.europa.eu/2231430/2232611/designs-guidelines/11-1-1-general-principles>>

표 90 EUIPO 디자인가이드라인 상 정정에 관한 규정

EUIPO 디자인 가이드라인 11.1.1 일반원칙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문언상의 오류 또는 복사 오류,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한하여, 디자인의 표현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될 수 있다. (유럽연합 디자인 시행지침 (EUDIR) 제12조 제2항) (2013.12.3. 결정 R 1332/2013-3, Adapters, 제14항 이하).

이러한 정정 요청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디자인의 등록 또는 등록공고에 행정청(EUIPO)에 귀속되는 착오 또는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등록권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오류를 정정한다 (EUDIR 제20조).

이 경우에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저지른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은, 등록공고의 내용(EUDR 제49조, 제73조, 제99조 및 EUDIR 제14조, 제70조)과 등록부의 기재사항(EUDR 제48조, 제72조, 제99조)에만 한정된다.

행정청이 디자인의 표현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예: 표현을 왜곡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오류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한, 디자인의 표현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지는 정정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EUDIR 제12조 제2항) (2013.12.3. 결정 R 1332/2013-3, Adapters, 제14항 이하).

정정은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등록부에 최초 기재된 이후 수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정정이 가능하다.

EUIPO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단순 정정 제도를 디자인권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는 순수한 행정적 수단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정이 허용되는 대상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문언상의 오류, 복사 오류, 그리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착오에 한정되며, 이러한 정정은 어디까지나 디자인의 표현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단순 정정이 권리범위나 디자인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보정이나 권리변동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가이드라인은 정정의 허용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표현의 불가침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디자인의 표현은 등록디자인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정정이 그 표현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청이 디자인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왜곡하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는 실체를 바꾸는 정정이 아니라 행정청의 오류로 인해 왜곡된 기록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조치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오류와 행정청의 오류를 구분한다. 출원인에 기인한 오류의 경우에는 출원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행정청의 오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이원적 구조는 단순 정정이 권리자의 책임을 전제로 한 보완 절차인 동시에, 행정청 스스로의 기록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수단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반영한다. 또한 양 경우 모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 정정은 권리자에게 추가적인 절차적·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도 단순 정정은 심판이나 소송과 구별되는 비쟁송적 행정행위로 운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정정 요청이 등록공고의 내용이나 등록부 기재사항에 한정됨을 명시함으로써, 정정의 대상이 권리의 실체가 아니라 공식 기록의 정확성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정정은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이루어지며, 최초 등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순 정정이 시간의 경과로 소멸되는 권리구제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단순 정정이 권리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오히려 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시적 관리 장치임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EUIPO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의 단순 정정 제도는 권리의 실체와 동일성은 엄격히 보존하면서, 명백한 형식적 오류에 한하여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정정을 보정이나 무효와 같은 권리변동 절차와 명확히 구별하고, 등록제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상의 운용은 법문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실무 차원에서 단순 정정이 사실상 독자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표 91 EUIPO 디자인가이드라인 상 정정에 관한 규정

EUIPO 디자인 가이드라인 11.1.2 정정 요청(The request for correction)

유럽연합 디자인 시행지침(EUDIR)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등록부 및 등록공고에 포함된 착오 및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등록된 유럽연합 디자인의 등록번호
- b.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의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등록권자의 성명과 행정청이 등록권자에게 부여한 식별번호
- c. 등록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업무상 주소,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행정청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식별번호
- d. 정정을 요청하는 등록부 기재사항 및/또는 등록공고의 내용에 대한 특정, 그리고 해당 요소의 정정된 내용

동일한 등록권자에게 속하는 둘 이상의 등록에 관한 오류 및 착오에 대해서는 단일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 (EUDIR 제19조 제4항 및 제20조).

정정 요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은 신청인에게 해당 흠결(deficiency)을 통지한다. 행정청이 지정한 2개월의 기간 내에 흠결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정정 요청은

거절된다 (EUDIR 제19조 제5항 및 제20조).

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아니거나, 등록공고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오류 또는 착오에 대한 정정 요청은 거절된다. 이에 따라, 디자인의 표현을 설명하는 설명에 대한 정정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품 지정의 EU 공식 언어 간 번역 오류는, 비록 해당 번역이 행정청이 아닌 유럽연합 기관 번역 센터(Translation Centre for the Bodies of the European Union)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공고의 내용의 일부로서 등록부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에 귀속되는 오류로 간주되어 정정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유럽연합 디자인 출원이 행정청 언어로 제출된 경우, 해당 출원 언어의 문언이 정본으로 간주된다 (EUDR 제99조 제3항). 출원이 행정청 언어가 아닌 다른 EU 공식 언어로 제출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지정한 제2언어의 문언이 정본으로 간주된다.

EUIPO 디자인 가이드라인 11.1.2는 단순 정정 제도를 권리의 실체를 변경하지 않는 행정적 정정 절차로 한정하면서, 그 절차적 요건과 한계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정정 요청이 임의적·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정 대상과 정정 내용이 등록 제도의 공식 기록과 명확히 연결되도록 형식 요건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정정 요청서에는 등록번호,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대리인 정보(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정정을 요구하는 등록부 기재사항 또는 등록공고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정정된 문언이 특정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 정정이 추상적 주장이나 포괄적 수정 요청이 아니라, 특정한 기록 요소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정정 행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가이드라인은 동일한 등록권자에게 속하는 복수의 등록에 대하여 단일한 정정 요청을 허용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한 절차적 유연성도 함께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DLT의 규정취지와 동일하다.

가이드라인은 정정 요청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식도 규정하고 있다. 정정 요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즉시 이를 각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흠결을 통지하여 보완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지정한 2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 흠결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정 요청은 거절된다. 이는 단순 정정이 비쟁송적 행정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절차적 엄격성과 기록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정정이 허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관해서도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정정 요청은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 또는 등록공고의 내용에 한정되며, 그 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디자인의 표현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에 대한 정정 요청은 원칙적으로 거절된다. 이는 설명문이 등록디자인의 법적 동일성을 구

성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되지 않으며, 단순 정정 절차를 통해 수정될 경우 권리의 실질적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EU의 특성상 가이드라인은 언어 문제와 관련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품 지정에 관한 EU 공식 언어 간 번역 오류는, 비록 해당 번역이 EUIPO가 아닌 별도의 번역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공고의 내용의 일부로서 등록부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에 귀속되는 오류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번역 오류는 단순 정정의 대상이 되며, 행정청은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는 다(多)언어 체계를 전제로 하는 EU 디자인 등록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율로서, 권리 내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번역 또는 문언 간 불일치로 인해 해석상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의 기준도 제시한다. 출원이 행정청 언어로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출원 언어의 문언이 정본으로 간주되며, 출원이 행정청 언어가 아닌 다른 EU 공식 언어로 제출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지정한 제2언어의 문언이 정본으로 간주된다. 이는 단순 정정 절차와 별개로, 등록디자인의 해석상 기준 텍스트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규범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EUIPO 디자인 가이드라인 11.1.2는 단순 정정 제도를 엄격한 대상 제한과 명확한 절차 요건을 통해 관리되는 행정적 정정 메커니즘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권리의 동일성과 등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한편,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정이 가능하도록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92 EUIPO 디자인가이드라인 상 정정에 관한 규정

EUIPO 디자인 가이드라인 11.1.3 정정의 공고(Publication of corrections)

등록부에 이루어진 모든 변경사항에 대하여, 등록권자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진다 (EUDR 제72조 제6항).

정정 사항은 행정청에 의해 유럽연합 디자인 공보(European Union Designs Bulletin) Part A.3에 공고되며, 해당 정정이 기록된 날짜와 함께 등록부에 기재된다(EUDIR 제69조 (b) 및 제20조). 오류 또는 착오가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오류 또는 착오를 공고한 후, 등록부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등록권자에게 발급하고 해당 기재사항이 등록부에 기록되었음을 명시하는 확인서(statement)를 함께 발급한다 (EUDR 제72조 제2항 및 EUDIR 제17조).

오류 또는 착오가 등록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정정된 오류 또는 착오를 반영한 등록증명서는 종전에 등록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권자는 자신의 디자인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 등록부 등본(extract of the Register)을 공증된 형태 또는

일반 형태로 발급해 줄 것을 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다. 등록부의 공증 등본 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Part E, Register Operations, Section 5 (Inspection of Files)를 참조한다.

EUIPO 디자인 가이드라인 11.1.3은 단순 정정이 등록부 내부에서 종결되는 조치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적 기록 행위로 완결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록부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등록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정정 사항을 유럽연합 디자인 공보에 공고한 후 등록부에 반영한다. 이로써 정정은 단순한 내부 기록 수정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인 공시 절차를 통해 외부에 인식 가능한 법적 상태로 확정된다.

가이드라인은 오류의 귀속 주체에 따라 후속 조치의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오류가 행정청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정정 공고 이후 등록부의 최신 기재사항을 반영한 등록증명서와 함께 해당 기재사항이 등록부에 기록되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오류가 등록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증명서 재발급 여부를 제한하되, 등록부 등본 발급을 통해 현재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 정정을 권리의 실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적 정정으로 유지하면서도, 등록제도의 신뢰성과 제3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시 장치를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DLT가 정정의 허용과 그 절차적 구제에 초점을 두고 공고 단계까지는 규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EUIPO 가이드라인은 단순 정정의 효과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가시화되는지까지 실무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법개정방향(안)

오류의 정정과 관련된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명문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현행 법령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단순한 오류에 대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 또는 하위규정에서 정정 신청의 가능성과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출원서류나 공보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권리자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 정정 절차의 범위·요건·효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권리자의 신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접근은 현행 규정의 해석과 실무 운용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다. 비록 법률에 명문으로 정정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동시에 출원인·권리자의 정정 요청을 금지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청 내부의 심사실무 지침이나 행정규칙을 통해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오류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접근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실무 운용을 통해 권리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제 내에서 오류의 정정 관련 규정은 명확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는 있으나, 조약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적 명확화를 도모할지, 실무 지침을 통해 운영적 보완을 선택할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며, 두 방안 모두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다.

표 93 DLT 제23조 반영을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안) 구상

	1안	2안
방법	법에 오류 정정에 관한 포괄적 근거규정 도입, 필요시 하위법령 신설	실무 운용 개선
장점	권리자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 절차나 요건을 투명하게 규정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법령 개정없이 신속 운용가능 실무지침의 개정을 통해 유연한 적용 권리자의 편의증대를 단기간에 달성 행정부담과 입법절차 최소화
고려 사항	모든 오류 유형에 대한 일괄 규정 가능한지 확인 필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오히려 신청권이 불안정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근거 부족

VII. 강제대리

표 94 조약 제5조 제2항(강제대리)

조약 본문	시행규칙
제5조 대리인 및 송달 또는 교신 주소	
② (강제대리) 1. 계약당사자는 그 영토 내에 거소 또는 실질적인 공업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출원인, 등록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당사자의 영토 내에 거소 또는 실질적인 공업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출원인, 등록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출원일 확보를 위한 출원서 제출 또는 수수료의 단순한 납부에 한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스스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 유보	
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유보)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유보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날에 적용되는 자국법에 따라, 그 영토 내에 주소 또는 실질적인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출원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u>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출원서의 제출에 관하여 행정청에 직접 행위할 수 없다.</u>	

표 95 강제대리 관련 산업재산권 절차조약 비교

DLT	PLT	STLT
Article 5 Representatives; Address for Service or Address for Correspondence	Article 7 Representation	Article 4 Representation; Address for Service

DLT	PLT	STLT
(2) [Mandatory Representation] (a) Subject to subparagraph (b),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its territory appoint a representative.	(2) [Mandatory Representation] (a) A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an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appoint a representative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except that an assignee of an application, an applicant, own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may act himself before the Office for the following procedures:	(2) [Mandatory Representation; Address for Service] (a) Any Contracting Party may require that,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dure before the Office,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on its territory be represented by a representative.
(b) An applicant, holder, or other interested person who has neither a domicile nor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may act himself/herself before the Office for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filing date, and for the mere payment of a fee.	(i)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filing date; (ii) the mere payment of a fee; (iii) any other procedure a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1. 조약의 분석

조약 제5조 2항은 제1호와 제2호로 구성된다. 제1호는 출원일을 얻기 위한 목적과 단순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출원을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에서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대리인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함을 규정하나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을 규정한다. 단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소지 또는 유효한 공업상/상업상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해당 규정은 STLT 제4조 제2항 (a)호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¹⁹⁵⁾ PLT 제7조 제2항 a호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문은 대리인 선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재외자의 경우라도 행정청에 대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사유(출원일 확보 목적의 출원, 단순한 수수료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사무국은 전자출원이 표준이 되고 있으며, 현대의 통신기술이나 출원방식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외국 출원인, 권리자 또는 행정청에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 이해당사자가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이 해당 예외조항에 의하여 도전받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¹⁹⁶⁾

조약 제5조 제2항 제2호는 PLT 제7조 제2항을 모델로 하여, 출원인이 해외에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받는데에 있어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시된 원칙에 대한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한다. 첫째, 출원인이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일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조약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원일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출원일이 인정된다. 단, 계약당사자는 출원과 관련하여 후속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출원일을 기준으로 주어진 기한 내에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해당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자국의 법률에 규정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¹⁹⁷⁾

둘째, 출원인이 계약당사자 영역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단순한 수수료 지불을 위해서는 대리인 없이 행정청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순한 수수료 납부”라는 표현에서 계약당사자가 해당 수수료 납부와 관련된 기타 행위(조사 또는 심사 요청)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모든 계약 당사국은 무엇이 “단순한” 수수료 납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¹⁹⁸⁾ 참고로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거소지 또는 유효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일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출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제31조에서 유보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195) DLT note 4.06.

196) SCT/3/10. 331-332. 추가로 브라질 대표단은 회원국들이 해당 조항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특별세션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197) DLT note 4.07.

198) DLT note 4.08. 4.0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대리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조약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무수준은 약간씩 상이하다. 우선 세 조약(DLT, PLT, STLT) 모두 국내에 주소지 또는 실질적인 영업소가 없는 자(출원인,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영업소 절차 수행을 위한 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즉, 각 계약당사자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각 조약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DLT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대리인 지정이 가능하나, 출원인 등이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수료만을 납부할 경우에는 스스로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 수수료 납부나 최초 출원은 대리인 없이 가능하지만 이후 절차는 대리인을 필요로 하여, 예외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PLT의 경우 DLT보다 더욱 출원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두고 있다. 출원서의 제출, 수수료 납부 및 기타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스스로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예외조항이 본문 내에 통합되어 있고, 규칙으로 예외 범위를 추가 확장할 수 있어, 실무상 대리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다.

STLT의 경우 대리인 지정 의무가 가장 강하며, 국내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없는 출원인 등은 무조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상표절차의 통일성과 행정청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표 96 강제대리 관련 절차조약 간 비교

조약	강제대리 의무 강도	예외 인정 범위	실무적 유연성
PLT	낮음	출원, 수수료, 기타절차	높음
DLT	중간	출원, 수수료에 한정	보통
STLT	높음	없음	없음(가장 엄격)

2. 국내법 분석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을 규정하는 「디자인보호법」 제6조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준용해오다,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디자인보호법」 내에 신설하였다. 재외자

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를 의미하며, 디자인관리인은 재외자에 의해 위임된 자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을 의미한다.

「디자인보호법」 제6조에서 재외자에게 디자인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 수행에 있어서 특허청의 절차 진행 지연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 관리인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재외자의 경우는 절차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단,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직접 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¹⁹⁹⁾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자로서 재외자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을 말하며, 위임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디자인에 관한 모든 절차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가. 미국

즉, 미국 특허법은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대리인 제도는 강제요건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표 97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상 강제대리 관련 규정

37 CFR § 1.31 (출원인은 1인 이상의 특허전문가 또는 공동발명자에 의해 대리될 수 있음) 특허출원인은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는 위임장을 부여하여 1인 이상의 특허전문가 또는 공동발명자에 의하여 대리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예: 조직 양수인)는, 설령 그 법인격 단체가 출원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특허전문가에 의하여 대리되어야 한다. USPTO는 특허전문가의 선정에 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할 수 없다.

출원인은 스스로 출원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하여 한 명 이상의 특허대리인(patent practitioner) 또는 공동 발명자(joint inventors)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 USPTO는 출원을 대신해 대리인을 선정해주지 않으며, 대리인의 선

199)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1001면.

택은 전적으로 출원인의 책임이다. 단 법인, 단체, 기타 조직이 출원인인 경우 반드시 USPTO에 등록된 특허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²⁰⁰⁾

출원인은 대리인을 둘 수도 있지만, 스스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대리인 선임이 선택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37 CFR § 1.33은 미국 내 주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지가 가능한 연락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리인 선임의무를 사실상 전제로 하는 구조도 아니다.²⁰¹⁾

USPTO는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하는 절차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Pro Se라고 불리는 자진출원의 방식과 특허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고용하여 출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재외자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USPTO는 Pro Se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스로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홍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발명가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Pro Se 출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Pro Se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한 자료를 USPTO 웹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다.²⁰²⁾

즉, 미국은 출원, 출원일 확보, 수수료 납부 등 기본적인 절차를 출원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력 절차 수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조약이 요구하는 최소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 대리인 의무 자체를 두지 않는 더 개방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나. 일본

일본은 동일 취지의 특허 강제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허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의장법에는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 법제의 구조상 의장법이 특허법을 준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개정될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음에 일본 특허법의 현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재외자(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일본 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특허관리인)으

200) 37CFR § 1.31.

201) 다만 스스로 출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는 하나 USPTO는 변리사 또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출원을 할 것을 권장한다.

202) Filing a patent application on your own, <<https://www.uspto.gov/patents/basics/using-legal-services/pro-se-assistance-program>> 참조

로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특허출원을 직접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특허법 규정에 의한 특허법 정령(시행령)에는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재외자(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는 특허출원의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외자는 신규의 특허출원을 직접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특허분할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변경특허출원은 직접 절차를 대리할 수 없고 대리인(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제4년 이후의 특허료(특허연차료)도 직접 납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시행령). 이는 재외자가 특허등록료(최초 등록시 3년분)를 직접 납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특허등록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특허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표 98 일본 특허법 및 시행령의 대리권 관련 규정

일본 특허법 제8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①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고 한다)는 정령(政令;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의 특허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특허관리인은 일체의 절차 및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다만,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 특허법 시행령(정령) 제1조(재외자의 절차 특례)

- ① 특허법 제8조 제1항의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경우로 한다.
 1. 특허관리인을 가진 재외자(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일본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2. 재외자가 특허출원의 변경에 관한 특허출원 및 동법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에 근거한 특허출원을 제외한다.
 3. 재외자가 특허법 제17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4년 이후의 각 연분의 특허료의 납부를 하는 경우

일본 특허법 시행규칙(성령) 제4조의 4(재외자의 절차의 특례)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호의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절차는 제8조 제1항의 정령(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인 제27조의 10 제4항에서 규정하는 선원참조출원의 인증등본 등 또는 제27조의 11 제7항에 규정하는 우선권주장기초출원의사본의 제출로 한다.

이러한 개정에 대한 일본 현업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재외자가 일본의 특허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도 특정 건에 대하여 특허관리인(변리사)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하기 위해서는 “일본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재외자가 특정 건에 대하여 일본 변리사를 대리인(특허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일본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본거주의 주소지에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자(일본국 거주의 외국인등록자)만이 일본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비자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재외자가 외국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식별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본정부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고, 이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국에 체재(외국인등록증 보유)하고 있는 재외자가 이미 특허관리인(변리사)을 선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건(PCT, 파리조약우선권주장 등)의 특허출원만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시간적 또는 비용적(경제적), 언어적 불편성 등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본 특허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일본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⁰³⁾

재외자는 일본 특허관리인(변리사)의 선임 없이 직접 특허출원(시행령 제2호)을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우선권주장증명서류 등의 출원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7조의 11 제7항). 또한 PLT를 반영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선원참조출원도 일본 특허관리인(변리사)의 대리인선임 없이도 직접 출원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2호 및 제27조의10 제4항)고 규정한다. 일본 특허법 및 하위규칙 상 재외자(외국자연인 또는 외국법인)도 일본 국내의 특허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지 않고 특허출원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원료의 납부를 위해 전자증명서의 발급이 어렵고 또한 일본금융기관의 이용(통장개설, 카드발급 등)이 아주 제한적이므로 실제 재외자의 특허출원은 매우 낮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일본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⁰⁴⁾

한편 4년 이후의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외국에만 거주하는 재외자(외국자연인, 외국법인) 또는 위의 ⑤ 일반비자(一般査証)의 일본입국자(재외자)는 일본 특허관리

203) 최승재,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PCT 유보규정 철회 및 PLT 도입 타당성 검토」, 특허청, 2024, 60면 참조.

204) 최승재,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PCT 유보규정 철회 및 PLT 도입 타당성 검토」, 특허청, 2024, 62면.

인(변리사)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사정(특허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직접 특허등록료(처음 1-3년차분)를 납부할 수 없고, 반드시 일본 특허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특허등록료(1-3년차분)는 특허심사 등의 중간절차를 대리하는 특허관리인(변리사)을 통하여 납부하게 하고, 그 후 4년 차 특허연차료부터는 제외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현행 제도는 특허출원에만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PLT 규정이 반영되었지만, 실제 특허심사 등의 중간절차 및 특허등록 단계에서는 일본 특허관리인(변리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제외자가 직접 특허출원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⁰⁵⁾

다. EU

표 99 EU CDR의 대리권 관련 규정

제77조 대리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1.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도 행정청 앞에서 대리인을 두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3항 두 번째 문단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EEA(유럽경제지역) 내에 주소, 주된 영업소 또는 실질적·효과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거점을 가지지 아니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등록된 EU 디자인 출원의 제출을 제외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제7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 앞에서 대리인을 통하여야 한다.
3. EEA 내에 주소, 주된 영업소 또는 실질적·효과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거점을 가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행정청 앞에서 직원(employee)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이 항이 적용되는 법인의 직원은, 그 법인과 경제적 연계(economic connections)를 가지는 다른 법인도 대리할 수 있으며, 그 다른 법인이 EEA 내에 주소, 주된 영업소 또는 실질적·효과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거점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다. 이 항의 의미에서 타인을 대리하는 직원은, 행정청 또는 필요한 경우 절차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서명된 위임장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둘 이상의 출원인 또는 둘 이상의 제3자가 공동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U CDR 제77조는 EU 디자인 제도에서의 대리권 원칙과 강제대리의 예외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서, 대리 제도를 권리행사의 전제조건이 아닌 절차적 선

205) 최승재,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PCT 유보규정 철회 및 PLT 도입 타당성 검토」, 특허청, 2024, 63면.

택 수단으로 위치시키는 EU의 입법 태도를 나타낸다. 특히 동 조문은 대리인의 사용 여부를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에 맡기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강제대리를 허용하는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먼저, 제77조 제1항은 “제2항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도 행정청 앞에서 대리인을 둘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EU 디자인 절차의 기본 원칙이 대리인을 요하지 않음을(non-mandatory representation) 선언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절차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규범적 선택으로,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전문대리인(Professional representation)²⁰⁶⁾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대리권을 제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보완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77조 제2항은 제1항의 예외로서, 강제대리가 요구되는 유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 항은 EEA 역내에 주소, 주된 영업소 또는 실질적·효과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거점을 전혀 가지지 아니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된 EU 디자인의 출원 제출을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대리인을 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강제대리의 기준이 국적이나 법적 지위가 아니라, EEA와의 실질적·경제적 연결성의 유무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제대리의 적용 범위를 출원 제출 이후의 절차로 한정함으로써, 제도 접근의 출발점인 출원 단계에서는 역외자에게도 대리인 없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절차 접근성 간의 균형을 의식한 규율로 평가할 수 있다.

제77조 제3항은 EEA 역내에 일정한 연결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대리 방식의 선택 폭을 더욱 넓게 인정하고 있다. 동 항에 따르면, EEA 내에 주소, 주된 영업소 또는 실질적 영업거점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은 전문대리인뿐만 아니라 직원에 의하여도 행정청 앞에서 대리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법인과 경제적 연계를 가진 다른 법인까지도 동일한 직원을 통해 대리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집단이나 계열사 차원의 절차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는 대리제도를 전문직 중심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보다는, 실무적 효율성과 기업 활동의 현실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운용하려는 EU의 정책적 고려를 보여준다.

제77조 제4항은 복수의 출원인 또는 복수의 제3자가 공동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공동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절차의 명확성과 행정청과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강제대리의 확장이 아니라, 공동절차 상황에서의 절차 질서 유지라는 기능적 필요에 기초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206) EU CDR 제78조 및 제78조a 참고

이와 같이 제77조 전반을 종합하면, EU 디자인 제도는 대리제도를 원칙적으로 선택 사항으로 두되, 역외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강제대리를 요구하고, 그 범위 역시 출원 제출 이후의 절차로 한정하는 최소 개입형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리인은 절차 접근의 관문이 아니라,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적 장치로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EEA 역내자에 대해서는 대리 방식의 자율성이 폭넓게 보장된다.

EU CDR과 그 밖의 규정(EUDIR 및 EUIPO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EU 디자인 제도는 재외자에 대하여 조약이 예정한 예외 범위를 사실상 모두 충족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단순출원과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재외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먼저, 단순출원과 관련하여 EU CDR 제77조 제2항은, EEA 역내에 주소·주된 영업소 또는 실질적 영업거점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된 EU 디자인의 출원 제출에 관해서는 강제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출원 단계에서는 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행정청에 접근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DLT 제5조 제2항이 허용하는 “출원 단계에서의 절차 접근성 보장”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EU 제도는 간접적으로 재외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EU CDR 및 EUDIR의 수수료 관련 조문들은 공통적으로 수수료의 납부 기한, 금액, 납부 방식 등을 규율할 뿐, 수수료를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EUIPO 디자인 가이드라인 역시 수수료 납부 주체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납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을 절차 요건으로 삼고 있다. EU에서 수수료 납부는 행정청 앞에서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절차 수행을 위한 전제적·행정적 이행행위로 이해되고, 재외자를 포함한 누구나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는 재외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대리를 요구한 후, 단순출원이나 연차료·수수료 납부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본식 접근과 뚜렷이 대비된다. EU의 경우에는 애초에 강제대리의 적용 범위를 EEA 역외자의 출원 이후 절차로 한정하고, 출원 단계와 수수료 납부와 같은 기본적·기술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그 결과, 재외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출원을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수수료 역시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종합하면, EU 디자인 제도는 단순출원과 수수료 납부 모두에 관하여 재외자의 직접 수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강제대리를 허용하되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한 DLT 제5조 제2항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4. 그 밖의 검토사항 : 특허법 개정 논의

PLT는 DLT보다 출원인에게 유리한 강제대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특허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재외자의 경우 특허권리인이 아니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이며, 재외자에 대해서는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리가 강제된다.²⁰⁷⁾ 국내에 있는 자의 경우 재외자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에 대하여 대리인 선임이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대리인의 선임을 명할 수 있다.²⁰⁸⁾²⁰⁹⁾

이에 대하여 PLT이 가입을 검토하기 위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강제대리의 예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PLT 제7조(2)(a)는 출원일을 목적으로 한 출원

207)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08) 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09) 정차호 외, 앞의 보고서. 2011. 148면.

의 제출, 수수료의 단순한 납부, 선출원의 사본 제출(당초 출원일 유지 목적) 및 이 선출원의 사본 제출(인정된 출원일 유지 목적) 및 상기 3가지 항목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관청에 의한 접수증 발행 또는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교적 명확한 규정이며, 따라서 PLT 규정에 충실하게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²¹⁰⁾

한편 강제대리의 예외는 우리 법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며, 그 사유들이 입법 정책적 사유들인 관계로 법에 명시하는 것보다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또한 강제대리 규정과 연계하여 제10조의 대리인 교체 임명 등의 개정도 함께 제안되었다. 재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출원 등을 하는 경우 도달주의를 명확히 하는 사항과, 공시송달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항공등기우편 발송업무가 급증할 것에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등록유지료의 경우 누구라도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제1년차 특허료부터 누구나 납부할 수 있도록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²¹¹⁾

표 100 PLT의 강제대리의 예외를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 제안사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u>대리인(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재외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직접 밟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u>다만, 특허에 관</u>

210) 최승재 외, 앞의 보고서, 2024, 178면.

211) 정차호(2011) 및 최승재(2024 참조)

	<u>한 절차를 밟는자가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직접 밟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u>특허료는 누구든지 낼 수 있다.</u> ② <u>특허료를 낸 자는 특허료를 내야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u>
제219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제219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거나 또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u>국내가 아닌 경우(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u> 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②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② 재외자로서 <u>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u>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5. 법 개정방향(안)

강제대리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은 DLT가 허용하는 최소 수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PLT 가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법」에서도 강제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재산권 전반의 절차적 일관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 역시 PLT 및 특허법 개정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처는 특허와 디자인 절차를 동일 기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리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양 제도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리인 선임·변경 절차와 재외자 관련 송달 규정 등은 「특허법」의 개정 방향에 맞추어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이러한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전체 절차 시스템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절충적인 방안으로는 강제대리 규정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수수료 납부와 같이 절차적 부담이 적은 영역만을 개정하는 접근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재외자를 포함한 누구나 수수료를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운용되는 절차에 대해서만 「특허법」 개정 방향에 맞추어 최소한의 정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강제대리 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조약 이행에 필요한 핵심 요소만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법체계 내부의 절차적 일관성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이 방식은 「특허법」의 PLT 이행 개정안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독자적 설계가 필요한 다른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강제대리를 즉시 완화하기 어려운 디자인 제도의 제도적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입법 부담 없이 조약 이행의 최소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제대리 제도는 디자인 출원의 구조적 특성과 국제출원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련한 법 개정 자체를 다루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같은 산업재산권의 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일부심사등록제도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특성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는 대리인이 없을 경우 사실상 출원 및 절차 진행이 어려운 구조이나, 디자인은 대리인이 없더라도 출원인의 직접 출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 때문에 특허 제도를 전제한 동일한 강제대리 구조를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 직접출원을 전면 허용할 경우, 대량·방어적 출원이 난립하여 행정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미국 USPTO는 최근 특정국가 출원 급증 및 제도 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디자인 분야의 expedited examination을 폐지한 바 있으며, 이는 디자인 제도가 출원 패턴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²¹²⁾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조약 제31조의 유보 규정을

212) USPTO는 2025년 8월 14일부로 디자인 출원에 대한 expedited examination 절차를 완전히 제거하는 최종 규칙을 발령하였다. 이는 2025년 4월 17일부로 해당 절차를 일부 중단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USPTO에서는 급격히 증가한 expedited examination 요청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특히 허위 또는 부정신청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USPTO는 최근 몇 년간 expedited examination이 56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 이 제도의 남용 사례가 상당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요인으로서 전체의 대기시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정상출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USPTO는 언급하였다.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issues-final-rule-eliminate-expedited-examination-design-applications>>

활용하여 조약 제5조 제2항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현행 강제대리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이 충분히 정책적으로 정당성을 가진다.²¹³⁾

표 101 DLT 제5조 반영을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안) 구상

	1안	2안	3안
방법	DLT 수준에 맞추어 법개정 (재외자의 단순출원, 수수료규정)	수수료 규정만 우선 개정	법개정 없음/장기검토
장점	행정청 입장에서 절차 운영의 효율성 확보, 국제적 정합성	재외자에 대한 편의성 확보	보수적 접근으로 불필요한 제도 혼란 방지
단점	디자인제도의 특수성 반영 부족, 대리인 반발 가능성	출원인에게 불이익, 임시방편에 불과	출원인에게 불이익
고려 사항	동일 절차에 대한 일관성 확보, 개정 동력을 얻기에 상대적으로 용이	직접출원 허용 시 출원증가량 예상 및 근거자료 확보	DLT 가입 논의가 본격화 될 때에 유예여부에 대하여 검토 필요

213) 물론 일부심사제도는 원래부터 출원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권리 부여를 통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단순히 출원 증가를 이유로 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은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성과도 모순될 수 있다. 더구나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일부심사라도 신규성 명백 결여나 선출원과의 동일·유사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심사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권리 남용 가능성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출원 급증은 제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행정 역량 확충 및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VIII. 공지에외기간

표 102 조약 제7조 (공지에외기간)

조약 본문	시행규칙
제7조 공지에외기간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이 공개된 경우라도, 그 공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디자인은 신규성, 창작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자적 성격 또는 비자명성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 나.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자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 이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보를 취득한 자에 의한 공개를 포함한다.	
제31조 유보	
② (제7조,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및/또는 제19조 제2항에 대한 유보) 이 조약에 가입하는 날에 해당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적용법이 제7조,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및/또는 제19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유보를 통하여 자신이 해당 조항들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1. 조약의 분석

조약 제7조는 공지에외에 관한 사항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디자인의 등록 및 생산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디자인을 미리 공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려에 의하여 디자인을 공개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디자인권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작자, 그의 승계인 또는 타인에 의한 디자인의 공개에 대하여 공지에외 기간을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며, 예외 기간을 규정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²¹⁴⁾

이에 국가마다 서로 다른 예외기간이 존재한다는 점, 일부 국가에서 공지예외 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해외에서 산업디자인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조약에서는 합의된 12개월의 기한 내에서 공지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출원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¹⁵⁾

조약을 설명한 note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 행정청에 발행한 공보에 산업디자인을 공개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발생하는 지 여부는 각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른 문제이나, 공보에 의한 공개는 조약에서 명시한 공개 유형의 어떠한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예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²¹⁶⁾²¹⁷⁾

2. 국내법 분석

표 103 「디자인보호법」제37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② 삭제 <2023. 6. 20.>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이른바 공지예외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디자인이 공개되어 원칙적으로 신규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신규성 상실의 효과를 배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14) Note on Article 6.01.

215) Note on Article 6.01.

216) Note on Article 6.04.

217) 참고로 PLT는 특허 절차의 간소화와 권리상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조약으로서, 신규성 판단과 직결되는 공개에 따른 출원유예기간(grace period)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해당 사안은 실체요건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 정책에 맡겨져 있으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DLT가 별도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 공개에 따른 출원유예기간은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디자인 분야에서는 공개가 창작·사업화 과정의 불가피한 요소라는 점에서 출원인의 최소한의 보호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제도적 특수성에 따라 디자인법조약은 신규성 판단 자체를 통일하지 않으면서도, 공개로 인한 권리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으로서 공지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특허 분야에서는 공개가 신규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국가 간 제도 차이가 현저하여, PLT는 공지예외를 포함한 실체요건을 규율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동 조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 공지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되는 등의 방식으로 공개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개 사실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해당 공개를 법률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일정 기간 내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제36조 제1항은 공개를 허용하되, 그 공개로 인한 권리 상실을 완화함으로써 창작자 또는 권리자의 보호와 제도의 실효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제1항은 본문 규정에 이어 단서를 두고,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라는 공적 절차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는, 설령 그 공개의 대상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자신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단서로 인해 디자인 공개의 유형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즉, 전시회 출품, 학술 발표, 마케팅 과정에서의 공개 등 일반적인 공개 행위에 대해서는 12개월의 공지예외가 인정되는 반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에 의해 공개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동일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 법은 공개의 원인이 출원 절차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은 단순한 기술적 예외 규정이라기보다는, 우리 디자인보호법이 출원공개를 어떠한 법적 성격의 공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범적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원공개와 등록공고는 단순히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실상의 공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발생하는 공개로서, 권리의 형성 및 공중에 대한 법적 신뢰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입법자는 출원공개를 권리자가 선택적으로 행한 일반적 공개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할 경우, 출원공개 이후에도 다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출원공개 제도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출원공개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방식은, 권리 전략의 반복이나 우회적 권리 확보를 허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제3자의 법적 예측 가능

성과 권리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출원공개는 조기 공개를 통해 공중에게 기술·디자인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자나 이해관계자에게 법적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개에 대해 다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할 경우, 공개의 법적 효과가 불명확해지고, 출원공개 제도를 전제로 형성된 제3자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단서 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공개를 신규성 판단의 최종적 기준으로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DLT 제7조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 12개월 이내의 공개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공개의 유형을 출원공개로 한정하여 배제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는 DLT가 예정한 공지예외의 범위보다 협소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동 단서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출원공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DLT 이행을 전제로 한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그 존치 여부 또는 범위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지예외의 기산점을 출원일이 아닌 우선일로 확장하는 경우, 출원공개를 예외에서 배제하는 현행 단서 구조가 여전히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가. 미국

표 104 미국 특허법 제102조 (신규성)

미국 특허법 제102조 특허성 요건 : 신규성

(a) 신규성: 선행기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청구된 발명이 그 발명의 유효출원일(effective filing date) 이전에 특허로 되어 있었거나, 인쇄물에 기재되었거나, 공중에 사용되었거나, 판매되었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2) 청구된 발명이 제151조에 따라 발행된 특허 또는 제122조(b)에 따라 공개되었거나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허출원에 기재되어 있고, 그 특허 또는 출원이 다른 발명자를 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 또는 출원이 청구된 발명의 유효출원일 이전에 유효하게 출원된 경우.

(b) 예외

(1) 청구된 발명의 유효출원일 이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공개 - 청구된 발명의 유효출원일 이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a)(1)항에 따른 선

행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 해당 공개가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로부터 공개된 내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또는

(B) 해당 공개 이전에, 공개된 대상이 이미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에 의하여, 또는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로부터 그 내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자에 의하여 공중에 공개된 경우

미국 특허법 제102조는 특허의 신규성 및 선행기술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별도의 배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디자인 특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디자인특허에 대해서도 유효출원일 이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공개에 대하여 공지예외를 인정하며, 공개의 유형을 출원공개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표 105 공지예외의 기준일자 비교 (미국 vs 대한민국)

구분	미국	한국
기준일자	유효출원일	국내 출원일

한국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신규성 상실 예외의 기산점을 ‘공개일’로 두고,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출원일은 국내 출원일로 한정되며, 외국 출원이나 우선권 주장일을 기준으로 한 기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먼저 외국에 출원한 후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내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 출원일이 공개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공지예외의 적용 범위를 국내 출원 시점에 엄격히 귀속시키는 구조로, 출원인의 국제적 출원 전략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 특허법은 신규성 판단과 공지예외 적용의 기준일로 ‘유효출원일 (effective filing date)’을 채택하고 있다. 유효출원일에는 실제 미국 출원일뿐 아니라, 적법하게 주장된 우선권일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서 먼저 출원하고, 그 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에 출원한 경우에도 공지예외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공지예외를 단순히 국내 절차상의 특례로 보지 않고, 발명(또는 디자인)의 실질적 창작 시점과 국제적 출원 흐름을 고려한 권리 보호 중심의 기준 설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일본

표 106 일본 의장법 제4조 (의장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4조(의장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의장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의장에 대하여는, 동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의장 (발명,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됨으로써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도,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의장에 대하여는, 동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전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의장이 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의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7에서 “증명서”라 한다)을 의장등록출원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원인이 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둘 이상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제출은, 해당 둘 이상의 행위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제출하면 족하다.

④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이며, 그 기간의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일본 의장법은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의장법 제4조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면서, 비자발적 공개와 자발적 공개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예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증명서 제출을 통해 공지예외 적용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의장법 제4조 제1항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공지·간행물 게재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율한다. 이는 도용, 누설, 무단 공개 등과 같이 권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공개로 인해 신규성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동 항은 이러한 비자발적 공개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해당 출원에 관한 의장에 대하여는 신규성 또는 창작성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한다. 즉, 공개 사실은 존재하되, 신규성 판단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는 권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개로 인해 권리 취득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보호 규정으로 이해된다.

제4조 제2항은 공개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즉 자발적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 의장법은 자발적 공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되, 그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권리자의 행위로 인해 공개된 의장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가 발명·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와 같은 공적 절차에 따른 공개를 예외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공보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의 자발적 공개(예컨대 전시, 발표, 영업활동 등)에 대해서는,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하게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인정된다. 이를 통해 일본 의장법은 비자발적 공개와 자발적 공개를 구분하면서도, 자발적 공개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의 보호를 부여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제4조 제3항은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다. 동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의장이 신규성 상실 예외의 대상이 됨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공지예외의 적용 여부를 권리자의 주장에 맡기지 않고, 신청 및 입증 책임을 명확히 권리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하여 여러 공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제출하면 충분하도록 하여, 실무상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일본 의장법 제4조는 신규성 상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동시에, 공개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증명서 제출이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그 적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 공개에 대해서는 강한 보호를 부여하면서도, 자발적 공개 중 공보 게재와 같은 공적 공개는 예외에서 배제함으로써, 출원공개 제도의 안정성과 제3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 태도를 보여준다.

표 107 공지의예외의 기준일자 비교 (일본 vs 대한민국)

구분	일본	한국
기준일자	출원일/공개 원인에 따른 이원적 적용	국내 출원일

일본 의장법은 신규성 상실 예외의 기산점을 출원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공개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제36조와 동일하다. 다만 일본은 기준일 자체는 출원일로 동일하게 설정하면서도, 공개의 원인(비자발적 공개인지, 자발적 공개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기준일은 단일하지만, 공개 유형에 따른 규율 방식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의장법 제4조제1항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비자발적 공개에 대하여 폭넓은 보호를 부여하여,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을 부정한다. 이는 권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규정이다. 제2항은 권리자의 행위에 기인한 자발적 공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되, 그 공개가 발명·실용신안·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즉, 일본은 자발적 공개라 하더라도 공보 게재와 같은 공적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기준일을 국내 출원일에 엄격히 연동시키고, 단서를 통해 예외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보수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의장법 제4조는 기준일 자체는 출원일로 동일하게 설정하면서도, 공개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 범위를 세분화하고, 절차적 요건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정교한 차등 규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 EU

표 108 CDR 제7조 (공개)

제7조 (공개, Disclosure)

①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디자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이 공중에게 제공된 것으로 본다. 즉, 등록에 따른 공표 또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공표, 전시, 거래상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5조 제1항 (a) 및 제6조 제1항 (a)에 따른 날 또는 경우에 따라 제5조 제1항 (b) 및 제6조 제1항 (b)에 따른 날 이전에 공개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공개가 연합 내에서 해당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적 집단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디자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비밀유지 조건 하에 제3자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디자인이 공중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즉, 등록된 EU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청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전체적 인상에 있어 차이가 없는 디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를 말한다.

(a) 디자이너, 그 승계인, 또는 디자이너나 그 승계인이 제공한 정보 또는 취한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공개일 것

(b) 출원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공개일 것. 다만,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는 우선일 이전 12개월 이내일 것

③ 제2항은, 디자인이 디자이너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권리남용의 결과로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CDR 제7조 제1항은 신규성(제5조)과 창작성(제6조)의 판단을 위한 전제로서, 디자인이 “공중에게 제공된 것(made available to the public)”으로 평가되는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동 항에 따르면, 디자인은 등록에 따른 공표뿐만 아니라, 전시, 거래상 사용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된 것으로 본다. 이는 디자인의 공개 형태를 형식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노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EU 디자인 제도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제1항은 공지 판단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지 않기 위하여 중요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해당 공개가 연합 내에서 해당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적 집단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공개가 존재하더라도 공중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추상적·이론적 접근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산업계의 정보 유통 구조를 기준으로 공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아울러, 디자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비밀유지 조건 하에 제3자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중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의 협력, 시제품 테스트, 내부 검토 등 통상적인 산업 활동이 신규성 상실로 직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디자인 보호와 산업 현실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CDR 제7조 제2항은 공지예외를 명문화한 조항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진 공개는 신규성 및 개별성 판단에 있어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동 항은 등록된 EU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청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전체적 인상에 차이가 없는 디자인이 일정한 방식과 기간 내에 공개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공개된 디자인은 보호를 청구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전체적 인상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는 경미한 변형을 통하여 공지예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 디자인의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해당 공개는 디자이너 본인, 그 승계인, 또는 디자이너나 승계인이 제공한 정보나 취한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지예외는 디자이너의 통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공개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공개 시점은 출원일 이전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는 우선일 이전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 기간 요건은 공지예외를 시간적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출원 지연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제2항은 시장 반응을 확인한 후 출원을 결정하는 산업계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일정한 규율 하에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CDR 제7조 제3항은 제2항의 공지예외 규정을 권리남용 상황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조항이다. 즉, 디자인이 디자이너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권리남용의 결과로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도, 제2항과 동일하게 신규성 및 개별성 판단에서 해당 공개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남용에는 신뢰관계 위반, 계약 위반, 무단 공개, 부정취득 후 공개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디자이너의 의사와 통제를 벗어난 비자발적 공개라는 점에서 제2항의 일반적인 공지예외와 구별된다. 이 조항은 디자인이 부정한 방식으로 외부에 노출된 경우에도 권리자의 보호 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을 확보하려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제7조 제3항은 단순한 시간적 예외를 넘어,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신규성 판단을 조정하는 규정으로서, 디자인 보호 체계 내에서 권리자 보호의 안전장치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4. 법개정 방향(안)

표 109 공지예외 관련 국가별 비교

구분	대한민국	미국	일본	EU
근거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6조	미국 특허법 제102조	의장법 제4조	규정 제7조
기산점	공개일(국내출원 일)기준 12개월	공개일(유효출원 일) 기준 1년	공개일(출원일) 기준 1년	공개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기준 12개월
우선일 포함 여부	X	O	X	O
출원공개, 공보게재	명시적으로 배제	예외적용 가능	공보게재는 예외 배제	예외 적용 가능

주요국에서의 공지예외 제도는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12개월 내외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 시점과 적용 요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공지예외를 판단하는 반면, 미국과 EU는 우선권일을 포함하는 유효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 출원 전략과의 정합성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출원공개 및 등록공고에 따른 공개를 명시적으로 공지예외에서 배제함으로써 절차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구조를 취하는 반면, 미국과 EU는 공개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 예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비자발적 공개와 자발적 공개를 구분하고, 공보 게재에 대해서만 예외를 배제하는 한편, 신청·증명 절차를 통해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호와 안정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출원유예기간의 기본적인 구조는 ‘창작자 관련 공개’ 라면 모두 12개월의 공지예외의 보호대상임을 의미한다. 즉 별도의 단서를 두지 않으며 출원 공개나 등록공고 등 공식적인 공개도 공지예외의 포함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창작자 관련 공개의 경우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않으면서도, 그 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공지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식적인 출원공개나 등록공고에 대하여는 공지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약의 취지는 공식적인 공개라도 출원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디자인보호법」은 공식적인 공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서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도 일응 타당한 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는 공식적인 기록이므로, 제3자는 이를 신뢰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까지 공지예외로 본다면 제3자

는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 다시 출원되어 유효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이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을 근거로 다시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출원한 경우, 출원 난립이나 권리중복 확보의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디자인 일부심사제도와 결합하면 공식적으로 공개된 권리를 재출원하여 권리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디자인보호법」을 조약 제7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지예외제도를 조정 및 확장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이 공지예외의 기산점을 국내 출원일에 한정하고 있는 구조는, DLT가 예정하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기준의 12개월 유예기간과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정 논의에서는 공지예외의 적용 기준일을 국내 출원일에만 귀속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법하게 주장된 우선일을 포함하는 기준일 체계로의 조정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같이 유효출원일 개념을 통해 국제출원 전략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구조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현행 제3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에 의한 공개의 전면적 배제는, DLT 제7조가 공개의 유형을 출원공개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점과 대비된다. 따라서 출원공개라는 형식만을 이유로 공지예외를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방안은 공지예외를 국제조약과 조화되는 권리보호 중심의 제도로 재정비하고,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출원인의 해외 권리 확보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DLT 제31조의 유보 가능성을 활용하여, DLT 제7조에 대해서는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DLT 제7조는 출원유예기간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는 조항이지만, 동시에 계약당사국의 기존 법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입 시 유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공지예외 제도가 각국의 출원공개 제도, 신규성 판단 구조, 제3자 신뢰 보호 방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단순한 조약 이행만으로 일률적 조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설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취하고 있는 국내 출원일 기준의 공지예외 구조와 출원공개·등록공고에 대한 예외 배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DLT 제7조에 대해서는 유보를 선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예외 제도는 계속해서 국내 출원 절차의 안정성과 출원공개 제도의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며, 제3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과 권리 질서의 명확성을 우선적으로 확

보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출원공개 이후에도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전략의 반복·우회 가능성, 출원공개 제도의 실효성 약화, 공중 신뢰의 훼손 등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보수적 구조는 제도 안정성 측면에서 일정한 합리성을 가진다. 또한 DLT 자체가 유보를 제도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선택하더라도 조약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 방안은, 국제적 출원 전략을 활용하는 출원인, 특히 해외 선출원 후 국내 출원을 고려하는 출원인에게는 공지예외 적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자 보호 측면의 확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IX. 산업디자인의 공개

1. 조약의 분석

표 110 조약 제10조 (산업디자인의 공개)

조약 본문	시행규칙
제10조 산업디자인의 공개	제6조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① (비공개 유지) 계약당사자는 산업디자인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기간을 전제로 하여, 자국의 관련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조약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의 최소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②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 및 수수료)	
1.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을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하여, 출원인에게 행정청에 그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비공개 유지 신청에 대한 공개신청)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비공개 유지를 신청한 경우,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언제든지 산업디자인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 유보	
② (제7조,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및/또는 제19조 제2항에 대한 유보) 이 조약에 가입하는 날에 해당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적용법이 제7조,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및/또는 제19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유보를 통하여 자신이 해당 조항들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조약 제 10조는 산업디자인의 공개에 대하여 규정한다. 조약 제10조 제1항은 계약당사국이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동 항은 산업디자인의 비공개 유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조약 본문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기간’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비공개 유지 기간은 각 계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맡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해당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최소 6개월’로 규정한다.

이는 산업디자인 제도의 다양성과 각국 제도 운영 현실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 즉, 조약은 비공개 유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의무화하되, 그 기간의 길이와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각국의 정책 선택에 따라 달리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비공개 유지 제도가 출원인의 사업 전략, 시장 진입 시기, 제품 출시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약 제10조 제2항은 비공개 유지 제도의 운영 방식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 제1호는 계약당사국이 비공개 유지를 허용함에 있어, 출원인에게 행정청에 대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공개 유지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제도임을 전제로 한다. 이 규정은 비공개 유지 여부를 출원인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연동시킴으로써, 행정청이 일괄적으로 비공개를 전제하거나 반대로 일괄 공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2항 제2호는 비공개 유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당사자가 비공개 유지 제도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행정 비용이나 제도 운영 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 부과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약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비공개 유지를 신청한 경우라도,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유지 기간 중 언제든지 산업디자인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비공개 유지가 일단 선택되면 그 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상태가 아니라,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예컨대, 제품 출시 일정의 변경, 경쟁 환경의 변화, 투자 유치 또는 라이선스 협상 등의 사정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공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자는 비공개 유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통하여 공개 시점을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연동시킴으로써,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공개 여부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리자의 절차적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조약 제10조는 산업디자인 보호 제도가 단순히 권리 부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사업 전략과 시장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개와 비공개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 출원인이 공개 시점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중심적 설계를 구현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국내법 분석

「디자인보호법」 제43조는 비밀디자인 제도를 통해, 디자인권 설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개를 유예할 수 있는 권리자 중심의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동 제도는 비공개 유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청구 시점과 조정 가능성을 명확히 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제한적 열람과 비밀유지 의무를 병행함으로써, 권리자 보호와 공익적 정보 공개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이 등록되더라도 곧바로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동 조항은 비밀디자인의 적용대상을 “디자인등록출원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비밀 유지의 기준 시점을 출원일이 아닌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즉, 국내법상 비밀디자인 제도는 출원 단계에서의 비공개를 예정하는 구조라기보다는, 권리 설정 이후의 공개 유예 제도로 기능한다. 또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밀디자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 묶음 중 전략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부분과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품 라인업이나 단계적 출시 전략과 같은 실무적 요구를 반영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2항). 이는 비밀디자인이 출원인의 선택에 따른 제도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절차 단계 이전에 그 의사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이다.

동조 제43조 제3항은 비밀디자인으로 지정한 기간에 대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비밀디자인 제도가 고정된 일회적 선택이 아니라, 권리자의 사업 환경과 전략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연장의 경우에도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비밀디자인 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공중의 정보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자인 정보의 공개라는 제도의 공익적 기능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한으로 평가된다.

법 제43조 제4항은 비밀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유사 디자인에 관한 심사·이의 신청·심판·소송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경우, 침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경우, 그리고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이 허용된다. 이는 비밀디자인 제도가 제3자의 방어권이나 사법적 판단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법 제43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에 대하여, 무단 촬영·복사 또는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비밀디자인의 열람 허용이 곧바로 공중 공개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한적 공개와 비밀 유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법 제43조 제6항은 출원공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밀디자인 제도와 출원공개 제도가 상호 배타적인 선택지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3. 주요국 법제도 분석

가. 미국

표 111 미국 특허법 제122조 (출원의 비밀 유지 상태 및 특허출원의 공개)

제122조(출원의 비밀 유지 상태 및 특허출원의 공개)

(a) 비밀유지 -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은 USPTO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의회법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또는 국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권한 없이 그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b) 공개 -

(1) 일반규정

(A) 제2항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각 특허출원은 이 편에 따라 이익을 주장하는 가장 이른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출원은 18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개될 수 있다.

(B) 공개된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는,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중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C) 다른 어떠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국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예외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i) 더 이상 계류 중이 아닌 출원

(ii) 제181조에 따른 비밀명령(secretcy order)의 대상이 되는 출원

(iii) 제111조 (b)에 따라 제출된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iv) 제16장에 따라 제출된 디자인특허출원

미국 특허법 제122조 제2항 (A)목 (iv)는 디자인 특허출원을 특허출원 공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디자인 출원은 등록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출원이 출원된 이후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디자인은 공중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특허가 설정·등록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개된다. 이러한 구조는 출원 단계에서 디자인 정보를 보호하고, 경쟁자에게 조기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산업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려는 제도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LT 제10조는 산업디자인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당사국이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은 비공개 유지 제도를 출원인의 신청에 기초한 선택적 제도로 설계하고, 비공개 유지 기간 중 언제든지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이 공개 시점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규범적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법은 비공개 유지에 관한 출원인의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지 않으며, 공개 시점을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법이 디자인 출원을 출원공개 제도에서 배제하고, 등록 시점까지 자동적으로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제도적 효과는 DLT 제

10조가 추구하는 비공개 유지 제도의 핵심 목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디자인 특허 제도는 출원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 설계 자체를 통해 출원 단계에서의 비공개를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원인이 디자인 공개로 인한 사업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는 비공개 유지 제도를 선택권 중심으로 설계한 DLT 제10조와는 구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산업디자인의 조기 공개를 방지하고 공개 시점을 제도적으로 유예한다는 점에서는 기능적으로 동일한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법은 DLT 제10조가 예정한 비공개 유지 제도를 조문 형식과 제도 구성 측면에서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출원 단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구조를 통해, 동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 이익을 이미 제도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미국 제도는 등록 이후의 공개 유예나 공개 시점의 선택권을 출원인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개 시점에 대한 세밀한 전략적 조정을 허용하는 DLT 제10조의 권리 중심적 설계와는 차이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T 제10조가 계약당사국의 다양한 제도 구조를 전제로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디자인 출원 비공개 구조는 동 조항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보기보다는, 상이한 제도적 경로를 통해 동등한 보호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본

표 112 일본 의장법 제14조 (비밀의장)

제14조 (비밀의장)

- ① 의장등록출원인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또는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1년분의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2.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는 기간
- ③ 의장등록출원인 또는 의장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의장을 의장권자 이외의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의장권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2. 해당 의장 또는 그 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에 관한 심사,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4. 이해관계인이 의장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면,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

일본 의장법 제14조 제1항은 이른바 비밀의장(秘密意匠) 제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의장등록출원인이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의장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장이 등록되더라도 곧바로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의장법은 비밀 유지의 기준 시점을 출원일이 아닌 의장권 설정등록일로 설정하고 있으며, 비밀 유지 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비밀디자인 제도를 권리 설정 이후의 공개 유예 제도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법 태도를 보여준다.

제14조 제2항은 비밀의장 청구를 위한 절차적 요건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동항에 따르면, 비밀의장을 청구하려는 자는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또는 제1년분의 등록료 납부와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3항은 비밀의장으로 지정한 기간에 대하여 연장 또는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4항은 비밀의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항은 네 가지 열람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일본 의장법 제14조는 비밀의장 제도를 통해, 의장권 설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의장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적 공개 유예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비밀 유지 기간의 상한 설정, 청구 시기의 제한, 기간 조정 가능성, 분쟁 해결을 위한 제한적 열람 허용 등 제도 전반의 구조는 한국 디자인보호법 제43조의 비밀디자인 제도와 거의 동일한 틀을 공유하고 있다.

다. EU

표 113 EU CDR 제50조 (공개의 유예)

제50조 (공개의 유예)

- ① 등록 EU 디자인의 출원인은 출원을 할 때, 출원일로부터 최대 30개월의 기간 동안,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최대 30개월의 기간 동안, 등록 EU 디자인의 공개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48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등록 EU 디자인은 등록되되, 제74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의 표현물이나 출원에 관한 어떠한 서류도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지 아니한다.
-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음을 EU 디자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표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출원일 및 디자인의 등록일, 출원번호 ; 다만, 디자인의 표현물이나 그 외관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개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전에, 행정청은 등록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과 출원에 관한 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록 EU 디자인을 EU 디자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권리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EU 디자인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까지, 제51조에 따라 EU 디자인의 포기에 대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 및 제51a조에 따라 채택된 시행행위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포기 등록 요청이나, 또는 본 항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 이후에 제출된 요청은 기각된다.
- ⑥ 제37조에 따른 복수출원에 기초한 등록의 경우, 권리자는 제4항에 따른 조기 공개 요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기 요청과 함께, 해당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중 조기 공개될 디자인, 포기될 디자인, 공개 유예를 계속할 디자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⑦ 권리자가 제6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청은 권리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그 하자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보완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30개월의 공개 유예 기간을 초과하여 만료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⑧ 제7항에 따른 지정된 기간 내에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기 공개 요청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포기 요청은 기각된다.
- ⑨ 공개 유예 기간 중에 등록 EU 디자인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등록부 및 출원 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피고에게 전달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EU 디자인보호체계는 ‘비밀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나, 등록된 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조기 공개를 방지하고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공개 시

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DR 제50조는 이와 같은 공개 유예(deferment of publication) 제도를 통해, 산업 디자인의 등록과 공개를 개념적으로 분리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공개를 연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CDR 제50조 제1항은 등록 EU 디자인의 출원인이 출원 시에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최대 30개월 동안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은, 비공개 유지 제도의 존재 자체를 조약 차원에서 요구하는 DLT 제10조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공개 유예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명시적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공개 유지 여부를 출원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DLT 제10조의 규범 구조와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CDR 제50조 제2항은 공개 유예가 신청된 경우, 디자인은 등록되지 디자인의 표현물이나 출원 관련 서류는 공중의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DLT 제10조가 예정한 ‘비공개 유지’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단순히 공개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비공개 기간 동안 공중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차단함으로써 비공개 유지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 제도는 비공개 유지라는 결과만을 규정하고 있는 DLT 제10조의 내용을 보다 상세한 절차 규정으로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CDR 제50조 제4항은 공개 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디자인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공개 유지 제도가 출원인의 사업 전략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공개 시점에 대한 통제권을 권리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DLT 제10조의 핵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제9항은 공개 유예 기간 중에도 등록 EU 디자인에 기초한 소송 제기를 허용하되, 상대방에게 등록부 및 출원 서류에 포함된 정보가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공개 유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권리 행사와 제3자의 방어권 보호 간의 긴장을 조문 차원에서 조정한 규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비공개 유지라는 권리자 보호 장치가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DLT 제10조의 규범 취지를 보다 정교하게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EU CDR 제50조는 명칭과 규율 방식에서는 ‘비밀디자인’ 제도를 직접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공개 유예 제도를 통해 산업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통제 하에 두고, 비공개 유지와 공개 전환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DLT 제10조와 높은 정합성을 가진다. 특히 비공개 유지의 신청, 비공개 기간 동안의 공중 열람 배제, 조기 공개 가능성, 비공개 상태에서의 권리 행사에 대한 조정 등은 DLT 제10조가 예정한 비공개 유지 제도의 핵심 요소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4. 법개정방향(안)

형식적으로 볼 때,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비밀디자인 제도를 통해 산업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DLT 제10조가 예정한 비공개 유지 제도의 기본 취지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비밀디자인의 청구, 비공개 유지 기간의 설정, 기간 중 공개 전환 가능성 등 제도의 외형적 구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법은 DLT 제10조와 일정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비밀디자인 제도를 실제 절차 운영 맥락에서 살펴보면,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비공개 유지가 예정된 기간 동안에도 출원 내용이 의도치 않게 공개될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동일·유사 디자인의 동일일 출원 상황과,²¹⁸⁾ 제56조에 따른 거절 확정 출원의 디자인공보 게재 의무가 결합되는 경우이다.²¹⁹⁾

구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동일한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 확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원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거절 확정 출원 중에 비밀디자인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출원의 내용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출원인이 법 제43조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청구하여

218) 「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19) 「디자인보호법」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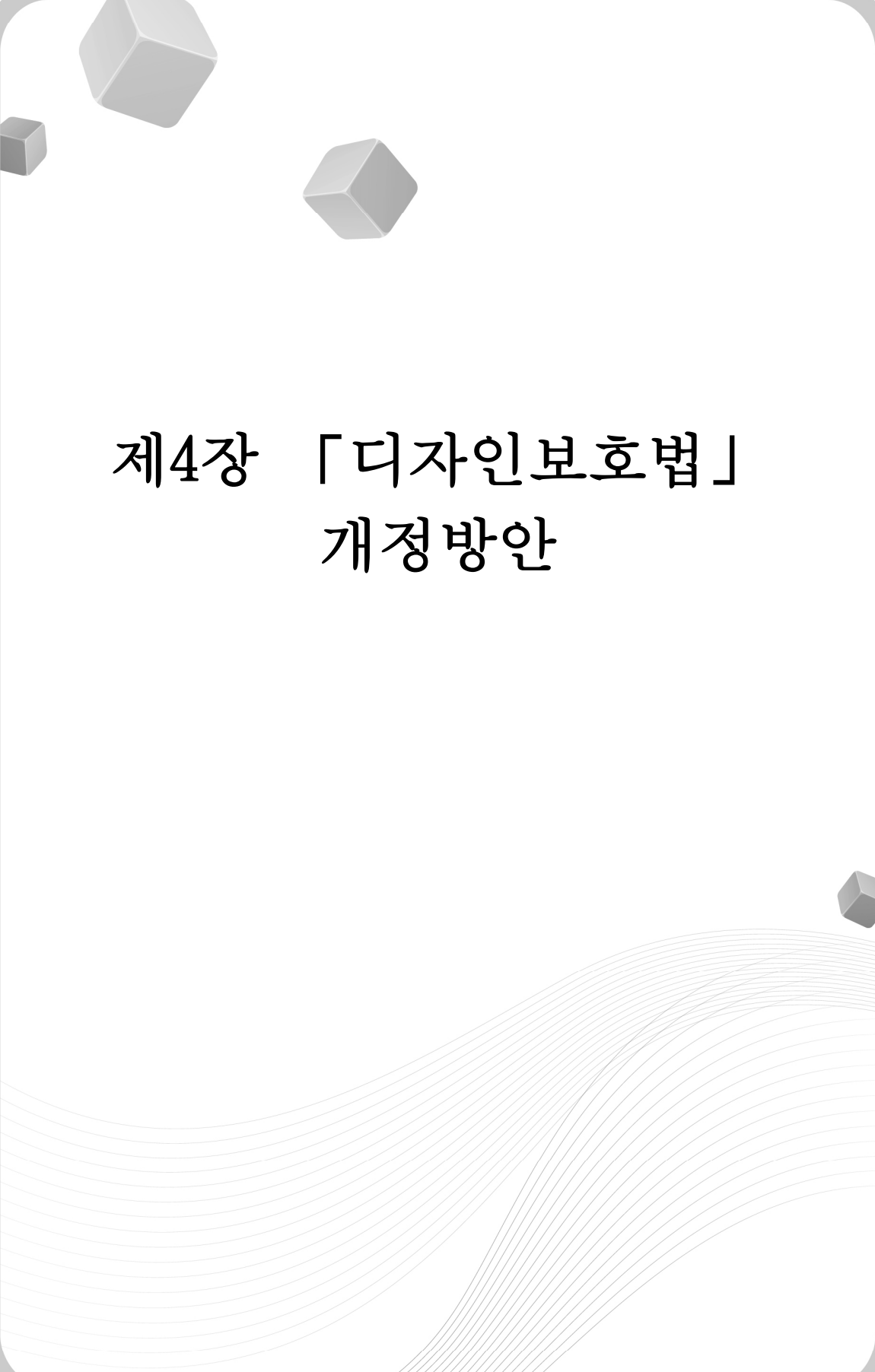
일정 기간 디자인을 비공개로 유지할 것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일 출원 경쟁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절결정이 확정될 경우, 그 출원 내용이 언제 공보에 게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비밀디자인으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 비공개가 예정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동일일 출원 경쟁 및 거절 확정이라는 절차적 경로를 거치게 되면, 비밀디자인 제도에서 예정한 비공개 유지 기간이 사실상 보장되지 못하고 조기에 공개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는 비밀디자인 제도를 신뢰하여 공개 시점을 관리하려는 출원인의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비밀디자인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밀디자인 제도는 등록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동된 제도가 아니라, 출원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정 기간 디자인을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제품의 사업화 준비, 시장 진입 전략 수립, 해외 출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출원이 결과적으로 등록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이미 선택하고 비용을 부담한 비공개 지정 기간 자체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출원이 협의불성립으로 거절된 경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출원 내용이 공보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는 비밀디자인 제도를 신뢰하여 공개 시점을 관리하려는 출원인의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수 있으며, 비밀디자인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출원이 협의불성립 등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해당 비공개 지정 기간이 원칙적으로 유지되도록 공개 시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²⁰⁾

220)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의장법」 제66조 (의장공보) 규정을 통하여 비밀디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의장법 제66조는 동일·유사 디자인의 동일일 출원 등으로 인해 거절하여야 한다는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출원 중에 비밀의장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디자인의 실체에 해당하는 사항의 공보 게재를 비밀로 지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비밀의장이 복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비밀기간을 기준으로 공보 시점을 정하도록 하여, 비밀의장 제도의 보호 효과가 절차적 사유로 잠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입법례는, 비밀디자인 제도가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출원인의 사업화 준비와 공개 시점 관리라는 독자적 목적을 가진 제도임을 전제로, 거절 확정이라는 절차적 결과가 비공개 지정기간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조정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 협의불성립 거절 출원에 대한 공보 게재 시점이 명확히 규율되지 않아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기간이 사실상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4장 「디자인보호법」 개정방안

제4장 「디자인보호법」 개정방안

I. 개정방향

디자인법조약은 각국의 디자인 보호 제도를 가능한 한 통일된 방향으로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디자인권의 취득 및 유지에 관한 절차적 최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나 절차상의 부담으로 인해 권리가 거절·소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동 조약은 2024년 11월 성안 당시 18개국이 서명하였으며, 2025년 12월 기준 총 25개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DLT가 지향하는 핵심은 실체적 보호요건의 통일보다는, 출원·등록·유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절차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출원인의 권리 획득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요건의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절차 운영 전반을 출원인 친화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디자인권 제도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조약의 목적은 그간 지식재산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고객 맞춤형 제도 구축’ 및 ‘권리자 중심의 절차 개선’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규범 흐름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DLT 가입을 전제로 한 전면적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보다는, DLT가 제시하는 절차 유연성의 기본 원칙을 국내법 개정 논의의 준거로 삼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디자인보호법」을 국제 기준에 점진적으로 정합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DLT는 당장 가입을 전제로 한 이행 대상이라기보다는,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하도록 설정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특허법조약(PLT)에 대한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역시 본 개정 논의의 중요한 전제이다.²²¹⁾ PLT는 이미 특허 분야에서 절차 간소화와 출원인 보호를 제도화한 조약으로, 디자인 분야에서도 DLT와 함께 절차 규범

221) 대한민국의 PLT 가입은 2025년 11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미 공동사실자료(Joint Factsheet)에는 “The ROK will continu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ccede to the PLT”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29년까지 PLT 가입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새 정부의 규제 간소화 및 출원인 부담 완화 기조와도 연계된 조치로 이해된다. 한편, PLT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입법사항 조약에는 해당하지 않아, 비준 또는 가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의 국제적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방향 역시, DLT의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PLT와의 절차적 정합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향후 국제조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디자인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률 차원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범의 정비로 충분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는 불필요한 법률 개정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접근으로서, 절차 개선의 성격과 영향 범위에 따라 적절한 규범 수준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진적·선별적 수용을 전제로 하여,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구체적 방향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1. 기한의 연장 및 권리의 구제 관련

앞서 기한의 연장과 권리의 구제를 연동하여 3개 안의 개정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²²²⁾ 해당 사안은 복수의 개정방안 중 최소 개정을 고려하여 제안한 사항이다. 다만, 실제 법 개정 단계에서는 단순한 최소 개정에 그치기보다는, 디자인법조약이 지향하는 절차 유연성과 권리자 보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동시에, 특허법 조약 가입을 대비한 국내 법제 정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DLT는 출원인의 권리 상실을 방지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이 지정한 기한에 대한 유연한 연장 및 회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계약당사국은 행정청이 지정한 기한에 대하여 ① 기한 만료 전이거나 또는 ② 기한 만료 후라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 기간(통상 2개월 이내) 내에 연장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가지 방식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출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만약 기한 만료 전 또는 만료 후의 연장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경

222) 기한 내의 구제만을 규정하되 권리회복의 사유를 완화하는 방식으로의 개정(1안). 기한내 구제 이외에도 기한 외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권리회복의 사유를 완화하는 방식으로의 개정(2안). 기한 내의 구제와 함께, 절차의 계속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권리회복의 사유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3안).

우에는, 대안적으로 ③ 기한의 만료 후라도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내(2개월)에 요건을 충족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절차의 계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절차의 단절로 인한 권리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당사국의 국내법이 ② 기한 만료 후의 연장이나 ③ 절차의 계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④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이때의 권리구제는 출원인이 상당한 주의(due care)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나, 그 미준수가 비고의(unintentional)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출원인의 실수로 인한 권리 상실을 최소화하고, 제도 전반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법제17조 제2항에서 지정된 기한 내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며 법제18조 제2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출원인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권리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이미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규정은 디자인법조약이 요구하는 세부 기준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DLT는 권리구제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주의(due care)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 또는 ‘비고의(unintentional)로 인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정당한 사유’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 요건 설정 및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조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디자인보호법」 개정 시에는 기한 내 연장뿐 아니라 기한 외 연장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 제17조는 지정된 기간 내에서만 연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기한 외의 연장을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단순한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권리 상실을 예방하고, 출원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114 「디자인보호법」제17조(기간의 연장 등) 개정방안

현행	개정안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②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	<좌동>

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한의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그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더 이상 기간의 연장은 되지 않는다. ⑤ <좌 동>
--	---

아울러, 권리구제 사유에 대해서는 ‘비고의(unintentional)’를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조약에서 권리구제의 요건으로 명시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권리구제 요건으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는 국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개념으로 기능해 왔으며, 출원인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권리회복이 제한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현행 심사 실무상 ‘정당한 사유’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단순한 착오, 내부 관리상의 누락, 일정 관리 실패 등은 대부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권리회복이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는 존재하나 실무적으로는 활용이 어려운 규정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DLT가 요구하는 최소 보호 수준을 충족하도록 권리구제 요건을 정비함으로써, 출원인의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확대하고 절차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보호법」 제18조의 기본 조항뿐 아니라, 각종 절차상의 기한과 관련된 개별 조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반영하는 전반적인 조문 정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내 제도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은 물론, 출원인의 실수나 비의도적 오류로 인한 권리 상실을 최소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권리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개정안(법 제18조 제2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사유 소멸일로부터 2개월, 기한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이라는 절대적 기간 제한을 유지함으로써 제3자의 신뢰 보호 및 절차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동시에, 고의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회복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법 제84조는 등록료 납부라는 재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 소멸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회복 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명확히 정비하고, 회복을 원하는 자에게 추가적인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는 권리회복 제도가 이미 포기·소멸·무효 등으로 확정된 권리를 예외적으로 부활시키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권리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여 출원인·권리자의 구제 가능성을 확대하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료의 3배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설계하였다.²²³⁾ 이러한 수수료 구조는 권리자에게 신중한 납기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제3자의 신뢰와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장치로 기능한다.

한편 권리회복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구제 대상과 회복 가능한 권리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체계의 기존 원칙 및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를 지정기간 내 연장신청료 최대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

223) ‘고의가 아닌 경우(unintentional)’는 주요국에서 권리회복 요건으로 채택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으로, 출원인의 단순 실수, 착오, 대리인의 관리상 오류, 행정적 처리 지연 등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유의 대부분을 구제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소 보호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칙」 개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사항이다.²²⁴⁾

기존 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리회복이 실제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아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개정안은 권리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수수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용 부담은 증가하더라도 권리회복 자체가 가능해지는 구조를 도입하여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개정을 통해 출원인 및 권리자의 절차적 접근성이 제고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리구제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산업재산권의 실효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화된 수수료 체계는 권리회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5 「디자인보호법」 제18조 등, 권리회복 관련 개정방안

현행	개정안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u>정당한 사유로</u>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u>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_____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u>아니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u>

224) 주요국에서도 권리회복 또는 절차회복 제도에는 일정 수준의 억제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미국은 권리회복 신청 시 수천 달러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 및 유럽 역시 기간 경과 후 회복 절차에 대해 일반적인 기간 연장보다 현저히 높은 수수료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 구조는 권리회복을 예외적 제도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통 관행으로 평가된다. 권리회복 수수료가 기한 내 연장 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더라도, 이는 제도 남용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또는 개인 출원인에 대한 부담은 별도의 정책 수단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수수료 감면 제도, 출원·권리관리 관련 상담 지원, 제도 초기 단계에서의 행정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부담 완화 정책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도 존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	<u>액을 내고, 그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u> ② 제1항에 따라 <u>정해진 금액을 내고 그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u>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u>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u>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u><삭 제></u> ③ 제2항에 _____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_____ 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
--	--

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생 략> <신 설>	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 <현행 6항과 같음/좌동> ⑥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	--

표 116 [참고] PLT 가입 대응을 위한 기한구제 및 권리회복 관련 개정 논의

□ 기한구제(PLT 제11조 관련, '28년 하반기 시행) - 실체·방식심사의 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既연장된 기간 만료일 도과 후에도 2개월의 연장기간을 추가로 부여(특허법 제15조) - 시행규칙의 별지 제10조 서식(기간연장신청서)에서 기간연장 사유를 개정하고, 다만 2개월 기관 도과에 대하여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 권리회복(PLT 제12조 관련, '27년 하반기 시행) - 외국어출원 번역문 제출기간(법 제42조의3 개정), PCT 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법 제201조 개정) 경과 후 회복규정 도입 - 고의가 아닌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경과 후 1년 내에 권리회복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67조의3 (특허출원의 회복) 개정, 법 제206의2(국제특허출원의 회복) 신설) - (특허출원·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심사청구기간(법 제67조의3) 및 특허료 미납 등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특허법 제81조의3) - 시행규칙 제17조(기간경과구제신청)의 별지 제10호 서식(기간경과구제신청서)를 개정하고,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납부서)의 특허권 회복요건을 개정 - 나아가 무분별한 회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제도남용을 방지
--

한편, 위와 같은 기한 연장과 관련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한 시행규칙 역시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당 내용은 동일 취지의 개정을 염두하고 있는 「특허법」 및 「특허법 시행규칙」의 개정안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자인보호법」 제17조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한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연장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연장 대상이 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한 후 연장 적용 대상은 보정기간, 의견서 제출기간 등 행정청이 지정하는 절차적 기간으로 한정하여 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63조 제1항 등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지정기간은 포괄 규정을 통해 유연하게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등록료 납부기간,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 기간, 우선권 보정·추가 기간과 그 밖에 법령상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 및 권리 확정 및 국제조약과 연계된 기간은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84조의 개정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회복 요건에서 기존의 ‘정당한 사유’ 요건이 삭제되고 일정 금액 납부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행규칙에서도 기존의 사유 입증 중심 구조에서 납부 중심 절차구조로 정비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 입증서류 규정을 삭제하여 출원인의 입증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회복 신청과 추가납부 절차를 동일체제로 운영하여 출원인의 이해도 및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대리권 증명서류 제출 규정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7 「디자인보호법」상 기한의 연장 관련 개정에 따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②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8조 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보정기간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단,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에 의해 정해진 기간에 한정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 2. 법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기간 3. 법 제51조의2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보

현 행	개 정 (안)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추가 기간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⑦ 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_____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②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

현 행	개 정 (안)
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신 설>	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대리인이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한 연장을 허용할 경우, 서식 및 수수료 관련 사항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기간연장신청서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고 있다. 법 개정예 따라 기한 후 연장 제도 도입할 경우 신청서 상에 ‘기한 내 연장’과 ‘기한 후 연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유지하면서 사후 연장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만 이는 산업재산권 공통의 서식을 사용하는 관계로 특허법의 개정 논의 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7조의 개정으로 기한 만료 후의 연장 절차에 대한 수수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기한 후 연장은 기존의 ‘기간 내 연장’과 달리 기한을 도과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 연장제도에 해당하며, 이는 절차의 완전한 회복을 전제로 하는 ‘기간경과 규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제1항 12호)’와는 구별되는 제도이다. 현행 수수료 체계를 규정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살펴보면, 법정기간의 연장(제11호), 지정기간의 연장(제11의2호), 기간경과 규제(제12호)로 단계적 구성되어 있는 바, 기한 후 연장은 ‘기간 내 연장’과 ‘기간경과 규제’ 사이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118 기한 만료 후 연장신청 관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출원 관련 수수료 (필요부분 발취)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이하 생략) <u><신 설></u>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출원 관련 수수료 (필요부분 발취)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좌 동) <u>11의3. 지정기간 외 연장 신청료</u> <u>가. 지정기간 외 연장신청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금액)원²²⁵⁾</u> <u>나. 지정기간 외 연장신청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금액)원</u> 12. (좌 동)

225) 해당 부분 금액의 경우 특허제도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허료 징수규칙 개정 시 일괄검토를 실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회복

DLT는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절차적 유연성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권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우선권의 보정 및 추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출원인이 후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출원인은 행정청에 적법하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② 그 신청이 조약에서 정한 규칙상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③ 후출원의 출원일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계산한 우선권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원인은 후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우선권 제도의 활용 폭을 넓히고, 행정적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우선권의 회복에 관한 규정은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을 위한 제출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출원인이 상당한 주의(due care)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 내에 후출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면 우선권의 회복이 허용된다. 다만, 계약당사국은 조약 가입 당시 국내 법률이 조약의 관련 조항과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유보(declaration)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절차적 유연성과 법제 간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제도 조화와 국가별 제도 특성을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DLT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에 따르면, 출원인은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이미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 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즉, 우선권 주장이 최초 출원 시에 존재해야만 이후 보정 또는 추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일정한 절차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실수나 착오를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DLT의 절차적 유연성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제51조 제5항(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서는, 우선권 주장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DLT는 이와 달리,

‘상당한 주의(due care)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비고의(unintentional)’로 인하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복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법의 “정당한 사유” 요건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지만 그만큼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제적 기준에 비해 추상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DLT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에서 우선권 보정 및 추가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권리 회복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출원인의 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제도와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우선권 관련 제도는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실수를 보완하기에 다소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조약 요구하는 절차적 유연성을 국내법에 완벽히 구현하고,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과정에 따른 특허법 개정안 논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 간소화 체계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2와 관련하여,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권 주장의 추가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출원 단계에서 우선권 주장이 존재해야만 이후의 보정이나 추가가 가능하나, 이는 단순한 기재 누락이나 착오로 인한 권리 상실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이 없더라도 출원인이 일정 기간 내에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DLT가 지향하는 출원인 보호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특허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입법기술을 벤치마킹한 것이다.²²⁶⁾ 참고로 제51조의2 개정안의 서두의 경우 현행법과 달리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51조제1항’으로 축소하여 한정하였다. 이는 출원 시 실수로 우선권 주장을 기재하지 않은 자를 사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즉 제51조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다. 제51조제1항의 경우 조약에 의해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체적인 근거를 선언하는 조항으로서, 출원 시 기재라는 절차적 요건(제51조제3항)을 준수하였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권을 누릴수 있는 본질적인 자격’을 가진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226) (내부자료) 특허법 개정안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할 때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둘째,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를 위한 기한 산정 방식을 이원화하여 출원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간을 보장하고자 한다. 현행 출원일 기준의 단일 기한(3개월)은 출원인이 조기 출원을 할 경우 DLT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이 강제하는 '우선일로부터 최소 6개월 보장' 규정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조약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의 기한 병존 논리를 차용하여 그 기한을 '최초 출원일로부터 8개월과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부터 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로 설정한다. DLT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후단에서는 "앞선 규정(우선일 기준 6개월)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청구는 후출원의 출원일로부터 2개월이 만료될 때까지(until the expiration of two months from the filing date) 제출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예컨대 출원인이 우선권 기한(6개월)의 마지막날에 임박하여 출원할 경우, 우선일 기준으로만 기한을 두면 보정이나 서류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약에서 규정하는 "아무리 늦게 출원했더라도 최소한 출원한 날로부터 2개월의 여유는 주어야 한다"라는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최초 출원일로부터 8개월'은 특허법의 개정 및 우선권 회복 제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간을 설정하였다. 개정안 제51조의3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경우 우선권 기한(6개월)이 지났더라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만약 보정·추가나 서류 제출기한을 우선일로부터 6개월로 고정할 경우, 7-8개월 차에 합법적으로 우선권을 회복하여 출원한 자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이미 보정기한과 서류제출기한이 도과해버리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회복출원인도 안전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기한의 상한을 최소 8개월(기본 6개월+회복허용 2개월)로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정안은 특허법상 우선권 회복에 관한 개정안을 참고한 것으로서, 특허법 개정안에서도 특허의 기본 우선권 기한(12개월)에 회복 및 연장여유분(4개월)을 더하여 16개월의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²²⁷⁾ 이를 참고하여 디자인보호법 역시 기본 우선권 기한(6개월)에 회복 여유분(2개월)을 더해 8개월로 설정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체계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셋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기한(제51조제4항)을 우선권 주장 보정·추가 기한과 연동하여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기존 제도는 사후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더라도 서류 제출 기한은 이미 도과해버리는 절차적

227) (내부자료) 특허법 개정안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 ⑦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할 때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과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오류가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IPO 리야드 외교회의 결의문에서 권고한 기한 일치 방향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PLT 반영을 위해 증명서류 제출 기한을 늘린 특허법의 선례를 참고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의 기한 역시 단순히 특정 개월 수로 고정하지 않고 제51조의2의 보정·추가 기한과 동일하게 ‘최초 출원일부터 8개월과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부터 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우선권을 적법하게 회복·추가한 출원인이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는 절차적 모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²²⁸⁾

넷째, 제51조의3의 우선권 회복 사유를 ‘고의가 아닌 것(unintentional)’으로 완화한다. 현행법의 ‘정당한 사유’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적용 기준이 엄격하여 구제 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DLT 제16조제2항에서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허용하는 ‘비고의’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권리구제 요건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 하고있다. 이에 출원인이 고의가 아님을 소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권리 회복을 폭넓게 인정하는 이 방식은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²²⁹⁾

다섯째,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한 권리 상실의 예외(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을 하위 법령(총리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현행 「디자인 보호법」 제51조제6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출원 국가(외국 관청)의 행정적 지연으로 인해 증명서류 발급이 늦어지는 등 출원인의 귀책사유가

228) (내부자료)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54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8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4항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그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발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것

2.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에게 제4항제1호의 서류 발급을 신청할 것

229) 이미 특허법조약(PLT)에서도 동일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PLT는 특허에 관한 절차적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서, DLT와 마찬가지로 우선권의 보정 및 추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즉, 출원인이 최초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사후적으로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선권 회복의 사유를 ‘상당한 주의(due care)’로 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2011년 「특허법」 개정 검토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방향—즉,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 보정·추가를 허용하고, 회복 요건을 ‘상당한 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 논의에서도 PLT의 선례와 그 당시의 검토 경과를 참고함으로써, 제도적 일관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없는 경우까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출원인 보호를 강조하는 조약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제51조제6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 관청의 발급 지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우선권의 효력을 유지하고 사후 제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²³⁰⁾

여섯째, 제51조의3 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회복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수수료 규정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단독으로 신설하기보다는 산업재산권 전반의 수수료 체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타당할 것이다. 현재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에 따라 특허법상 우선권 회복 요건 역시 '비고의'로 완화되고 관련 수수료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므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공통된 권리 회복 수수료 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출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각 권리 간 수수료 징수 행정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같은 개정내용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9 우선권 주장, 추가, 회복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		

230) (내부자료) 특허법 개정안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개정안
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	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8개월과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부터 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

현행	개정안
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8개월과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부터 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우선권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현행	개정안
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 수수료를 내고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과의 부정합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디자인보호법」 제87조는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을 규정한다. 동조 제1항 제3호에서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어, 우선권 관련 절차가 변경될 경우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해당 조문은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 취하 시 이미 낸 수수료 중 ‘우선권주장 신청료’를 반환하는 것이며, 우선권을 나중에 주장한 경우에 대한 신청료 처리방식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조문이 우선권의 보정·회복 제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문 자체의 개정을 불필요하다. 다만, 향후 시행규칙이나 수수료 고시, 또는 별도 지침 등에서 우선권 주장 시점별 신청료 부과 규칙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보정이나 추가로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의 반환범위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88조는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를 규정한다. 이는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기한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우선권 주장시기와는 원칙적으로 별개이다. 따라서 해당 조문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²³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는 우선심사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서, 조약에

231) 다만 정합성을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의 개정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단서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 단서 및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권 보정·추가 규정을 준용한다.”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규정한다. 우선권 주장·보정·회복에 관하여 법 개정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행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우선권 주장 자체가 보정에 의해 인저오디면, 그 디자인 출원은 당연히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므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디자인공보를 규정한다. 해당 규정은 디자인공모에 게재해야 할 항목 중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고, 즉 우선권이 주장된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보에 표시하는 조항이다. 개정안이 반영되어도 영 제10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할 경우, 시행규칙 내의 우선권 관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살피고자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우선권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이 관련된다.

이 중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을 규정하는데, 법 제51조 제6항의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위임한 외국관청 발급 지연 구제의 구철허인 요건과 절차’를 시행규칙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원인이 정상적으로 발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관청의 지연으로 인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우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① 먼저 외국관청의 발급지연에 따른 구제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건으로는 (i)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서류의 발급을 적법하게 신청하였을 것, (ii) 발급지연이 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할 것, (iii)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것이 출원인이 책임이 아닐 것이어야 한다. ②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 경우 입증자료의 제출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출원인의 구제 신청 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지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심사를 통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③ 발급지연 구제의 적용을 위한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의 경우, 발급 또는 지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원 제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0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51조제6항 관련 - 외국관청의 발급지연에 따른 구제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u><신설></u>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⑦ 법 제51조제6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발급을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관청에 적법하게 신청하였을 것 2. 해당 증명서류가 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었을 것 3. 법 제51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

현행	개정안
< 신 설 >	이 출원인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신 설 >	⑧ 제7항에 따른 구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증명서류의 발급 또는 발급 지연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1. 외국관청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 설 >	2. 외국관청의 발급 지연 또는 미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 설 >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신 설 >	⑨ 제7항에 따른 구제를 받은 자는 외국관청으로부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⑩ 제7항부터 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51조의2에서는 우선권 추가·보정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위임하고 있는 바, 신청방식, 보정·추가 대상 내용, 절차적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의 절차적 방법을 준용하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내에서도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를 위한 서류제출 절차와 기재사항을 규

정하도록 한다. 특히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된 우선권에 대하여 증명서류 제출 절차를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선권 회복이 인정된 경우, 우선권 주장의 실질적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기존의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신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1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51조의2 관련 -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절차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 신 설 >	제47조의2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①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우선권 주장의 대상이 되는 최초 출원국 및 출원일 2. 최초 출원의 출원번호 3. 추가 또는 보정하려는 우선권 주장의 내용 4.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추가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제47조를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 신설 >	제47조의3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법 제51조의3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위 시행규칙의 개정안에서, 우선권 주장 기간 연장(회복) 신청 시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 및 징수기준은 산업재산권 공통의 영역에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12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매건 1만4천원에 보정서 및 첨부서류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가. 우선권주장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1만8천원
--	--

나. 우선권주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7. 보정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4천원.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5만3천원으로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디자인마다 1만4천원.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디자인마다 6만3천원으로 한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는 디자인 등록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를 규정한 다. 「디자인보호법」개정을 통하여 우선권 주장의 추가·정정 또는 회복을 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살피고자 한다.

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상 디자인 관련 수수료를 살펴보면 우선권주장 신청료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최초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자가 추가·보정을 통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정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 시 우선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출원 시의 우선권을 기재할 경우 우선권 주장 신청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출원 후 추가·보정을 통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를 납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현행 우선권 주장 신청료와 보정료를 비교할 때 우선권 주장 신청료가 더 고액인 관계로, 현행 징수규칙대로라면 출원인이 초기에 우선권 정보를 기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선출원체계에서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절차적 성실의 확보 취지를 훼손하며, 출원인이 전략적으로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일 미기재할 가능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선권 보정·추가에 관한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신설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대비할 때 특허수수료의 경우는 우선권 주장과 추가에 각각 독립된 비용체계를 두고 있다. 특허수수료의 경우 우선권 주장 추가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적 보정 시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디자인출원의 우선권 주장 추가료’를 신설하고 우선권 추가는 ‘보정’과 구별되는 우선권 절차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의 경우는 특허 수수료와의 구조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우선권 회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수료 항목은 ‘기간연장 신청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간연장 신청료는 비교적 낮은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관행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다수 국가에서 회복제도 남용방지 및 성실출원의 유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²³²⁾ 기간 연장 신청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해당 수수료의 경우는 산업재산 제도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디자인에 특정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기 보다는 산업재산권 제도 내에서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내 디자인과 관련한 사항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3 우선권 주장의 추가정정 관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출원 관련 수수료 (발체) 5.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현행과 같음 > <u>< 신설 ></u> <u>< 신설 ></u>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출원 관련 수수료 (발체) 5.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좌 동 > 5의2.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가. 전자문서 :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나. 서 면 :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 5의3.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기간의 연장 신청료 : 500,000원

232) 해외의 경우 남용방지 및 성실출원의 목적에서 기관경과에 대한 수수료를 고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2,260(≒315만원) 수준, 일본의 경우 ¥21.2만(≒205만원) 수준, 유럽의 경우 €750(≒117만원) 수준으로 확인된다.

3. 디자인관리인 등

디자인법조약은 원칙적으로 재외자(non-resident)의 경우, 계약당사국 내에서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상 효율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출원일의 확보를 위한 출원서의 제출이나 ② 수수료의 단순한 납부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재외자 스스로 직접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조약이 지향하는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강제대리 예외에 관한 규정은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절차조약(PLT, PCT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DLT 역시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조약 가입 당시 해당 국가의 국내법이 재외자의 직접 출원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언함으로써 예외 적용을 유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즉, 각 계약당사국은 자국의 행정체계와 법제 여건을 고려하여, 강제대리 예외를 전면 수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유보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조약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국가별 제도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향후 국내 제도 정비 시에도 재외자 절차의 합리화와 행정적 효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수용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재외자의 경우 예외 없이 반드시 ‘디자인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대리 제도는 재외자가 직접 특허청과 절차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송달 지연, 보정·의견제출 누락, 행정 처리 혼선 등을 예방하고, 디자인 심사·등록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디자인 분야는 일부심사제도 등 특허와는 구별되는 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출원·심사 실무의 구조 또한 특허와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제대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및 제도 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DLT의 취지를 고려하되, 강제대리 원칙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재외자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이 디자인관리인을 통하여 출원 및 심사 관련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되, 조약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예외 범위 내에서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권리 내용이나 심사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절차로서 행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의 직접 납부와 같은 행위에 한하여, 「특허법」 개정의 취지를 참고하여 재외자의 직접 수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부분적인 제도 정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적·부분적 수용 방식은 디자인 분야의 제도적 특수성과 행정 실무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약이 지향하는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제고의 취지를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약 이행과 국내 제도 운영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료의 납부 주체를 원칙적으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권리 유지라는 공익적·관리적 성격을 고려할 때 납부 주체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료의 납부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료는 제3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특허료를 납부한 자는 특허료를 납부하여 이익을 얻는 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관계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표 124 (참고) 특허료 관련 특허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u>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u> ② <u>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u>	제80조(특허료의 납부) ① 특허료는 누구든지 낼 수 있다. ② <u>특허료를 낸 자는 특허료를</u>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특허권의 존속 여부가 단순히 권리자의 행위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리 소멸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권리 유지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기업 내부 관계자, 라이선시, 담보

권자 등 권리 유지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제약 없이 권리 유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의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특허법 개정 취지는 디자인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디자인권 역시 등록료의 납부 여부에 따라 권리의 존속이 좌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는 디자인권자 외에도 라이선시, 공동사업자, 계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권리 유지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료 납부 주체를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권리 유지의 실무적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산업재산권 전반의 관리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등록료(디자인료)의 납부 주체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이 타당하다. 아울러, 특허법과 동일하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이익을 얻는 자와 비용 부담자 간의 형평을 조정하고, 무분별한 비용 부담 전가를 방지할 수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등록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등록료의 납부 여부가 디자인권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절차로 기능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제도 전반에서 등록료는 권리의 유지·관리라는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간 수수료 체계는 상호 연동되어 설계·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은 특허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디자인보호법의 등록료 납부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등록료를 납부한 자가 실제로 등록료 납부에 따른 이익을 얻는 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관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정은 등록료 납부와 관련된 절차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불필요한 소멸을 방지하고, 권리 유지의 실질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특허법과의 규율 방식 통일을 통해 산업재산권 제도 전반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표 125 재외자의 수수료 납부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등록료의 납부) ① 등록료는 누구든지 낼 수 있다. ② <u>등록료를 낸 자는 등록료를 내야 할 자가</u>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개정안이 DLT의 요구 수준을 완전하게 수용하지는 않는다. DLT는 등록료뿐 아니라 출원·심사·유지 전반에 걸친 수수료(fees)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유연성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등록료에 한정하여 납부 주체를 개방하는 본 개정안은 DLT가 예정한 범위보다는 제한적인 수용에 해당한다. 다만, 본 개정은 DLT의 정합성 확보를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PLT 개정 방향과의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정비라는 점에서 그 범위가 설정된 것이다.

수수료 전반에 대한 납부 주체 개방을 보다 명확히 하려면, 재외자의 절차 수행 범위²³³⁾ 법제 자체를 조정하거나, 등록료 외의 절차 수수료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²³⁴⁾ 그러나 이는 디자인관리인 제도의 근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즉각적인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제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본 개정안은 현재 논의 중인 특허법상 등록료 납부 주체 완화 방안과 동일한 구조를 디자인 분야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향후 PLT 가입 준비 과정에서 산업재산권 전반의 수수료 체계 정비 논의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가능하다. 다만, 특허법 개정 역시 단계적으로 검토·추진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디자인보호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속도로 점진적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33) 「디자인보호법」 제6조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234) 「디자인보호법」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약은 출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공개로 인한 신규성 또는 독창성 상실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이 공개되었더라도, 그 공개가 창작자 또는 권리자에 의한 직접 공개이거나, 제3자에 의한 비자발적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출원인의 창작물을 조기에 보호하면서도, 공개와 출원 사이의 시간적 간극으로 인한 권리 상실을 방지하려는 조약의 기본적인 보호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디자인법조약은 출원유예기간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계약당사국에 일정한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조약 가입 당시 국내법이 공지의예외 제도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대해 유보를 선언함으로써 조약의 즉각적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제도적 현실과 심사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약 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신규성 상실로 보지 않는다는 공지의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에서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약이 예정하고 있는 보호 범위보다 좁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창작자 본인의 자발적 공개이거나 제3자에 의한 비자발적 공개에 해당하더라도, 그 공개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조이다.

또한, 시기적 요건에 있어서도 조약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현행법은 공지의예외 기간의 기산점을 ‘국내출원일’로 한정하여, 공개일로부터 국내 출원일까지 12개월 이내인지 여부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디자인법조약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의 출원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내에 출원하는 경우, 조약상 인정되는 공지의예외 기간이 국내법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시기적 요건과 관련하여 공지예외 기간의 기산점을 ‘국내출원일’이 아닌 ‘우선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신규성 상실 예외를 포함한 주요 권리요건의 판단 기준을 ‘출원일’이 아닌 ‘우선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최초 출원을 기준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권리효과를 인정하려는 우선권 주장제도의 근본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를 이유로 신규성 상실 예외를 배제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창작자의 자발적 공개와 제3자에 의한 비자발적 공개 모두에 대해 조약이 예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은 공지예외 제도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다국적 출원을 수행하는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단서를 삭제할 경우 출원인이 스스로 공보에 공개한 디자인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의 대상이 되어 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조약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약은 공개의 방식이나 매체를 기준으로 보호 여부를 달리하지 않으며, 공개가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한 직접 공개이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에 의한 공개라면, 그 공개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 12개월 이내의 공개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즉, 공보 게재라는 형식적 공개 역시 창작자 본인의 공개에 해당하는 이상, 조약상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단서의 존재 여부에 따라 출원인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단서는 조약의 보호 취지와 달리 특정 공개 유형을 형식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공지예외 제도의 적용 범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단서를 삭제하더라도 출원유예기간은 여전히 ‘12개월’로 엄격히 제한되며, 그 기간을 초과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므로, 출원인의 보호 수준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실무적·법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서가 삭제될 경우,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한 모든 공개가 공지예외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출원인은 공개 시점, 공개의 주체, 우선권 주장 여부 등을 보다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원인에게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출원을 전제로 한 출원 전략 수립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는 수준에 가깝다. 공지예외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3자

의 입장에서는 공개된 디자인이 실제로 신규성 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공지예외 제도가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서의 존치 여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규성 상실 예외에서 출원공개·등록공고를 배제하는 현행 단서는 조약의 보호 취지와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실무상 실익도 제한적이다. 해당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공지예외 규정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공개 주체와 시기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법체계의 명확성과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다 타당한 방향으로 평가된다.²³⁵⁾

결과적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 범위를 공지일을 기준으로 한 12개월 이내의 출원 전반으로 명확히 하고, 국내 직접출원과 우선권 주장 출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정비하며, 출원공개·등록공고에 따른 예외 배제 단서의 존치 여부를 단계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의 개정은 국내 「디자인보호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한국 출원인이 외국 출원과 병행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권리효과가 일관되게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 126 신규성 상실의 예외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235) 반대로 법 제36조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당장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단서의 경우는 반드시 DLT와 불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WIPO 상표·디자인법 상실위원회(SCT)의 논의과정을 보면, 공보 공개(publication in an official gazette)가 공지예외(grace period)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약이 강제하지는 않으며, 각 계약당사국은 입법 또는 해석을 통해 공보 공개를 공지예외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언급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보 공개는 공지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유지하더라도 DLT 위반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외에서의 출원공개까지 신규성 상실 사유로 간주하는 현행 구조는 출원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출원인이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외국에 선출원을 한 뒤, 그 공개 사실로 인해 국내 출원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창작에 대해 국가 간 보호 격차를 초래하며, 국제 출원을 장려하고 창작자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려는 DLT의 기본 취지와도 상충된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 공개의 범위와 적용 효과를 재검토하여, 출원인의 합리적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실무상 공지예외가 문제된 사례나 분쟁 동향을 충분히 수집·분석한 뒤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u>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삭제 <2023.6.20.> <u><신 설></u>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② 삭제 <2023.6.20.> ③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기준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최선(最先) 우선권주장일로 한다.
--	--

5. 산업디자인의 공개

조약은 출원인이 일정 기간 동안 디자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도 권리 확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디자인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까지 전략적으로 비공개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창작자·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며, 상업화 일정과 지식재산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약은 계약당사자에게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고 요구하진 않고 있으나,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시행규칙상 6개월)을 준수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밀디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칙적인 비공개 기간에 대하여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둘 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권리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단 하나의 출원을 선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이 거절되며, 그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디자인보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출원이 협의불성립으로 거절되는 경우이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경우 공개 시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출원이 거절되더라도 비밀기간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비밀디자인으로 지정된 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공보에 게재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비밀디자인 제도의 본래 취지와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비밀디자인 제도는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설정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최대 36개월) 동안 해당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제품의 사업화 준비 기간 동안 타인의 모방이나 도용을 방지하고, 공개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는 등록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기보다는, 출원인의 사업 전략과 정보 보호 필요성에 기초한 절차적 보호 장치에 가깝다. 따라서 협의불성립이라는 사유로 출원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인이 이미 비용을 부담하고 청구한 비밀디자인 지정기간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비밀디자인이 청구된 출원이 협의불성립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디자인은 비밀디자인으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보에 게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는 비밀디자인 제도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이 예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기간을 충실히 보장하도록 공보 절차를 정비하는 데 그친다.

표 127 비밀디자인 관련 「디자인보호법」개정방안

현행	개정안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지식 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① <u>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 중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간(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경과된 후 게재하여야 한다.</u>

이와 같은 입법 방식은 비교법적으로도 타당하다. 일본 의장법은 협의불성립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에 관하여, 비밀의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장공보에 게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의장법 제66조 제3항). 즉,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의장 지정기간을 존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비밀디자인 제도의 기능을 절차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입법례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비밀디자인 제도의 기본 구조나 요건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협의불성립이라는 특수한 절차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보 게재 시점의 불명확

성을 해소하여, 출원인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비교법적 정합성과 제도 취지를 모두 고려한 최소한의 정비라는 점에서, 과도한 권리 확대나 제3자 보호 침해의 우려 없이 충분한 입법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II. 디자인법조약을 반영을 위한 기타 하위규칙 등 개정방향(안)

1. 실시권의 등록

디자인법조약(DLT)은 각 계약당사국이 실시권의 등록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약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첫째,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등록 중의 제출을 등록요건으로 삼을 수 없으며, 둘째, 실시권 계약의 재정적 조건이나 금전적 세부내용의 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실시권 등록 제도의 투명성과 간소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권리자의 계약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DLT 체제 하에서는 실시권 등록 절차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며, 국가별로 추가적인 서류제출이나 재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조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향후 국내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적 간소화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한 등록을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령인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관련하여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살펴보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재정적 조건’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요건으로, DLT가 금지하고 있는 ‘실시권 계약의 재정적 조건 기재 요구’에 해당한다. DLT는 실시권 등록 시 단순히 권리의 범위와 법적 근거만을

명시하도록 하고, 대가·지급 방식 등 사적 계약 조건의 공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DLT의 절차적 간소화 원칙 및 권리자 보호 취지와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향후 개정 시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대가나 지급조건 등 재정적 정보 기재 의무를 삭제하거나 임의화함으로써, 국제조약상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권리자의 계약상 비밀을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제적 조화에 부합하는 디자인권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신청 시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신청 대상이 상표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²³⁶⁾ 이에 따라 한 가지 개정방안으로는, 이 예외사유를 상표권뿐 아니라 디자인권까지 확장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동일하게 재정적 조건의 기재를 면제하도록 하여, DLT의 규정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의 확장 방식은 입법기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권리를 예외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예외 규정을 반복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DLT를 포함한 PLT, STLT 모두가 실시권 등록 시 재무상태나 대가 조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정 권리에 한정된 예외를 두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등록령 제37조(통상실시권) 및 제38조(전용실시권) 전체를 대상으로,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 등 재정적 사항의 기재 의무’를 삭제²³⁷⁾하거나 임의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국내 규정이 국제조약의 절차적 기준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인한 권리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시권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출원인 및 권리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조약이 지향하는 절차 간소화 원칙을 충실

236) 해당 내용은 우리나라가 STLT를 가입하면서 반영된 사항이다.

237) 관련하여 실시권 등록 신청 시 요구되는 기재사항은 그 성격상 절차 운영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침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적 근거를 두고 제정된 등록령 조항을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은 입법정책상 바람직한 접근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등록 제도 자체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까지 삭제할 경우, 절차의 근거가 약화되거나 규범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행 등록령상 실시권 등록과 관련된 개별 조항을 정비·통합하여, ‘실시권 등록신청의 일반조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컨대, 현행 제37조 및 제38조를 통합하여, 조약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재사항만을 규정하는 일반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이나 과도한 요건을 제거하면서도 제도의 법적 근거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규범의 밀도를 낮추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향후 국제조약 이행이나 제도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히 반영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²³⁸⁾

표 128 실시권의 등록 관련「특허권 등의 등록령」개정방안

현행	개정안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적어야 한다</u>. 1.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u>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u>)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적어야 한다</u>.	제37조(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④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u>신청서에 설정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u>. 1. <삭 제> 2. <삭 제>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④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u>신청서에 설정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u>.

238) 현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은 실시권 등록 신청 시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등록 실무에서는 해당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신청이 거절되거나 보정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해당 기재사항은 규정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등록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가 관련 기재 의무는 사실상 규범적 기능을 상실한 ‘무용 조항’에 해당하며, 오히려 규정의 존치로 인해 제도 이해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삭제하는 것이 현행 실무와의 괴리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	<u>1. <삭 제></u>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u>2. <삭 제></u>

한편 실시권 등록 제도는 디자인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디자인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위 규범을 개정할 경우, 산업재산권 제도 전반의 규범 체계에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실시권 등록 절차의 정비는 개별 법률 단위가 아니라, 지식재산처 차원에서 특허·실용신안·상표 분야를 포함한 통합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시권 등록과 관련된 세부 심사·등록 실무 기준, 신청서 서식 등 하위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점검과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실시권 등록 절차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절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등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오류의 정정

조약은 출원서, 등록서류 또는 그와 관련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정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국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조약은 오류 정정 제도의 도입 자체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각국의 법률이 오류의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정 과정에서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절차적 제한을 제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오류의 정정에 관한 사항은 그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요건 설정을 각 계약당사국의 국내법에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으며, 조약 차원에서는 정정 절차에 대한 형식적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에 오류의 정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디자인법조약과의 부정합 또는 조약 위반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는 오류의 정정에 관한 독립적인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행정청의 직권 정정, 보정 제도, 공보 발행 단계에서의 기술적 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류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조약이 전제하고 있는 ‘오류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운영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조약이 문제 삼는 과도한 형식 요건이나 불합리한 절차 부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오류의 정정은 디자인 제도에 특수한 실체적 권리 요건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의 정확성 확보 및 기술적 처리의 문제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상, 이를 법률 차원에서 경직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실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위 규범 또는 행정 운영지침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권리자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오류의 정정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개별 법률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를 규율할 경우 제도 간 불균형과 해석상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오류 정정 규정을 도입하기보다는, 하위 규범 또는 통합적 운영 기준을 통해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일관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이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오류의 정정에 관한 사항은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 논의에서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 반영하기보다는,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등 관련 행정규칙이나 내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보완적으로 조약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조약이 요구하는 형식적 제한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제도의 운용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오류의 정정 제도는 향후 대한민국의 PLT 가입 준비 과정에서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 절차조약 전반의 정합성 검토와 함께 재논의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PLT, STLT, DLT 등 주요 절차조약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영역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산업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절차 개선 논의 속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출원일

조약은 출원인의 절차상 실수로 인해 권리 획득의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일 인정 요건과 그 미비 시의 절차적 구제 방식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따르면, 출원서가 출원일을 부여받기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해당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정한 경우에는, 그 보정이 완료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며, 반대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단순한 형식적 흠결이나 경미한 누락으로 인해 출원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절차의 보완을 통해 출원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DLT의 출원일 관련 규정은 조약 전반의 핵심 원칙인 절차적 접근성 및 권리구제의 실질화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출원일 인정과 관련하여 조약이 전제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대체로 합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38조는 출원 의사의 표시, 출원인 확인 가능성, 디자인의 표현, 언어 요건 등 출원일 부여를 위한 핵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도록 하고, 그 보완서가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출원일 인정 요건의 범위, 보정 기회의 부여, 출원일 확정 방식 등 핵심 요소에 있어 조약이 요구하는 절차적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시행규칙 제24조는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출원일 인정 여부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청이 해당 서류를 정상적인 절차로 계속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반려 절차로 이행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절차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시행규칙 제24조는 법 제38조에 따른 보완명령 제도를 배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출원일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정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반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법률상 구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시행규칙 제24조의 해석·운용과 관련하여, 출원일 인정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한 반려가 보완명령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출원일 요건 미비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정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이는 시행규칙의 문언 정비보다는, 운영지침 또는 해석 기준의 명

확화를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즉시 반려가 가능한 사유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운용함으로써, 단순한 행정 효율성보다는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절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출원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 수준을 디자인법조약이 제시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는 동시에,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이다. 결국 본 사안은 조약 불이행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시행규칙과 실무 운용 단계에서의 명확성·친출원인적 해석을 강화할 필요성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4. 그 밖의 사항

조약은 실시권의 등록 제도 자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실시권의 설정·효력·대항요건 등 실체적 효과에 관하여는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실시권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제3자의 신뢰 보호와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국내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본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특허·실용신안 등 다른 권리유형과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실시권 미등록으로 인한 참가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도 제도 운영상 중대한 문제나 분쟁이 빈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디자인법조약 및 기타 국제조약과의 관계에서도, 실시권 미등록의 효과 자체가 조약 위반이나 정합성 문제로 평가될 소지는 크지 않다. 따라서 본 개정 논의에서는 실시권 미등록의 효과를 별도의 법 개정 또는 행정규칙 개정 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시권 미등록의 효과에 관한 사항은 현 단계에서 입법적 조정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산업재산권 절차체계 전반의 재정비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절차규범적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보완적·장기적 검토 과제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2024년 11월 최종 성안된 디자인법조약을 중심으로, 해당 조약의 주요 절차 규범과 국내 「디자인보호법」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단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조약 가입 여부 자체를 즉각적인 정책 결정의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국제적 절차 규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디자인 제도의 구조적 정합성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기초 분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DLT의 전체 구조와 주요 조문을 분석하고, 출원일 인정, 기한의 구제 및 권리회복, 우선권 주장, 실시권의 등록, 오류의 정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약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DLT가 실체적 권리 범위보다는 출원·등록·관리 절차의 통일과 간소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절차조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디자인보호법」과 전체 조문별 정합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주요 불일치 지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법제가 이미 충족하고 있는 사항과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향후 개정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한의 구제 및 권리회복,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회복, 실시권 등록 및 미등록의 효과, 오류의 정정 등 핵심 절차 쟁점에 대해 조약 규범, 국내법 구조, 주요국 입법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각 제도가 실제로 법개정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규칙 또는 해석을 통해 대응 가능한 영역을 구분하였다. 특히 실시권 미등록의 효과나 오류의 정정과 같이, 조약상 규율은 존재하나 국내 제도 운영상 중대한 법적 공백이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개정 정보보다는 향후 절차 규범 전반과 연동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디자인보호법」 및 하위 규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DLT 가입을 전제로 한 전면적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제적 절차 규범과의 정합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법개정 및 행정규칙 정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PLT의 가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산권 절차 전반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의 개정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DLT 가입 여부를 전제로 단기적 결론으로 도출하기보다는, 조약이 제시하는 절차 규범을 기준으로 삼아 국내 디자인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점진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LT의 다수 조항이 PLT 등의 국제적 절차조약과 구조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PLT 가입 논의 또는 절차 규범 전반의 재정비 과정과 연동하여 디자인 분야의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조약 가입이라는 외형적 선택과 무관하게, 국제적 신뢰성과 제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DLT는 즉각 수용해야 할 규범이 아니라, 국내 제도의 점검과 개선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국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진적·선제적 정합성 확보 노력이 축적될 때, 향후 조약 가입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 역시 보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연구보고서 등

심현주 외,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조문별 해설서-디자인보호법」,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3
정상조 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정차호 외, 선진 특허법제 구축을 위한 특허법 체계 전면 개편 방안 연구, 특허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0
지선구·이윤직·이진형, “특허법상 권리회복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2021
최승재, 「특허법상 특허출원, 특허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사유’ 요건 검토」, 특허청 정책연구보고서, 2023
최승재,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PCT 유보규정 철회 및 PLT 도입 타당성 검토」, 특허청, 2024,
특허청,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가이드라인」, 2022

2. 웹페이지

이선목, [법조 인사이드] 카이스트 "미납한 특허료 내게 해달라"며 2심 소송까지 하는 사연은..., 조선비즈 2025. 6. 3. 기사 참조,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6/03/P7EJX4362VALRMIYBZHQVLBJ34/>
European Commission, WIPO Design Law Treaty adopted, 2025. 11. 25.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news/wipo-design-law-treaty-adopted-2024-11-25_en>
Filing a patent application on your own, <<https://www.uspto.gov/patents/basics/using-legal-services/pro-se-assistance-program>>
USPTO, Public comments sought on upcoming treaty negotiations on proposed Design Law Treaty, 2024. 3. 26. <<https://www.uspto.gov/subscription-center/2024/public-comments-sought-upcoming-treaty-negotiations-proposed-design-law>> 참조
発明者（実用新案は考案者・意匠は創作者）の補正について, <<https://www.jpo.go.jp/system/process/shutugan/madoguchi/info/faq-after-filing/hatsumesha-hose/index.html>>

3. 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후1358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283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9구합5154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4. 25.자 2001헌마200 전원합의체 결정

4. 기타

Notes On The Basic Proposal For The Design Law Treaty(DLT/DC5), 2024. 5. 10.

[붙임 1] 디자인법 조약 및 시행규칙 대조표

조약	시행규칙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체약당사자”란 이 조약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나. “행정청”이란 산업디자인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말한다. 다. “등록”이란 산업디자인의 등록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의 부여를 말한다. 라. 출원”이란 등록을 위한 출원을 말한다. 마. “관련법”이란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당해 국가의 법률, 그리고 정부간기구인 경우 당해 정부간기구에 작용하는 법제를 말한다. 바. “산업디자인”에 대한 언급은, 하나의 출원 또는 등록에 2 이상의 산업디자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디자인들”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한다.²³⁹⁾ 사. “사람”이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아. “행정청에 대한 절차”란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하여 행정청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자. “서류제출”이란 출원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제출되는 출원서, 신청서, 진술서, 서류, 서신 기타 정보 일체를 말한다	제1조 약칭의 정의 ① (이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약칭) 이 시행규칙의 목적상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의 약칭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조약”이란 「디자인법조약」(Design Law Treaty)을 말한다. 나. “조”란 조약의 특정 조항을 말한다. 다. “로카르노 분류”란 1968년 10월 8일 로카르노에서 서명되고, 개정 및 수정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를 설정하는 로카르노 협정」에 따라 설정된 분류를 말한다. 라. “전용실시권”이란 오직 한 명의 실시권자에게만 부여되며, 권리자는 해당 산업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는 실시권을 말한다. 마. “독점실시권”이란 오직 한 명의 실시권자에게만 부여되며, 권리자는 해당 산업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는 실시권을 말한다. 바. “통상실시권”이란 권리자가 해당 산업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는 실시권을 말한다. ② (조약에서 정의된 약칭) 조약 제1조에 따라 정의된 약칭은 본 시행규칙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조약	시행규칙
다. 차. “행정청의 기록”이란 정보가 저장된 매체의 형태를 불문하고,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되며 그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행정청이 수집·관리한 것을 말한다. 카. “출원인”이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청의 기록상 등록을 신청한 자로 나타나 있는 자 또는 출원을 제출하거나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를 말한다. 타. “권리자”란 행정청의 기록상 등록의 권리자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파. “파리협약”이란 1883년 3월 20일에 체결되고 이후 개정 및 수정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말한다. 하. “실시권”이란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산업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거. “실시권자”란 실시권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너. “시행규칙”이란 제25조에서 언급된 시행규칙을 말한다. 더. “외교회의”란 이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집되는 계약당사자들의 회의를 말한다. 러. “총회”란 제26조에서 언급된 총회를 말한다. 머. “비준서”라는 표현은 수락서 및 승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버. “기구”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말한다. 서. “국제사무국”이란 기구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어.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저, “조”, “항”, “호” 또는 “목”에 대한 언급은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2조 일반원칙 ① (산업디자인 실체법에 대한 비제한) 이	

조약	시행규칙
조약 또는 시행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 당사자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적용 가능한 실체법상의 요건을 자국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규정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조약과의 관계) 이 조약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당사자들이 다른 조약에 따라 상호 간에 부담하는 의무를 저해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보다 유리한 조건) 계약당사자는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제6조를 제외하고 이 조약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요건보다 더 유리한 요건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	
제3조 이 조약이 적용되는 출원 및 산업디자인 ① (출원) 이 조약은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에 제출되거나, 그 행정청을 위하여 제출되는 국내출원 및 지역출원에 적용된다. ② (산업디자인) 이 조약은 관련법에 따라 산업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거나, 그에 대해 특허가 부여될 수 있는 산업디자인에 적용된다.	
제4조 출원 ① (출원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1. 계약당사자는 출원서에 다음의 표시 또는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등록을 위한 신청서 나.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출원인이 대리인을 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라. 제5조제3항에 따라 송달지 또는 연락처 주소가 요구되는 경우, 그 주소 마.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산업디	제2조 출원에 관한 세부사항 ① (조약 제4조에 따른 추가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4조에 따른 요건 외에도, 출원서에 다음 각 목의 기재사항 또는 요소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산업디자인이 구현된 물품 또는 산업디자인이 사용될 물품이 속하는 로카르노 분류의 류(class) 나. 청구항 다. 신규성 진술 라. 설명서 마. 산업디자인의 창작자에 관한 사항

조약	시행규칙
자인의 시각적 표현²⁴⁰⁾ 바. 해당 산업디자인이 구현되었거나 사용될 제품 또는 그 제품명에 대한 표시 사. 출원인이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선언 및 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관련 표시사항 및 증거자료 아. 출원인이 파리협약 제11조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디자인이 구현되었거나 사용될 제품이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박람회에 출품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타의 표시 또는 요소 2. 계약당사자는 출원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의 표시) 계약당사자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출원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전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표시, 또는 출원인이 알고 있는 산업디자인의 등록 적격성과 관련된 기타 정보로서, 전통문화표현물이나 전통지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기타 요건의 금지) 출원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10조에 명시된 표시 또는 요소 이외의 어떠한 표시나 요소도 요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복수디자인의 출원) 관련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하나의 출원에는 두 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증거) 계약당사자는 출원 심사 과정에서, 행정청이 출원에 포함된 표시 또는 요소의	바. 본인이 산업디자인의 창작자라고 믿는다는 창작자의 진술 사. 출원인이 산업디자인의 창작자가 아닌 경우, 양도계약서 또는 출원인에게 디자인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행정청이 인정하는 기타 증거 아.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법적 형태, 국가명 및(해당하는 경우) 설립 근거법상 속하는 국가의 행정구역 자. 출원인이 어느 국가의 국민인 경우 그 국가명, 거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명, 유효한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명 차. 산업디자인의 등록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출원인이 알고 있는 이전 출원 또는 등록, 그 밖의 관련 정보 카. 출원인이 일정 기간 산업디자인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요청 타. 출원이 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포함된 산업디자인의 수 파.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간 하. 계약당사자가 출원에 관하여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납부

조약	시행규칙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출원인에게 행정청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거. 해당하는 경우, 부분디자인임을 나타내는 표시 너. 해당하는 경우, 조기 공개에 대한 요청 ② (분할출원의 요건) 계약당사자는 출원이 분할출원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출원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분할출원이라는 취지의 표시 나. 최초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 ③ (부분 디자인) 계약당사자는 해당 계약당사자의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물품 또는 제품의 일부에 구현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원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조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세부사항 ①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의 형식) 1.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가. 사진 나. 그래픽 복제물 다. 행정청이 인정하는 기타 시각적 표현 라.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위 각 목의 표현을 결합한 형식 2.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칼라 또는 흑백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에는 해당 산업디자인만 단독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다른 요소는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

조약	시행규칙
	는 사항으로서,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점선, 파선 등 시각적 수단으로 표시되거나 설명서에서 그와 같이 식별된 사항 나. 3차원 디자인의 윤곽 또는 부피감을 표현하기 위한 음영 ③ (표현방법) 1. 산업디자인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산업디자인을 완전히 보여주는 하나의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또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이 구현되었거나 산업디자인이 사용될 물품을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청은 특정한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추가 도면이 원래 제출된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에서 도출할 수 없고, 산업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필요가 없다. ④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사본의 수) 출원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도면 사본은 1부를 초과하여 요구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3부를 초과하여 요구될 수 없다.
제5조 대리인 및 송달 또는 연락 주소 ① (절차수행 대리인) 1.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선임된 대리인에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관련법에 따라 보유할 것 나. 계약당사자가 정한 영토 내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제공할 것 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리인이 행한 행위 또	

조약	시행규칙
는 그 대리인과 관련된 행위는, 행정청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 그 대리인을 선임한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행한 행위 또는 그들과 관련된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강제대리) 1. 계약당사자는 그 영토 내에 거소 또는 실질적인 공업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약당사자의 영토 내에 거소 또는 실질적인 공업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출원일 확보를 위한 출원서 제출 또는 수수료의 단순한 납부에 한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스스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송달 또는 연락 주소) 계약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 대한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그 영토 내에 거소 또는 실질적인 공업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지 않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계약당사자가 정한 영토 내에 송달 또는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리인 선임) 계약당사자는 대리인 선임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행정청에 제출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4조 대리인, 송달 또는 연락 주소에 관한 세부사항 ① (조약 제5조 제4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및 위임장) 1, 계약당사자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서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해 수행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리인은 별도의 서류(이하 “위임
⑤ (기타 요건의 금지) 어느 계약당사자도, 제12조의 요건을 조건으로, 동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항들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요건의 이행을	

조약	시행규칙
요구할 수 없다.	장”)를 통해 선임되어야 한다. 이 위임장에는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함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임장은 그 안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것일 수 있으며, 위임자가 별도로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자의 기존 및 향후의 모든 출원 또는 등록에 적용될 수 있다. 3. 위임장은 대리인의 권한을 특정한 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대리인이 출원을 철회하거나 등록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그 사실이 위임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통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적용한 하나 이상의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준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약 제5조 제6항에 따른 기한) 조약 제5조제6항에 따른 기한은, 출원인, 등록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해당 통지를 발한 계약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그러한 주소가 해당 계약당사자의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⑦ (요건 미준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적용한 하나 이상의 요건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준수되지 않은 경우, 계약당사자는 자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증거의 제출요구)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에 포함된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관하여 행정청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기재사항을 입증하는 증거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출원일 ① (허용가능한 조건) 1.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및 요소를 행정청이 허용하는 언어로 수령한 날을	제5조 출원일에 관한 세부사항

조약	시행규칙
출원의 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해당 요소들이 출원으로 제출되는 것 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 나.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다. 산업디자인을 충분히 명확하게 나타낸 시각적 표현 라.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연락할 수 있는 표시 2. 계약당사자는, 산업디자인을 충분히 명 확하게 나타낸 시각적 표현과 출원인의 신원 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출원인이나 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연락할 수 있는 표시가 함께 제출되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타 표시 또는 요소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이 제출되었거나, 그러한 표시 또는 요소가 행정청이 인정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령한 날 을 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허용되는 추가 요건) 1. 계약당사자의 조약 가입 당시 해당 당사 자의 법률에 따라, 출원일을 부여받기 위해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요건을 출원서에 포함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약당사자는 선언을 통하여 그 요건을 사무총장에게 통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는 요건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가. 산업디자인을 포함하거나 그 사용과 관련된 물품의 명칭 나.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 또는 그 특 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다. 청구항 라.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 마. 산업디자인의 창작자에 관한 표시 3. 제1호에 따라 통지한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③ (기타요건의 금지) 출원일을 부여하기 위	

조약	시행규칙
한 목적으로,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떠한 다른 표시 또는 요소도 요구할 수 없다. ④ (통지 및 기한) 행정청이 출원서를 접수한 당시, 해당 출원서가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추후 요건 보완 시 출원일)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원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원일은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요구한 모든 기재사항 및 요건이 행정청에 접수된 날로 본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약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은, 해당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공지에외기간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이 공개된 경우라도, 그 공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디자인은 신규성, 창작성,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자적 성격 또는 비자명성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 나.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자에 의하여 공개된 경우. 이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보를 취득한 자에 의한 공개를 포함한다.	
제8조 창작자 명의의 출원 ① (창작자 명의의 출원 요구) 계약당사자는 산업디자인의 출원을 그 창작자의 명의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창작자 명의 출원 시 형식적 요건) 계약당사자가 산업디자인을 창작자의 명의로 출	

조약	시행규칙
원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출원서에는 산업디자인의 창작자로서 창작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창작자의 성명이 출원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경우 나. 산업디자인의 창작자가 서명한 양도증서를 출원서에 포함하거나 출원과 함께 제출한 경우	
제9조 두 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의 보정 또는 분할 ① 두 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이하 "최초출원")이 제4조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출원인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해당 요건을 준수하도록 최초출원을 보정할 것 나. 최초출원을, 최초출원에서 보호를 청구한 산업디자인을 각각의 분할출원에 나누어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둘 이상의 분할출원으로 분할할 것	
② (분할출원의 출원일 및 우선권) 분할출원은 최초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며,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에 따른 효력을 유지한다.	
③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출원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둘 이상의 분할출원으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수료) 출원을 분할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디자인의 공개 ① (비공개 유지) 계약당사자는 산업디자인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기간을 전제로 하여, 자국의 관련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조약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의 최소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조약	시행규칙
②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 및 수수료) 1.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을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하여, 출원인에게 행정청에 그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산업디자인 비공개 유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비공개 유지 신청에 대한 공개신청)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비공개 유지를 신청한 경우,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언제든지 산업디자인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전자적 산업디자인 시스템 계약당사자는 관련법에 따라 전자적 출원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권 증명서의 전자적 교환을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제12조 서류제출 ① (제출 방식 및 형태) 계약당사자는 서류 제출의 전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서면, 전자문서 또는 기타 형태의 서류제출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서류제출의 언어) 1. 계약당사자는 모든 서류제출이 그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서류제출이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가 아닌 경우, 계약당사자는 공식 번역자 또는 대리인이 행정청이 인정한 언어로 작성한 해당 서류의 번역문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제출의 번역문에 대하여 선서, 공증, 인증, 공인 또는 그 밖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는 번역	제7조 서류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조약	시행규칙
문에 대하여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송달 주소, 연락 주소 및 연락처) 계약 당사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류제출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연락을 위한 주소 나. 송달을 위한 주소 다. 그 밖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소 또는 연락처	① (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 1.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연락 주소 및 나목에 따른 송달 주소가 해당 계약당사자가 정한 영토 내에 있어야 함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는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전화번호 나. 팩스번호 다. 전자우편번호
④ (서면 제출 시의 서명) 1.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서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모든 서명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서면 서류제출 시 서명 기재 사항) 계약당사자는 자연인이 서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함께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서명인의 선택에 따라, 성(姓) 및 이름 또는 통상 사용하는 이름의 문자 표기 나. 제출 서류만으로 서명인의 자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자격에 대한 기재
2. 계약당사자는 준사법적 절차에 해당하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에 대한 선서, 공증, 인증, 공인 또는 그 밖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서명일) 계약당사자는 서명에 서명일을 함께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명일이 기재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서명이 포함된 서류가 행정청에 접수된 날을 서명일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허용하는 경우, 해당 접수일 이전의 날짜를 서명일로 간주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의 서명에 대하여 행정청이 진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④ (서면 서류제출 시 서명)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서면으로 작성되며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조약	시행규칙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필 서명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자필 서명 대신, 인쇄된 서명, 스탬프 서명, 도장, 바코드 라벨 등의 방식과 같은 다른 형태의 서명을 허용할 수 있다. 다. 제출서류에 서명한 자연인이 해당 계약당사자의 국민이며 그 영토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법인이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영토 내에 거소지 또는 유효한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보유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자필 서명 대신 도장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서면 서류의 서명에 대한 인증 등) 조약 제1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출원 철회 또는 등록 포기에 관한 서류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해당 서류의 서명에 대해 선서, 공증, 인증, 공인 또는 기타 방식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계약당사자가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류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서류제출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전자수단으로 제출된 서면 서류의 서명) 서면 서류를 전자적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한 계약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허용된 서명의 그래픽 표현 또는 그 밖의 표현이 수신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서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⑦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시 원본)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한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서류의 원본을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해당 전자문서 제출을 특정할 수 있는 서신을 첨부할 것 나. 행정청이 전자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한 내에 원본을 제출할

조약	시행규칙
	것 ⑧ (전자문서 제출 시 인증) 계약당사자는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가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전자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기타 요건 금지) 계약당사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본 조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⑨ (접수일)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실제로 문서가 제출되었거나 수수료가 납부된 날을 기준으로, 어느 시점을 행정청에의 접수 또는 납부로 간주할지를 정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재량에 따른다. 가. 행정청의 지부 또는 출장소 나. 계약당사자가 정부 간 국제기구인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을 대리하는 국가기관 다. 공적 우편기관 라.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배송 서비스 또는 대행기관 마. 행정청의 지정주소 외의 주소지 ⑩ (전자문서의 접수일) 제9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서류제출을 허용하고 그에 따라 제출된 경우, 해당 계약당사자의 행정청이 그러한 방식으로 서류를 수령한 날을 접수일로 본다.
⑦ (서류제출 시 기재사항) 계약당사자는 서류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나 이상의 기재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조약 제12조 제7항에 따른 기재사항) 1. 계약당사자는 서류제출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출원인, 등록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나. 해당 서류가 관련된 출원 또는 등록의 번호 다. 출원인, 등록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행정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번호 또는 기타 식별표시 라. 계약당사자가 행정청의 절차에 대해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 및 납부 방법 등 해당 행정청이 수수료를

조약	시행규칙
	징수하는 데 필요한 기재사항 2.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의 절차를 위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해당 대리행위의 근거가 되는 위임장에 대한 표시 다. 대리인이 행정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등록번호 또는 기타 식별표시
⑧ (대리인과의 통신수단) 이 조항은 출원인, 등록권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그들의 대리인 간의 서류제출 방식에 대하여 규율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갱신 ① (갱신 신청 및 수수료) 1. 계약당사자가 존속기간의 갱신을 규정하는 경우, 갱신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에는 다음 각 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갱신을 신청한다는 표시 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갱신 대상 등록의 등록번호 라. 신청된 갱신 존속기간의 표시 마. 권리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바. 권리자가 송달 또는 연락을 위한 주소를 둔 경우, 해당 주소 사. 하나의 등록에 포함된 산업디자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갱신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갱신이 신청된 경우, 갱신을 신청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산업디자인의 번호 아. 갱신 신청이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해당 제3	제9조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조약	시행규칙
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당사자는 갱신에 대하여 수수료를 행정청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갱신 신청 및 수수료 납부 기간) 계약당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갱신 신청이 제출되고, 제2호에 따른 수수료가 납부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약당사자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조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갱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갱신 기한일 전 최소 6개월 이전에 시작하여, 갱신 기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후에 종료되어야 한다. 갱신 기한일 이후에 갱신 신청이 이루어지거나 갱신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 해당 신청 또는 수수료 납부는 추가 요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수리될 수 있다.
③ (기타 요건 금지) 계약당사자는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동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12조에 명시된 요건 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 기한의 구제 ① (기한연장) 계약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한 절차에서의 행위를 위하여 행정청이 정한 기한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중 계약당사자가 선택한 시기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연장 신청이 제출된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만큼의 기한 연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 나. 해당 기한이 만료된 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	제10조 기한의 구제에 관한 세부사항 ① (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요건) 1.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 나. 기한 연장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해당 기한의 명시 2. 기한 만료 후에 기한 연장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당사자는 해당 기한이 적용되는 절차상의 모든 요건이 신청서와 함께 충족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약 제14조제1항의 연장 기간 및 기한) 1. 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원래 기한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약 제14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기한은, 연장되지 않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만료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절차의 계속)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행정청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계약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제	

조약	시행규칙
공하지 않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하여 절차의 계속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권리를 회복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러한 취지의 신청이 행정청에 제출될 것 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신청이 제출되고, 기한이 적용되었던 절차상 행위에 관한 모든 요건이 충족될 것	③ (조약 제14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4조 제2항 가목에 따른 기한의 구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 나. 기한 미준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해당 기한의 명시 ④ (조약 제14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신청서 제출 기한) 조약 제14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신청 기한은, 행정청이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가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전에 만료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예외)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이나 제2항에 따른 절차의 계속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⑤ (조약 제14조 제3항에 따른 예외)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조약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를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가. 조약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구제를 받은 기한에 대한 2차 또는 추가 구제 나. 조약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 신청 자체, 또는 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 자체에 대한 구제 다. 갱신 수수료 납부 기한에 대한 구제 라. 행정청 내의 심판원 또는 다른 재심기관에서의 절차에 대한 기한 구제 마. 당사자간 절차에 대한 기한 구제 바. 조약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에 대한 구제

조약	시행규칙
④ (수수료) 체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타 요건 금지) 이 조약 또는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명시된 것 외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⑥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체약당사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거절 예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제15조 행정청이 상당한 주의 또는 비교의를 인정한 경우의 권리회복 ① (권리회복) 체약당사자가 제14조 제1항 나목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행정청이 정한 절차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행정청은 해당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하여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권리회복 신청을 제출할 것 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신청이 제출되고, 문제된 절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제11조 조약 제15조에 따른 상당한 주의 또는 비교의를 인정한 이후의 권리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① (조약 제15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요건) 체약당사자는 조약 제15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약 제15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기한) 조약 제15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 및 그 요건의 이행 기한은, 다음 각 목 중 더 빠른 날 이전에 도달해야 한다. 가. 해당 절차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날

조약	시행규칙
다.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를 해당 신청에 기재할 것 라. 주어진 사정하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지연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행정청이 인정할 것	나. 해당 절차의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2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 또는 갱신 수수료 미납과 관련된 경우에는 파리협약 제5조의2에 따른 유예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한 날
② (예외) 제1항에 따른 권리회복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	③ (조약 제15조 제2항에 따른 예외) 조약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회복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약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제 신청 기한, 또는 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른 권리회복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나. 행정청 내의 심판원 또는 기타 재심 기관에 대한 절차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다. 당사자간 절차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라. 계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계류 중인 출원에 새로운 출원일을 부여하기 위한 선언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마. 조약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③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증거) 계약당사자는 제1항 다목에서 정한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서 또는 기	

조약	시행규칙
타 증거를, 행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그 거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6조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 ①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계약당사자는 후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그러한 취지의 신청이 제출될 것 나. 해당 신청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될 것 다. 후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한 우선권 기간 만료일을 넘지 않을 것	제12조 조약 제16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 및 우선권의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 ① (조약 제16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6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신청서에 출원인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약 제16조 제1항 나목에 따른 기한) 조약 제16조 제1항 나목에 따른 신청 기한은 우선일 또는 우선권 주장 정정 또는 추가로 변경된 우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기 전까지이며, 다만, 출원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예외) 출원의 실체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약 제16조 제1항 가목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어떠한 계약당사자도 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정정 또는 추가를 인정할 의무는 없다.
② (후출원의 지연) 계약당사자는,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출원(이하 “후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이 우선	④ (조약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한) 조약 제16조 제2항 전단 및 제16조 제2항 나목에 따른 신청은, 우선권 기간이 만료된 날

조약	시행규칙
권 기간 만료일 이후이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행정청이 우선권을 회복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종료되는 기한까지 허용되어야 한다.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행정청에 그러한 취지의 신청이 제출될 것	⑤ (조약 제16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요건)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6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신청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해당 신청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될 것	가. 출원인의 서명이 있을 것
다. 해당 신청서에 우선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	나. 출원서에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 주장을 첨부할 것
라. 행정청이,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연에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것	
③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증거) 계약당사자는 제2항 다목에서 정한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술서 또는 기타 증거를, 행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거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7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 신청	제13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의 등록 신청, 또는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에 관한 요건의 세부사항
① (실시권 등록 신청에 대한 요건) 계약당사자의 법률에서 실시권의 등록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신청 내용) 1.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7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실시권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

조약	시행규칙
가. 신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출할 것 나. 신청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권리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권리자에게 송달 또는 연락 주소지가 있는 경우, 그 주소 라. 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 마. 실시권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바. 실시권자에게 송달지 또는 연락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 사. 실시권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법적 성격, 국가명 및 해당 법인이 설립된 국가 내의 행정구역명(해당하는 경우) 아.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권자가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그 국적국의 명칭, 국가에 거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명칭, 실질적이고 유효한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명칭 자.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등록번호 차. 등록에 포함된 모든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실시권이 부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시권이 부여된 산업디자인의 번호 카. 실시권이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독점실시권인지 여부 타. 해당되는 경우, 실시권이 등록이 효력을 갖는 지역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그 일부 지역을 명시한 기재 파. 실시권의 존속 기간
② (수수료) 실시권 등록과 관련하여, 행정청	2.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18조 제1항에 따

조약	시행규칙
은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른 실시권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동조 제1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명시된 기재사항 나. 등록할 변경의 내용 및 범위, 또는 등록할 말소의 표시
③ (단일 신청) 실시권이 둘 이상의 등록에 관련된 경우에도, 신청서에 모든 등록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모든 등록에 대하여 등록권자와 실시권자가 동일하며, 또한 모든 등록에 관한 실시권의 범위가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 신청으로 충분하다.	② (실시권 등록을 위한 증빙서류) 1. 실시권이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등록 신청 시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타 요건 금지) 1. 실시권 등록과 관련하여, 동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다음 사항은 요구될 수 없다. 가.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등록증의 제출 나. 실시권 계약의 재정적 조건에 관한 기재 2.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실시권 등록 이외의 목적을 위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계약당사국의 법률상 존재하는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계약서 사본. 이 경우, 해당 사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공공기관, 또는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행정청에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 원본과 일치함을 인증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 당사자, 실시권의 권리 및 범위를 명시한 계약서의 해당 부분으로 구성된 발췌본. 이 경우, 해당 발췌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공공기관, 또는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행정청에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 진정한 발췌본임을 인증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는 실시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권리자(공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유자가 서명한 명시적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²⁴¹⁾
⑤ (증거) 신청서 또는 그에 첨부된 증명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진실성	3. 실시권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정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실시

조약	시행규칙
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권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본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문서를 발행한 기관, 공증인, 권한 있는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행정청에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에 의해 원본과 일치함을 인정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출원과 관련한 신청)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출원에 대한 실시권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그 출원에 대한 실시권 등록 신청에 준용한다.	
⑦ (담보권 등록 신청)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담보권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항 제1호 나목을 제외하고 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실시권 또는 담보권 등록의 변경·말소 신청 ① (실시권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 요건) 체약당사자의 법률에서 실시권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체약당사자는 실시권 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출할 것 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③ (실시권 등록 변경을 위한 증빙서류) 1. 체약당사자는 실시권 등록 변경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실시권 등록 변경 신청을 입증하는 문서 나. 권리자와 실시권자 쌍방이 서명한 공증 또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실시권 변경에 관한 진술서 2. 체약당사자는 실시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권리자에게, 해당 공동권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실시권 변경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보권 등록의 취소 신청 요건) 담보권의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기타 요건) 실시권의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신청 및 담보권의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제17조 제2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을	④ (실시권 등록 취소를 위한 증빙서류) 체약당사자는 실시권 등록 취소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조약	시행규칙
준용한다.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실시권 등록 취소 신청을 입증하는 문서 나. 권리자와 실시권자 쌍방이 서명한 공증 또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실시권 취소에 관한 진술서 ⑤ (담보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담보권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등록 취소 신청에 준용한다.
제19조 실시권 미등록의 영향 ① (등록의 효력과 보호) 실시권이 계약당사자의 행정청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등록의 효력이나 그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시권자의 특정 권리) 계약당사자는 실시권자가 계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가지는, 권리자가 제기한 권리침해 절차에 참여할 권리 또는 그 절차를 통하여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실시권의 등록을 그 전제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 실시권의 표시 계약당사자의 법률에서 산업디자인이 실시권에 따라 사용된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표시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등록의 효력 또는 산업디자인의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1조 명의변경 등록 신청 ① (신청요건) 1.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명의변경 등록을	제14조 명의변경 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① (신청내용) 계약당사자는 조약 제21조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조약	시행규칙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명의변경 등록 신청서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가. 명의변경 등록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 나. 명의변경이 적용되는 등록번호 다. 기존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신규 명의자의 성명 및 주소 마. 명의변경의 일자 바. 신규 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법적 성격 및 근거법령에 따른 국가명,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 내 행정구역 사. 신규 명의자가 어느 국가의 국민인 경우 해당 국가명, 거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명(있는 경우), 실제적이고 유효한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국가명(있는 경우) 아. 기존 권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자. 신규 명의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차. 신규 명의자가 연락 주소 또는 교신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주소 카. 명의변경의 근거
② (명의변경 등록을 위한 증빙서류 요건) 1. 명의변경이 계약에 기인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신청인이 선택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소 중 하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명의변경이 합병에 기인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업등기부의 등본 등 합병을 증명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문서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본은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 원본과 동일함이 인증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을 위한 첨부서류 요건)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서 사본(공증인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서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한 것) 나. 명의변경 사실이 나타나는 계약서의 부분 사본(공증인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공공기관이 계약서의 진정한 부분 사본임을 인증한 것)

조약	시행규칙
3. 다수의 공동권리자(공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 또는 합병에 따른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당사자는 명의변경이 없는 공동권리자가 서명한 문서를 통해 해당 공동권리자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 또는 합병 이외의 사유, 예를 들어 법률의 적용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명의변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해당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본은 그 문서를 발행한 기관, 공증인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 원본과 동일함이 인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 기존 권리자 및 신규 명의자가 모두 서명한 공증 또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양도증명서 라. 기존 권리자 및 신규 명의자가 모두 서명한 공증 또는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양도서류
③ (수수료) 계약당사자는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단일 신청) 둘 이상의 등록과 관련한 명의변경 신청에서, 각 등록별 권리자와 양수인이 동일하고, 모든 등록번호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단일 신청으로 충분하다.	
⑤ (출원에 관한 명의변경) 명의변경이 출원에 관한 것인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출원의 출원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출원을 특정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제8조 출원번호 없이 출원을 특정하는 방법 ① (특정방법) 출원이 출원번호에 의해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해당 출원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제공한 경우 해당 출원은 특정된 것으로 본다. 가. 행정청이 부여한 임시 출원번호가 있는 경우, 그 임시 출원번호 나. 출원서 사본 다.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과 함께, 출
⑥ (기타 요건의 금지) 계약당사자는 명의변경 등록 신청에 대하여, 동조 제1항부터 제5	

조약	시행규칙
항까지 및 제12조에서 정한 것 외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⑦ (증거)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서 또는 본 조에 따른 문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진실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증거 또는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인 또는 대리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행정청이 출원서를 수리한 날짜 및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기재한 식별번호 ② (기타 요건 금지) 체약당사자는 출원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출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①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1. 권리자의 (명의)변경이 없는 경우라도, 그의 성명 및/또는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각 체약당사자는 해당 등록번호와 변경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에 따라 권리자가 행정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자는 신청에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변경이 둘 이상의 등록에 관련된 경우에도, 관련 등록번호가 모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일 신청으로 충분하다. ② (출원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변경이 출원 또는 복수의 출원, 또는 출원 또는 복수의 출원과 등록 또는 복수의 등록 모두에 관련된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련된 출원의 출원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았거나, 출원인이나 그 대리인이 그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원을 특	제15조 성명 또는 주소변경 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체약당사자는 조약 제22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 변경 등록 신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권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권리자에게 송달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

조약	시행규칙
정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송달을 위한 주소의 변경)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송달을 위한 주소의 변경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기타 요건 금지) 체약당사자는 이 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동조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규정된 것 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변경에 관한 어떠한 증명서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⑤ (증거)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포함된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행정청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오류의 정정	제16조 오류의 정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① (신청) 1. 출원, 등록 또는 이에 관하여 행정청에 제출된 기타 신청에 조사 또는 실체심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오류가 적용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서명하여 행정청에 제출한 서류에 의한 등록부 및 공보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야 한다.	체약당사자는 조약 제23조에 따른 오류의 정정 신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 오류 정정 신청이라는 취지의 기재 나. 관련 출원 또는 등록번호 다. 정정되어야 할 오류의 내용 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 마.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체약당사자는 신청에 정정된 부분 또는 이를 반영한 대체 부분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각 출원 및 등록에 대하여 각각의 정정된 부분 또는 대체 부분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신청인이 오류가 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	

조약	시행규칙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당사자는 오류를 발견한 후 과도한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하였거나, 또는 계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고의적인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하였음을 선언하는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수료)	
1.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귀책으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수수료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③ (단일신청) 오류와 정정 내용이 모든 출원 및 등록에 대하여 동일한 경우, 제21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증거) 주장된 오류가 실제로 오류인지 여부 또는 오류의 정정 신청에 포함된 내용이나 첨부된 서류의 진실성에 관하여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에만, 계약당사자는 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타 요건 금지)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기타 형식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이 조약 또는 시행규칙에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⑥ (예외) 계약당사자는 재등록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오류에 대하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4조 [결의사항]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① (원칙) 기술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아야 한다. 가. 개발 지향적이고, 수요 중심적이며, 투명하고, 목표 지향적이어야 하며, 수혜국의	

조약	시행규칙
조약 이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절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혜국의 우선순위 및 구체적인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1. 이 조약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활동은 조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필요한 법적 체계의 수립 및 디자인 등록 당국의 행정관행 및 절차의 개정 나. 행정청의 역량 강화, 여기에는 인적자원 교육, 기술적 지원, 인식 제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 기구는, 자원의 배분 및 가용성에 따라,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제2항 라목에 따른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구의 활동 및 조치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기구는 이 조약에 따른 기술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혜국 정부, 국제 금융기구 및 정부 간 기구와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타조항) 1. 기구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기존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계약당사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당사국의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도록 촉구된다. 계약당사자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등록디자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구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정보교환을 위한 계약당사자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이 조약의 계약당사자는 출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 제도를 마련할 수	

조약	시행규칙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① (내용) 1. 이 조약에 부속된 시행규칙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규정한다. 가. 이 조약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명시된 사항 나. 이 조약의 규정 이행에 유용한 세부사항 다. 행정상의 요건, 사항 또는 절차 2. 시행규칙은 또한 총회가 제정하는 국제표준양식의 공표에 관하여 규정한다. ②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규칙의 개정은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에 참가한 계약당사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요한다. ③ (만장일치 요건) 1. 시행규칙은, 해당 조항의 개정이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가능한 조항을 명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만장일치 개정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하여 조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개정은 만장일치에 의하여야 한다. 3. 만장일치 여부의 판단에 있어 실제 행사된 투표만을 산정하며,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④ (조약과 시행규칙 간의 상충) 이 조약의 조항과 시행규칙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 조약의 조항이 우선한다. 제26조 총회 ① (구성) 1. 계약당사자들은 총회를 둔다. 2. 각 계약당사자는 총회에서 1인의 대표자에 의해 대표되며, 해당 대표자는 대리 대표자, 자문인 또는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각 대표자는 하나의 계약당사자만을 대표할 수 있다. 3. 각 대표단의 비용은 해당 대표단을 임명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총회는 기	제18조 조약 제25조 제3항 가목에 따른 만장일치 요건 다음 각 시행규칙 조항은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가. 제2조 아목 및 자목 나. 제6조 다. 제12조 제3항 라. 본 조(제18조)

조약	시행규칙
구에 대하여, UN 총회에서 확립된 관례에 따라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으로 간주되거나, 시장경제로의 전환국으로 분류되는 체약당사자의 대표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업무)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이 조약의 발전에 관한 사항 처리 나.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양식의 제정 다. 시행규칙의 개정 라. 다목에 따른 개정사항의 적용일 조건의 규정 마. 이 조약의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에 대하여 매 정기 회기마다 모니터링의 실시 바. 이 조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해 제24조에 따른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것 사.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적절한 기타 업무의 수행	제17조 국제표준양식 국제사무국은 조약 제26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총회가 정한 국제표준양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정족수) 1. 국가인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이를 정족수로 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기에서든 국가인 총회 구성원 중 대표가 출석한 수가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총회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자체 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결정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해당 회기에서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던 국가인 총회 구성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이 투표 또는 기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조약	시행규칙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투표 또는 기권의 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의 수가 회기 당시 정족수 충족에 부족했던 수에 도달하여야 하며, 그와 동시에 해당 결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④ (의사결정) 1. 총회는 합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국가인 체약당사자는 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오직 자기 이름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 나. 정부간기구인 체약당사자는 그 구성원국 중 이 조약의 체약당사자인 회원국의 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회원국을 대신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부간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간기구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또한, 이 조약의 체약당사자인 어느 회원국이 다른 정부간기구의 회원국이고, 그 다른 정부간기구가 해당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간기구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의결정족수) 1.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의사결정은 실제 행사된 투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는 실제로 행사된 투표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권은 투표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회기) 총회는 사무총장이 소집하며, 특별	

조약	시행규칙
한 사정이 없는 한 기구의 총회와 동일한 기간 및 장소에서 개최된다. ⑦ (절차 규칙) 총회는 임시 회기의 소집 규칙을 포함하여 그 절차에 관한 자체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27조 국제사무국 ① (행정업무) 1.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2. 특히, 국제사무국은 총회 및 총회에서 설치하는 전문가 위원회 및 실무반의 회의를 준비하고, 이들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② (총회 회기 외의 회기)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설치한 위원회 및 실무반을 소집한다. ③ (총회 및 그 밖의 회의에서 국제사무국의 역할) 1.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정한 자는 총회 및 총회에서 설치한 위원회 및 실무반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한다. 2.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한 직원은 제1호에 명시된 총회, 위원회 및 실무반의 당연직 서기로서 활동한다. ④ (회의) 1.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개정 회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2. 국제사무국은 위의 준비와 관련하여, 기구(WIPO)의 회원국, 정부간기구, 국제 및 국내 비정부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3.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이 지정한 자는 개정 회의의 논의에 투표권 없이 참여한다. ⑤ (기타 업무)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과 관련하여 부여된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 개정 이 조약은 외교회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외교회의의 소집 여부는 총회가 결정한다.	
제29조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절차 ① (자격) 다음의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조약	시행규칙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조약에 서명하고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산업디자인이 그 자체의 행정청에 등록되거나 특허될 수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 나. 산업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행정청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설립 조약이 적용되는 영토 전체 또는 관련 출원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정된 회원국 전부 또는 일부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부간기구. 다만, 해당 정부간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다. 산업디자인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다른 특정 회원국의 행정청을 통해서만 등록될 수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 라. 산업디자인이 그 국가가 회원국으로 소속된 정부간기구가 유지하는 행정청을 통해서만 등록될 수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 마. 산업디자인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들로 구성된 집단의 공동 행정청을 통해서만 등록될 수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 ② (비준 또는 가입)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문서를 기탁할 수 있다. 가. 이 조약에 서명한 경우에는 비준서 나.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다. ③ (기탁의 효력 발생일)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에 따른 효력 발생일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문서가 기탁된 날로 한다. 나. 정부간기구의 경우, 해당 정부간기구의 문서가 기탁된 날로 한다. 다. 제1항 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조약	시행규칙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날로 한다 : 해당 국가의 문서가 기탁되었고, 해당 국가가 산업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다른 특정 국가의 문서도 함께 기탁된 경우 라. 제1항 라목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나목에서 정한 날로 한다. 마. 제1항 마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회원국 중 하나인 국가의 경우, 그 일단에 속한 모든 국가의 문서가 기탁된 날로 한다.	
제30조 발효 및 비준·가입의 효력 발생일 ① (고려 대상 문서) 본 조의 적용에 있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가 기탁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로서, 그 효력 발생일이 제29조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문서만을 고려 대상으로 한다. ② (조약의 발효) 이 조약은, 제29조 제1항 나목에 따른 정부간기구 또는 국가 중 15개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발효한다. ③ (조약의 발효 이후의 비준 및 가입의 효력 발생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해당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이 조약에 기속된다.	
제31조 유보 ①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유보)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유보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날에 적용되는 자국법에 따라, 그 영토 내에 주소 또는 실질적인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출원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한 출원서의 제출에 관하여	

조약	시행규칙
행정청에 직접 행위할 수 없다. ② (제7조,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및/또는 제19조 제2항에 대한 유보) 이 조약에 가입하는 날에 해당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적용법이 제7조,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2항 및/또는 제19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유보를 통하여 자신이 해당 조항들에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③ (유보의 방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보는, 해당 유보를 선언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가 이 조약에 대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함에 있어 첨부하는 선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유보의 철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⑤ (기타 유보의 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유보 외에는, 이 조약에 대한 어떠한 다른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2조 조약의 탈퇴 ① (통보) 체약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② (효력발생일)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상기 1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조약을 탈퇴한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계류 중인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조약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탈퇴한 체약당사자는 상기 1년 경과 후 해당 등록의 갱신일이 도래하는 때부터 그 등록에 대하여 이 조약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33조 조약의 언어 및 서명 ① (원문 및 공식본) 1. 이 조약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	

조약	시행규칙
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에 서명하며, 이들 모든 언어의 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정본으로 본다. 2. 제2호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언어 중 계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된 공식본은, 해당 계약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작성한다. ② (서명기한) 이 조약은 채택일로부터 1년간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4조 기탁처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기탁처이다.	

- 239) references to “industrial design” shall be construed as references to “industrial designs”, where the application or the registration includes more than one industrial design; 여기에서 ‘산업 디자인들’은 「디자인보호법」상 ‘복수디자인’ (Multiple Designs)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일 출원 또는 등록에 사실상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를 포괄하기 위한 문언 해석 규정임
- 240) “a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 design”에 대응하여 “산업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이는 도면(drawing)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시각적 표현을 의미하므로 조약에서는 도면이 아닌 포괄적인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해석 규정임
- 241) “co-holder”의 경우 원문 기재에 따라 ‘공동권리자’로 기재하되 「디자인보호법」의 사용 용례에 따라 ‘공유자’를 참조로 표기함

[붙임 2] 「디자인보호법」 상 기간에 관한 사항

구분	법	구분	원칙	기간	기간미준수의 효과	권리회복
기간의 계산	제16조	일반				해당없음
기간의 연장	제17조	일반	청구에 따른 단축/연장, 직권연장			해당없음
절차의 무효	제18조	일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간 미준수의 경우 무효처분 취소 가능			정당한사유의 소멸한날부터 2개월 기간의만료일로 부터1년까지
절차의 추후보완	제19조	일반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의한 기간 미준수의 경우 절차의 추후보완 가능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기간의만료일로 부터1년까지
수계신청	제24조	지정	중단된 절차에 관한 미수계시 기간을 지정하여 수계를 명령			해당없음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6조	지정	절차중단 후, 수계 또는 절차 속행 후 전체기간이 새롭게 진행			해당없음
디자인등록출 원일의 인정 등	제38조	지정	출원일 인정을 위한 형식 미준수에 대한 보완	상당한 기간 (1개월)	반려	0
ㄴ(규칙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1개월		
비밀디자인의 청구	제43조	법정	디자인등록출원일~디자 인등록료를 내는날까지 (등록료면제시,디자인권 을설정등록할때까지)	출원일~등 료납부 일		0

구분	법	구분	원칙	기간	기간미준수의 효과	권리회복
ㄴ(규칙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같은 날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 원의 처리	제46조	지정	기간을 정하여 협의결과를 신고		협의 불성립	
절차의 보정	제47조	지정	지정기간 내 보정	기간을 정함		정당한사유의 소멸한날부터 2개월 기간의만료일로 부터1년까지
ㄴ(규칙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1개월		
출원의 보정	제48조	법정	등록/거절결정 통지서 발송전/재심사청구전/거 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 터30일			
단독↔관련디 자인 변경 보정	제48조	법정	등록/거절결정 통지서 발송전/재심사청구전/거 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 터30일			
디자인등록↔ 일부심사등록 변경 보정	제48조	법정	등록/거절결정 통지서 발송전/재심사청구전/거 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 터30일			
출원의 분할	제50조	법정	등록/거절결정 통지서 발송전/재심사청구전/거 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 터30일	제48조4항 의 보정기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의 취하	제50조	법정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	30일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1조	법정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우선권 주장 효력 상실	

구분	법	구분	원칙	기간	기간미준수의 효과	권리회복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기간의 미준수	제51조	법정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간 미준수의 경우 기간만료 후 절차계속 허용	기간만료 일부터 2개월	우선권 주장 효력 상실	정당한 사유 디자인등록출원 일부터3개월-기 간만료일부터2개 월이내
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제51조 의2	법정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 보정 및 추가	3개월	우선권 주장 효력 상실	정당한 사유 디자인등록출원 일부터3개월-기 간만료일부터2개 월이내
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제51조 의3	법정	기간 미준수 시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원 시 우선권 주장 가능	2개월	우선권 주장 효력 상실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0조	지정	전문기관의 업무의 전부또는 일부의 정지	6개월		
거절이유통지 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63조	지정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기간을 정함		
ㄴ(규칙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2개월		
재심사의 청구	제64조	법정	거절등록결정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제17조제1항/제120조에 따른기간이연장된경우연 장된기간)	등본송달 일부터 3개월		
일부심사등록 의 이의신청	제68조	법정	일부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까지/침해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이의신청 (침해통지가이유인경우, 공고일부터1년도과시이 의신청불가)	3개월		
일부심사등록 의 이의신청에	제68조	지정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	지정		

구분	법	구분	원칙	기간	기간미준수의 효과	권리회복
대한 답변서 제출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보정	제69조	법정	이의신청을 한 날 부터 30일 이내	30일		
ㄴ(규칙 제29조 제2항) 기간의 연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기간의 연장			
일부심사등록 의 이의신청 심사에 대한 의견진술	제71조	지정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기간을 정함		
디자인등록료 납부기간	제79조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 자원부령		
등록료의 추가납부	제82조	법정	납부기간 도과 후의 추가납부	6개월	출원포기/권 리소멸	
등록료의 보전	제83조	법정	등록료 일부 미납 시 보전명령, 명령일로부터 1개월 내 보전 가능	1개월		
등록료의 추납/보전에 따른 권리회복	제84조	법정				정당한사유의 종료일부터 2개월 (추납기간만료일/ 보전기간만료일 중늦은날부터1년 까지)
절차수수료	제85조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령			
보정각하결정 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제119 조	법정	등본송달일로부터 3개월	3개월		△ (사유 제한적)
ㄴ(규칙 제29조 제2항) 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에 대한 기간 연장			
ㄴ(규칙 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한 심판청구기간 미준수	절차의 추후보완 2개월		

구분	법	구분	원칙	기간	기간미준수의 효과	권리회복
등록거절, 등록 취소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제120 조	법정	등본송달일로부터 3개월	3개월		△ (사유 제한적)
ㄴ(규칙 제29조 제2항) 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에 대한 기간 연장			
ㄴ(규칙 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한 심판청구기간 미준수	절차의 추후보완 2개월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제128 조	지정	심판청구서의 오류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	지정	각하	
ㄴ(규칙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1개월		
재심청구	제160 조	법정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청구, 심결확정 후 3년까지	30일		△ (사유 제한적)
ㄴ(규칙 제30조) 기간 경과 구제신청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한 심판청구기간 미준수	절차의 추후보완 2개월		
국제출원에 대한 대체서류 제출 명령	제177 조	지정	국제출원서의 오류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서류 제출 명령	지정		
ㄴ(규칙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1개월		
국제출원 시 송달료의 납부	제178 조	지정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상당한 기간	무효	
ㄴ(규칙 제29조) 기간의 지정 및 연장				1개월		

[붙임 3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②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 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좌동> <u>③ 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한의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그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u> <u>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더 이상 기간의 연장은 되지 않는다.</u> <u>⑤ (현행 제3항과 같음)</u>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23.6.20.> <신 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② 삭제 <2023.6.20.> ③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기준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최선(最先) 우선권주장일로 한다.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

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8개월과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부터 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

	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8개월과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부터 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① <u>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u>

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u>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 중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간(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경과된 후 게재하여야 한다.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등록료의 납부) ① 등록료는 누구든지 낼 수 있다. ② <u>등록료를 낸 자는 등록료를 내야 할 자가</u>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u>정당한 사유로</u>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u>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u>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_____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u>아니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u>

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그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내고 그 포기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삭 제>

③ 제2항에 _____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낸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_____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

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생 략> <신 설>	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 <현행 6항과 같음/좌동> ⑥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 <u>령으로 정한다</u>
--	---

디자인법조약(DLT) 반영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검토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Tel. 042-481-5225, <http://www.moip.go.kr>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Tel. 02-2189-2600, <http://www.kiip.re.kr>

ISBN : 979-11-6884-312-7 13500

DOI : 10.8080/P9791168843127

